

韓國書院學報

제 6 호

韓國書院學會
2018.6



차례

조선후기 屏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김명자 / 5

18세기 陶山書院 노비의 혼인과 가족 김영나 / 43

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이병훈 / 83

안동 임천서원(臨川書院)의 치폐와 사액 청원 이재현 / 129

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임근실 / 157

왕선겸의 서원교육이념과 실천 공항운(龔抗云) / 195

고대서원교육의 화합철학 가치차원에 관한 토론 진역상(陳力祥) / 209

Contents

Study on the Aspect of Late Joseon Byungsan Seowon
屏山書院 Wonjang(院長) Composition per Period Kim Myungja / 5

The Marital and Familial Forms of Dosan Seowon Slaves
in the 18th Century Kim Young Na / 43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rivate academies in
Yeungnam Province in Chosun Dynasty Lee Byoung Hoon / 83

The Petition for Loyal Charter and Establishment and Abolition
Processes of Im-Cheon Seowon in An-dong
..... Lee Jae Hyeon / 129

A review of the educational regulations of seowon and its
special features in the 16th century Lim Geun Sil / 157

The academies education theory of WangXianQian and his practice
..... Gong, Kangyun / 195

Discuss the value dimensions of academies education &
harmonious Philosophy Chen, Lixiang/ 209

Bulletin 223

조선후기 屏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김명자**

-
- I. 머리말
 - II. 16세기 말~17세기, 西厓系 주도의 안정적인 서원 운영
 - III. 18세기, 豊山柳氏의 주도 속에 영남학파의 통합 지향
 - IV. 19세기, 豊山柳氏 西厓派 중심의 서원 운영과 향촌 여론 주도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병산서원의 『院任錄』을 통해 16세기말부터 19세기까지의 원장 480명을 16세기 말~1699년, 1700~1799년, 1800~1899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성씨, 거주지, 과거와 관직 여부, 학파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00년대 말 확인 가능한 원장은 10명으로 안동 풍산 갈전 출신의 순흥안씨 3명, 풍산 구담의 순천 김씨 2명, 와룡 가아의 광산김씨 2명 등으로 김언기의 문인과 류성룡의 문인이 대부분이다. 과거 합격자는 문과 1명, 소과 5명이고, 관직 역임자는 7명이다. 17세기 원장을 역임한 인물은 모두 77명이다. 과거 합격자는 문과 14명, 소과 37명이며, 관직 역임자는 31명이다. 성씨의 확인이 가능한 인물은 74명으로, 16개 성씨이다. 예안이씨 11명(15%), 순천김씨·풍산류씨 각각 10명(14%), 안동권씨 9명(12%), 영양남씨 7명(9%), 동래정씨 6명(8%) 등이다. 거주지는 74명이 확인되었는데, 안동 61명, 예천 9명, 영주 2명, 예안·의성 각각 1명으로, 5개 지역에서 원장을 역임했다.

18세기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은 157명이다. 문과 급제자는 22명이고, 소과 합격자는 26명이며, 관직 역임자는 40명이다. 성씨가 확인된 인물은 143명으로, 모두 22개 성씨이다. 풍산류씨 45명(31%), 안동 권씨 12명(8%), 영양남씨·의성김씨·풍산김씨·전의이씨 각각 10명(7%), 전주류씨·진성이씨 각각 7명(5%) 등이다. 17세기의 원장은 특정 성씨에 집중되지 않았는데, 18세기에는 풍산류씨에 집중되었지만 영남학파 내의 다양한 계파에서 원장이 배출되었다. 원장의 거주지는 142명이 파악되었는데, 안동 133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CDM-1240004).

** 한국국학진흥원

명, 봉화 2명, 예천 5명, 상주·예안 각각 1명으로 17세기와 대동소이하다.

19세기 원장 역임자는 236명이다. 문과 급제자는 37명이고, 소과 합격자는 32명이다. 1865년 이후 지방관 13명이 원장을 역임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려진 이후 병산서원이 향촌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과 서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성씨를 알 수 있는 인물은 208명으로, 모두 29개 성씨이다. 풍산류씨 83명(40%), 진성이씨 24명(12%), 풍산김씨 17명(8%), 예안이씨 12명(6%), 안동김씨 11명(5%), 안동권씨 8명(4%) 등이다. 거주지 확인자 206명 가운데 안동이 151명으로 가장 많고, 예안 13명, 영주 10명, 상주 9명, 예천 6명, 봉화·한양 6명 등 모두 11개 지역이다. 17~18세기에 비해 성씨와 지역이 확대되었다. 병산서원의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회에는 주로 풍산류씨 謙巖派(謙菴 柳雲龍의 후손)와 西厓派(西厓 柳成龍의 후손)가 살았는데, 원장을 역임한 풍산류씨 83명을 파별로 분류하면, 서애파가 53명이고, 겸암파가 26명이며, 미상 4명이다. 풍산류씨가 원장직의 40%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서애파가 64%를 차지하여, 19세기 병산서원 원장은 풍산류씨 서애파가 다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원장 가운데 진성이씨가 22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병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 가운데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은 30명으로 두 서원이 강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19세기의 通文으로 병산서원이 예안의 도산서원뿐만 아니라 상주의 도남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영주의 이계서원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19세기 향촌 사회의 갈등인 ‘屏虎是非’에 대응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영남 남인의 현안에 대해서는 호파 쪽에 속하지만 權權을 배향함으로써 병호시비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삼계서원을 매개로 호파 계열과 공조를 도모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병산서원의 네트워크는 영남 전역에 미쳤다.

주요어: 병산서원, 풍산류씨, 병호시비, 서원 원장, 풍산류씨 서애파, 『원임록』

I. 머리말

屏山書院은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하며, 西厓 柳成龍(1542~1607)과 그의 셋째 아들 修巖 柳紆(1582~1635)을 배향한다. 이 서원은 풍산현 북쪽에 있던 豊岳書堂에서 비롯되었다. 풍악서당이 길가에 위치하여 장수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류성룡이 1572년(선조 5)에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서원은 임진왜란으로 불에 탔으나 1607년 중건되었고, 1614년(광해 6) 류성룡의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교육 공간과 향사 공간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다. 1663년 사림의 공론으로 류진의 위패가 종향되었고, 1863년(철종 14) 사액서원이 되었다.

병산서원은 경주의 옥산서원 상주의 도남서원 안동의 호계서원 예안의 도산서원 등과 더불어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조선후기 영남학파의 공론을 형성

하는데 앞장서고 정치 사회적 활동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언급된다.

병산서원의 선행 연구에서 이수건은 17·18세기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밝혔고, 김명자는 시기를 확장하여 17~19세기 서원의 인적 구성과 기능, 경제적 기반, 서원의 성격 변화 등에 대해 살폈다.¹⁾ 이로써 병산서원의 인적 구성과 사회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밝혀졌다. 그러나 서원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로 해당 서원의 위상과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원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²⁾

여기서는 병산서원 원장 구성의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장의 성씨, 출신 지역, 과거 합격여부, 관직 역임 여부, 학파 등을 확인할 것이다. 병산서원 『院任錄』은 8권이 전하며, 거기에는 1592년 이전부터 1918년까지의 원임이 기록되어 있다.³⁾ 이 자료를 16세기말~1699년, 1700~1799년, 1800~1899년의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⁴⁾

이러한 시기 구분은 중앙정치와 향촌사회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1694년 갑술환국 이후 영남 남인은 중앙정치에서의 배제되었고, 더욱이 19세기 세도정치가 본격화되면서 향촌 사족의 위축, 노론 세력의 확대, 신흥세력의 성장, 屏虎是非⁵⁾ 비롯한 향촌사회의 갈등 등이 원장의 구성과 변화에 영

1) 이수환, 「17, 18세기 安東 屏山書院의 社會 經濟的 基盤 -屏山書院 古文書分析-」, 『嶠南史學』 3, 1987;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

2) 우인수는 「도산서원을 움직인 사람들」에서 도산서원 『원임록』으로 원장 직임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밝혔는데,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264~321쪽)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3) 『원임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엮은 『고문서집성』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고문서집성-63』의 정서본으로 출판되었다. 『원임록』을 비롯한 병산서원 소장 자료는 안동 회회회 풍산류씨 충효당과 화경당에서 소장하다가 현재는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보관 중이다. 한편 『원임록』은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에서 탈초 해제하여 웹서비스하고 있다.(<http://yn.ugyo.net>)

4) 병산서원 『원임록』은 김명자의 앞의 논문에서 서원의 문중화 경향을 파악하는데 이용했으며, 여기서는 원장의 본관 거주지, 과거 합격 여부, 관직 여부 등을 보충하였다.

5) 조선후기 안동 사족 사이의 대표적인 갈등인 '屏虎是非'는 서에게 屏儒 屏山書院과 학봉계 虎儒 虎溪書院의 대립 갈등을 말한다. '屏儒'와 '虎儒'는 『廬江誌』에 나오는 표현이며, 병호시비를 다루는 논문에서 병유와 호유를 屏論과 虎論 혹은 屏派와 虎派로 표현하기도 한다. 호계서원은 1573년(선조 6) 이황을 추모하기 위하여 안동부

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Ⅱ. 16세기 말~17세기, 西厓系 주도의 안정적인 서원 운영

서원의 2대 기능은 향사와 교육이다.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원 운영자인 원임이 있어야 한다. 병산서원 『원임록』을 보면 원임의 수와 구성은 시기별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院長 齋有司, 有司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원장은 춘추제향시 대표로 참여하였고, 서원의 자문에 응했으며, 서원의 기강 확립과 유생들의 행실 규찰을 담당하였다.⁶⁾

17세기의 서원 원장을 분석하기 이전에 『원임록』에 기록된 16세기 말의 원장에 대해 우선 살펴보겠다. 초기 병산서원 성격의 일면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500년대 원장은 1592년 이전에 6명이고, 1593년부터 1603년까지 4명이다.

[표 1] 16세기 말의 병산서원 원장

연도	성명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비고
1592년 이전	安景老	생원	현감	순흥	안동	의병 참여
	權景綯	진사	참봉	안동	상주	
	朴大任		찰방	고령	고령	의병 참여
	安仁老		훈도	순흥	안동	
	金彦玲			광산	안동	金彦璣의 아우
	金允明	생원	현감	순천	안동	柳成龍의 문인
1593	權諶			안동	안동	金彦璣權好文의 문인. 의병 참여
1595	安聃壽	문과	현감	순흥	안동	柳成龍의 문인
1598	金得彥	생원		광산	안동	金彦璣의 문인. 의병 참여
1599	金允思	진사	찰방	순천	안동	柳成龍의 문인

임하현에 세웠으며, 廬江書院이라고 했다. 1620년(광해군 12) 鶴峰 金誠一(1538~1593)과 서애 류성룡을 추가 배향했으며, 1676년(숙종 2)에 '虎溪로 사액 받았다.
6)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71쪽.

원장 가운데 安景老 安仁老 安聘壽는 순흥안씨로 안동 풍산 葛田 출신이다. 초대 원장은 安景老이고, 안경로의 아들 안담수는 류성룡의 문인으로 병산서원 창건에 앞장섰다. 金彦玲 權謙 金得曠은 金彦璣(1520~1588)의 문인이다. 김언령은 김언기의 아우고, 김득렴은 김언기의 조카이다. 이들은 안동 와룡 佳野에 살았다. 김언기의 문인록에 189명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만큼 김언기는 당시 안동지역의 문풍 진작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이들의 문인들이 향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⁷⁾ 그런데 김언기의 아들 金得研은 류성룡의 문하에도 출입했다. 金允明과 金允思는 풍산 九潭 출신으로, 같은 구담 출신의 김윤안과 더불어 류성룡에게 수학했으며,⁸⁾ 특히 김윤안은 상주의 정경세와 더불어 서애계의 핵심인물로 병산서원 제향 사업에 앞장섰다.⁹⁾ 당시에는 류성룡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서원은 학문을 토론하거나 향촌 사족들의 모임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을 것이다. 원장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류성룡과 교유하거나 그의 문하에 출입했던 인물들이다.

본격적으로 17세기 병산서원 원장에 대해 살펴보겠다. 모두 77명으로, 16개 성씨이며, 미상은 3명이다. 원장 가운데는 연임 혹은 두 번 이상 역임한 인물도 있어 실제 원장을 역임한 인물은 57명이다. 16세기에는 10여 년 동안 4명으로 평균재임 기간이 2.5년이고, 1600년대는 77명으로 1.3년이다.

원장을 성씨별로 살펴보면, 예안이씨 11명(15%), 순천김씨·풍산류씨 각각 10명(14%) 안동권씨 9명(12%), 영양남씨 7명(9%), 동래정씨 6명(8%), 풍산김씨·전의이씨 각각 4명(5%), 의성김씨·진성이씨 각각 3명(4%), 순흥안씨 2명(3%), 아주신씨·안동김씨·여주이씨·연안송씨·청주정씨가 각각 1명이다. 10%

7) 김언기의 처사적 학풍은 독자성과 결속력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김언기의 핵심 제자 가운데 한명인 남치리의 여강서원 추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17세기 이후 그의 학풍이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다.(薛錫圭 「惟一齋 金彦璣의 學風과 學脈」 『韓國의 哲學』 30, 2001, 81쪽.)

8) 『西厓全書』 卷3, 「西厓先生門賢錄」

9) 김호중, 「서애 류성룡과 안동·상주 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사, 2004, 104쪽.

이상 원장을 역임한 성씨는 4개 성씨이지만, 특정 성씨에 집중되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金允思(순천김씨), 南礪(영양남씨), 鄭維藩(동래정씨)은 3회에 걸쳐 원장을 역임했고, 權士+登(안동권씨), 金慶祖(풍산김씨), 金如萬·金允安·金夏世(순천김씨), 南之望(영양남씨), 安聘壽(순흥안씨), 柳世長·柳宜河(풍산류씨), 李明遠(전의이씨), 李廷發·李廷俊·李珮(예안이씨), 鄭維地(동래정씨) 등은 2회 원장을 역임했다.

안담수는 1619년과 1627년뿐만 아니라 1595년에도 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3번 원장을 역임했다. 16세기말~17세기 초 순흥안씨가 병산서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안담수 이후 17세기 내내 원장 가운데 순흥안씨는 없다. 16세기에 원장을 역임했던 광산김씨도 17세기에는 원장을 역임하지 않았다. 광산김씨가 아닌 김언기의 문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16세기 후반에 비해 매우 적으며, 17세기 후반에는 거의 없다.

거주지를 알 수 있는 74명 가운데, 안동 거주자는 61명이고, 예천 9명, 영주 2명, 예안·의성 1명씩이다. 안동 출신의 원장 가운데 순천김씨는 풍산 구담, 예안이씨·전의이씨는 풍산 宇洞, 풍산류씨는 풍산 河回, 풍산김씨는 풍산 五美洞에 거주하는 등 병산서원과 가까운 지역인 풍산현에 살았다. 원장 역임자의 상당수가 안동의 서쪽 및 병산서원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였다.

16세기에는 풍산류씨가 원장을 역임한 적이 없었는데, 17세기에는 풍산류씨 가운데 원장을 역임한 자가 10명(중복 2명)이다.

[표 2] 17세기 풍산류씨 가운데 원장을 역임한 인물

순번	성명	역임 연도	과거	관직	派
1	柳義男	1647	진사	參奉	慕河堂派
2	柳世長	1666			謙巖派
3	柳世長	1675			謙巖派
4	柳世翊	1678	진사	前參奉	謙巖派
5	柳世河	1686			謙巖派

순번	성명	역임 연도	과거	관직	派
6	柳宜河	1682		前都事	西厓派
7	柳萬河	1688		護軍	西厓派
8	柳世霖	1696			謙巖派
9	柳世興	1699			謙巖派
10	柳宜河	1692		前縣監	西厓派

풍산류씨 중에는 1647년 류의남이 처음으로 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풍산류씨 선계에서 갈려져 나온 慕河堂派로 예안에 살았다. 하회의 풍산류씨는 謙菴 柳雲龍(1539~1601)과 西厓 柳成龍 형제의 후손들이 각각 養眞堂(謙巖派)과 忠孝堂(西厓派)으로 분파하였다. 이들이 원장을 역임한 것은 17세기 후반부터이며, 검암파가 6명이고, 서애파가 3명이다.

17세기 원장의 과거 합격 여부를 살펴보면, 문과 급제자가 14명, 소과 합격자가 37명이다. 51명이 과거에 합격하여 65%를 차지한다. 원장 가운데 관직을 역임한자는 31명이다. 병산서원 원장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풍산류씨는 17세기 영의정을 역임한 류성룡과 같은 뛰어난 인물을 배출했으며, 학문적으로는 퇴계학을 가학으로 계승하여 많은 학자가 나왔으며, 과거 급제자 및 관직으로 나아가는 인물도 다른 가문에 비해 많았다. 그런데 과거 합격자나 퇴계학을 가학으로 이어가던 대표적인 인물이 원장을 역임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표 3] 17세기 풍산류씨 내의 가학 계승자¹⁰⁾

파별 분류	姓名	號	生沒年	거주지
검암파	柳世哲	悔堂	1627~1681	안동
	柳世鳴	寓軒	1636~1690	안동
서애파	柳袵	修巖	1582~1635	상주
	柳元之	拙齋	1598~1678	안동
	柳千之	漁隱	1616~1689	상주
	柳宜河	愚訥	1616~1698	안동

10) 「영남지방의 퇴계학맥도」 (한국국학진흥원, 2002 ; 『西厓全書』 卷3, 「西厓先生門賢錄」

파별 분류	姓名	號	生沒年	거주지
	柳百之	二松堂	1629~1684	의성
	柳後章	主一齋	1650~1706	안동
	柳聖和	西湖	1668~1748	안동

류성룡 학문이 가학으로는 셋째 아들 류진으로 이어졌다. 류진의 제자로는 아들 千之와 류성룡의 長孫 元之가 있다. 류원지는 理氣·象數·天文·地理·禮樂 등에 통달했으며, '性理同異說'이 이황 이후 그의 글에서 처음 보였기 때문에 당시에 '陶山後第一'이라고 불렸다고 한다.¹¹⁾ 류원지의 제자 柳直河의 학문은 柳後章으로 이어졌다. 류후장이 18세에 洪汝河(1620~1674)한테 『周易』을 배울 때, 흥여하가 그의 조예에 탄복했다고 한다. 30대에는 학식과 덕망에 일가견을 이루었고, 특히 예학에 밝아서 宗族과 鄉里에서 그에게 배우러 오기도 하였다.¹²⁾ 그러나 가학계승자 가운데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은 류의하 뿐이다.

한편 17세기 풍산류씨 가운데 과거 합격자 혹은 관직을 역임한 인물은 [표 4]와 같다.

[표 4] 17세기 하회 풍산류씨 과거 합격자

파별 분류	姓名	司馬試 합격 연도	文科 급제 연도	官職	거주지
겸암파	柳世哲	1654		縣監	안동
	柳後光	1678		縣監	안동
	柳元亮	1612		縣監	안동
	柳世翊	1652		參奉	안동
	柳世鳴	1660	1675	校理	안동
	柳世晦	1662			안동
서애파	柳後康	1687			안동
	柳軫	1610		郡守	상주
	柳初	1617			예천

11) 류원지, 『졸재집』 跋 柳後章, 『主一齋集』 卷4 遺事 王考拙齋府君遺事.

12) 류후장, 『주일재집』 卷6 附錄 行狀 附錄 遺事.

17세기 풍산류씨 겸암파와 서애파 가운데 과거합격자는 9명이다. 류세철은 1654년(효종 5) 사마시에 합격한 이후 공조좌랑·군위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효종이 죽은 뒤 慈懿大妃의 服喪問題에 대하여 영남 유림을 대표하여 서인 측의 기년설을 반박하는 「議禮疏」를 올리는 등 문장으로 명성이 높았다. 군위 현감으로 있을 때에는 군위의 유생들을 學舍에 모아 강의를 하거나 후진 양성에 힘쓰기도 했다. 류세명 역시 1660년(현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1675년(숙종 1) 문과 급제한 이후 좌랑·지평·교리·獻納 등 중앙관직을 역임했고, 읽지 않은 글이 없다고 할 만큼 많은 책을 섭렵하였으며, 궁리하지 않은 理致가 없다고 할 만큼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였다고 평가받았다.¹³⁾ 이처럼 풍산류씨 내에서 학문이나 과거 혹은 관직으로 이름난 인물이 있었지만, 서원 운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퇴계학파 내에서 서애계와 학봉계가 분화되었다고 하지만, 家格이 높은 집안은 학문적 경계가 없이 혼인을 통해 관계망을 형성했고, 병산서원 원장직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류성룡의 문인들이 상당수 배출된 풍산김씨의 金時忱은 1668년 원장을 지냈는데, 그는 김성일의 외손이다. 1680년 원장을 지낸 의성김씨의 金邦杰은 풍산김씨 金奉祖의 외손이고, 1682년 원장을 역임한 류의하는 의성김씨 金是樞의 외손이다. 1619년 원장을 지낸 權行可是 김성일의 문인이었고, 정경세의 문인 南磔은 김성일을 배향하는 여강서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1649년(인조 27) 김성일의 문집을 간행하는데도 참여했다.¹⁴⁾

13) 『慶北儒學人物誌(下)』(한국국학진흥원·영남유교문화진흥원, 2004) ; 디지털안동문화대전.

14) 앞의 책.

Ⅲ. 18세기, 豊山柳氏의 주도 속에 영남학파의 통합 지향

18세기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은 157명이고, 평균 재임 기간은 6.4개월이다. 원장의 숫자는 17세기에 비해 거의 두 배이고, 재임 기간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대과 급제자는 22명이고, 소과 합격자는 26명으로, 과거 합격자가 전체 원장 가운데 31%를 차지한다. 또한 관직 역임자는 40명이다. 과거 합격자 혹은 관직 역임자의 비율이 17세기의 절반 정도이다. 원장의 숫자가 17세기 비해 많아 상대적으로 과거 합격자 및 관직 역임자가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1694년 갑술환국 이후 영남 남인이 정치에 배제된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

성씨를 확인한 인물은 143명이며, 모두 22개 성씨이다. 그 가운데 풍산류씨 45명(31%), 안동권씨 12명(8%), 영양남씨·의성김씨·풍산김씨·전의이씨 각각 10명(7%), 전주류씨·진성이씨 각각 7명(5%), 동래정씨 6명(4%), 예안이씨 5명(3%), 재령이씨·한양조씨 각각 3명, 광산김씨·순흥안씨·연안이씨·안동김씨·한산이씨 각각 2명, 고성이씨·순천김씨·평산신씨·여주이씨·전주이씨는 각각 1명이다.

원장을 연임 혹은 중임한 인물 가운데 南龍震(영양남씨)과 柳聖和(풍산류씨)는 3회, 權鏞(안동권씨), 金侃(풍산김씨), 柳敬時·柳升鉉·柳晉鉉(전주류씨), 柳澗·柳聖觀·柳聖疇·柳聖憲·柳堧·奎·柳一春·柳後光·柳後常(풍산류씨), 李鳳周·李鳳天(전의이씨), 李山斗(전의이씨), 李浹(연안이씨), 鄭錫台·鄭履台(동래정씨)는 각각 2회 원장을 역임했다. 17세기에는 20%를 넘는 성씨가 없고 10%를 넘는 성씨도 4개 성씨로 대체로 몇몇 성씨가 골고루 원장을 역임했으나, 18세기에는 풍산류씨가 31%로 절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10%이하이다. [표 5]는 풍산류씨 가운데 원장 역임자이다.

[표 5] 18세기 풍산류씨 가운데 병산서원 원장 역임자

순번	역임연도	성명	과거	관직	거주지	파	순번	역임연도	성명	과거	관직	거주지	파
1	1700	柳後光	소과	前縣監	안동	검 암 파	24	1733	柳緯河		通德郎	상주	서 애 파
2	1710	柳後光	소과	前縣監	안동		25	1734	柳聖和		前縣監	안동	
3	1712	柳後光	소과	前縣監	안동		26	1735	柳聖和		前縣監	안동	
4	1725	柳後端			안동		27	1737	柳聖和		前縣監	안동	
5	1737	柳後甲		通德郎	안동		28	1744	柳聖觀			안동	
6	1742	柳後堂			안동		29	1755	柳聖觀			안동	
7	1744	柳聖觀			안동		30	1759	柳聖贈		前參奉	안동	
8	1749	柳經天			안동		31	1763	柳聖疇			안동	
9	1752	柳泳			안동		32	1770	柳澐		前縣監	안동	
10	1754	柳聖采			안동		33	1777	柳澗			안동	
11	1757	柳宅春			안동		34	1779	柳彥策			안동	
12	1758	柳聖徵			안동		35	1781	柳宗春			안동	
13	1764	柳淑			안동		36	1784	柳湖			안동	
14	1768	柳澆			안동		37	1791	柳澗			안동	
15	1774	柳澆			안동		38	1791	柳澗			안동	
16	1777	柳聖洙			안동		39	1794	柳寬春			안동	
17	1779	柳聖憲			안동		40	1798	柳彥奎		前縣令	안동	
18	1780	柳聖憲			안동	41	1772	柳浣			안동	귀 촌 파	
19	1794	柳一春			안동	42	1724	柳後陽			안동	미 상	
20	1795	柳一春			안동	43	1726	柳後瑞			안동		
21	1799	柳象春	소과		안동	44	1753	柳後約			안동		
22	1709	柳後常		前教官	안동	서 애 파	45	1773	柳聖能				
23	1715	柳後常		前教官	안동								

풍산류씨를 파별로 살펴보면, 검암파 21명, 서애파 19명, 龜村派 1명, 미상 4명으로 검암파와 서애파가 원장직을 비슷하게 역임했다.

거주지는 142명이 파악되었는데, 안동 133명, 봉화 2명, 예천 5명, 상주 예안이 각각 1명이다. 안동 이외의 거주자는 17세기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 이는 인근 예안의 도산서원과 다른 모습이다. 도산서원의 경우 17세기에는 대부분 예안의 사족이 원장을 역임했으나 18세기에는 159명의 원장 가운데 예안 거주자가 90명(56.6%), 외지 거주자가 66명(41.5%)로 외부 지역에서

초빙된 원장이 많이 늘어났다.¹⁵⁾ 그 가운데는 병산서원 원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 18세기 병산서원 원장 가운데 도산서원 원장을 지낸 인물은 [표 6]과 같다.

[표 6] 18세기 병산서원 원장 역임자 가운데 도산서원 원장 역임자

순번	성명	병산서원 역임 연도	도산서원 역임 연도	본관	거주지	과거	관직
1	權斗寅	1710	1707	안동권씨	안동	진사	전현감
2	金侃	1710, 1715	1717	풍산김씨	안동	문과	전정랑
3	柳敬時	1714, 1731	1721	전주류씨	안동	문과	전도사
4	安鍊石	1721	1722	순흥안씨	안동	문과	전현감
5	李栽	1712	1728	재령이씨	안동		전주부
6	柳聖和	1734, 1735, 1737	1732, 1736	풍산류씨	안동		전현감
7	柳敬時	1731	1736	전주류씨	안동	문과	전부사
8	柳升鉉	172, 1738	1738, 1743	전주류씨	안동	문과	전부사
9	李山斗	1740, 1748	1745, 1749	전의이씨	안동	문과	전현감
10	李象靖	1766	1760	한산이씨	안동	문과	전현감
11	趙普陽	1777	1782,	한양조씨	안동	문과	전좌랑
12	柳堧奎	1779, 1798	1797	풍산류씨	안동		전현령

병산서원 원장 가운데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은 12명으로 문과급 제자가 8명이고, 소과 합격자가 1명이다. 적어도 현감 이상의 관직을 역임했다. 李栽(1657~1730)와 柳堧奎(1730~1808)는 과거에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18세기 향촌사회에서 매우 명망 있는 인사였다. 이재는 아버지 이현일을 이어 학문적으로 대성하여 영남학파를 이끌었으며 후진양성에 힘써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다. 류규는 류성룡의 6세손으로 1791년(정조 15) 좌의정 樊巖 蔡濟恭(1720~1799)의 천거로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고, 이후 사헌부감찰·돈령

15) 우인수, 앞의 책, 298~299쪽.

부도정 등을 역임했으며, 1792년 영남 유림과 연명으로 사도세자가 죄가 없음을 아뢰는 만인소를 올리는 등 향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전반적으로 병산서원 원장의 경우 18세기 초반에는 李玄逸의 문인 가운데 원장을 역임한 인물이 여러 명이고, 18세기 후반에는 李象靖의 문인이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712년 원장 이재는 이현일의 아들이고, 그 밖에 金世重 柳敬時 安鍊石 李樸 李仁溥 李厚天 등도 이현일의 문인이다. 17세기말 이현일이 퇴계학파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학봉계가 퇴계학맥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현일의 문인에는 류성룡, 정경세, 정구, 장현광 계열뿐만 아니라 남명 조식 계열의 자제들도 있을 만큼¹⁶⁾ 당시까지 서애계와 학봉계가 서로 분열 대립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이상정의 문인 역시 자신들의 학통을 李滉→柳成龍 金誠→張興孝→李玄逸→李栽→李象靖으로 제시하였지만¹⁷⁾ 이상정은 1766년 병산서원의 원장을 역임하였고, 학봉계의 대표적인 성씨인 의성김씨의 金邦杰, 金道行, 金垠 등과 전주류씨의 柳敬時, 그의 아들 旼鉉, 그리고 류경시의 조카 升鉉과 그의 손자 範休 등도 병산서원의 원장을 지냈다.

IV. 19세기, 豊山柳氏 西厓派 중심의 서원 운영과 향촌 여론 주도

19세기 병산서원 원장 역임자는 236명이고, 중복 인원은 11명으로, 실제 역임자는 225명이다. 17세기에 비해 4배, 18세기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이다. 평균 임기는 4.3개월이다. 교체가 매우 빈번했으며, 직임을 수행하지 않은 '未行公'도 33명이다. 원장의 직임이 매우 불안정했음을 알 수 있다. 문과 급제자는 37명이고, 소과 합격자는 32명으로, 과거 합격자는 69명이다. 전

16)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7, 364쪽.

17) 『湖學輯成』(필사본) 권8 「敎學」 "我東自退陶先生 集成諸儒 紹承洛閩 而群賢繼起 羽翼斯文 至葛密兩先生 得鶴厓遺緒於敬堂之傳 大山先生 發端啓鍵 實有在此"(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41~342쪽 재인용)

체의 29%이다. 문과 급제자의 '미행공'도 9명으로, 19세기의 평균 '미행공' 보다 높다. 19세기 후반 원장 직임의 특징은 현직 지방관이 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다. [표 7]은 현직 지방관이 병산서원 원장을 역임한 사례이다.¹⁸⁾

[표 7] 19세기 지방관 가운데 병산서원 원장 역임자

순번	연도	지방관	성명	거주지	비고
1	1865	府使	沈東臣	한양	
2	1869	府使	柳芝榮	안동	
3	1870, 1871	府使	朴齊寬	한양	
4	1875	郡守	李晚綵	예안	
5	1880	府使	李啓魯	봉화	
6	1881	郡守	李晚昇	예안	未行公
7	1881	府使	李雲夏	한양	
8	1883	府使	趙秉鎬	한양	
9	1890	府使	金學洙	안동	
10	1890	縣監	柳台衡	안동	
11	1890	縣監	鄭東箕	상주	未行公
12	1892	縣監	李晚胤	예안	
13	1895	府使	李喜元	한양	
14	1897	郡守	鄭宜默	상주	

현직 지방관 가운데 1655년~1656년에 현감 鄭維地가 처음으로 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현직 지방관이 원장을 지낸 사례가 없다가 1865년 이후 지방관이 원장을 역임한 경우가 빈번했다. 일반적으로 18세기 이후 노론계 서원의 원장은 종신제로 현직 고위관료로 임명된 사례가 있고, 여러 서원의 원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어 원장 직임을 명예직으로 여기기도 했다.¹⁹⁾ 영남의 경우에는 향촌의 명망있는 사족이 원장을 역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흥

18) 김명자, 앞의 논문, 134쪽 인용.

19) 윤희면, 앞의 책, 192~198쪽.

선대원군의 서원훼철령이 내려진 이후 현직 지방관이 원장직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병산서원이 향촌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과 서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성씨를 알 수 있는 인물은 208명으로, 30개 성씨가 원장을 역임했다. 풍산류씨 83명(40%), 진성이씨 24명(12%), 풍산김씨 17명(8%), 예안이씨 12명(6%), 안동김씨 11명(5%), 안동권씨 8명(4%), 의성김씨·전의를씨 각각 6명(3%), 광산김씨·순흥안씨 각각 5명(2%), 진양정씨 4명, 선성김씨·청주정씨 각각 3명, 반남박씨·여강이씨·전주이씨·한산이씨 각각 2명, 고령박씨·나주정씨·영양남씨·연안이씨·영천이씨·인동장씨·임천조씨·진천송씨·청송심씨·한양조씨·함양박씨·함창박씨 등이 1명이다.

朴齊寬(반남박씨), 柳道性·柳道彙·柳相祚·柳進詩·柳進翼·柳進鐸·柳進夏·柳進華·柳厦祚·柳漢祚·柳厚祚(풍산류씨), 鄭東箕(진양정씨)는 각각 2회 역임했다. 박제관은 1870년 안동부사에 부임되어 1870과 1871년 원장을 역임한 경우이고, 정동기는 2회 모두 직임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19세기에 2회 이상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은 대부분 풍산류씨로 볼 수 있다.

원장의 거주지를 알 수 있는 206명 가운데 안동이 151명으로 가장 많고, 예안 13명, 영주 10명, 상주 9명, 예천 6명, 봉화·한양 6명, 고령·경주·인동·의성 순이다. 19세기에는 성씨도 확대되고 외지의 원장도 늘어났다. 외지 가운데 예안 거주자가 많고, 성씨 가운데도 진성이씨가 풍산류씨 다음으로 원장을 많이 역임했다. 이는 도산서원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표 8]은 19세기 병산서원 원장 가운데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표 8] 19세기 병산서원 원장 가운데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한 인물

순번	성명	병산서원 원장 역임 연도	도산서원 원장 역임 연도	본관	과거	관직	거주지
1	金垞	1811	1796	의성김씨	문과	승지	안동
2	柳範休	1810	1797	전주류씨	소과	부사	안동
3	柳相祚	1818, 1821	1806, 1825	풍산류씨	문과	승지	안동

순번	성명	병산서원 원장 역임 연도	도산서원 원장 역임 연도	본관	과거	관직	거주지
4	柳尋春	1828	1823	풍산류씨	소과	현령	상주
5	柳致睦	1830	1823	풍산류씨	문과	참의	안동
6	李彙陽	1835	1826, 1828	진성이씨	소과	참봉	예안
7	柳喆祚	1831	1832,	풍산류씨	소과	군수	안동
8	李程淳	1838	1833	진성이씨	소과	현감	예안
9	柳台佐	1818	1837	풍산류씨	문과	교리	안동
10	李彙寧	1843	1842, 1846~48	진성이씨	소과	참판	예안
11	李孝淳	1859	1845	진성이씨	문과	판서	안동
12	李漢膺	1851	1850	진성이씨		감역	봉화
13	金重夏	1855	1852	풍산김씨	문과	참의	영주
14	柳道宗	1850	1856	풍산류씨	소과	군수	안동
15	金樂淵	1858	1858	선성김씨	문과	정언	영주
16	李一相	1860	1860	진성이씨			안동
17	李彙載	1860	1860	진성이씨	소과	목사	예안
18	安潤著		1864	순흥안씨	문과	부사	안동
19	李彥寅	1870	1865	진성이씨		護軍	예안
20	李彥溥	1867	1865	진성이씨	소과	정언	예안
21	李孝淳	1859	1844, 1845	진성이씨	문과	판서	예안
22	柳厚祚	1863, 1875		풍산류씨	문과	승지	상주
23	李彙載	1860	1868	진성이씨	소과	참의	예안
24	李彙承	1879	1875	진성이씨	문과	승지	예안
25	柳宇睦	1872	1883	풍산류씨	소과	참봉	예안
26	李晩耆	1888	1887	진성이씨	문과	승지	예안
27	李晩由	1895	1890	진성이씨	문과	승지	예안
28	鄭東箕	1890	1893	진양정씨	소과	현감	상주
29	李晩胤	1892	1893	진성이씨	소과	현감	예안
30	柳道獻	1893	1895	풍산류씨		도사	안동

19세기 병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 가운데 도산서원 원장을 지냈던 인물은 30명이다. 거주지는 안동 11명, 예안 13명, 상주 3명, 영주 2명, 봉화 1명이다. 성씨로는 진성이씨 16명, 풍산류씨 9명, 선성김씨·순흥안씨·의성김

씨 전주류씨 진양정씨 풍산김씨 각각 1명이다. 병산서원 원장 가운데 예안의 인물이 13명인데, 모두 진성이씨이다. 병산서원 원장을 역임하지는 않았지만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한 풍산류씨로는 류기목과 류인목이 있다. 류기목은 1859년에 도산서원 원장을 지냈는데 당시 예안현감이었고, 류인목 역시 상주 출신으로 현감이어서 원장을 역임한 것이다.

1809년 원장 전주류씨 류범휴, 1810년 원장 의성김씨 金堧, 1892년 원장 의성김씨 金興洛은 학봉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19세기의 원장 가운데 학봉계의 대표적인 성씨인 의성김씨 전주류씨 및 예안의 광산김씨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예안의 진성이씨에서 13명의 원장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이 강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진성이씨의 여러 파 가운데 병호시비 과정에서 호파에 속하는 쪽도 있고, 병파 혹은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한 쪽도 있다. 따라서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의 강고한 네트워크가 작동할 시기는 병파 혹은 적어도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파의 인물이 도산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원장 직임뿐만 아니라 공론의 형성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56년 4월 22일 도산서원에서 경주의 옥산서원에 통문을 발송했다. 당시 김성일을 배향하는 臨川書院의 모임에 예안 上溪의 진성이씨 주손이 참석했는데, 그때 주손이 모욕을 당했다면서 상대방을 응징하고 책망하기 위해 5월 2일 안동향교에서 도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옥산서원에서도 참석해달라는 내용이다. 통문의 말미에는 이러한 사실을 榮川 영주의 伊山書院과 병산서원에 알렸다고 했다.²⁰⁾ 도산서원 측에서는 이 문제를 병산서원 옥산서원 이산서원과 함께 대응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은 김언기의 맏아들인 金得研(1555~1637)의 褒獎과 贈職 청원 운동을 전개할 때도 함께 했다. 추증은 도산서원에서 먼저 발의했다. 도산서원에서 조정에 상소를 올려 추증과 시호를 요청하자는 내용의 통문을 돌리자,²¹⁾ 병산서원 都有司 趙顯章, 齋有司 柳進修를 포함하여 113명이

20) 경주 옥산서원 통문 1098(<http://yn.ugyo.net> 제공)

연명하여 동조하는 통문을 내었다. 아울러 상소를 작성할 때 병산서원 측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²²⁾

한편 원장 가운데 풍산류씨 83명을 파별로 분류해보면 서애파가 53명이고 겸암파가 26명이며, 미상 4명이다. 풍산류씨가 원장직의 40%를 차지하고 풍산류씨 가운데는 서애파가 64%를 차지하여 병산서원은 풍산류씨 서애파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겸암파와 서애파의 원장 역임자가 비슷했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풍산류씨 서애파는 병산서원의 사액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뿐만²³⁾ 아니라 영남 남인의 현안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섰다. 병산서원은 한편으로는 예안의 도산서원 상주의 도남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영주의 이계서원 등과 강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계 쪽에 속하지만 權櫟(1478~1548)을 배향함으로써 병호시비에서 좀 더 자유로운 안동 西谷의 三溪書院을 매개로 호파 계열의 서원과 공조를 도모하는 가운데 영남의 공론을 조율해 나갔다.

19세기 영남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체제공의 伸冤疏에 대해 병산서원에서 처음으로 발의하자, 1818년 5월 28일 영남 유생은 도남서원에서 도회를 열어 병산서원의 제안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알리는 통문을 작성할 당시 연명자는 公事員 權信度 金在崙, 製通 金在振 金百兼, 寫通 柳星奎 權載璋과 삼계서원 都有司 金熙周를 비롯한 33명, 예안의 도산서원의 上有司 李泰淳을 비롯한 64명이었다.²⁴⁾

이 문제로 같은 해 6월 29일, 예천의 三江書院에서 도회를 열었다. 그때

21) 안동 외룡 광산김씨 유일재종택 통문 0003(한국국학진흥원 소장)

22) 안동 외룡 광산김씨 유일재종택 통문 0007(한국국학진흥원 소장)

23) 병산서원은 영남 정치의 상징적 공간 가운데 하나이고, 류성룡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으로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지만 남인의 영수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액을 받기가 쉽지 않아 1863년에야 사액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류성룡의 6세손인 류규가 병산서원청액소를 작성했고, 류성룡의 8세손 류이좌가 병산서원 청액소를 올렸다.

24)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통문과 상소-』, 2007, 통문093.

안동 남선의 魯林書院 봉화의 三溪書院 일직의 陀陽書院 임하의 景光書院 黠溪書院 泗濱書院 虎溪書院 와룡의 龜溪書院 풍산의 靑城書院 봉화 춘양의 道淵書院 등의 유생 117명 이상의 연명을 이끌어 내었다.²⁵⁾ 병산서원과 강고하게 결속한 서원이 먼저 움직여 호계서원을 비롯한 호파 계열과 함께 채제공의 신원을 회복했다.

채제공의 신원이 이루어지자 병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던 풍산류씨 서애파의 柳台佐는 『樊巖集』 간역 사업을 진행했다. 『변암집』의 간행을 위한 도회를 열자고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삼계서원 쪽으로, 1823년 7월 25일 이산서원에서 도회를 열자고 했다. 병파와 호파의 갈등 상황에서 병파의 대표 격인 병산서원에서 『변암집』 간행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삼계서원의 제안이 일을 진행하기에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이 통문은 병산서원 구계서원 노림서원 안동 서후의 鏡光書院 일직의 魯林書院 임하의 호계서원 泗濱書院 풍산의 靑城書院 와룡의 周溪書院 예천의 勿溪書院 등으로 돌려졌다.²⁶⁾

한편 병산서원에서는 영남 남인의 여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구의 研經書院과 상주의 도남서원을 잘 활용하였다. 연경서원은 좌도와 우도의 중간에 위치하여 영남 좌우도의 모임을 갖기에 유리했고, 상주 도남서원의 경우 상소를 위해 한양으로 출입하기에 지리적으로 용이했기 때문이다.

안동의 유림들은 『변암집』 간행 경비 문제로 영남 전체의 모임을 연경서원에서 갖기로 하고 통문을 2부 작성하여 하나는 삼계서원에, 또 하나는 병산서원에 보냈다. 삼계서원에서는 풍기, 순흥, 榮川, 예천, 예안, 봉화, 진보, 청송, 영덕, 영양 등 호파에 가까운 지방에 통문을 돌리고, 병산서원에서는 안동 이하 좌도 52읍에 통문을 돌리기로 하였다.²⁷⁾

이처럼 병산서원은 병호시비의 전개 과정에서 병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병산서원에 우호적인 서원과 강고하게 결속하여 대응해나갔으며, 영남 전체의 현안에는 호파 쪽과 연대하여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산서원의

25)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07, 통문097.

26)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07, 통문091.

27)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07, 통문072, 072-1, 072-2.

공간적 네트워크는 경상좌도 뿐만 아니라 창녕·진주 등 영남 전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병산서원의 『원임록』을 통해 16세기말부터 19세기까지의 원장 480명을 16세기말~1699년, 1700~1799년, 1800~1899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성씨, 거주지, 과거와 관직 여부, 학파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00년대 원장은 1592년에 6명, 1593년~1603년에 4명이다. 안동 풍산현 갈전 출신의 순홍안씨 3명, 풍산 구담의 순천김씨 2명, 와룡 가야의 광산김씨 2명 등으로 김언기의 문인과 류성룡의 문인이 배출된 집안의 인물이 대부분이다. 과거 합격자는 문과 1명, 소과 5명이다. 관직 역임자는 7명이다.

17세기 원장을 역임한 인물은 모두 77명이다. 과거 합격자는 문과 14명, 소과 37명이며, 관직 역임자는 31명이다. 성씨의 확인이 가능한 인물은 74명으로, 모두 16개 성씨이다. 예안이씨 11명(15%), 순천김씨·풍산류씨 각각 10명(14%), 안동권씨 9명(12%), 영양남씨 7명(9%), 동래정씨 6명(8%), 풍산김씨·전의이씨 각각 4명(5%), 의성김씨·진성이씨 각각 3명(4%), 순홍안씨 2명(3%) 등이다. 거주지는 74명이 확인되었는데, 안동 61명, 예천 9명, 영주 2명, 예안·의성 각각 1명으로, 5개 지역에서 원장을 역임했다.

18세기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은 157명이다. 문과 급제자는 22명이고, 소과 합격자는 26명이며, 관직 역임자는 40명이다. 성씨가 확인된 인물은 143명으로, 모두 22개 성씨이다. 풍산류씨 45명(31%), 안동권씨 12명(8%), 영양남씨·의성김씨·풍산김씨·전의이씨 각각 10명(7%), 전주류씨·진성이씨 각각 7명(5%), 동래정씨 6명(4%), 예안이씨 5명(3%) 등이다. 17세기에는 특정 성씨에 집중되지 않았는데, 18세기에는 풍산류씨에 집중되었다. 원장의 거주지는 142명이 파악되었는데, 안동 133명, 봉화 2명, 예천 5명, 상주·예안 각각 1명

으로 17세기와 대동소이하다.

19세기에 원장 역임자는 236명이다. 문과 급제자는 37명이고, 소과 합격자는 32명이다. 1865년 이후 지방관 13명이 원장을 역임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려진 이후 병산서원이 향촌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과 서원으로 서의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씨를 알 수 있는 인물은 208명으로 모두 29개 성씨이다. 풍산류씨 83명(40%), 진성이씨 24명(12%), 풍산김씨 17명(8%), 예안이씨 12명(6%), 안동김씨 11명(5%), 안동권씨 8명(4%), 의성김씨·전의이씨 각각 6명(3%), 광산김씨·순흥안씨 각각 5명(2%) 등이다. 거주지 확인자 206명 가운데 안동이 151명으로 가장 많고, 예안 13명, 영주 10명, 상주 9명, 예천 6명, 봉화·한양 6명 등 모두 11개 지역이다. 17~18세기에 비해 성씨와 지역이 확대되었다. 병산서원의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회에는 주로 풍산류씨 겸암파와 서애파가 살았는데, 원장을 역임한 풍산류씨 83명을 파별로 분류하면, 서애파가 53명이고, 겸암파가 26명이며, 미상 4명이다. 풍산류씨가 원장직의 40%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서애파가 64%를 차지하였다. 19세기 병산서원 원장은 풍산류씨 서애파 중심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원장 가운데 진성이씨가 22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병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 가운데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은 30명이다. 이 가운데 예안 출신이 13명인데, 모두 진성이씨이다. 19세기 풍산류씨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산서원과 진성이씨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산서원이 강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통문을 통해 병산서원 측에서는 예안의 도산서원, 상주의 도남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영주의 이계서원 등과 강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병산서원은 호계 쪽에 속하지만 權機를 배향함으로써 병호시비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삼계서원을 매개로 호파 계열의 서원과 공조를 도모하는 가운데 영남의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갔다.

【부표】 16세기 말~19세기 병산서원 원장 일람표²⁸⁾

순번	연도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성명	비고
1	1592년 이전	소과		순흥	안동	安景老	서후 갈전
2			參奉	안동	안동	權景絢	
3			前察訪	고령	고령	朴大任	
4			訓導	순흥	안동	安仁老	서후 갈전
5				광산	안동	金彦玲	김언기의 아우
6		소과		순천	예안	金允明	
7	1593			안동	안동	權諶	김언가 권호문의 문인
8	1595	문과		순흥	안동	安聘壽	류성룡의 문인
9	1598	소과		광산	안동	金得礪	김언기의 문인, 김득연의 사촌
10	1599		前察訪	순천	안동	金允思	
11	1603	소과		안동	안동	權諶	김언가 권호문의 문인
12	1608	문과	大司諫	순천	안동	金允安	풍산 구담
13	1609	소과	前察訪	순천	안동	金允思	풍산 구담, 류성룡의 제자
14	1610			안동	안동	權詢	풍산 상리, 권심과 형제
15	1612			예안	안동	李珮	류성룡의 문인, 정경세, 김홍미와 교류
16	1613	소과		순천	안동	金允思	풍산 구담, 류성룡 제자
17	1615	소과		진성	안동	李亨男	류성룡 허목의 문인
18	1617	문과	前府使	순천	안동	金允安	
19	1619	문과	前僉正	순흥	안동	安聘壽	류성룡 문인, 병산서원 창건 주도
20	1619	소과	前參奉	안동	안동	權行可	김성일의 문인, 의병
21	1620	소과	前察訪	순천	안동	金允思	
22	1622			예안	안동	李珮	풍산 우동, 류성룡 문인
23	1623	소과		안동	안동	權終允	
24	1624	소과		풍산	안동	金慶祖	풍산 오미동
25	1625	소과		풍산	안동	金慶祖	풍산 오미동
26	1626	소과		예안	영주	金懼	김륵과 종질
27	1627	문과	前僉正	순흥	안동	安聘壽	류성룡의 문인
28	1627			아주	의성	申之信	김언기의 문인
29	1629	소과		동래	예천	鄭維藩	류성룡의 문인
30	1632	소과		순천	안동	金基厚	김윤안의 출계 아들
31	1632			안동	안동	金希孟	
32	1633			예안	안동	李廷老	풍산 우동
33	1635	문과	典籍	안동	안동	權克明	

28) 『院任錄』(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六十三』, 2002; 『豊山柳氏世譜』1~4(1985); 『光山金氏 禮安派譜』(1977); 『義城金氏大同譜』(1992) 『慶北儒學人物誌(上)(下)』(한국국학진흥원·영남유교문화진흥원 2004); 『영남지방의 퇴계학맥도』(한국국학진흥원 2002) 외. 원장의 본관과 거주지에 대해서는 한국국학진흥원의 김형수 책임연구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순번	연도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성명	비고
34	1635	소과		예안	안동	李廷俊	풍산 우동
35	1636			예안	안동	李廷發	풍산 우동
36	1637	소과		연안	안동	宋周賓	
37	1637	소과	前直長	영양	안동	南磔	여강서원에 적극적 활동
38	1638	소과	前縣監	풍산	안동	金慶祖	
39	1639		前直長	영양	안동	南磔	
40	1640	소과		동래	예천	鄭維藩	류성룡의 문인
41	1642	소과		전의	안동	李明遠	
42	1642					李屹	
43	1643	소과		전의	안동	李明遠	
44	1643	소과	參奉	여주	예천	李煥	예천 용궁. 류성룡 정경세 문인
45	1647	소과	參奉	풍산	예안	柳義男	慕河堂派
46	1649	소과		동래	예천	鄭維藩	
47	1650	소과	縣監	영양	안동	南磔	
48	1652			예안	안동	李廷發	
49	1654	소과		예안	안동	李廷俊	
50	1655	문과	縣監	동래	예천	鄭維地	
51	1657	소과		영양	안동	南磁	장현광 정경세의 문인
52	1659		副護軍	의성	안동	金燾	壽職
53	1661	소과	前參奉	청주	영주	鄭弼	안동에서 영주로 이거
54	1663	문과	前縣監	동래	예천	鄭維地	
55	1664	문과	前佐郎	영양	예천	南之望	
56	1664	문과	前相禮	진성	안동	李爾松	김대현의 외손. 김응조의 문인
57	1665	문과	前佐郎	영양	예천	南之望	
58	1666			풍산	안동	柳世長	謙巖 狼川公派
59	1668	소과	前別坐	풍산	안동	金時忱	김성일의 외손
60	1670	소과		전의	안동	李濩	풍산 우동
61	1673					李震白	
62	1674	문과	참의	영양	예천	南天漢	
63	1675	소과		예안	안동	李惟樞	
64	1675			풍산	안동	柳世長	謙巖 狼川公派
65	1676		別提	의성	안동	金燿	
66	1677	소과		진성	안동	李巨	호계서원 사액 때 소수
67	1678	소과	前參奉	풍산	안동	柳世翊	謙巖 狼川公派
68	1680	문과	前修撰	의성	안동	金邦杰	김봉조의 외손
69	1682		前都事	풍산	안동	柳宜河	西厓 察訪公派, 김시추의 외손
70	1683	소과	前縣監	안동	안동	金燾	
71	1685	소과		예안	안동	李惟樟	
72	1685	소과		전의	안동	李文潑	
73	1685		護軍	순천	안동	金如萬	김윤안의 손자
74	1686			풍산	안동	柳世河	謙巖 狼川公派

순번	연도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성명	비고
75	1687	문과	前縣監	순천	안동	金夏世	김윤안의 증손
76	1687	소과		동래	안동	鄭文輔	
77	1688		護軍	풍산	안동	柳萬河	西厓 察訪公派
78	1690			순천	안동	金如萬	이유장과 교유
79	1692					金啓昌	
80	1692		前縣監	풍산	안동	柳宜河	西厓 察訪公派
81	1693			안동	안동	權丕登	류원지의 문인
82	1693	문과	前郡守	순천	안동	金夏世	掌樂院正
83	1694			안동	안동	權丕登	
84	1695	소과		예안	안동	李惟枋	
85	1696			풍산	안동	柳世霖	謙巖 教官公派
86	1697	소과		안동	안동	金重安	
87	1699			풍산	안동	柳世興	謙巖 狼川公派
88	1700	소과	前縣監	풍산	안동	柳後光	謙巖 察訪公派
89	1702	문과	前郡守	고성	안동	李後榮	
90	1703	문과	前郡守	안동	안동	權聖矩	류지잡의 외손
91	1705			전의	안동	李鳳周	
92	1706		前縣監	안동	안동	權泰時	안동 가야 홍여하이현일과 교유
93	1708		通德郎	진성	안동	李俞吾	이현일의 문인
94	1709		前教官	풍산	안동	柳後常	西厓 察訪公派, 천거
95	1710	소과	前縣監	안동	안동	權斗寅	
96	1710	소과	前縣監	풍산	안동	柳後光	謙巖 察訪公派
97	1710	문과	正郎	풍산	안동	金侃	
98	1711	문과	前都事	한양	예천	趙鳳徵	
99	1712		通德郎	재령	안동	李栽	이현일의 아들
100	1712	소과	前縣監	풍산	안동	柳後光	謙巖 察訪公派
101	1713	소과		의성	안동	金世重	이현일의 문인
102	1714			전의	안동	李鳳周	
103	1714	문과	前典籍	전주	안동	柳敬時	이유장과 이현일 문인
104	1715		前教官	풍산	안동	柳後常	西厓 察訪公派, 천거
105	1715	문과	前察訪	풍산	안동	金侃	
106	1716	소과	前參奉	연안	안동	李浹	조목·홍우원의 문인
107	1719		將仕郎	풍산	안동	金佶	겨울
108	1721	문과	前縣監	순흥	안동	安鍊石	가을 이현일 문인, 趙德隣李栽 등 교유
109	1723			전의	안동	李鳳天	
110	1724			풍산	안동	柳後陽	
111	1724			재령	안동	李櫻	여름 이현일 문인, 趙德隣金聖鐸 등 교유
112	1724		通德郎	영양	안동	南有衡	
113	1725	소과		진성	안동	李厚天	봄, 이현일의 문인
114	1725			풍산	안동	柳後端	겨울, 謙巖 狼川公派
115	1726			풍산	안동	柳後瑞	

순번	연도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성명	비고
116	1726			풍산	안동	金倪	金倪와 형제
117	1727	문과	前正郎	전주	안동	柳升鉉	여름
118	1728	소과		의성	안동	金汝鎔	봄, 봉화 해저
119	1728	소과		영양	안동	南楚衡	
120	1728			전의	안동	李鳳天	
121	1729			전주	봉화	李仁溥	봄, 봉화 봉정, 이현일의 문인
122	1729					李星徵	
123	1730					李載重	
124	1731		護軍	영양	안동	南宗衡	李惟禕의 문인
125	1731			전의	안동	李成全	여름, 李惟禕의 문인
126	1731	문과	前府使	전주	안동	柳敬時	가을
127	1731	소과		안동	안동	權綴	가을
128	1731			동래	예천	鄭東奎	겨울
129	1732	소과	前侍直	연안	안동	李浹	
130	1733		通德郎	풍산	상주	柳緯河	西厓 愚川派
131	1734		前縣監	풍산	안동	柳聖和	여름, 西厓 察訪公派, 음직, 아들 류운
132	1735		前縣監	풍산	안동	柳聖和	西厓 察訪公派
133	1735					金起 眞	가을
134	1736	소과		영양	안동	南汝衡	
135	1737		通德郎	풍산	안동	柳後甲	여름, 謙巖敎官公派, 안동 월전
136	1737		前縣監	풍산	안동	柳聖和	西厓 察訪公派
137	1737			의성	안동	金啓鐸	겨울, 임하 천전
138	1738	문과	前府使	전주	안동	柳升鉉	봄, 참의
139	1738			진성	안동	李載基	가을, 이현일의 문인
140	1739			안동	안동	權榘	풍산 가일
141	1740			안동	안동	權容	봄, 풍산 가일
142	1740			의성	안동	金天煥	
143	1740	문과	前縣監	전의	안동	李山斗	가을
144	1741		通德郎	풍산	안동	金瑞雲	여름
145	1741			재령	안동	李榘	가을
146	1742			동래	예천	鄭昌興	
147	1742			풍산	안동	柳後堂	謙巖 察訪公派
148	1743	소과		의성	안동	金夢洙	
149	1743	소과		의성	봉화	金汝鎔	겨울
150	1744			풍산	안동	柳聖觀	가을, 西厓 察訪公派
151	1746	소과		풍산	안동	金瑞翰	김간의 아들
152	1747			한산	안동	李泰和	봄, 이현일의 문인
153	1747			안동	안동	金龍錫	가을, 풍산 소산
154	1748			전의	안동	李景翼	봄
155	1748	문과	參判	전의	안동	李山斗	前司藝

순번	연도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성명	비고
156	1749			풍산	안동	柳經天	謙巖 敎官公派
157	1749	소과		예안	안동	李載垞	겨울
158	1751			풍산	안동	柳聖疇	西厓 察訪公派
159	1751			예안	안동	李載堡	
160	1752			풍산	안동	柳泳	여름, 謙巖 察訪公派
161	1753			풍산	안동	柳後約	
162	1753	소과		의성	안동	金聖欽	
163	1753	소과		안동	안동	權績	가을
164	1754					權泌	
165	1754			풍산	안동	柳聖采	謙巖 狼川公派
166	1755	소과		풍산	안동	金瑞虎	봄
167	1755			풍산	안동	柳聖觀	봄, 西厓 察訪公派
168	1757	소과		진주	안동	柳晉鉉	류경시의 아들
169	1757			풍산	안동	柳宅春	謙巖 察訪公派
170	1758			풍산	안동	柳聖徵	겨울, 謙巖 敎官公派, 월전 류후감의 아들
171	1759		前參奉	풍산	안동	柳聖贈	가을, 西厓 察訪公派
172	1760			진성	예안	李敏政	가을, 이급의 아버지
173	1761	소과		진주	안동	柳晉鉉	류경시의 아들
174	1762					李命岳	봄
175	1763			풍산	안동	柳聖疇	西厓 察訪公派
176	1764			풍산	안동	柳淑	謙巖 狼川公派
177	1765	소과		전의	안동	李後冕	
178	1765			안동	안동	權鐸	가을
179	1765			안동	안동	權鐸	겨울
180	1766	문과	前縣監	한산	안동	李象靖	
181	1767			전의	안동	李震昌	봄, 李山斗와 교유
182	1767	문과	前佐郎	영양	안동	南龍震	
183	1767			영양	안동	南泰紀	
184	1768			풍산	안동	柳澆	謙巖 察訪公派
185	1768			의성	안동	金屎	
186	1769	문과	前佐郎	영양	안동	南龍震	
187	1769	문과	前佐郎	여주	예천	李穰	여름, 판서
188	1769	문과	前典籍	동래	안동	鄭錫台	가을
189	1769			안동		權恪	
190	1770		通德郎	진주	안동	柳師鉉	
191	1770		前縣監	풍산	안동	柳澆	西厓 察訪公派, 수직
192	1770		通德郎			李元麟	가을
193	1771		前縣監	영양	안동	南相天	봄
194	1771			의성	안동	金景汲	봉화 해저
195	1772			풍산	안동	柳浣	歸村派
196	1773			안동	안동	權輔	未行公

순번	연도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성명	비고
197	1773			의성	안동	金夢涑	여름
198	1773			풍산	안동	柳聖能	
199	1774					李遇辰	
200	1774			풍산	안동	柳澐	謙巖 察訪公派
201	1775			안동	안동	金壽迪	
202	1775			동래	안동	鄭履台	
203	1776			동래	안동	鄭履台	
204	1777			풍산	안동	柳澐	西厓 察訪公派
205	1777	문과	前佐郎	영양	안동	南龍震	
206	1777	문과	前佐郎	한양	안동	趙善陽	
207	1777			풍산	안동	柳聖洙	謙巖 狼川公派
208	1778	문과	前博士	동래	안동	鄭錫台	성균관 전적
209	1779			풍산	안동	柳 策	西厓 察訪公派
210	1779					南口	僉知
211	1779			풍산	안동	柳聖憲	謙巖 察訪公派
212	1780			풍산	안동	柳聖憲	謙巖 察訪公派
213	1781			풍산	안동	柳宗春	西厓 察訪公派
214	1782			영양	안동	南璞	
215	1783			풍산	안동	金繼源	
216	1784			풍산	안동	柳湖	西厓 察訪公派
217	1785			풍산	안동	金溥源	풍산 구담
218	1786					李擴	
219	1787					金時慶	
220	1788			안동	안동	權明佑	이상정의 문인
221	1788					金潤涸	
222	1789					柳瀾	
223	1789	소과		풍산	안동	金敏源	
224	1789	소과		예안	안동	李大錫	
225	1790			순흥	안동	安敏修	봄
226	1790			순천	안동	金弼衡	봄
227	1790			진성	안동	李宗洙	겨울, 이상정의 문인
228	1791	소과		예안	안동	李寅炯	가을
229	1791	문과	承旨	한양	안동	趙錫晦	司諫
230	1791			풍산	안동	柳澐	西厓 察訪公派
231	1791			풍산	안동	柳澐	西厓 察訪公派
232	1793					南王翁	
233	1793			광산	안동	金光緒	
234	1793					李象泰	
235	1794			풍산	안동	柳寬春	西厓 察訪公派
236	1794	문과	前掌令	평산	예천	申完	현감
237	1794			풍산	안동	柳一春	謙巖 狼川公派

순번	연도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성명	비고
238	1794		前參奉	진성	안동	李龜書	
239	1795			풍산	안동	柳一春	謙巖 狼川公派
240	1796			예안	안동	李弘辰	풍산 우동, 이유장의 증손
241	1797			진성	안동	李鎮東	
242	1798		前縣令	풍산	안동	柳 奎	西厓 察訪公派
243	1799			광산	안동	金光濟	未行公
244	1799	소과		풍산	안동	柳象春	謙巖 察訪公派
245	1800	소과		의성	안동	金道行	
246	1800			의성	안동	金麟燦	김성일의 후손
247	1800	소과	前敎官	예안	안동	李楨國	
248	1801					李孝慶	
249	1801			안동	안동	金壽迪	
250	1801			여주	고령	李寅斗	음직
251	1802			풍산	안동	柳大春	西厓 察訪公派
252	1803					李彭胤	
253	1804			풍산	안동	柳囿春	謙巖 狼川公派
254	1804			예안	안동	金從善	
255	1804			의성	의성	金龍弼	
256	1805			진성		李漢儀	
257	1805		前參奉	진성	안동	李堦	
258	1805			풍산	안동	柳漢祚	謙巖 察訪公派
259	1806			풍산	안동	柳漢祚	謙巖 察訪公派
260	1807	소과		풍산	안동	金相燮	
261	1808			영양	안동	南範龜	
262	1809					金養慶	
263	1810	문과	前承旨	의성	안동	金垓	未行公, 참판
264	1810	소과	前府使	전주	안동	柳範休	未行公, 학행 천거
265	1810			예안	안동	李寅標	이유장의 후손
266	1811		前正將	풍산	안동	柳師春	西厓 察訪公派
267	1812			의성		金壽海	
268	1812					金師燮	
269	1813			풍산	안동	柳鳳祚	謙巖 察訪公派
270	1814			안동	안동	權聖佑	
271	1814					李重績	
272	1814					金錫秋	
273	1815			풍산	안동	柳景春	西厓 察訪公派
274	1816			풍산	안동	柳光祚	謙巖 察訪公派
275	1816					金錫喆	
276	1817			풍산	안동	柳龜祚	謙巖 察訪公派
277	1818	문과	判書	풍산	안동	柳相祚	未行公, 西厓 察訪公派
278	1818					李養浩	

순번	연도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성명	비고
279	1818	문과	前校理	풍산	안동	柳台佐	西厓 察訪公派
280	1820			안동	안동	金宅淳	풍산 소산
281	1821	문과	判書	풍산	안동	柳相祚	西厓 察訪公派
282	1822			풍산	안동	柳來春	謙巖 察訪公派
283	1822					金世祚	
284	1823			풍산	안동	柳始春	西厓 察訪公派
285	1824			한양	안동	趙顯章	조보양의 후손
286	1824			안동	안동	金有根	未行公
287	1824					李尙琕	
288	1825			풍산	안동	柳亨春	未行公, 西厓 察訪公派
289	1825	소과		순흥	안동	安爾鎭	향교 좌수 역임
290	1825	문과	正言	풍산	안동	金宗奎	
291	1826	문과		안동	안동	金在根	
292	1827			풍산	안동	金相行	
293	1827					李潤白	
294	1827	소과	前翊贊	풍산	상주	柳尋春	西厓 愚川派
295	1828					李根一	
296	1828			풍산	안동	柳思睦	謙巖 察訪公派
297	1829			풍산	안동	金宗文	
298	1830	문과	前參議	풍산	안동	柳致睦	西厓 察訪公派
299	1831	소과	前郡守	풍산	안동	柳喆祚	西厓 察訪公派
300	1832			순흥	안동	安愿	
301	1832			광산	안동	金星說	未行公
302	1833			예안	안동	李楨輔	
303	1833			안동	안동	權皖	
304	1834					李崇延	
305	1835	소과	前參奉	진성	예안	李彙陽	
306	1836					金道宗	
307	1837					金得謙	
308	1837			풍산	안동	柳昇祚	西厓 察訪公派
309	1838	소과	前縣監	진성	안동	李程淳	
310	1838					金性重	
311	1839			풍산	안동	柳衡祚	西厓 察訪公派
312	1840			풍산	안동	金重鼎	
313	1841			진의	안동	李貞模	풍산 우동
314	1842			예안	안동	李秉成	
315	1843			청주	안동	鄭之洛	
316	1843	소과	前判事	진성	예안	李彙寧	參判
317	1844					金魯欽	
318	1845			풍산	안동	柳泰睦	謙巖 察訪公派
319	1845	소과	前府使	연안	상주	李建基	

순번	연도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성명	비고
320	1846			풍산	안동	金重德	
321	1846			풍산	안동	柳聲祚	西厓 察訪公派
322	1846	문과	前參判	진성	안동	李同淳	
323	1846		護軍	풍산	안동	金重佑	未行公
324	1846		前縣監	풍산	안동	柳進翼	西厓 察訪公派
325	1847		前縣監	풍산	안동	柳進翼	西厓 察訪公派
326	1848	문과	前掌令	순흥	안동	安潤著	參議
327	1849			풍산	안동	金重呂	
328	1849			안동	봉화	金炳洙	
329	1849			풍산	안동	柳厦祚	西厓 察訪公派
330	1850	소과	前郡守	풍산	안동	柳道宗	謙巖 察訪公派
331	1850			영천	군위	李漢鳳	
332	1851			풍산	안동	金重協	
333	1851		前監役	진성	봉화	李漢膺	
334	1851			풍산	영주	金行源	김영조의 후손
335	1852			풍산	안동	柳厦祚	西厓 察訪公派
336	1852		監賭狂	풍산	안동	柳鳳春	西厓 察訪公派
337	1853	소과		순흥	안동	安潤義	안동향교 좌수 역임
338	1854	문과	前承旨	풍산	안동	柳進翰	西厓 察訪公派
339	1855	소과		안동	안동	權仁濩	안동 유곡
340	1855	문과	前參議	풍산	영주	金重夏	未行公
341	1855			안동	안동	金昊均	
342	1856			풍산	안동	柳進穆	謙巖 察訪公派
343	1857	문과	前正言	풍산	영주	金鎭河	兵曹參議
344	1857			안동	안동	金厚根	
345	1858	문과	前正言	선성	영주	金樂淵	
346	1858			예안	안동	李學裕	
347	1859	문과	前判書	진성	안동	李孝淳	未行公
348	1859			풍산	안동	柳亨睦	
349	1860	소과	前牧使	진성	예안	李彙載	未行公
350	1860			진성	안동	李一相	未行公
351	1860		護軍	풍산	안동	柳周祚	西厓 察訪公派
352	1861			광산	안동	金道振	김언기의 후손
353	1861			풍산	예천	柳承睦	西厓 柳川派
354	1862	소과		풍산	안동	金重嶠	
355	1862	문과	前正言	함창	영주	金騏獻	未行公
356	1862			예안	안동	李東一	護軍
357	1863	문과	前承旨	풍산	상주	柳厚祚	西厓 愚川派
358	1863		護軍	풍산	예천	柳義睦	西厓 柳川派
359	1865	문과	前校理			金宗恭	未行公
360	1865	문과	行府使	청송	한양	沈東臣	

순번	연도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성명	비고
361	1865			풍산	안동	柳進鐸	西厓 察訪公派
362	1866			풍산	안동	柳進鐸	西厓 察訪公派
363	1866		前判事	진양	상주	鄭允愚	음직
364	1866	문과	前承旨	풍산	안동	金斗欽	
365	1867			한산	안동	李秉道	護軍
366	1867			안동	안동	金迪淳	未行公
367	1867	소과	前府使	진성	예안	李彙溥	
368	1868		前都事	풍산	상주	柳疇睦	未行公, 西厓 愚川派
369	1868					李性存	
370	1869				군위	李奎文	未行公
371	1869			풍산	안동	柳道經	
372	1869	문과	行府使	풍산	안동	柳芝榮	西厓 察訪公派
373	1869			풍산	안동	柳進夏	未行公, 謙巖 狼川公派
374	1869		護軍	풍산	안동	柳道軾	謙巖 察訪公派
375	1870	소과	통덕랑	예안	안동	李秉綸	
376	1870			풍산	안동	柳進夏	謙巖 狼川公派
377	1870	문과	行府使	반남	부산	朴齊寬	
378	1870		護軍	진성	예안	李彥寅	
379	1871	문과	行府使	반남	부산	朴齊寬	
380	1871			풍산	안동	柳道璜	謙巖 察訪公派
381	1871			안동	안동	權璋	
382	1872			한산	안동	李秉榦	護軍同樞
383	1872		護軍	풍산	안동	柳政祚	謙巖 狼川公派
384	1872			풍산	안동	柳進文	謙巖 狼川公派
385	1872	소과	前參奉	풍산	안동	柳宇睦	西厓 察訪公派
386	1872					李章德	
387	1873			풍산	안동	柳進璜	西厓 察訪公派
388	1873					金驥遠	
389	1873	소과	前判事	진성	예안	李晚翊	參判
390	1873			풍산	안동	柳進時	未行公, 西厓 察訪公派
391	1874		前監役	여강	경주	李在永	
392	1874			풍산	안동	柳進詩	西厓 察訪公派
393	1874		護軍	풍산	안동	柳道一	西厓 察訪公派
394	1874			예안	안동	李天裕	
395	1874			풍산	안동	柳進經	謙巖 狼川公派
396	1875			예안	안동	李秉默	未行公
397	1875	소과	行郡守	진성	예안	李晚綵	未行公
398	1875	문과	奉朝賀	풍산	상주	柳厚祚	西厓 愚川派
399	1876	문과	前參知	풍산	안동	金奎運	未行公, 참판
400	1876			전의	안동	李奎東	僉樞
401	1876			풍산	안동	柳道弘	謙巖 察訪公派

순번	연도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성명	비고
402	1877					金愼均	
403	1877			안동	안동	金日淳	
404	1877			풍산	안동	柳晉瑀	西厓 察訪公派
405	1878	소과		풍산	안동	柳進鳳	西厓 察訪公派
406	1879		護軍	안동	안동	權鍾燾	
407	1879	문과	前承旨	진성	예안	李彙承	이황의 후손, 참판
408	1879	문과	前正言	나주	영주	丁集教	참의
409	1879			풍산	예천	柳進喆	西厓 柳川派
410	1880	문과	行府使	진성	봉화	李啓魯	참판
411	1880	소과		풍산	안동	柳孝睦	西厓 察訪公派
412	1881			광산	안동	金在燦	류심준의 문인
413	1881			풍산		柳進華	未行公, 護軍
414	1881		行府使	진주	한양	李雲夏	
415	1881	문과	前承旨	풍산	안동	柳道彙	未行公, 西厓 察訪公派
416	1881	소과	行郡守	진성	예안	李晚昇	未行公
417	1882			전의	안동	李宅鎔	
418	1882	소과		풍산	영주	金宗杰	
419	1882		前監役	청주	예천	鄭範洛	정탁의 후손
420	1883		前監役	선성	영주	金輝濬	
421	1883		前都事	풍산	안동	柳道性	西厓 察訪公派
422	1883	문과	行府使	임천	한양	趙秉鎬	풍산류씨와 교류, 안동 부사
423	1884			풍산	안동	柳道復	謙巖 察訪公派
424	1884		前都事	풍산	안동	柳道性	西厓 察訪公派
425	1884			풍산	안동	金益欽	
426	1885			진성	안동	李晩鎔	未行公
427	1885	소과		진성	안동	李在哲	
428	1885			풍산	안동	柳進謙	西厓 察訪公派
429	1886	소과		전의	안동	李卿佐	
430	1887	문과	前承旨	풍산	안동	柳道彙	西厓 察訪公派
431	1887			안동	예천	權鏞	
432	1887			함양	안동	朴周鐘	未行公.
433	1887					金寬鎭	
434	1887		副護軍	풍산	안동	柳鎭華	
435	1887					李在元	
436	1888	문과	前承旨	진성	예안	李晚耆	未行公, 이황의 후손
437	1888			풍산	안동	柳道洙	謙巖 教官公派
438	1888			안동	안동	金龍鉉	
439	1888			풍산	안동	柳道健	西厓 察訪公派
440	1889			안동	봉화	金道鎭	
441	1889	문과	前參議	인동	인동	張錫龍	
442	1889			예안	안동	李秉華	

순번	연도	과거	관직	본관	거주지	성명	비고
443	1890			풍산	안동	柳夔祚	西厓 察訪公派
444	1890		行縣監	풍산	예천	柳台衡	
445	1890					李秀愨	
446	1890	문과	行府使	광산	안동	金學洙	
447	1890	소과	行縣監	진양	상주	鄭東箕	未行公
448	1891			예안	안동	李春裕	
449	1891			풍산	안동	柳道行	謙巖 狼川公派
450	1891	문과	前正言	고령	영주	朴遇賢	
451	1891			풍산	안동	柳道協	謙巖 狼川公派
452	1891		護軍	진성	예안	李彙徹	未行公
453	1891	소과		풍산	안동	柳孝羲	西厓 察訪公派
454	1892	소과	行縣監	진성	예안	李晚胤	
455	1892		前持平	의성	안동	金興洛	류치명 문인
456	1892			안동	안동	權準衡	
457	1892			진의	안동	李宅銓	未行公
458	1892			풍산	안동	柳道稷	西厓 察訪公派
459	1893					金鍾八	
460	1893			풍산	안동	柳發榮	謙巖 察訪公派
461	1893	소과	郡守	진양	상주	鄭東箕	未行公
462	1893		前都事	풍산	안동	柳道獻	西厓 察訪公派
463	1894			진의	안동	李宅噉	풍산 우동
464	1895	문과	前承旨	진성	예안	李晚由	未行公
465	1895	문과	府使	진주	한양	李喜元	
466	1895			순흥	안동	安華重	
467	1895			예안	안동	李秉欽	풍산 우동
468	1896			풍산	안동	柳道誠	西厓 察訪公派
469	1897	문과	行郡守	진양	상주	鄭宜默	
470	1898			풍산	안동	柳進箕	西厓 察訪公派
471	1898		前監役	진성	봉화	李基魯	학행
472	1898			풍산	안동	柳致榮	通政大夫秘書監丞, 謙巖 察訪公派
473	1898		前縣監	풍산	안동	柳道奭	西厓 愚川派
474	1899	소과		진천	안동	宋恭仁	
475	1899		前都事	선성	영주	金樂灃	未行公
476	1899			풍산	안동	柳道長	西厓 察訪公派
477	1899					李潤珏	
478	1899			광산	안동	金洛鉉	未行公
479	1899			안동	안동	權鑽	
480	1899			풍산	안동	柳進運	謙巖 狼川公派

 참고문헌

- 『西厓全書』(류성룡)
 『拙齋集』(류원지)
 『圭一齋集』(류후장)
 『豊山柳氏世譜』1~4(1985)
 『光山金氏 禮安派譜』(1977)
 『義城金氏大同譜』(1992) 외
 『古文書集成六十三』(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院任錄』(필사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통문과 상소-』(한국국학진흥원 2007)
 『慶北儒學人物誌(上)(下)』(한국국학진흥원·영남유교문화진흥원 2004)
 『영남지방의 퇴계학맥도』(한국국학진흥원 2002)
 경주 옥산서원 통문류(<http://yn.ugyo.net> 제공)
 안동 외룡 광산김씨 유일재종택 통문류(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우인수 외,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퇴계연구소 편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서, 2004.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7.
 薛錫圭 「惟一齋 金彦璣의 學風과 學脈」 『韓國의 哲學』 30, 2001.
 이수환 「17, 18세기 安東 屏山書院의 社會 經濟的 基盤 -屏山書院 古文書分析-」 『嶠南史學』 3, 1987.

Study on the Aspect of Late Joseon Byungsan Seowon(屏山書院) Wonjang(院長) Composition per Period

Kim Myungja(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This research determined the family name, residence, state exam and whether of government post, and school during the three periods, late 16th century ~ 1699, 1700 ~ 1799, and 1800 ~ 1899, targeting 480 Wonjang between late 16th century and 19th century through 『Wonimrok(院任錄)』 of Byungsan Seowon.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number of Wonjang that can be determined during the late 1500s was 10, i.e. 3 Sunheung Ahn family from Andong Pungsan Galjeon, 2 Suncheon Kim family from Pungsan Gudam, and 2 Gwangsan Kim from Waryong Gaya, mostly literary persons of Kim Eon-gi and Ryu Seongryong. There were 1 literary state exam passer, 5 Sogwa exam passers, and 7 official posts. The number of Wonjang during the 17th century was 77. The number of state exam passers was, 14 in literary exam, 37 in Sogwa, and 31 in official posts. 74 were able to be determined with 16 family names. There were 11 Ye-an Lee family(15%), 10 Suncheon Kim family· Pungsan Ryu family, respectively(14%), 9 Andong Gwon family(12%), 7 Youngyang Nam family(9%), and 6 Dongrae Jeong family(8%). 74 were determined with residence, 61 from Andong, 9 from Yecheon, 2 from Youngju, 1 from Ye-an· Uiseong, respectively, and served as Wonjang in 5 regions.

157 served as Wonjang during the 18th century. 22 passed literary state exam, 26 passed Sogwa exam, and 40 served official posts. 143 were determined with 22 family names. There were 45 Pungsan Ryu family(31%), 12 Andong Gwon family(8%), 7 Youngyang Nam family· Uiseong Kim family· Pungsan Kim family· Jeonui Lee family(7%), respectively, and 7 Jeonju Ryu family· Jinseong Lee family(5%), respectively. During the 17th century, family name was not concentrated on a specific family name, however, during the 18th, it was concentrated on Pungsan Ryu family, and various lines within Youngnam school served as Wonjang. Residence of Wonjang was determined with 142 persons, 133 from Andong, 2 from Bonghwa, 5 from Yecheon, and 1 from Sangju· Ye-an, respectively, similar to the 17th century.

236 served as Wonjang during the 19th century. 37 passed literary state exam, and 32 passed Sogwa exam. Since 1865, 13 provincial officers served as Wonjang. Since Heungseon Daewongun's order for Seowon abolition, the role of Byungsan Seowon as the leader of public opinion of rural area and the function as Seowon became weakened. 208 were determined with 29 family names. 83 from Pungsan Ryu family(40%), 24 from Jinseong Lee family(12%), 17 from Pungsan Kim family(8%), 12 from Ye-an Lee family(6%), 11 from Andong Kim family(5%), and 8 from Andong Gwon family(4%). Among those 206 determined with residence, 151 were from Andong, the majority, 13 from Ye-an, 10 from Youngju, 9 from Sangju, 6 from Yecheon, and 6 from Bonghwa· Hanyang, total 11 regions. Compared to the 17th~18th centuries, family name and region were extended. It was determined that the scope of personnel network of Byungsan Seowon was extended.

In Hahwe, mainly Pungwan Ryu family Gyeomam line(謙巖派) (descendant of Gyeomam(謙菴) Yu Woonryong(柳雲龍) and Seo-ae line(西厓派) (descendant of Seo-ae(西厓) Yu Seongryong(柳成龍) lived, and when classifying 83 Pungsan Ryu family who served as Wonjang according to the line, there

were 53 Seo-ae line, 26 Gyeomam line, and 4 unidentified. Pungsan Ryu family took 40% of Wonjang post, among them, Seo-ae line took 64%, therefore, Seo-ae line of Pungsan Ryu family took the majority of 19th century Byungsan Seowon Wonjang.

Among Wonjang, Jinseong Lee family took no.2, 22 persons, and 30 served as Dosan Seowon Wonjang, who served as Byungsan Seowon Wonjang, accordingly, the two Seowon formed a firm network. As Tongmun(通文) of the 19th century, Byungsan Seowon was determined with the fact that it responded to 'Byunghosibi(屏虎是非)', the conflict of the 19th century in the rural community, by forming a network with Donam Seowon of Sangju, Oksan Seowon of Gyeongju, and Yigye Seowon of Youngju, along with Dosan Seowon of Ye-an.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issue of Youngnam Namin belonged to Hogye, however they promoted cooperation with Hopa line by the medium of Samgye Seowon, more free from Byungho Sibi, by orienting toward Gwonbeol(權撥), in this process, the network of Byungsan Seowon influence the whole Youngnam area.

Key words: Byungsan Seowon(屏山書院), Pungsan Ryu Family(豐山 柳氏), Byungho Sibi(屏虎是非), Seowon Wonjang(書院 院長), Pungsan Ryu Family Seo-ae line(豐山 柳氏 西厓派), 『Wonimnok(院任錄)』

이 논문은 2018년 5월 31일 투고 완료.

2018년 6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완료.

2018년 6월 25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서 게재 결정.

18세기 陶山書院 노비의 혼인과 가족

김영나*

-
- I. 머리말
 - II. 대상 자료의 소개
 - III. 혼인과 가족
 - 1. 노비의 혼인유형
 - 2. 노비 가족의 모습
 - IV. 거주지의 범위
 - V. 맺음말
-

〈국문요약〉

본 논문은 陶山書院의 고문서 중 17세기의 院贖案 1건, 18세기의 奴婢案 9건과 身貢案 2건을 통해 노비의 혼인과 가족, 거주 지역을 밝히고자 하였다.

도산서원 노비의 혼인에서 서원노와 서원비의 혼인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는 서원의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혼인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와 良女の 혼인이다. 이는 서원에서 노비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비와 私奴와 노와 私婢의 혼인도 많이 나오는데, 비와 사노의 소생은 서원의 소유가 되었고, 노와 사비의 소생은 노비안에 나오지 않는다. 이외에도 班奴婢·私奴婢·寺奴婢·驛奴婢·內奴婢·다른 서원 노비·買得奴婢·贖納婢 등과의 혼인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혼인 관계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비의 경우는 어떠한 혼인 대상과 혼인하든지 그 소생은 반드시 서원의 소유가 되었지만, 노의 경우는 혼인 대상에 따라 그 소생이 서원의 소유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서원에서는 노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혼인 방식을 강구하였고, 그 중 가장 큰 성과는 노와 양녀의 혼인으로 인한 소생이었다.

도산서원 노비의 가족은 보통 한 지역에서 대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의 해체나 분열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 비를 중심으로 노비안에 가족을 기재하였다. 노의 경우는 양녀와 혼인하여 낳은 소생들이 주로 기재되었고, 노와 寺婢, 노와 私婢 등의 혼인에서 태어난 소생은 나오지 않는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도산서원 노비의 거주 지역은 주로 경상도 북부 지역과 동해안이고, 경상도 남부 지역과 충청도, 강원도에도 도산서원 노비가 나온다. 특히 예안과 안동의 경우, 그 안의 거의 전 지역에 노비가 거주하였다. 또한 관청이나 사찰에 거주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노비들은 도산서원에 신공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산서원은 예안과 안동 일대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안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나 충청도의 노비에게 신공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18세기의 도산서원 노비의 혼인과 가족관계, 거주 지역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미비한 부분은 19세기의 노비안들을 함께 분석해보는다면 도산서원에 속한 노비의 존재양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 陶山書院, 노비, 혼인, 가족, 거주지

I. 머리말

도산서원은 1574년(선조 7)에 이황의 학덕을 추모하는 문인들과 지역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예안에 창건한 서원이다. 이 서원은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상이 상당히 높았다.

도산서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도산서원의 정치·사회적 위상¹⁾, 다른 서원이나 향교와의 비교 연구²⁾, 서원 경제와 운영에 대한 연구³⁾ 중향문제⁴⁾

-
- 1)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기획,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새물결, 2015.
 - 2) 박현순, 「17세기 도산서원陶山書院과 예안향교禮安鄉校의 비교 검토」, 『안동학연구』 11, 2012 ; 정재훈, 「조선시대 서원의 발전과 지역적 특징-도산서원陶山書院과 석실서원石室書院-」, 『안동학연구』 11, 2012.
 - 3) 閔丙河, 「조선서원의 경제 구조」, 『대동문화연구』 5, 1968 ; 丁世桓, 「朝鮮後期 安東陶山書院의 經濟基盤 研究：陶山書院古文書의 分析을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崔淳姬, 「朝鮮時代 中期以後 田民賣買의 實相：陶山書院所藏 文記(明文)를 中心으로-」, 『중재 장충식박사 화갑기념논총-역사학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2 ; 文叔子, 「朝鮮後期 書院奴婢의 身分的 性格-陶山書院 古文書를 통한 검토-」, 『退溪學研究』 11, 1997 ;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기획,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 4) 李尙賢,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17세기 嶺南士族 動向의 一端-」, 『北岳史論』 8, 2001 ; 朴賢淳, 「16~17세기 禮安縣 士族社會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서책 등의 간행을 통한 지식의 생산과 보급,⁵⁾ 서원에 소속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⁶⁾ 등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서원의 노비에 대한 각종 정보가 기록된 『奴婢案』과 『身貢案』, 『院屬案』을 중심으로 도산서원에 소속된 노비들을 살펴보겠다. 서원노비는 서원전과 함께 서원의 주요 경제적 기반이었고, 서원 안의 각종 일을 하거나 서원전을 경작하면서 신공을 납부하는 일 등을 하였다.

기존에 도산서원 노비를 분석한 연구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도산서원의 경제적 실체에 주목하여 도산서원의 노비가 어느 지역에 몇 명 정도 있었는지를 알아본 연구가 있다.⁷⁾ 둘째, 17~18세기 도산서원 노비 소유 규모의 동향, 신공의 형태와 변화, 도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에서 노비신공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⁸⁾ 셋째, 도산서원 노비안의 노비 기재 방식에 주목하고, 서원에서 노비를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⁹⁾

여기에서는 17세기 원속안 1건, 18세기 노비안 9건과 신공안 2건의 분석을 통해 첫째, 노비의 혼인 유형을 통해 도산서원의 노비가 어떠한 방식으로 증가하였는지, 노비의 가족이 전 시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해체의 과정을 겪었는지 등을 알아본다. 둘째, 노비가 실제로 거주한 지역을 살펴본다. 도산서원이 예안과 안동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까지 도산서원의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물론 노비안과 신공안, 원속안은 자료의 한계가 있다. 남아 있는 자료에 서원 소속 노비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누락되거나 없어진 문서들도 있다. 그러나 도산서원 노비 관련 문서들은 서원의 노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1차 자료이며 서원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획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문서이기에, 서원이 파악할 수 있는 대부분의 노비를 기재하였을 것이

5)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기획,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6)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기획,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7) 丁世桓 앞의 논문.

8) 李樹煥 앞의 책.

9) 문숙자, 「2장 전통과 사회적 위상을 활용한 도산서원의 노비 경영」,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상 자료의 소개

본고의 분석대상인 18세기 도산서원 노비안은 1700년부터 1798년 이후 노비안까지 모두 11건이고, 도산서원 노비수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1619년 원속안까지 함께 분석하였다.¹⁰⁾

〈표 1〉 18세기 도산서원 노비안

번호	년도	권수	문서번호	문서 성격	노비수				기재 방식	내용	비고
					노	비	미상	합			
1	1619	1	KS0069-2-88-00532	院屬案	82	75	2	159	노비·진답 함께 기재	奴婢秩(本官奴婢), 他官居奴婢秩 院中差役 私奴秩로 나누어 파악	
2	1700	1	KS0069-2-88-00662	奴婢案	327	265	3	595	지역 구분 없음	英陽 寧海 등의 지역에 노비 분포	
3	1708	1	KS0069-2-88-00479	奴婢案	495	392	73	960	지역 구분 없음	安東 禮安, 英陽 등의 지역에 노비 분포	
4	1715	1	KS0069-2-88-00484	奴婢案	573	528	61	1,162	지역 구분 없음	安東 禮安, 英陽 등의 지역에 노비 분포	
5	1737	1	KS0069-2-88-00475	奴婢案	75	88	25	188	지역별	표지에는 寧海 英陽 眞寶, 朴谷이	표지에 '己卯'라고 쓰여져

10) 여기에서 분석한 도산서원 관련 문서는 모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으며, 문서번호 역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붙인 것을 이용하였다.

번호	년도	권수	문서번호	문서 성격	노비수				기재 방식	내용	비고
					노	비	미상	합			
										있으나 영해·영양 지역의 일부 노비 기록만 있음.	있음.
6	1743	1	KS0069-2-88-00480	奴婢案	705	655	246	1,606	지역별	英陽 眞寶, 寧海 朴谷 佳丘 上里 北面으로 나눔	
7	1747	1	KS0069-2-88-00481	奴婢案	791	783	261	1,835	지역별	英陽 眞寶, 寧海 朴谷 佳丘 上里 北面으로 나눔	1743년 노비안과 겹치는 내용 많음
8	1759	1	KS0069-2-88-00665	奴婢案	539	473	188	1,200	지역별	표지에는 佳丘 上里 北面 西面 宜東 院底, 乃城 甘泉 榮川이 있음. 실제로 佳丘 上里 北面 西面 宜東 院底로 나눔	
9	1765	1	KS0069-2-88-00663	身貢案	400	370	0	770	지역별	榮川 奉化 乃城 豐山 禮泉 朴谷 上里 英陽 眞寶 佳丘 宜東으로 나눔	
10	1771-1781	1	KS0069-2-88-00680	身貢案	735	649	2	1,386	지역별	榮川 奉化 乃城 豐山 禮泉 朴谷 上里 英陽 眞寶 佳丘	

번호	년도	권수	문서번호	문서 성격	노비수				기재 방식	내용	비고
					노	비	미상	합			
										宜東 西面, 北面 西北面, 寧海, 甘泉으로 나눔	
11	1795	1	KS0069-2-88-00666	奴婢案	595	774	7	1,376	지역별	奉化 佳丘 新未推, 上里 北面 舊未推, 西面 宜東 未推부분, 院底로 나눔 구분	
12	1798 이후	1	KS0069-2-88-00482	奴婢案	344	295	4	643	지역 구분 없음	禮安, 院底, 榮川, 安東 등의 노비 기술	표지와 앞장 훼손

1619년 원속안에서 노비는 奴婢秩(本官奴婢), 他官居奴婢秩, 院中差役이다. 원중차역자와 본관노비는 솔거노비, 타관거노비는 외거노비이다. 원중차역자는 서원 안에서 지내면서 일을 하였고, 본관노비는 서원 안의 일을 하거나 서원 소유의 전답을 경작하였다. 노 82명, 비 75명, 미상 2명, 총 159명이 있다. 본관노비의 수가 증가하면서 上里·西面·北面·宜東·西北面·院底 등의 지역으로 나누어졌고 서원 근처에 거주하는 원저 노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가 되었다.¹¹⁾

1700년 노비안에는 표지에 下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上 또는 上과 中의 노비안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없다. 지역 구분 없이 가족별로 거주 지역을 기술하였고, 혹시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은 거주지를 따로 기재하였는데, 英陽 寧海 등에 많이 거주하였다. 노비수는 노 327명, 비 265명, 미상 3명, 총 595명이다. 1708년 노비안에는 노 495명, 비 392명, 미상 73명, 총 960명이 있다. 18세기 노비안 중 다양한 혼인 형태가 가장 많이 남아 있고, 安東 禮安 英陽 등에 노비가 거주하였다. 1715년 노비안 역시 1700년과 1708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지역 구분 없이 기술하였다. 노비수는 노 573명, 비

11) 이수환, 앞의 책, 228쪽.

528명, 미상 61명, 총 1,162명이다.

1737년 노비안은 한 책 안의 일부가 남아 있다. 표지에는 '己卯'와 寧海 英陽 眞寶, 朴谷의 지명이 있지만 실제로는 영해와 영양의 일부만 남아 있다. 기존에는 1743년 노비안부터 도산서원 노비안의 기재방식이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에,¹²⁾ 이 노비안은 1743년 이후의 문서이고 기묘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1759년 이후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노비안에 대부분 나오는 1743년과 1747년의 노비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을 통해 노비안의 연도를 추정해보면, 1737년(정묘, 영조 13)에 작성된 문서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표지에 '기묘'라고 제시하였을까. 1737년에 만든 노비안을 소급하여 1759년에 작성하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기묘년 노비안 영해 부분에 나오는 비 六月今の 2소생 비 次分과 3소생 노동多知는 각각 16세 임인생과 2세 병진생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1743년에는 각각 22세 임인생, 8세 병진생으로, 1747년에는 26세 임인생과 12세 병진생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묘 노비안 영양 부분에 나오는 비 白女の 1소생 비 次女와 4소생 비 件里德은 각각 41세 정축생, 26세 임진생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1743년에는 각각 47세 정축생, 32세 임진생으로, 1747년에는 51세 정축생, 36세 임진생으로 나타난다. 영해와 영양 부분에 나오는 다른 여러 노비들도 1743년과 1747년 노비안에 나오는 노비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기재되어 있는 나이를 통해서 기묘 노비안이 1737년 노비안으로 짐작할 수 있고, 최소한 영해와 영양 부분의 노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노 75명, 비 88명, 미상 25명, 총 188명이 있다.

1743년과 1747년 노비안은 비슷한 내용이 많다. 두 노비안 모두 英陽 眞寶, 寧海, 朴谷, 佳丘, 上里, 北面에 거주하는 노비들을 정리하였고, 각 거주지 안에 세부적인 지역을 기술하였다. 지역별로 노비를 기술한 이유는 노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였는데, 지역 안에서 다시 가족별로 기술하였다.

12) 이수환, 앞의 책, 232쪽.

두 노비안에서 중복되는 노비들도 상당수이다. 1743년에는 노 705명, 비 655명, 미상 246명, 총 1,606명이 있고 1747년에는 노 791명, 비 783명, 미상 261명, 총 1,835명으로 1743년보다 노비수가 증가하였다.

1759년 노비안은 표지에는 佳丘 上里 北面 西面 宜東 院底 乃城 甘泉 榮川 등의 지역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佳丘 上里 北面 西面 宜東 院底 등 주로 예안과 안동 일대의 지역 노비를 기술하였다. 가구와 상리, 북면은 1743년과 1747년에도 나오는 지명이어서 중복 노비를 확인할 수 있다. 노 539명, 비 473명, 미상 188명, 총 1,200명이 있다.

1765년과 1771-1781년의 신공안에는 榮川, 奉化, 乃城, 豊山, 禮泉, 朴谷, 上里, 英陽, 眞寶, 佳丘, 宜東, 西面, 北面, 西北面, 寧海, 甘泉 지역에서 노비에게 신공을 거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노비와 신공 액수만 나오기 때문에 지역 이외에는 노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故와 除 贖 등 신공 면제 사유와 이 노비가 누구의 자식인지, 거주지 이동 등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특히 1771-1781년 신공안에는 앞의 다른 노비안보다 더 세부적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전부터 도산서원의 노비가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65년에 나오는 노비는 노 400명, 비 370명, 총 770명이고 1771-1781년에 나오는 노비는 노 735명, 비 649명, 미상 2명, 총 1,386명이다.

1795년 노비안에는 奉化, 佳丘, 上里, 北面, 西面, 宜東, 院底 지역의 노비를 기술하였는데, 未推와, 新未推·舊未推 항목을 따로 지정하여 노비 명단을 작성하였다. 未推는 推刷하지 못한 노비이고, 新未推는 이번 노비안을 작성하는 시기에 추쇄하지 못한 노비, 舊未推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추쇄하지 못한 노비를 말한다. 노 595명, 비 774명, 미상 7명, 총 1,376명이다.

마지막으로 1798년 이후 노비안은 지역 구분 없이 노비에 대해 기술하였다. 禮安, 院底, 榮川, 安東, 奉化, 豊基, 呂泉, 順興, 英陽, 大邱, 寧海, 平海, 眞寶, 義城, 清河, 慶州, 蔚山, 江陵, 義興, 醴泉 등의 지역이 있다. 또한 앞의 다른 노비안에는 烏川, 豊山 등의 세부적인 지명이 나오는데, 이 노비안에는 세부적인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 표지와 년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노비와 다른 노비안에 나오는 노비를 통해서 노비안의 연도를 짐작하였다. 예를 들어, 1759년에는 비 莫眞의 8소생 비 已長과 비 이장의 1소생 비 已化가 나오고, 1795년에는 앞에 나왔던 고비 莫眞의 1소생 비 已長과 비 이장의 다섯 소생이 나온다. 1759년에는 비 已長이 8소생이라고 되어 있고, 1795년에는 1소생이라 되어 있는 것은 비 막진의 소생 7명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비 이장의 1소생과 3소생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다. 1798년 이후 노비안에는 비 막진은 나오지 않고 비 이장과 그의 세 소생이 나오는데, 이미 사망한 1, 3소생은 기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노비안은 1795년 이후에 작성되었고, 이 노비안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해는 1798년 무오년이기¹³⁾에 최소한 1798년 이후의 노비안으로 짐작할 수 있다. 노비수는 노 344명, 비 295명, 미상 4명, 총 643명이다. 1795년과 중복되는 노비를 비교하면 1795년에 미추와 신미추, 구미추 부분에 있는 노비들과는 하나도 겹치지 않기에, 실제로 신공을 거둔 노비를 이 노비안에서 쓴 것 같다.

Ⅲ. 혼인과 가족

1. 노비의 혼인유형

노비는 一賤則賤 즉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노비이면 자녀는 노비였고, 상대적으로 노비를 늘리기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혼인이었다. 서원에서 노비의 혼인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이 있다. 1681년(숙종 7) 知事 閔維重이 公私賤 중에 驛吏에게 시집가거나 良女에게 장가간 소생의 경우에는 역에 환속시키고 향교와 서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할 것을 말하였고, 숙종은 이들을 향교와 서원에 되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13) 이 노비안에서 비 壬丹의 1소생 비 生月, 비 小愛의 3소생 비 卜建, 비 배리덕의 2소생 노 九成은 모두 무오생이고 이후에 태어난 노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였다.¹⁴⁾ 즉, 서원이나 향교에 소속된 노비는 천인이나 양인 등 어떤 신분
과도 혼인할 수 있었고, 이들의 소생은 서원 소속이 되었다.

도산서원의 노비가 어떠한 대상과 혼인하였는지를 <표 2>와 <표 3>을
통해 살펴보겠다.

<표 2> 1619년 원속안에 나오는 혼인 형태 건수

	救活奴	院屬	奴	私奴	良人	寺奴	미상
院婢	2	-	-	-	-	-	-
良女	1	-	6	-	-	-	-
救活婢	-	1	1	1	-	-	1
婢	1	1	2	4	6	1	7
私婢	-	-	4	-	-	-	-

이 시기의 혼인은 뒤의 혼인 관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
다. 救活奴婢는 원래 양인인데 생계 등의 이유로 노비가 된 사람으로, 서원
에 자신을 투탁한 사람이다. 院屬은 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원에 투탁
한 사람이고, 신분은 양인이었다. 寺奴는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로 관노비이
고, 私奴婢는 사족의 개인 노비이며, 院婢는 서원 소속 노비이다. 여기에서
소속이 분명하지 않는 대상은 단순히 奴와 婢로 쓰여졌다. 奴는 院奴가 나오
지 않기 때문에 도산서원에 소속된 원노로 파악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고,
婢는 院婢와 함께 혼용해서 쓰였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노비안
에는 院奴나 院婢라는 용어 대신 대체로 노와 비로 쓴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서원 노비 외의 대상은 확실하게 언급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救活奴婢,
院屬, 奴, 婢, 院婢는 도산서원 소속이고, 나머지는 다른 소속으로 본다.

가장 많이 나오는 혼인 형태는 비와 미상의 혼인으로 8건이다. 이러한 혼

14) 『書院謄錄』 2, 신유(숙종 7, 1681) 3월 9일. "知事閔維重所啓, 公私賤之聚驛吏良女所
生之類, 自上年申明事目, 令各驛一一刷出還屬驛役矣…(중략)…鄉校奴婢本是朝家劃
給者, 而兩書院奴婢則或得屬公之賤, 或自本院買得者也, 若失此奴婢則鄉校及書院將
無以成樣, 學宮奴婢無他公賤有異, 似當有變通之道敢達矣, 上曰, 鄉校書院所關重大,
其奴婢勿焉屬驛, 並令還給鄉校書院可也."(『국역 서원등록』 1, 230~231쪽).

인은 사족의 노비들에게도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혼인 형태로 비가 어떤 대상과 혼인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소생은 비의 주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굳이 비의 혼인대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의 혼인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통 같은 소속의 노로 본다. 다음은 노와 양녀의 혼인으로 7건이며, 구활노와 양녀와의 혼인도 포함시켰다. 노와 양녀의 혼인은 사족들이 노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고, 서원에서든 같은 목적을 가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18세기 도산서원 노비안에 나오는 혼인 형태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 3〉 18세기 도산서원 노비안에 나오는 혼인 형태 건수

본인	배우자	년도	1700	1708	1715	1737	1743	1747	1759	1795	1798 이후	합
		건수										
奴	良女	기재	39	59	52	10	59	76	38	40	2	375
		중복제외	-	50	18	9	54	5	8	14	-	158
	私婢	기재	36	46	13	-	1	-	-	-	-	96
		중복제외	-	42	6	-	-	-	-	-	-	48
	寺婢	기재	10	-	5	-	-	-	-	-	-	15
		중복제외	-	-	3	-	-	-	-	-	-	3
	班婢	기재	7	27	12	-	-	-	1	-	-	47
		중복제외	-	26	7	-	-	-	-	-	-	33
	驛婢	기재	1	1	-	-	-	-	-	-	-	2
		중복제외	-	-	-	-	-	-	-	-	-	-
	院婢	기재	-	3	-	-	-	-	-	-	-	3
		중복제외	-	-	-	-	-	-	-	-	-	-
	贖納婢	기재	-	1	1	-	-	-	-	-	-	2
		중복제외	-	-	-	-	-	-	-	-	-	-
	買得婢	기재	-	1	-	-	-	-	-	1	-	2
		중복제외	-	-	-	-	-	-	-	-	-	-
	買納婢	기재	-	-	-	-	2	3	4	2	-	11
		중복제외	-	-	-	-	-	1	-	0	-	1
	買納良妻婢	기재	-	-	-	-	1	1	-	-	-	2
		중복제외	-	-	-	-	-	0	-	-	-	0
代納婢	기재	-	-	-	-	-	1	-	-	1	2	
	중복제외	-	-	-	-	-	-	-	-	-	-	
합	기재	93	138	83	10	63	81	43	43	3	557	
	중복제외	-	118	34	9	54	6	8	14	-	243	
婢	미상	기재	127	184	280	100	354	423	331	543	329	2,671

본인	배우자	년도 건수	1700	1708	1715	1737	1743	1747	1759	1795	1798 이후	합
				중복제외	-	176	242	75	303	64	217	337
	良人	기재	12	7	6	-	1	-	2	1	-	29
		중복제외	-	-	1	-	-	-	-	-	-	1
	私奴	기재	42	34	19	4	2	1	-	-	-	102
		중복제외	-	32	17	-	0	0	-	-	-	49
	寺奴	기재	21	14	5	-	-	-	-	-	-	40
		중복제외	-	-	3	-	-	-	-	-	-	3
	班奴	기재	2	18	7	-	2	-	1	-	-	30
		중복제외	-	17	4	-	-	-	-	-	-	21
	內奴	기재	1	-	2	-	-	-	-	-	-	3
		중복제외	-	-	1	-	-	-	-	-	-	1
	官吏	기재	-	1	2	-	-	-	-	-	-	3
		중복제외	-	-	1	-	-	-	-	-	-	1
	官奴	기재	-	-	1	-	-	-	-	-	-	1
		중복제외	-	-	-	-	-	-	-	-	-	-
	院奴	기재	-	-	1	-	-	-	-	-	-	1
		중복제외	-	-	-	-	-	-	-	-	-	-
	합	기재	205	258	323	104	359	424	334	544	329	2,880
		중복제외	-	225	269	75	303	64	217	337	242	1,732
미상	미상	기재	-	2	-	4	-	-	1	-	-	7
총합		기재	298	398	406	118	422	505	378	587	332	3,444
		중복제외	-	343	303	84	357	70	225	351	242	1,975

<표 3>은 도산서원 노비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노비의 혼인 대상을 분석한 것이다. 나머지 노비들은 누구와 혼인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만약 혼인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다면 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이 가능한 혼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노비안에 서원 노비와 혼인한 상대방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들의 혼인이 서원에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 시기와 중복되는 혼인 관계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이 혼인들은 앞 시기와 연결되는 것이지, 이 시기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8세기 전 시기에 비와 미상의 혼인이 가장 많다. 왜냐하면 이 혼인은 부모의 혼인에서 파악이 가능하고, 자녀의 혼인에서는 비와 혼인한 구체적인 상대를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

가 자신과 다른 신분이나 영역의 노와 혼인하였을 경우에 배우자를 반드시 기재하였기 때문에, 비와 미상의 경우에서 미상은 같은 서원노일 것이다. 1700년, 1708년, 1715년의 노비안은 혼인 대상에 대한 기록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1700년에는 비와 미상의 혼인을 제외하면 비와 사노의 혼인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노와 양녀의 혼인 39건, 노와 사비의 혼인 36건, 비와 寺奴의 혼인 21건, 비와 양인의 혼인 12건, 노와 寺婢의 혼인 10건, 노와 班婢의 혼인 7건, 비와 班奴의 혼인 2건, 노와 驛婢, 비와 內奴의 혼인이 각각 1건씩 있다.

1708년에는 중복된 혼인 관계를 제외하면 노와 양녀의 혼인 50건, 노와 사비의 혼인 42건, 비와 사노의 혼인 32건, 노와 반비의 혼인 26건, 비와 반노의 혼인 17건, 비와 시노의 혼인 14건, 비와 양인의 혼인 7건, 노와 다른 서원 비의 혼인 3건, 비와 관리, 노와 매득비, 노와 贖婢의 혼인이 각각 1건씩 있다. 앞 시기와 비슷하게 노와 양녀의 혼인이 많이 나오고, 서원 노비와 사노 비의 혼인 역시 많이 나온다.

1715년에는 중복된 혼인 관계를 제외하면 노와 양녀의 혼인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비와 사노의 혼인 17건, 노와 반비의 혼인 7건, 노와 사비의 혼인 6건, 비와 반노의 혼인 4건, 노와 시비, 비와 시노의 혼인이 각각 3건, 노와 속납비, 비와 양인, 비와 내노, 비와 관리, 비와 관노, 비와 다른 서원 노의 혼인이 각각 1건씩 있다. 1708년과 중복되는 혼인 관계가 많아서 1715년에 기재된 노와 양녀의 혼인은 52건이 있지만, 실제로는 18건이다.

1700년에서 1715년 노비안에 나타나는 혼인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와 양녀의 혼인과 비와 양인의 혼인이 있다. 노와 양녀의 혼인은 서원에서 노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어서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졌고, 비와 양인의 혼인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둘째, 班奴婢와의 혼인이다. 반노비와의 혼인은 1700년에서 1715년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나다가, 이후에는 1743년에 비와 반노의 혼인 2건, 1759년에 노와 반비의 혼인 1건, 비와 반노의 혼인 1건이 있다. 사족의 호구단자에도

반노비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광산김씨 호구단자에는 1702~1765년 사이에 반노비가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반노비의 혼인과 그 소생을 통해 그 위치를 구명하고 있는데, 노와 혼인하는 양녀, 비와 혼인하는 양인을 반노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반드시 양인이 아니라도 반노비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즉, 1669년 노와 양녀의 소생을 종량한다는 법이 제정되면서 반노비가 나타났고, 노취양녀의 소생이 양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의 양처를 반비로 기재했으며, 노의 양처가 아닌 비도 반비로 표기했다고 보았다.¹⁵⁾ 1687년(숙종 4)의 실록 기사에서, 형조판서 李元禎가 '公私賤의 良妻 소생이 母役을 따른다는 법은 진실로 국가를 위한 계책입니다. 근래의 民俗이 극도로 간사하여 심지어 私賤 가운데 양녀를 처로 삼은 사람이 양녀를 班婢라고 칭하여 良役을 꺼리고 피하며, 사실대로 懸錄한 자는 열에 한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¹⁶⁾ 여기에서도 노와 양녀의 혼인에서 양녀를 반비라고 칭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반노비'라는 명칭은 이미 조선 전기부터 사용하던 명칭이고, 실록에 나와 있는 관련 기록들을 보면 私奴婢와 혼용하여 사용하였다.¹⁷⁾ 즉, 사노비를 뜻하는 다른 명칭이 반노비였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1700년에서 1715년 사이의 서원의 노비와 사노비와의 혼인은 더욱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의 실록 기사에서 양녀를 반비라고 칭한 것 자체가 반비의 원래 의미가 양반 가문의 비라고 할 수 있다. 노와 반비의 혼인, 비와 반노의 혼인은 노와 사비의 혼인, 비와 사노의 혼인과 같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1700년 노와 사비의 혼인 43건, 비와 사노의 혼인 44건, 1708년 노와 사비의

15) 金容晚 『朝鮮時代 私奴婢研究』, 집문당, 1997. 168~175쪽.

16) 『肅宗實錄』 권7, 숙종 4년(1678) 4월 2일 신미 2번째 기사. "刑曹判書李元禎曰: '公私賤良妻所生從母役之法, 固是爲國家計, 而近來民俗極詐, 私賤之取良女爲妻者, 厭避良役, 稱以班婢, 從實懸錄者, 十無一二.'"

17) 『中宗實錄』 권50, 중종 19년(1524) 5월 29일 계사 7번째 기사에 가장 먼저 '班婢'라는 용어가 나오고, 『明宗實錄』 권31, 명종 20년(1565) 10월 12일 을해 3번째 기사에 가장 먼저 '班奴'라는 용어가 나온다. '班奴婢'라는 용어는 『光海君日記』 권146, 광해 11년(1619) 11월 30일 기유 1번째 기사에 가장 먼저 나온다. 내용상 반노비는 양반 가문의 노비, 즉 사노비를 의미하였다.

혼인 68건, 비와 사노의 혼인 49건, 1715년 노와 사비의 혼인 13건, 비와 사노의 혼인 21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서원 노비와 私奴婢와의 혼인 관계이다. 비의 경우는 어떤 대상과 혼인하든지 그 소생은 서원 소속의 노비가 된다. 특히 비와 私奴의 혼인은 서원을 운영하는 사족들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족들이 자신의 노를 서원의 비와 혼인시킴으로 서원에게 자신의 재산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와 私婢의 혼인에서는 그 소생은 사비 주인의 소속이 되는데, 이 역시 서원과 사족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혼인일 것이다. 또한 노와 사비의 혼인은 혼인관계만 언급되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소생은 노비안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의 소생은 서원에 귀속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비와 사노의 혼인, 노와 사비의 혼인은 서원과 사족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넷째, 公奴婢와의 혼인이다. 寺奴婢는 지방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인데, 비와 시노의 경우는 그 소생이 노비안에 나오지만 노와 시비의 경우는 그 소생이 노비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역시 私奴婢와의 혼인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노와 驛婢의 혼인은 1700년과 1708년에만 각각 1건씩 나타난다. 1700년에는 청송에 사는 노 卜只是 驛婢와 혼인하였는데, 청송에는 新安驛 文居驛 和睦驛이 있으므로 여기에 거주하는 역비와 혼인하였을 것이다. 1708년에는 봉화에 사는 노 五哲이 역비와 혼인하였는데, 봉화에는 道深驛이 있어서 이 역의 비와 혼인하였을 것이다. 이들의 소생은 나타나지 않으며, 驛婢와의 혼인 역시 나오지 않는다. 내수사에 소속된 노비인 내노비의 혼인은 1700년과 1715년에 비와 내노의 혼인만 각각 1건씩 나타난다. 1700년에는 영양에 거주하는 故婢 順代의 6소생 비 仇仕里가 內奴 二奉과 혼인하였고, 1715년에는 이들의 4소생인 비 女娘이 內奴 聖杰과 혼인하였다. 즉, 내노와의 혼인이 대를 이어서 하는 양상을 보인다. 1715년에는 비와 관노의 혼인이 나타나는데, 故婢 甘周里의 4소생 비 善月은 관노와 혼인하였는데, 그 소생도 노비안에 나타난다.

다섯째, 노와 다른 서원 비의 혼인이다. 1708년에는 院底에 거주하는 비 益壽와 班奴 二京의 3소생 노 二千이 역동서원의 비와 혼인하였고, 院底에 거주하는 고노 權生과 양처의 1소생 노 丁男 역시 역동서원의 비와 혼인하였다. 안동에 거주하는 비 貴分の 5소생 노 必見은 榮川에 있는 서원의 비와 혼인하였다. 이 가족은 혼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비 귀분의 1소생 비 順化는 私奴, 2소생 노 必奉은 양녀, 3소생 비 必女는 寺奴, 4소생 노 必男은 寺婢와 혼인하였다. 1715년에는 노 哲伊와 양처의 2소생 비 玉伊가 역동서원 노와 혼인하였다. 역동서원은 처음에는 이황의 제자들과 지역 사족들에 의해 창건되었으나, 도산서원이 같은 지역에 설립되자 점차 위축되어 역동서원이 도산서원의 일부로 인식되기도 하였다.¹⁸⁾ 또한 역동서원은 도산서원이 사액을 받은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인 1683년(숙종 9)에 사액을 받았기 때문에, 도산서원보다는 지역에서의 위상이 약했을 것이다.¹⁹⁾ 따라서 역동서원의 일을 하는 노비도 있고, 역동서원 노비가 도산서원 노비안에 잘못 기재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도산서원 주도로 역동서원의 노비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1708년 노비안에서 노와 買得婢, 노와 贖納婢와의 혼인이 각각 1건씩 있고, 1715년에는 노와 속납비의 혼인이 1건이 있다. 또한 1708년에 노와 반비의 혼인 26건 중에 도산서원 買得奴와 반비의 혼인이 2건이 있으며, 비와 미상의 혼인에서 비가 買得婢인 경우가 2건이 있다. 이들의 소생은 대부분 노비안에 나와 있다. 매득비나 속납비 모두 도산서원에 소속된 노비가기 때문에 이들의 소생 역시 도산서원 소유가 되었다.

18) 이수환, 앞의 논문, 126쪽.

19) 『書院謄錄』 2, 계해(숙종 9, 1683) 1월 26일(『국역 서원등록』 2, 26~27쪽)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正言 俞命一의 상소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에, "... (중략) ...故 先正臣 李滉이 주창하여 禹倬의 위패를 모시는 易東書院을 건립하였습니다. ... (중략) ...역동서원의 경우에는 관례대로 사액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서원의 儒林들이 아직까지 사액을 청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그 연유를 알 수 없습니다. ... (후략). [正言俞命一上疏據曹, 啓目粘連 ... (중략) ...故先正臣李滉爲易東書院 ... (중략) ...此書院則似當據例賜號 而院儒之尙未請額 常未知其故 ... (후략)].

일곱째, 비와 관리의 혼인이다. 1708년 노비안에는 순흥에 거주하는 비 承分の 1소생 비 吉分은 관리 李延必과 혼인하였고, 1715년에는 이들의 1소생 愛分이 관리 李正化와 혼인하였으며, 이들의 소생 역시 노비안에 나온다. 즉, 비와 관리의 혼인에서도 一賤則賤의 원칙에 따라서 이들의 소생은 모두 노비가 되었다.

1737년 노비안은 일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어렵지만 노와 양녀의 혼인은 꾸준히 있었다. 1743년에는 비와 미상, 중복된 노비 혼인을 제외하면 노와 양녀의 혼인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1737년에 나오는 노와 양녀의 5건의 혼인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앞 시기처럼 다양한 혼인 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노와 贖納婢, 비와 양인, 비와 사노, 비와 반노의 혼인이 각각 2건씩 있고, 노와 買納良妻婢의 혼인이 1건이 있다.

1747년은 중복된 노비를 제외하면 노와 양녀의 혼인 5건, 노와 매납비, 노와 代納婢의 혼인이 각각 1건이다. 노와 매납양처비의 혼인은 1743년과 중복되고, 노와 매납비의 혼인은 1건만 1743년과 중복되지 않는다. 1747년의 경우, 노와 양녀의 혼인과 비와 미상의 혼인은 1743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기부터 혼인 관계가 계속 이루어졌고, 1747년 당시 노와 양녀의 혼인이 76건으로 전 시기에 걸쳐서 노와 양녀의 혼인이 가장 많다. 1759년 역시 앞 시기와 중복되는 혼인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노와 양녀의 혼인은 8건이 있고 이외에 노와 반비, 비와 양인, 비와 반노의 혼인이 있다. 1795년 역시 노와 양녀, 비와 미상의 혼인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혼인 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18세기 초반의 다양한 혼인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비와 미상, 노와 양녀의 혼인만 주로 기재하였다. 이는 노와 양녀의 혼인은 노비를 증가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계속 기재하였지만, 그 외의 혼인관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그 소생은 모두 서원의 소유가 되었다.

1723년 옥산서원 노비안에는 院底秩, 良妻秩, 婢子秩로 나누어 노비를 기재하고 있는데, 소생노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구분을 하였다

고 보았다. 비의 경우 그 소생은 서원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노의 경우는 혼인 관계에 따라 서원 노비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노와 양녀의 혼인이 옥산서원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 노비안을 보면 서원노는 67명인데, 이 중 양녀와 혼인한 노는 11명이며, 노와 양녀의 소생이 20명이다. 나머지 노의 처는 모두 사비 또는 반비로 나타나며, 비와 혼인한 상대 또한 대체로 사노(또는 반노)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비안에는 노와 양녀의 혼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²⁰⁾ 이것은 도산서원 노비안에도 있는데, 1747년에는 양녀와 혼인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1759년에는 1747년과 같은 노비인데도 양녀와 혼인하였다고 기재되지 않은 노가 15건이 있는데, 이 역시 양녀와 혼인한 것으로 본다. 옥산서원의 경우에도 도산서원과 마찬가지로 노와 양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1663년부터 1762년까지 9건의 병산서원 노비안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표 4〉 17·18세기 병산서원 노비의 혼인관계

배우자 본인	良人	買得 奴婢	院奴 代納婢	班班奴婢	私奴婢	寺奴婢	內婢	京人奴	他院奴	院奴婢	합
院奴	15 (34.9%)	3 (7%)	1 (2.3%)	8 (18.6%)	7 (16.3%)	8 (18.6%)	1 (2.3%)				43 (100%)
院婢	5 (9.4%)	1 (1.9%)		4 (7.5%)	22 (41.5%)	5 (9.4%)		2 (3.8%)	3 (5.7%)	11 (20.8)	53 (100%)

병산서원에서도 다양한 혼인 관계가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혼인은 院婢와 私奴와의 혼인으로 22건(41.5%)이고, 그 다음은 院奴와 良人の 혼인으로 15건(34.9%)이다. 또한 여러 다양한 혼인 형태가 나타난다. 이는 도산서원의 혼인과 같은 양상이다. 서원비와 사노의 혼인과 노와 양녀와의 혼인은

20) 이수환, 앞의 책, 1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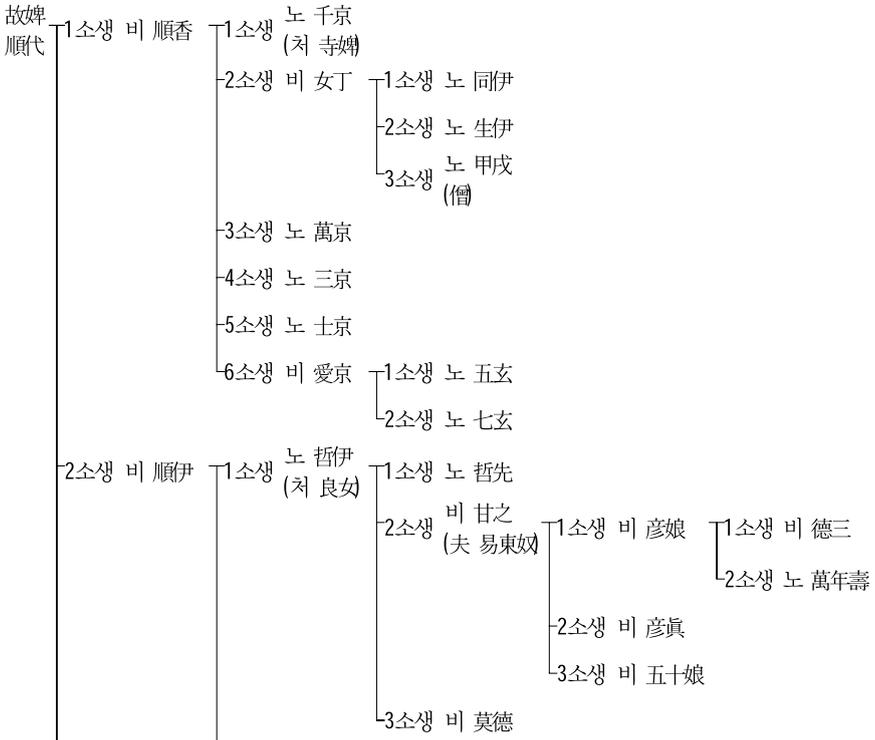
21) 이수환, 앞의 논문 137~139쪽. '〈표 7〉 17, 18세기 병산서원 노비의 혼인관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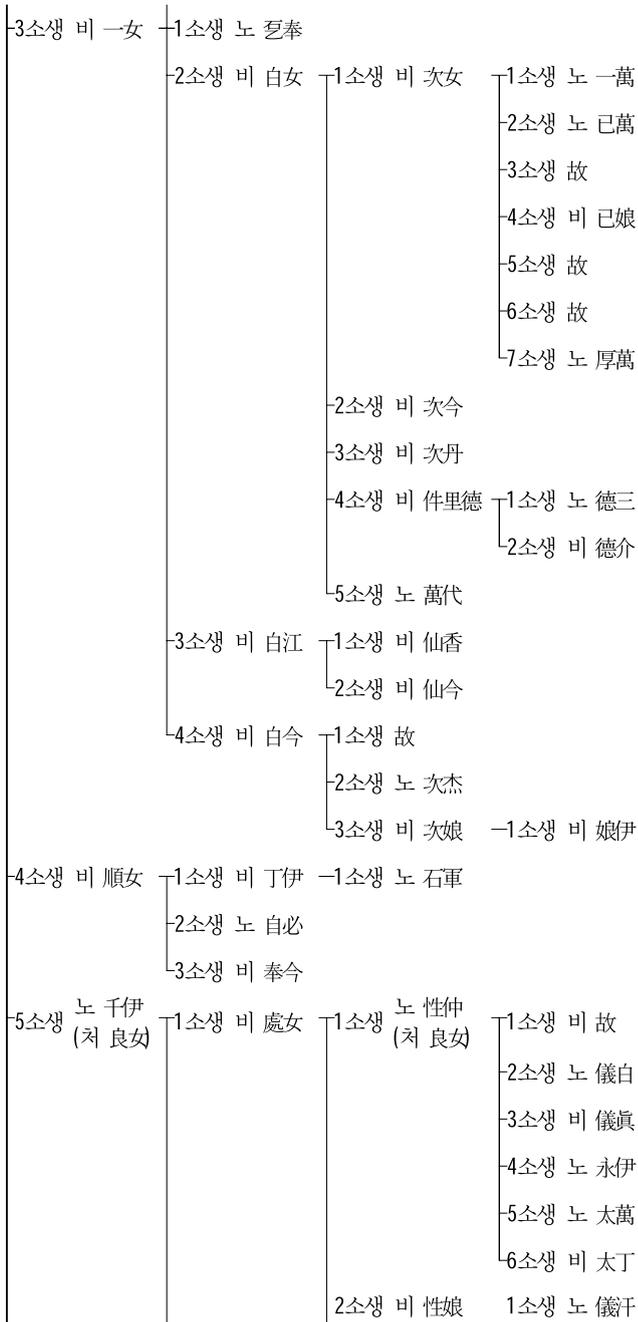
모두 서원에서 주관하였고 그 소생은 모두 서원 소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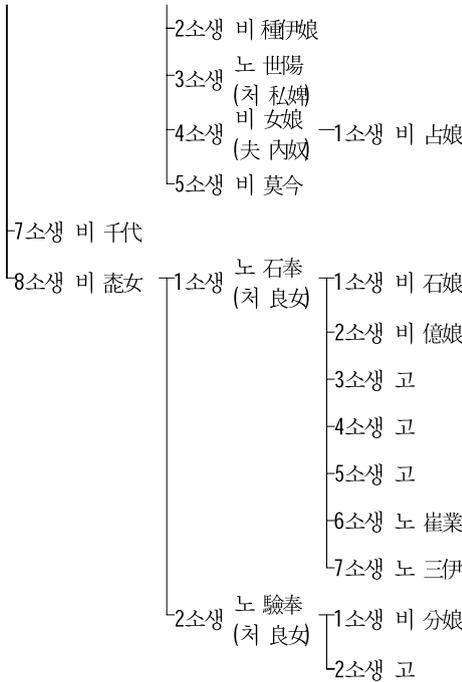
2. 노비 가족의 모습

그렇다면 이러한 혼인을 통해 만들어진 가족은 과연 서원 소속의 노비로 계속 남았는가, 아니면 해체의 과정을 겪었을까. 서원의 노비는 상속으로는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형태를 대체로 유지하였고, 소생이 도산서원의 노비라면 노비안에 계속 기재되었다. 1700년에서 1715년 사이에는 가족 단위로 노비를 기술했기 때문에 가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1737년부터는 지역 별로 기재하고 그 안에 다시 가족별로 기재하여서 가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 故婢 順代의 가족도







<그림 1>은 1700년부터 1747년에 이르기까지 6대에 걸친 故婢 順代의 가족도이다. 고비 순대는 노 1구, 비 7구를 낳았고, 7소생 비 천대를 제외한 나머지 소생의 후손이 나타난다.

여기에 나타나는 혼인 관계를 보면, 고비 순대의 1소생 노 천경은 寺婢와 혼인하였고, 5소생 노 천이는 양처와 혼인하였다. 노 천이의 4소생 노 만일은 班婢와 혼인했고 그 소생은 나타나지 않는다. 고비 순대 2소생 비 순이-1소생 노 철이는 양처와 혼인하였고 소생 역시 있다. 노 철이의 2소생 비 감지는 역동서원 노와 혼인하여 3명의 자녀를 생산하였고, 비 감지의 1소생 비 언량은 노와 비 각각 1구씩 낳았다. 고비 순대-6소생 비 구사리-3소생 노 세양은 사비와 혼인하였고 그 소생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비 구사리의 4소생 비 여량은 내노와 혼인하였으며, 비 1구를 낳았다. 고비 순대 8소생 비 말녀의 1소생 노 석봉과 2소생 노 힘봉은 모두 양녀와 혼인하여 자녀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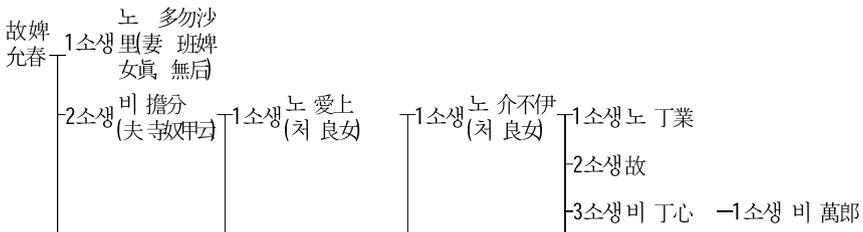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고비 순대의 1소생부터 4소생까지는 平海에 거주하고, 5소생부터 8소생까지는 영양에 거주하였다. 고비 순대의 1소생 비 순향의 후손들은 모두 영양에서 거주하였는데, 비 순녀의 2소생 비 여정의 후손은 온해에, 6소생 비 애경의 후손은 영양에 거주하였다. 고비 순대의 2소생 비 순이의 후손은 영양에, 비 순이의 2소생 비 감지의 후손도 역시 영양 읍내에 거주하였으며, 비 감지의 1소생 비 언랑의 후손은 안동 박곡에 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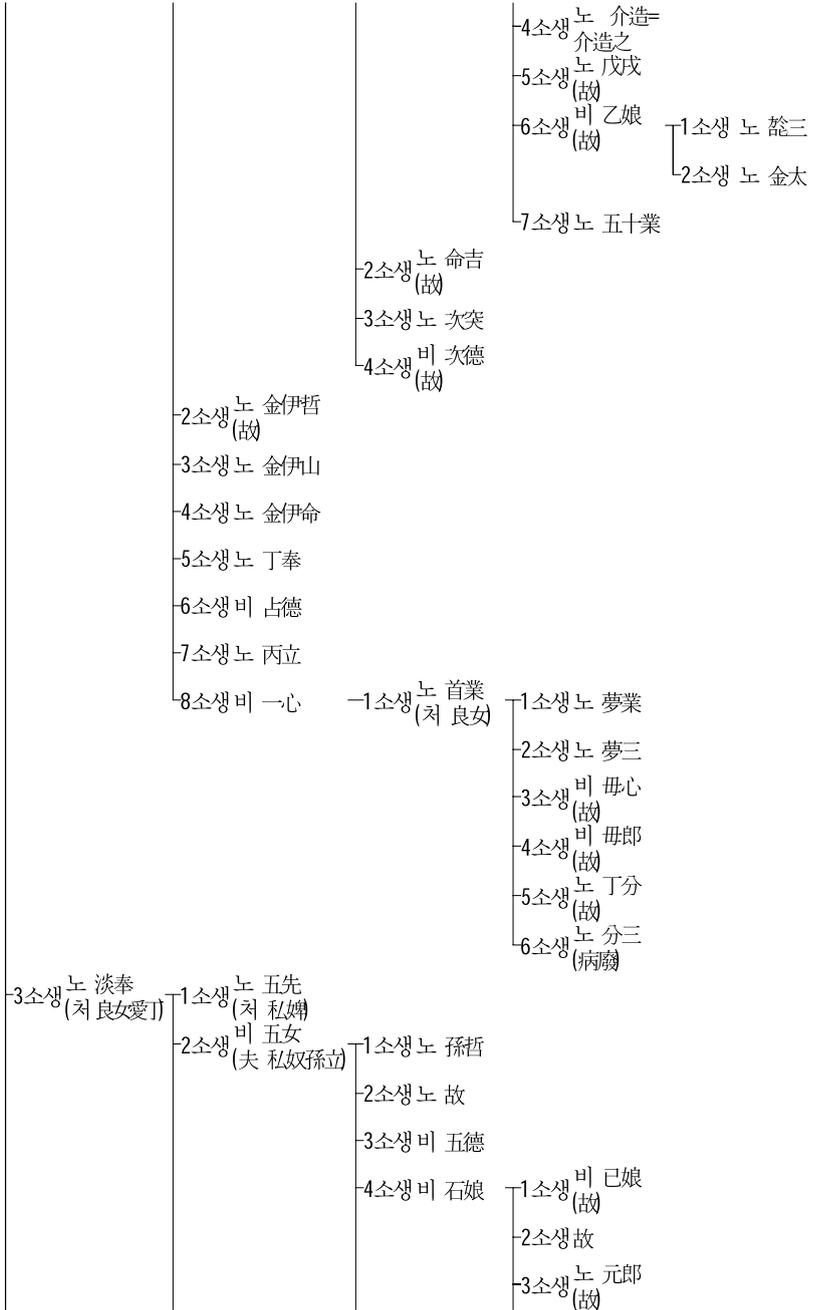
고비 순대의 3소생 비 일녀의 4명의 자녀들과 비 일녀의 손자녀와 증손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후손들이 영양에 거주하였다. 고비 순대의 4소생 비 순녀의 세 자녀는 모두 평해에 거주하였고, 1소생 비 정이의 1소생 노 석균 역시 같은 지역에 거주하였다. 고비 순대의 5소생 노 천이의 후손은 한 구를 제외하고 영양에 거주하였는데, 노 천이-1소생 비 처녀-1소생 노 성중-3소생 비 의진만 예안에 거주하였다. 고비 순대의 6소생 비 구사리의 후손은 모두 영양에 거주하였다. 고비 순대의 8소생 비 말녀의 후손 역시 모두 영양에 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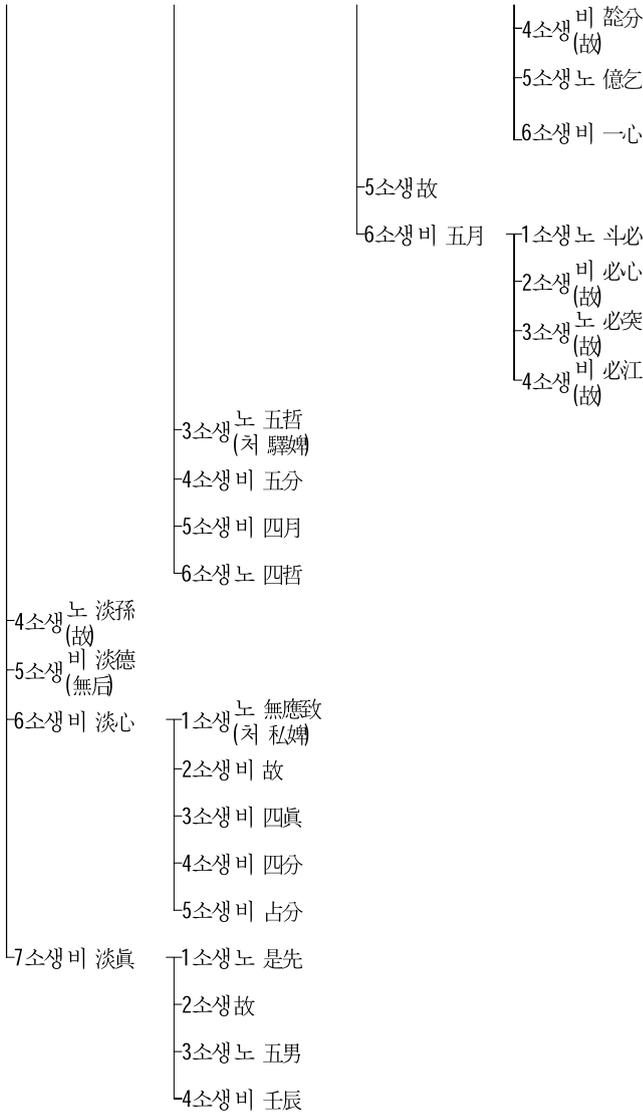
고비 순대의 후손들은 예안이나 안동과 같은 도산서원 근처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가 일부 보이지만, 대부분 영양과 평해에서 가족 단위로 대를 이어서 거주하였다.

다음으로 1708년에서 1795년까지 18세기 전체를 아우르는 노비의 가족은 어떠한지를 추적해보겠다.

〈그림 2〉 故婢 允春의 가족도







<그림 2>는 1708년부터 1795년에 이르기까지 6대에 걸친 故婢 允春의 가족도이다. 고비 윤춘은 노 3명, 비 4명을 낳았고, 1소생 노 다물사리, 4소생

노 답손, 5소생 비 답덕을 제외한 나머지 소생의 후손이 나타난다. 1소생과 5소생은 '無后'라고 기재하여 자녀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였고, 4소생은 이미 사망하였다고 표시하였다.

여기에 나타나는 혼인 관계를 보면, 고비 윤춘의 1소생 노 다물사리는 班婢 여진과 혼인하였고, 2소생 비 답분은 寺奴 甲云과 혼인하였으며, 3소생 노 답봉은 良女 애정과 혼인하였다. 6소생 비 답심과 7소생 비 답진은 혼인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의 소생이 나오며, 혼인 상대방은 같은 서원의 노로 보인다. 비 답분은 노 6명, 비 2명, 총 8명의 자녀를 낳았고, 비 답분의 1소생 노 애상은 양녀와 혼인하여 노 3명, 비 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노 애상의 1소생 노 개불이 역시 양녀와 혼인하였고 노 4명, 비 2명, 미상 1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중 3소생 비 정심은 비 만랑을 낳았고, 6소생 비 을랑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오지만 노 엷삼과 노 금태를 낳았다. 비 답분의 8소생 비 일심은 노 수업을 낳았는데, 노 수업은 양녀와 혼인하여 노 4명, 비 2명의 자녀를 낳았다. 고비 윤춘의 3소생 노 답봉의 경우 노 3명, 비 3명을 낳았는데, 1소생 노 오선은 私婢와 혼인하였고 이들의 소생은 나타나지 않는다. 2소생 비 오녀는 私奴 孫立과 혼인하였고, 노 2명, 비 3명, 미상 1명의 자녀를 두었다. 비 오녀의 4소생 비 석랑은 6명의 소생을 낳았고, 6소생 비 오월은 4명의 소생을 두었다. 노 답봉의 3소생 노 오철은 驛婢와 혼인하였는데, 소생이 나오지 않는다. 고비 윤춘의 6소생 비 답심은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중 1소생 노 무응치가 私婢와 혼인하였고, 그 소생 역시 나오지 않는다. 윤춘의 7소생 비 답진은 4명의 소생을 두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고비 윤춘의 1소생 노 다물사리는 봉화에 거주하였고, 2소생 비 답분, 3소생 노 답봉, 4소생 노 답손은 안동에 거주하였으며, 5소생 비 답덕과 6소생 비 답심은 예산, 7소생 비 답진은 榮川에 거주하였다. 2소생 비 답분의 소생과 그 후손들은 모두 안동에 거주하였고, 6소생 비 답심과 7소생 비 답진의 소생들은 모두 榮川에 거주하였다. 비 답심은 자신은 예산에 거주하였으나, 그 소생들은 모두 영천에 거주하였다. 3소생 노 답봉

의 소생은 거주지가 다양한데, 1소생 노 오선은 안동, 2소생 비 오녀는 예안, 3소생 노 오철은 봉화, 4소생 비 오분은 榮川, 5소생 비 사월은 예안, 6소생 노 사철은 院底에 거주하였고, 비 오녀로 연결되는 소생과 후손은 모두 예안에 거주하였다.

고비 윤춘의 후손들은 대체로 안동이나 예안에서 거주하였고 榮川과 봉화도 일부 나타난다. 노비의 가족은 대체로 비 위주로 가계가 이어졌고, 노로 가계가 이어지는 경우는 혼인 상대방이 양녀인 경우였다. 서원의 노비는 한 번 거주지가 정해지면 대를 이어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였고,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는 드물었다.

4. 거주지의 범위

앞에서 노비의 가족을 살펴볼 때, 대체로 한 거주지에서 대를 이어 계속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산서원에 소속된 노비들은 어떤 지역에서 주로 살았는지를 알아보자.

1746년(영조 22) 경상도순찰사가 도산서원에 발급해 준 완문을 살펴보면 도산서원 노비들은 18개의 지역에서 살았다.

4-1.

陶山書院完文. 右完文爲本院奴婢居在各邑者, 軍布雜役依前例勿侵事, 完文成給事. 丙寅三月日. 兼巡察使. 安東, 禮安, 榮川, 奉化, 豊基, 順興, 醴川, 尙州, 英陽, 眞寶, 靑松, 寧海, 盈德, 淸河, 興海, 慶州, 義興, 義城, 際.²²⁾

이 완문에서는 경상도 18개 고을에 있는 도산서원 노비들에게 군포와 잡역을 징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비 거주 지역을 제시하였다. 안동, 예안, 榮川, 봉화, 풍기, 순흥, 예천, 상주, 영양, 진보, 청송, 영해, 영덕, 청하, 흥해, 경주, 의흥, 의성 등 주로 경상도 북부와 동쪽 지역이다. 이 지역 외에도 도

22) 한국국학진흥원의 문서 번호는 KS-0069-2-53-00005이다.

산서원 노비안 등을 살펴보면 실제 거주지는 이보다 더 많다.

1619년의 원속안과 18세기의 노비안과 신흥안을 통해서 노비가 거주한 실제 거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18세기 도산서원 노비의 실제 거주지

년도	성별	지역	원	안	예	영	榮	예	상	의	창	합																
		지	저	동	안	해	양	川	천	주	성		녕															
1619	노	1	3	1	5	2	1	1	1	3	1	19																
	비	-	6	-	5	3	2	-	3	1	3	23																
	합	1	9	1	10	5	3	1	4	4	4	42																
년도	성별	지역	원	안	예	영	榮	예	상	의	봉	진	영	순	청	홍	평	울	강	청	용	선	영	충	청	미	합	
		지	저	동	안	해	양	川	천	주	성	화	보	덕	치	송	해	해	진	릉	하	궁	산	춘	주	원		상
1700	노	-	54	16	25	52	17	-	6	20	11	11	19	25	-	3	3	6	2	-	1	1	-	-	3	-	3	278
	비	-	34	8	30	32	18	-	2	10	6	10	14	15	2	1	1	9	6	2	-	2	1	1	1	1	1	207
	미상	-	-	-	-	-	-	-	-	-	-	-	-	2	-	-	-	-	-	2	-	-	-	-	-	-	-	4
	합	-	88	24	55	84	35	-	8	30	17	21	33	42	2	4	4	15	8	4	1	3	1	1	4	1	4	489
년도	성별	지역	원	안	예	영	榮	예	상	의	봉	진	영	순	청	홍	평	울	강	청	용	풍	합	제	미	합		
		지	저	동	안	해	양	川	천	주	성	화	보	덕	치	송	해	해	진	릉	하	궁	기	안	천		상	
1708	노	63	140	52	-	36	13	11	14	1	33	-	-	12	3	4	1	-	-	-	-	-	6	-	2	12	403	
	비	40	116	50	-	28	10	5	10	2	34	-	-	3	1	4	2	-	-	-	-	3	9	2	-	4	323	
	미상	1	17	4	-	14	1	-	-	-	-	-	-	-	1	-	-	-	-	-	-	1	3	-	-	-	47	
	합	104	273	106	-	78	24	16	24	3	72	-	-	15	4	9	3	-	-	-	-	4	18	2	2	16	773	
년도	성별	지역	원	안	예	영	榮	예	상	의	봉	진	영	순	청	홍	평	울	강	청	용	풍	한	경	제	미	합	
		지	저	동	안	해	양	川	천	주	성	화	보	덕	치	송	해	해	진	릉	하	기	양	산	천	상		
1715	노	8	123	55	45	67	11	8	2	2	52	22	25	-	4	1	2	5	3	-	1	3	-	2	-	24	465	
	비	6	111	43	46	56	19	6	2	1	47	14	25	-	3	-	3	4	5	1	-	2	1	-	1	18	414	
	미상	-	3	4	-	13	2	3	1	-	5	2	1	-	-	-	-	-	3	-	-	-	-	-	-	2	39	
	합	14	237	102	91	136	32	17	5	3	104	38	51	-	7	1	5	9	11	1	1	5	1	2	1	44	918	
년도	성별	지역	원	안	예	영	榮	예	상	의	봉	진	영	순	청	홍	평	울	강	청	용	풍	영	영	합			
		지	저	동	안	해	양	川	천	주	성	화	보	덕	치	송	해	해	진	릉	하	기	월	춘				
1737	노	-	2	-	20	12	-	-	6	-	2	-	-	-	-	-	-	3	-	-	-	-	-	-	45			
	비	-	3	-	24	14	-	-	2	-	2	-	-	-	-	-	-	3	2	-	-	-	-	-	50			
	합	-	5	-	44	26	-	-	8	-	4	-	-	-	-	-	-	6	2	-	-	-	-	-	95			
년도	성별	지역	원	안	예	영	榮	예	상	의	봉	진	영	순	청	홍	평	울	강	청	용	풍	영	영	합			
		지	저	동	안	해	양	川	천	주	성	화	보	덕	치	송	해	해	진	릉	하	기	월	춘				
1743	노	2	152	85	70	52	4	4	7	7	12	23	14	-	2	3	8	18	4	7	1	3	-	1	479			
	비	3	151	76	67	49	3	9	5	11	11	32	17	-	1	2	6	21	8	5	-	2	2	-	481			
	미상	-	41	30	8	15	1	3	-	1	4	5	-	-	-	-	-	-	3	-	-	-	-	-	111			
	합	5	344	191	145	116	8	16	12	19	27	60	31	-	3	5	14	39	12	15	1	5	2	1	10			

지역 년도	성별	원 저	안 동	예 안	영 해	영 양	榮 川	예 천	상 주	의 성	봉 화	진 보	영 덕	永 昌	순 흥	청 송	홍 해	평 해	울 진	강 릉	청 하	풍 기	영 월	영 춘	선 산	합
1747	노	2	193	89	61	39	7	6	3	6	16	29	21	-	2	3	4	20	5	8	1	-	-	1	1	517
	비	6	206	94	73	37	5	17	4	13	12	32	15	1	1	2	8	24	10	6	-	-	2	-	1	569
	미상	-	42	27	21	8	12	-	-	-	1	5	-	-	-	-	-	-	-	3	-	-	-	-	-	119
	합	8	441	210	155	84	24	23	7	19	29	66	36	1	3	5	12	44	15	17	1	-	2	1	2	1,247
1759	노	52	129	130	1	2	8	1	-	2	5	2	1	1	-	-	1	-	2	1	-	1	1	-	-	340
	비	39	148	100	-	2	9	4	-	-	6	-	-	-	1	-	-	-	3	2	-	1	-	-	-	315
	미상	19	20	24	-	-	2	-	-	-	1	-	-	-	1	-	-	-	-	-	-	-	-	-	-	67
	합	110	297	254	1	4	19	5	-	2	12	2	1	1	2	-	1	-	5	3	-	2	1	-	-	722
1765	노	-	144	20	-	48	65	13	-	-	17	59	366													
	비	-	155	27	-	43	60	5	-	-	19	34	343													
	합	-	299	47	-	91	125	18	-	-	36	93	709													
1771	노	-	214	63	74	56	82	22	-	-	27	79	617													
	비	-	226	96	44	52	81	18	-	-	23	43	583													
	미상	-	1	1	-	-	-	-	-	-	-	-	2													
	합	-	441	160	118	108	163	40	-	-	50	122	1,202													
1795	노	92	142	179	4	7	9	2	1	-	67	1	5	2	1	-	-	-	2	1	1	1	-	-	-	516
	비	89	132	160	3	9	16	3	-	-	73	-	4	1	1	2	2	2	-	-	-	-	-	-	-	497
	미상	1	1	-	-	-	-	-	-	-	-	-	-	-	-	-	-	-	-	-	-	-	-	-	-	2
	합	182	275	339	7	16	25	5	1	-	140	1	9	3	2	2	2	2	2	2	1	1	1	-	-	1,015
1798 이후	노	79	42	2	48	32	35	5	1	7	8	5	18	12	10	4	-	4	-	-	-	-	-	-	-	312
	비	50	43	-	56	20	22	5	-	5	14	8	13	5	4	3	1	2	1	3	-	-	-	-	-	255
	미상	1	-	-	-	-	-	-	-	-	-	-	-	-	-	-	-	-	-	-	-	-	-	-	-	1
	합	130	85	2	104	52	27	10	1	12	22	13	31	17	14	7	1	6	1	3	-	-	-	-	-	568

1619년 원속안에는 개인의 정보 아래에 거주지를 기재하였다. 거주지는 원저, 안동, 예안, 영해, 榮川, 예천, 상주, 의성, 창녕 등 9개 지역이 있다. 영해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안동 9명, 영양 5명, 상주와 의성, 창녕에

각각 4명씩, 예천과 예안 원저에 각각 1명씩 있다. 창녕은 현재 경남 지역으로 이후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들이 나오지 않는다.

1700년에서 1715년까지는 지역 구분 없이 노비를 기재하여서 개인의 정보 아래에 있는 거주지를 살펴보았다. 1700년에는 모두 23개 지역이 나온다. 안동이 8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영양 84명, 영해 55명, 永川 42명, 榮川 35명, 영덕 33명, 의성 30명이다. 강원도 강릉, 울진, 평해 등에도 도산서원 노비가 있고, 충청도의 영춘, 충주, 청원 등의 지역에도 있다. 충주의 노비 4명과 청원의 노비 1명은 이후에는 나오지 않고, 영춘은 1747년에 1명이 더 있다.

1708년에는 17개 지역이 나온다. 안동에 거주하는 노비가 27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예안 106명, 원저 104명, 영양 78명, 봉화 72명 등이다. 1700년과 비교하면 영해, 진보, 영덕의 노비와 강원도 지역의 노비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남아 있는 노비안의 한계 때문일 것이고 실제로는 이 지역에 노비가 계속 거주하였다. 왜냐하면 1715년 노비안에는 이 지역에 노비가 거주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함안과 제천에 각각 2명씩 노비가 있는데, 함안은 경남 지역이고 제천은 충청도 지역이다. 제천은 1715년 노비안에 나오지만, 함안은 나오지 않는다.

1715년에는 23개 지역이 나온다. 안동이 237명으로 가장 많고, 영양 136명, 봉화 104명, 예안 102명 등이다. 1708년과 비교하면 永川의 노비가 나오지 않는데, 1747년에 1명이 나온다. 또한 1708년에 나오지 않았던 진보, 영덕 등과 강원도 지역의 노비가 다시 나오고, 한양에 거주하는 비 1명과 경산에 거주하는 노 2명이 있다.

1737년부터 지역별로 노비를 나누어서 기재하였는데, 영해와 영양 부분만 남아 있어서 내용이 다른 노비안에 비해 소략하다. 노비안에서 지역별로 노비를 기재한 것은 서원에서 노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며,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모의 거주지에 노비 가족을 모두 기재하였다.²³⁾ 그리고 자녀가 사는 거주지는 이름과 나이 밑에 따로 언급하였

23) 이수환, 앞의 책, 232쪽.

다. 1737년 노비의 실제 거주 지역과 노비수를 살펴보면 영해 44명, 영양 26명, 의성 8명, 평해 6명, 안동 5명, 진보 4명, 울진 2명 순으로 대체로 경상도 동쪽 지역이 많았다.

1743년에는 英陽 眞寶 寧海 朴谷 佳丘 上里 北面으로 나누어서 노비를 기재하였다. 여기에서 박곡, 가구, 상리는 안동 지역이고, 북면은 예안 지역이다. 예안의 경우, 신공을 내지 않는 院底를 제외하고 의동, 서면, 북면, 서북면으로 나누었고, 그 외에도 노비안에 읍내와 東上面 浮浦 邑內面 川前 등 예안의 거의 전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들이 나온다. 안동은 내성, 박곡, 상리, 가구, 감천, 풍산 등으로 나누어서 노비를 관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북후면 道津, 서후면 二松川, 풍산면 水谷, 풍천면 佳谷, 임하면 松川, 임동면 馬嶺 등 안동의 거의 전 지역이 나타난다. 실제 거주 지역은 22개 지역이다. 안동이 344명으로 가장 많고, 예안 191명, 영해 145명, 영양 116명, 진보 60명, 평해 39명 순이고, 부모의 거주지에 자녀도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다. 강원도 영월에 비 2명과 영춘 지역에 노 1명이 있다.

1747년은 1743년과 마찬가지로 英陽 眞寶 寧海 朴谷 佳丘 上里 北面으로 나누어서 노비를 기재하였고, 실제 거주 지역은 23개 지역이다. 안동이 441명으로 가장 많고, 예안 210명, 영해 155명, 영양 84명, 진보 66명, 평해 44명 순이다. 1743년에 비해 전체 노비수는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도 대체적으로 노비수가 늘어났으며, 선산의 노비가 2명 증가하였다.

1759년은 佳丘 上里 北面 西面 宜東 院底 乃城 甘泉 榮川으로 나누어서 노비를 기재하였다. 院底가 하나의 범위로 나온 것은 남아 있는 노비안 중에서는 1759년 노비안이 처음이고 이후로는 구분되어서 나온다. 院底는 도산서원 바로 옆에 있는 서원촌으로, 일종의 제역촌이다. 서원촌은 국가의 각종 잡역과 환곡 등을 면제받는 대신에 서원에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했는데, 대체로 서원 쪽이 부담이 훨씬 덜했을 것이라고 한다.²⁴⁾ 1759년 노비들이 실제로 거주한 지역은 18개이다. 안동이 29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예

24)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464~473쪽.

안 254명, 원저 110명 순이다. 예안과 원저 노비가 월등히 많고, 다른 지역의 노비는 상대적으로 적다.

1765년과 1771-1781년 신공안에는 실제로 신공을 거둔 지역의 노비가 있다. 1765년에는 榮川, 奉化, 乃城, 豐山, 禮泉, 朴谷, 上里, 英陽, 眞寶, 佳丘, 宜東 등 11개 지역에서 신공을 거두었고, 1771-1781년에는 1765년 지역과 함께 西面, 北面, 西北面, 寧海, 甘泉 등 16개 지역에서 거두었다. 1765년에는 안동이 299명으로 가장 많고, 榮川 125명, 진보 93명, 영양 91명, 예안 47명, 봉화 36명, 예천 18명 순이다. 1771-1781년에는 안동이 441명으로 가장 많고, 榮川 163명, 예안 160명, 진보 122명, 영해 118명, 영양 108명, 봉화 50명, 예천 40명 순이다. 또한 신공안에 나타나지 않는 순흥, 의성 등의 노비들은 가까운 지역이나 신공을 거두기 쉬운 지역으로 합쳐서 파악하였다고 한다.²⁵⁾

1795년에는 奉化, 佳丘, 上里, 北面, 西面, 宜東, 院底로 나누어서 노비를 기재하였다. 가구와 상리는 안동으로, 북면과 서면, 의동은 예안으로, 원저는 원저로 따로 파악하였다. 예안이 33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안동 275명, 원저 182명, 봉화 140명 등이다. 원저의 노비는 앞 시기보다 70여 명이 증가하였고, 봉화의 경우도 증가하였다. 삼척과 문경에 거주하는 노가 각각 1명씩 나오는데, 뒤의 노비안에는 나오지 않는다.

1798년 이후 노비안은 노비 개인의 인적사항 아래에 지역을 기재하였는데, 상리나 북면 등의 지명이 아닌 안동과 예안 등으로 표현하였다. 실제 거주 지역은 19개 지역이고, 원저 130명, 영해 104명, 안동 85명, 영양 52명, 순흥 31명, 榮川 27명, 봉화 22명 등이다. 청하의 노비가 14명으로 앞의 시기보다 훨씬 늘어났고, 대구와 울산, 경주에도 노비가 거주하였다.

이를 통해 주로 경상도 북부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 도산서원의 노비가 거주하였고, 강원도와 충청도, 경남 지역, 심지어 한양까지 도산서원 노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안과 안동의 경우 노비의 수가 많아 그 안의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노비를 파악하였고, 안동과 예안, 원저가 도산서원

25) 이수환, 앞의 책, 232쪽.

한편 특별한 거주지에 사는 노비도 있다. 1743년 영양 노 禮奉의 3소생 노 二金은 靑松梨店, 7소생 노 莫同은 靑松沙器店에 거주하면서 서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을 조달하였다.

1747년 영해의 비 士月の 네 자녀는 모두 봉화관청에서 거주하였는데, 원래 거주하였던 지역은 나오지 않고 봉화관청으로 移居하였다는 기록만 있다. 이 노비들은 봉화관청의 일을 맡았고, 신공 면제의 구체적인 사유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공 면제 대상이 된 것 같다.

사찰에 거주하는 노비도 있다. 이들은 대체로 승려가 된 것으로, '爲僧', '僧', '僧奴' 등으로 표시하였고, 승명도 받았다. 1715년 비 老音伊의 2소생 노 一先은 봉화 豪傑岩에 거주하였고, 고비 尙春 6소생 노 世建의 1소생 노 戒先은 풍기 鳴鳳寺에 거주하였다. 1743년 진보의 고비 愛女의 5소생 노 驗龍은 진보 水晶寺, 가구의 비 二眞의 3소생 노 銀一은 청량산 草芳寺, 가구의 비 甘德의 5소생 노 碧崇은 淸涼寺에 거주하였고, 1747년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 1743년 북면의 비 二分의 6소생 노 九立은 예안 月瀾寺에 거주하였고, 1747년과 1759년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1747년 영양의 비 千女의 6소생 노 業伊과, 1765년 박곡의 승노 春突, 1771-1781년 영천 승노 江伊, 1795년 상리 고비 乙娘 4소생 노 所大도 월란사에 거주하였다. 또한 1795년 비 占大 4소생 노 後邑氏가 靑松 寶江寺에 거주하였고, 노 後邑氏의 1소생 노 覺心도 승려가 되어서 보강사에 거주하였다.

서원의 노비가 사찰에 들어간 이유는 서원과 사찰의 관계 때문이다. 사찰은 조선초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것만 유지되었고, 그렇지 못한 것은 훼손되어 향교나 역 등의 관의 시설이나 사족들의 서당이나 재사 등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찰은 계속 존립하기 위하여 강력한 사족들과 연계하였고, 서원 역시 사찰의 여러 자원을 흡수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서원에 속한 사찰을 屬寺라고 한다.

소수서원은 舊宿水寺 자리에 건립하였는데, 이는 이미 폐사화된 숙수사를 소유하고 있던 승려가 그 터를 서원건립의 부지로 납부하였기 때문이다. 임

고서원은 開寧縣 直指寺, 河陽縣 環城寺, 義興縣 麟角寺, 永川郡 雲孚寺 등 4개의 사찰을 소속시켜서 이 사찰들의 전답과 地稅를 받았다. 옥산서원은 창건과 동시에 定惠寺를 옥산서원의 수호사찰로 삼아서 정혜사에서 이언적의 문집판각 보관, 서원에 현물을 납부하는 일 등을 맡았다.²⁷⁾ 그렇다면 도산서원의 경우도 屬寺가 있었을 것이고, 노비안에 언급되어 있는 월란사, 초방사, 수정사, 명봉사 등이 도산서원의 속사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따라서 도산서원의 노비는 屬寺의 승려가 되어서 서원을 위한 일들을 하였을 것이다.

18세기 도산서원의 노비들은 주로 경상도 북부 지역과 동해안에 거주하였고, 강원도에도 있었다. 특히 도산서원이 있는 지역인 예안과 안동 거의 전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었다. 또한 특별한 곳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는데, 관청이나 사찰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도산서원에 신공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5. 맺음말

이 논문은 도산서원의 고문서 중 17세기의 院贖案 1건, 18세기의 奴婢案 9건과 身貢案 2건을 통해 노비의 혼인과 가족, 거주 지역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17·18세기 전 시기에 비와 미상의 혼인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서 미상은 같은 서원노일 것이다. 비가 자신과 다른 신분이나 다른 소속의 노와 혼인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를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노와 양녀의 혼인인데, 서원에서는 노비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비와 私奴, 노와 私婢의 혼인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비와 사노의 소생은 노비안에 나오지만 노와 사비의 소생은 노비안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혼인 방식은 서원과 지방 사족의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둘째, 1700년에서 1715년 사이에는 다양한 혼인 관계가 나타난다. 여기에

27) 서원과 사찰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수환, 앞의 책, 64~99쪽을 참고하였다.

서 나타나는 班奴婢는 私奴婢의 다른 명칭이고 寺奴婢는 지방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 驛奴婢는 驛에 소속된 공노비, 內奴婢는 내수사에 소속된 공노비이다. 또한 다른 서원 노비와의 혼인도 나오는데, 대부분 역동서원의 노비와 혼인하였다. 買得奴婢, 贖納婢 등의 혼인관계와 관리와의 혼인도 나온다. 이처럼 다양한 혼인 관계가 나오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비는 누구와 혼인하든지 그 소생은 반드시 서원의 소유가 되었고, 노의 경우는 혼인 대상에 따라 그 소생이 서원의 소유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셋째, 1700년에서 1747년, 1708년에서 1795년에 걸쳐진 노비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았다. 도산서원과 가까운 안동에 사는 노비든지, 영양이나 평해 등 외방에 사는 노비에 관계없이 한 지역에서 대를 이어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부모가 거주한 지역에 살아서 가족의 해체나 분열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비를 중심으로 가족을 기재하였고, 노의 경우는 양녀와 혼인하였을 때에 대부분 가족이 함께 나타난다.

넷째, 도산서원 노비의 거주 지역은 주로 경상도 북부 지역과 동해안이고 충청도, 강원도 등에도 도산서원 노비가 나온다. 예안과 안동에는 그 안의 거의 전 지역에 노비가 거주하였다. 또한 관청이나 사찰에 거주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도산서원에 신공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산서원은 예안과 안동 일대 뿐만 아니라, 강원도나 충청도의 노비에게 신공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18세기의 도산서원 노비의 혼인과 가족관계, 거주 지역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미비한 부분은 19세기의 노비안들을 함께 분석해본다면, 도산서원에 속한 노비의 존재양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경국대전』. 도산서원 奴婢案 身貢案 院屬案 등 도산서원고문서(한국국학진흥원 기탁자료), 『朝鮮王朝實錄』
『書院謄錄』. 박선이·송수경 옮김, 『국역 서원등록』 1~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5.

2. 저서 및 논문

- 金容晚 『朝鮮時代 私奴婢研究』, 集文堂, 1997.
文叔子, 「朝鮮後期 書院奴婢의 身分의 性格-陶山書院 古文書를 통한 검토-」, 『退溪學研究』 11, 1997.
閔丙河, 「조선서원의 경제 구조」, 『대동문화연구』 5, 1968.
朴賢淳 「16~17세기 禮安縣 士族社會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박현순, 「17세기 도산서원陶山書院과 예안향교禮安鄉校의 비교 검토」, 『안동학연구』 11, 2012.
손병규, 「조선후기 경주옥산서원의 노비경영」, 『泰東古典研究』 17, 2000.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李尙賢,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17세기 嶺南士族 動向의 一端-」, 『北岳史論』 8, 2001.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이수환, 「조선시대 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영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丁世桓 「朝鮮後期 安東 陶山書院의 經濟基盤 研究: 陶山書院古文書의 分析을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정재훈, 「조선시대 서원의 발전과 지역적 특징-도산서원陶山書院과 석실서원石室書院-」, 『안동학연구』 11, 2012.
崔淳姬 「朝鮮時代 中期以後 田民賣買의 實相 陶山書院所藏 文記(明文)를 中心으로-」, 『중재 장충식박사 화갑기념논총-역사학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2.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기획,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기획,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기획,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기획,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새물결
2015.

The Marital and Familial Forms of Dosan Seowon Slaves in the 18th Century

Kim Young Na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marital and familial forms, as well as the residential areas of slaves through the ancient documents of the Dosan Seowon, including a 17th century government slave register, nine 18th century slave registers, and two labor remission fee registers.

Marriages between female seowon slaves and male seowon slaves were the most common form of marriage found among Dosan Seowon slaves, since it was the most convenient way for the seowon to increase the number of slaves in their possession. The second most common were marriages between male slaves and freeborn commoner women. Similarly, these types of marriages were actively encouraged by the seowon to increase the number of slaves. There were also many instances of marriages between female (seowon-owned) slaves and privately-owned male slaves, and male (seowon-owned) slaves and privately owned female slaves. The offspring of the former were claimed by the seowon; while the ownerships of those of the latter are not mentioned in the slave registers of the seowon. The registers also record marriages that involve privately-owned slaves, government-owned slaves, post station slaves, slaves owned by the royal family, slaves owned by other seowons, acquired slaves, escape from the slaves etc. A common tendency found among the various forms of marriage is that the offspring of a female slave that belonged to the Dosan Seowon were also owned by the seowon, regardless of the groom; while the offspring of the seowon's male slave could or could not be owned by the seowon,

depending on the bride. The seowon sought ways to increase the number of its slaves. The most effective among these were marrying its male slaves with freeborn commoner women.

Most slaves owned by the Dosan Seowon had resided in fixed areas for many generations. Thus, dismantled or divided families were rare among the Dosan Seowon slaves. In most cases, slave families were recorded on the slave register, centering around the female slave. With male slaves, the register mostly records the offspring between male slaves and freeborn commoner women. Those between male slaves and government- or privately-owned slaves are not mentioned.

The slaves owned by the Dosan Seowon mostly resided in the Northern regions of Gyeongsang and the East Coast, the Southern regions of Gyeongsang and Chungcheong, and even Gangwon. In particular, Dosan Seowon slaves resided in all areas of Yeon and Andong. There were also exceptional cases where they lived in government offices or temples. These slaves most likely did not pay labor remission fees to the Dosan Seowon. The Seowon possessed influence over the areas surrounding Yeon and Andong. We can also conjecture that their influence stretched to other regions in Gangwon and Chuncheong, far from Yeon, that would have enabled them to collect labor remission fees from the slaves residing in these areas.

This paper has thus explored the marital and familial relationships, and residential areas of the Dosan Seowon slaves. We believe that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resulting from lack of data can be resolved by including an analysis of slave registers in the 19th century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lives of slaves that belonged to the Dosan Seowon.

Keywords : Dosan Seowon(陶山書院), Slaves, Marriages, Families, Residence

이 논문은 2018년 6월 3일 투고 완료.

2018년 6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완료.

2018년 6월 25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서 게재 결정.

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이병훈**

-
- I. 머리말
 - II. 16~17세기 초반 원사의 건립 과정과 기능의 변화
 - III. 17~18세기 원사의 남설과 정비
 - IV. 19세기 원사의 복설과 훼손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후기 영남지역 서원과 사우의 건립 현황을 통시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영남지역에서는 임진왜란 이전까지 서원의 건립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곳에 제향된 인물들도 사표가 될 만한 인사들이었기에 건립이후 대부분 사액을 받았다. 서원의 건립은 갑술환국이전까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특히 숙종대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사우의 건립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원 남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첩설과 신설에 대한 금령이 내려진 후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안동권에서 서원의 건립이 많았으며, 상주, 진주, 성주권은 서원과 사우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하지만 경주권은 서원보다는 사우의 건립이 두드러졌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주권에서 이연적 이래로 두드러진 인물이나, 학파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동권에서는 퇴계 이래로 그의 제자와 재전제자 등이 영남학파를 주도하였고, 상주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주권은 남명 이래로 그의 제자와 문인 외에도 논로계 인사들을 대거 배향하면서 서원의 건립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주권은 한강과 여헌 및 그들의 문인들이 대거 배향되었다.

아울러 사우에는 임당 당시 유공자와 문중 원사가 건립되던 18세기 이래로 금령을 피하여 각 가문의 선조를 배향하는 가운데 사족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우의 건립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CDM-1240004).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세기 말 대원군의 훼철령이 있기 전까지 계속되었으며, 훼철령 이후에도 적은 수이지만 원사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영남지역에서 선조를 제향하는 원사의 건립이 활발한 것은 문벌 의식이 그만큼 강하였음을 나타낸다.

키워드 : 원사, 당쟁, 영남, 사액, 훼철령

I. 머리말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설교육교화기관이자 향촌지배기구인 서원은 그 건립과정과 기능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다.¹⁾ 하지만 사우에 대한 연구는 서원 속에 사우를 포함시켜 동일한 부류로 취급하면서 院祠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다.²⁾ 그러나 본래의 건립목적이나 기능, 비중이 달랐던 양자가 동일한 부류로 인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더욱 확실한 조선시대 원사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영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원사우가 분포하고 있으며, 관련자료 역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그 결과 영남 내 원사에 대한 연구는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³⁾ 하지만 영남지역 원사의 성격

1) 고석규, 「조선 서원 사우에 대한 연구의 추이와 성격」, 『외대사학』 1,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연구소, 1987 ; 정만조, 「최근의 서원연구 동향에 관한 검토」, 『조선시대 서원 연구』, 집문당, 1997 ; 정만조, 「한국 서원의 연구현황과 전망」, 『한국의 서원과 학맥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이해준, 「서원연구와 문중서원」,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이수환, 「2000년 이후 한국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등이 참고가 된다.

2) 사우에 대한 명칭의 구별은 각종 사료의 명칭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17세기이후 서원과 사우가 남설되면서 양자의 구별이 모호해져서 명칭이외에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우에서 陞院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서원의 격이 우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정만조, 「17~18世紀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 『韓國史論』 2, 서울대, 1975, p.218). 이러한 서원과 사우를 분리하여 검토한 것으로는 전용우의 「朝鮮朝 書院祠宇에 對한 一考察」(『湖西史學』 13, 1985)과 박주의 「朝鮮 肅宗朝의 祠宇濫設에 대한 考察」(『韓國史論』 6, 서울대, 1980)이 참고 된다. 본고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는 서원과 사우의 약칭임을 밝혀둔다.

3) 대표적인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2001 ; 강상택, 『朝鮮後期 慶南地域

을 밝히는데 기본이 되는 전체 원사의 건립 현황과 시기별·지역별 건립양상 및 제향인물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없다. 다만 전국에 건립된 원사의 건립 과정을 파악하면서 부분적으로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추이를 언급하거나 특정시기만을 살펴보았을 뿐이다.

실제 영남 전역을 대상으로 전체 건립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⁴⁾ 그 이유는 각 처에 산재한 자료들의 수집과 정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소략하여 상당수의 원사가 구체적 건립 사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 실태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기존 자료들의 정리와 분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립추이를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연구를 보완한다는 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더욱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각 개별원사의 내부조직과 운영 실태까지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는 검토할 내용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원사가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건립 추이만 진행하였다. 이상의 통계적 분석방법들은 각 원사의 내부사정을 정확히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석방법을 통하여 대체적인 실태는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16~17세기 초반 원사의 건립 과정과 기능 변화

조선시대 서원은 先賢을 제향하는 祠宇와 자제를 교육하는 書齋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白雲洞書院이 그 시초이다. 사우는 신라고려시대부터 건립되어 祠廟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⁵⁾ 사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서원

의 書院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4 등이 있다.

4)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 전용우, 앞의 논문, 1985.

5) 류홍열, 「朝鮮祠廟發生에 對한 考察」, 『震檀學報』 5, 1936.

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중엽 이래 더욱 심해져서 원사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건립된 원사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료의 산만과 끊임없이 置廢가 거듭되는 유명무명의 원사를 전부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사 연구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자료들을 통하여 대체적인 경향과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⁶⁾ 이들 자료를 정리하면 조선시대 원사는 전국적으로 1,700여 개소가 건립되었으며,⁷⁾ 영남지역은 747개 소로 가장 많은 원사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 다음의 <표 1>은 영남 내에 건립된 원사를 건립추세에 따라 6개의 시기외⁹⁾ 5개의 권역으로¹⁰⁾ 구분한 것이며, <표 2>는 각 왕대에 사액된 원사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6) 여기에서 말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俎豆錄』(규1134), 『書院可攷』(규136), 『列邑院宇事蹟』(아세아문화사(영인본)), 『書院瞻錄』(규12905), 『增補文獻備考』學校考, 『東儒書院叢錄(乾坤)』(『書院誌叢書』1, 민족문화사(영인본), 1987), 『典故大方』(강효석, 아세아문화사(영인본), 1975), 『道內各邑書院毀撤查括成冊草』(『栖碧外史海外蒐佚本』15, 李佑成 編 亞細亞文化社(영인본), 1990), 『書院錄』(영남대도서관(古南 370.911)), 『慶尙道邑誌』學校條 『嶺南邑誌』學校條 『嶺南誌』, 鄭源鎬(보경문화사(영인본), 1985).

7) 金奎洛, 『雲下見聞錄』, 『崇學校撤祠院激厲土趨』에서 당시 원사의 총수가 1,700이라고 했는데, 이는 윤희면(『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p.84)의 조사에서 나타난 1,721개소와 비슷하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건립된 원사의 수를 정확히 알기는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1,700개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8) 여기에 나타난 수치는 필자가 참고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원사의 빈번한 치폐로 인하여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9) 전용우는 시창기(중종-명종), 발전1기(선조-효종), 발전2기(현종-숙종17), 발전3기(서원-숙종18-39, 사우-숙종18-영조16), 쇠퇴기(숙종40-영조16), 정비기(영조17-현종7)로 나누고 있다(전용우, 앞의 논문, 1985, p.13). 민병하는 시창기(중종-명종), 발전기(선조-숙종), 정비기(경종-고종)으로 나누었고(민병하, 『朝鮮時代의 書院政策考』 『成大論文集』15, 1970, p.174), 정만조는 봉당대치기(광해-효종), 봉당격화기(현종-경종), 탕평기(영조-정조)로 분류하였다(정만조, 앞의 논문, 1975, p.267). 이러한 시기구분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본고에서는 시창기를 임진왜란 이전까지로 보고 숙종대도 환국별로 세분하였다. 숙종40-영조16년의 기간을 쇠퇴기가 아닌 정비기로 보고, 이후 영조17-철종대 까지를 복설기로 보았다.

10) 안동, 상주, 경주, 성주, 진주권은 『경국대전』(외관직)을 참조하여 해당 도호부의 속현들을 범위로 했다. 도호부별 속현의 수는 안동(15), 상주(8), 경주(19), 성주(4), 진주(19)이다.

영남지역에서 원사의 건립이 많은 것은 건립과 운영의 주체인 사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음을 의미한다. 15세기 이래로 영남 내 각 지역별로 이어져온 사람의 학통은 16세기 이황과 조식에 이르러 경상 상·하도¹¹⁾를 중심으로 퇴계학과와 남명학파를 형성시켰다. 이후 이들의 문인과 손제자들을 통하여 경상도 전역으로 확대된 두 학파는 훈인을 통한 혈연, 내·외처향의 지연, 동일 학통을 가진 학연으로 복잡하게 확대되었다. 이후 경상도내에서의 원사건립은 이들 학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표 1〉 영남내 시대별 건립현황 구분

지역	시기	시 창 기		발 전 기					남 설 기					정 비 기			복 설 기			혜철기	미 상	합 계			
		중 종	명 종	선 전	조 후	광 해	인 조	효 종	현 종	숙 종					경 종	영 전	조 후	정 조	순 조				현 종	첵 종	고 종
										①	②	③	④	⑤											
안동권	원	(1)	(1)	1 (5)	3 (1)	6 (4)	2 (3)	3 (1)	7	2	7	1	11	1	2	2	3	10 (2)	8	3				31	103 (15)
	사	2				1	1		1	1		1	3		1	2	1		2	1	1			51	69
상주권	원			(2)	(1)		5 (2)	1 (1)	2 (1)	1	1	3	8 (1)	1 (1)			5	1	1					19	48 (9)
	사			1			3	1			1		5				2	1	5	1	1	1		21	43
경주권	원		1 (4)	3 (3)	1 (1)	1 (2)	1	1	1	1	1 (2)	1 (1)	3	15 (3)	1		4	4	12	9 (1)	4	2	2	13	80 (17)
	사		1			1	1		2 (1)		1		9	1	1	1		8	11	10	6	2		58	113 (1)
성주권	원	(1)	1		(1)			3 (1)	1 (2)	(1)	1	5				2	2	1	1					16	33 (6)
	사		1	1			3	1 (1)					7	1		1 (1)	1	3						7	26 (2)
진주권	원		(1)	(5)	(3)	2 (1)	3 (2)		3	1		2	15 (2)			1	2	3	7	3	7	1		33	83 (14)
	사	(1)	1		(1)	(1)	2 (1)	1				1	9	1 (1)	1		1	4	5	1	4			49	80 (5)

11) 경상도는 嶺南내지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좌도, 경상우도 혹은 무신난 이후 학맥을 중심으로 경상하도, 상도로 불리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리적 구분보다 학파간의 구분에 중점을 두었기에 경상상도, 경상하도를 사용한다.

지역	시기	시 창 기		발 전 기				남 설 기					정 비 기			복 설 기			훼 철 기		미 상	합 계		
		중 종	명 종	선 전	조 후	광 해	인 조	효 종	현 종	숙 종					경 종	영 전	조 후	정 조	순 조	현 종			첵 종	고 종
										①	②	③	④	⑤										
합 계	원	(2)	2 (6)	4 (15)	4 (7)	9 (7)	11 (3)	8 (4)	14 (3)	5 (3)	10 (1)	9	54 (6)	3 (1)	2	9	16	27 (2)	26 (1)	10	9	3	112	347 (61)
	사	2 (1)	3	2 (1)	2 (1)	10 (1)	3 (1)	3 (1)	1	2	2	33	3 (1)	3	4 (1)	5	16	23	13	12	3	186	331 (8)	
총합		5	11	33	19	25	16	21	134					5	35	45	50	23	21	6	298	747		

* ()안은 사액원사.

※ 원사의 명칭이 서원精舍로 기재된 것은 서원으로 분류하고, 影堂·里社·鄉賢祠殿 등은 사우로 함.¹²⁾

※ 중건 연대는 제외하였으며, 重額·撤額의 경우 처음의 사액 연대를 택함.¹³⁾

※ 중종대에 건립된 것 중 진주 은열사, 안동 삼태사묘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임.

※ 선조대는 임진왜란(1592)을 기준으로, 영조대는 17년의 원사철회령(1741)을 기준으로 나눔.¹⁴⁾

※ 숙종대는 경신기사갈습환국에 따른 집권세력의 교체시기에 따라서 ① 남인집권기(숙종1-6), ② 서인집권기(숙종7-14), ③ 남인집권기(숙종15-19) 로 나누고, 갑오정식을 기준으로 ④ 서인집권기(숙종20-39), ⑤ 정비기(숙종40-46)로 나눔.

12) 정만조, 앞의 논문(1975), p.219 의 원사 분류를 따랐다. 제향인이 같으나 명칭이 다른 동일한 원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비교하여 가장 보편화된 명칭을 따르되, 사우에서 승원된 것이 많음을 감안하여 서원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단, 『서원등록』 소재 경상도 52개소의 훼철원사 중 복건하지 않은 32개소의 원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13) 각 사료에 따라 건립연대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원사별로 충분한 고증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2개 사료의 기록에 충실하되, 『교남지』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충사료로 활용하였다.

14)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당시의 원사 건립율은 난전 연 0.8개소에서, 난후 1.3개소로 늘어나고 있다. 그 까닭은 전후의 향촌복구에 사림이 중심이 되어 향약계와 같은 각종 향촌규약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존의 토착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향청의 복원보다는 사림이 운영하던 서원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즉 서원의 건립율이 높아지는 것 외에도 사림의 강화·장수처에서 향촌사회내 영향력과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향촌지배조직으로 성격이 전환되는 시기로 보인다.

〈표 2〉 경상도내 시기별 사액현황

시기 구분	중 종	명 종	선 조	광 해	인 조	효 종	현 종	숙 종	경 종	영 조	정 조	순 조	헌 종	철 종	고 종	합	총합
서 원		3	7	5	2		9	26		1	6			2		61	69
사 우			1	1			2	1	1	1	1					8	

※ 해당 왕대에 사액된 숫자임.

1. 16세기 원사의 건립 과정

중종대에서 임란이전(1591)까지 건립된 원사들은 총 37개소로서 매년 1개소 미만의 비율로 건립되고 있다. 이들 원사는 서원 29개소, 사우 8개소로서 서원이 사우에 비하여 많이 건립되었는데, 서원은 전체의 7%에 해당하며 사우는 2%에 해당한다.

이중 사액된 원사는 순흥 紹修서원(1543, 안향), 성주 川谷서원(1528, 주자·김굉필), 진주 殷烈祠(1021, 강민첨), 대구 研經서원(1563, 이황), 경주 西岳서원(1561, 설총·김유산·최치원), 永川 臨臯서원(1553, 정몽주), 의성 氷溪서원(1556, 김안국), 밀양 禮林서원(1567, 김종직), 함양 濼溪서원(1552, 정여창), 경주 玉山서원(1572, 이언적), 선산 金烏서원(1570, 길재·김종직·정봉·박영·장현광), 안동 虎溪서원(1576, 이황), 안동 三溪서원(1588, 권벌), 예안 易東서원(우탁), 예안 陶山서원(1574, 이황), 인동 吳山서원(1574, 길재), 연일 烏川서원(1588, 정몽주), 榮川 伊山서원(1573, 이황), 김해 新山서원(1576, 조식), 진주 德川서원(1576, 조식), 함양 漚洲서원(1581, 노진), 안의 龍門서원(1583, 정여창), 합천 伊淵서원(1587, 김굉필·정여창), 청도 紫溪서원(1678, 김일손) 등의 23개소이다. 이는 전체 사액원사의 33%이며, 시창기에 건립된 원사의 62%에 해당한다. 이중 임란이전에 사액된 것은 10개소였다.

지역별로는 안동, 경주, 진주권을 중심으로 원사의 건립이 활발하였다. 이런 현상은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의 거주내지 지방관 재직 유무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 이들과 관련된 지역에 영남사람들의 편재가 집중되었기 때문이

다.¹⁵⁾ 또한 당시 서원의 건립과 운영에는 퇴계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이는 명종대(1546-1567)까지 건립된 도내 16개소의 원사 중 7개소가 퇴계의 '書院十詠'에 나타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임란이전의 선조대에 건립된 원사는 21개소인데 이중 6개소가 안동권을 중심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5개소는 진주권을 중심으로 건립되고 있었다. 이때의 건립에는 이황과 조식의 문인들이 일정부분 참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사에서 창건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건립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초기원사의 건립에 주체적으로 참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퇴계문인들 중 문집을 남긴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원사건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거의 없다. 이외에 일부 건립 사실을 서술한 『열읍원우사적』에서도 '鄕中士林' 내지 '道內士林' 등의 단편적 기록만이 있을 뿐이다.¹⁶⁾ 하지만 현존하는 일부 원사의 건립기록을 통하여 이 시기의 원사건립은 대체로 일향 또는 일도 사람의 공론에 의해 피봉사자의 문인·후손·향인들과 협력하여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¹⁷⁾ 후손문인이 없는 경우 일향사람이 주도적으로 창건 및 운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령의 협조가 있었는데, 원사를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재력이 들어서 그들만으로는 원사의 건립이 어려웠던 까닭이다.¹⁸⁾

또한 이렇게 사람의 공론을 모아 원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학적 연원·학문宗師, 공적, 충절인 등의 여러 조건에 맞는 대대로 사표가 될 만한 인물들이 제향 되어야 했는데, 시창기에 건립된 원사는 이러한 기준이 잘 지켜졌

15)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출판부, 1979, pp.238-240.

16) 『열읍원우사적』 2책, 경주 玉山서원 建院사실과 예천 鼎山서원조에 의하면,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扶助의 현황과 건립 과정에 대하여 나오진 않지만, 수령이하 향인들이 협력하여 건립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17) 정만조, 앞의 논문, 1975, pp.233-255.

18) 서원의 건립에는 막대한 물력이 소모되기에 지방관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실제 퇴계는 「伊山院規」에서 서원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문치를 숭상하고 학교를 진흥하는 것은 나라의 뜻과 같으며, 부임수령이 서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退溪全書』 권41, 잡서 이산원규).

다. 실제 시창기에 건립된 원사의 제향인물들을 보면 禹倬 權機 鄭夢周 李彦迪 金宏弼 金宗直, 이황, 조식 등과 같이 시대에 상관없이 성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이었다.

그럼 초기의 원사건립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퇴계와 남명의 문인들과 제향인의 후손 내지 향중사림의 참여와 규모를 알아보자. 양학파의 거주지별 문인분포를 『도산급문제현록』과 『덕천사우연원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퇴계와 남명문인들의 거주지별 분포수¹⁹⁾

	안동권	진주권	성주권	상주권	경주권	합계
퇴계	115	8	8	7	6	144
남명	1	46	4	1	·	52

퇴계문인들은 안동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진주상주성주경주권 등에 6-8명의 문인들이 거주하였다. 남명의 문인들은 퇴계의 문인들에 비하여 그 수가 적으며, 진주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퇴계와 남명 문인들의 생존년이 대체로 광해군대를 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들 문인들에 의한 원사건립은 선조-광해초에 가장 왕성하였을 것이다.

선조대까지 2개소 이상의 원사가 건립된 곳은 안동(4), 예안(2), 榮川(2), 의성(2), 성주(3), 경주(2), 밀양(2), 청도(2), 진주(3), 함양(2)이며, 이외에 순흥, 대구, 칠곡, 영천, 신령, 초계, 현풍, 경산, 상주, 선산, 인동, 연일, 흥해, 진보, 용궁, 영덕, 영해, 동래, 김해, 산청, 사천, 안의, 함천, 삼가, 영산 등이 있었다.²⁰⁾ 이들 지역은 대체로 재지사족이 향촌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리고 2개소 이상의 지역은 퇴계와 남명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한 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양학파의 문인들이 각 읍별로 원사의

19)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p.403의 표를 재수정 함.

20) 부록 < 표 1 > 참조.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중 퇴계문인의 활동이 적극적이었음을 알려준다.²¹⁾

< 표 1 >에서 안동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초기에 많은 원사가 건립된 것은 일찍이 서원건립에 관심이 컸던 퇴계가 예안에 우거하고, 그의 문인들이 인근 지역에 많이 거주했기 때문이다. 이들 문인들은 안동내지 주변 고을의 토착세력내지 이주사족들과의 혼인을 통한 혈연과 동일 학통의 학연을 매개로 원사건립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다음 榮川의 사례는 이러한 원사건립의 실상을 단편적으로나마 알려준다.

선조 6년(1573) 이산서원(이황)건립²²⁾ 당시 榮川에 살고 있던 朴承任(반남), 張壽禧(인동), 金玠(예안) 등과 예안에 사는 李德弘(永川) 등의 퇴계문인들이 주도적으로 창건 작업에 나섰으며, 당시 榮川군수로 있던 許忠吉(김해, 퇴계문인)의 적극적인 부조가 있었다. 박승임은 예안김씨 가문과 인척관계에 있었으며, 장수희 등은 당대에 이주해왔다. 朴灑(고령)는 퇴계의 孫女壻였다. 이들은 閔應祺(榮川)를 제외하고는 주로 혼인관계를 매개로 이거해온 이주민이었다. 이처럼 이산서원의 건립에는 榮川지역 전 사족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榮川과 타읍의 퇴계문인 및 그들의 가문이 중심이 되어 창건되었다.

이상에서 시창기때 건립된 원사는 서원을 중심으로 연평균 1개 미만의 수치로 일정하게 건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액에서도 서원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는 서원의 제향인이 도학적 연원, 학문宗師 등의 여러 조건에 맞는 대대로 사표가 될 만한 인물들로서 제향기준에 적합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안동·진주·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이황과 조식의 문인들

21) 『도산제현급문록』 소재 퇴계문인들의 문집을 통해 서원건립에 참여했던 55명을 조사할 수 있었다. 이들의 원사건립활동은 선조대에 주로 나타나며, 광해군대에는 칠곡 泗陽精舍(정구), 영천 道峯서원(김취려)의 2개소만이 나타난다. 또한 易東(예안), 陶山(예안), 臨臯(영천), 鳳覽(진보), 伊山(榮川)서원의 건립에 2-11명까지 공동 참여하고 있었다. 그 외에 전국에 분포한 16개소의 원사에도 관여했다. 이중 18명은 지방관 재임시 1-4개소의 원사건립에 참여했으며, 기타인물들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22) 이산서원은 명종 3년(1558)에 學舍로 처음 만들어지고, 선조 6년에 이황을 제향하면서 서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열읍원우사적』 2책, 榮川 이산서원).

이 중심이 되어 건립하고 있었다. 이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관 및 타 지역에 있는 제향인의 후손내지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이외에 이주해온 사족들이 해당 지역의 토착세력과 혼인과 학연으로 결합하면서 鄕權을 확대하였으며, 연결의 매개체로서 서원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원사의 건립과 운영을 둘러싸고 상호결합과 견제를 반복하면서 향촌 내부에서의 재지적 기반을 공고히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이주가문의 성장은 17세기 중반이후 문중원사가 남설 될 수 있는 전초가 되기도 하였다.²³⁾

2. 17세기 초반 원사의 기능 변화

발전기인 임란이후부터 현종대(1599-1674)까지는 지역 서원이 학문적 연원에 따라 중앙정계와 연결되어 운영되던 시기였다. 이때는 사림의 강학장수처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서원이 당쟁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서원의 건립과 사액에 중앙관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사의 증가와 각종 폐단을 초래하였다.

이때에 건립된 원사는 93개소로서 서원은 70개소, 사우는 23개소였다. 이는 연평균 1.2개소로서 시창기에 비하여 원사의 건립이 활발해졌음을 나타낸다. 이들 원사 중 사액된 것은 29개소였는데, 7개소를 제외하고는 숙종이후에 사액되었다. 그러나 <표 2>를 보면 실제 21개소의 원사가 발전기에 사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14개소의 원사가 임란이전에 건립된 것이었다. 즉 당시 건립된 원사가 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지만 사액에 적합한 제향인을 모신 원사는 매우 적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사의 건립과 사액

23) 경상도의 경우 대체로 16세기를 전후하여 이거해온 집단들이 혼인과 학연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3-4대가 지난 17세기 중엽이후에 그들의 입향조 내지 명조를 제향하는 원사를 건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정만조,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 『한국사학』 10, 정문연 1989). 이는 원사에 건립된 제향인의 생몰년이 16세기를 전후한 인물이 대부분인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이러한 16세기 인물의 편중에는 17세기 중반이후 서인내지 노론집권으로 사실상 중앙 진출이 불가능했기에 이후 제향할 만한 인물이 나올 수 없었던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에 대하여 각 왕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조 대에 건립된 33개소의 원사 중 임란이후 건립된 것은 12개소이다.²⁴⁾ 이 가운데 선조 대에 사액된 곳은 현풍 도동서원, 진주 창열사 등 2개소였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충렬사, 창열사와 같이 임란당시 순절한 인물들을 제향한 사우를 건립하거나, 성리학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선현을 제향 함으로써 전란이후 피폐해진 향촌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광해군대에는 복인정권이 집권한 시기로서 19개소의 원사가 건립되었다. 그러나 < 표 2 > 를 보면 광해군이전에 건립된 원사들 가운데 6개소의 원사가 당대에 사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들 6개소의 사액원사 중 南冥 曹植을 제향한 서원은 신산 덕천 용암서원 등의 3개소였다. 이는 복인세력들이 이 서원들을 중심으로 경상하도의 남명문인 및 향중사림들의 공론을 형성하고, 나아가 남명의 문묘종사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적 연원을 강화하고, 집권의 명분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서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 인조반정이후 당쟁이 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각 당파의 거점이 되어갔다.

인조-현종대는 남인과 서인에 의해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이자 중앙정계와 재지사림이 연결되는 접점으로서 원사의 기능이 확대되고 수적인 증가를 보여주는 시기였다.²⁶⁾ 당시 건립된 62개소의 원사들 중 19세기말

24) 이 중 19세기말까지 사액된 원사는 현풍 道東서원(1605, 김광필), 상주 道南서원(정몽주·김광필·정여창·이언적·이황), 진보 鳳覽서원(1602, 이황), 동래 忠烈祠(1605, 송상현·정발), 진주 彰烈祠(1607 사액, 임란이후, 김천익, 최경회 등), 산청 西溪서원(1606, 오견), 사천 龜溪서원(1606, 이황·이정), 삼가 龍巖서원(1603, 조식)이다. 이외에 흥해 曲江서원(1607, 이언적), 영덕 南江서원(1605, 이언적·이황), 영해 丹山서원(1608, 우탁·이색), 영주 山泉서원(1606, 宋碩忠) 등의 미사액 서원이 건립되었다.

25) 19개소의 원사 가운데 광해군대에 사액된 원사는 없지만 19세기말까지 사액된 원사는 안동 周溪서원(1612, 구봉령), 안동 屏山서원(1613, 류성용), 영천 道峯서원(1613, 조호익), 봉화 文巖서원(1616, 이황·조목), 예천 鼎山서원(1612, 이황), 단성 道川서원(1612, 문익집), 고성 忠烈祠(1614, 이순신), 창녕 冠山서원(1620, 정구) 등의 8개소가 있었다. 반면 광해군 이전에 건립된 원사 중 광해 5년(1613)에 사액된 연일 烏川서원(정몽주)을 제외한 진주 殷烈祠(강민첨), 인동 吳山서원(길재), 김해 新山서원(조식), 진주 德川서원(조식), 삼가 龍巖서원(조식) 등은 광해 1년(1609)에 사액되었다.

26)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p.97.

까지 사액된 원사는 13개소였다.²⁷⁾ 이외에 실제 인조-현종대에 사액된 원사도 13개소였는데,²⁸⁾ 삼계서원(안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상하도에 분포하고 있었다. 인조반정 이후 학문적 침체의 길을 걷고 있던 경상하도에서 이렇듯 많은 원사가 사액될 수 있었던 것은 제향인물들이 도학적 연원을 갖춘 자들이자, 분당이전의 인물들로 당색과 무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상주와 성주지역은 광해군대에 비하여 많은 원사가 건립되고 있었다. 특히 성주진주지역에서는 사우의 건립이 늘어났다. 이때 건립된 사우는 안의 嶧川祠(정유명), 남해 충렬사(이순신), 성주 옥천충절사(이사룡), 성주 德岩祠(이천봉)와 같이 임란과 호란 당시 의병장내지 순절인과 崇明의리를 지킨 절의인들을 제향하고 있었다.

인조대부터 新安影堂(영덕, 송시열)과 같은 서인(노론)계 사우가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현상은 갑술환국(1694) 이후 더욱 증가한다.²⁹⁾ 또한 합천 新川서원(1624, 河演·河友明·河運)은 진주하씨를, 고성 道山서원(1633, 崔均·崔壩)은 전주최씨 가문의 의병장만을 제향함으로써 문중 원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효종대는 송시열을 중심으로 서인이 집권함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던 원사건립이 일시 줄어들게 된다. 이때에 건립된 원사는 16개소였으며 사액된

27) 선산 月巖서원(1630, 김주하위자·이맹진), 선산 洛峰서원(1642, 김숙자), 성주 檜淵서원(1627, 정구), 남해 忠烈祠(1633, 이순신), 성주 玉川忠節祠(1656, 이사룡), 인동 東洛서원(1655, 장현광), 영양 英山서원(1657, 이황·김성일), 합천 華巖서원(1653, 박소), 의령 德谷서원(1656, 이황), 대구 表忠祠(1670, 신승겸), 개령 德林서원(1669, 김종직), 거창 道山서원(1661, 김굉필·정여창·이언적·정운), 거창 浣溪서원(1664, 김식) 등이다.

28) 인조대에는 경주 서약서원(설총·김유신·최치원), 동래 안락서원(=충렬사, 송상현·정발)의 2개소가 사액되고 효종대는 없었다. 현종대에는 대구 연경서원(이황·정구·정경세), 표충사(신승겸·간낙·신길원), 안동 삼계서원(권별), 함양 당주서원(노진), 안의 용문서원·정여창·임훈·임운·정운), 합천 이연서원(김굉필·정여창), 청도 자계서원(김일손·김극일·김대유), 남해 충렬사(이순신), 의령 덕곡서원(이황), 거창 도산서원(김굉필·정여창·이언적·정운), 밀양 예림서원(김종직·박한주) 등 11개소의 원사가 사액되었다.

29) 서인계 원사의 건립은 경상하도에 서인계 세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경상하도는 인조반정 이후 남명사상계승의 부진으로 쉽게 서인계로 편향될 여지가 많았다(이재철, 「18세기 경상수도 사림과 정희량난」, 『대구사학』 31, 1986, pp.36-43).

원사는 없었다. 하지만 용궁 武夷祠(驪州李), 성주 德岩祠(京山李), 안동 魯林서원(英陽南), 인동 東洛서원(인동張) 등의 문중 원사는 전대해 비해 늘어나고 있었다. 한편 영양과 의령에서는 이황을 제향한 莢山·德谷서원이 건립되었다. 특히 덕곡서원은 현종 1년(1660)에 사액됨으로써 경상하도의 남인세력들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남인계 서원의 건립과 사액은 서인계 세력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³⁰⁾

현종대에는 서원이 17개소, 사우 4개소가 건립되었다. <표 2>를 보면 현종대에 사액된 원사는 모두 11개소인데, 이중 9개소가 시창기에 건립된 것이었다. 이것은 사액에 적합한 인물이 없을뿐더러 합당한 인물들은 대부분 2개소 이상에 첩설되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이러한 원사첩설에 따른 폐단으로 첩설처 사액금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금령이전에 건립된 원사에 사액을 내렸던 것이다.

특별한 인물이 없는 지역일 경우 수령, 본관 내방 등의 사유로 특정인물의 원사를 건립하거나 향중사립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가문들이 공동으로 조상의 사우를 건립하고 있었다. 예천 玉川祠의 경우 林椿 太斗南 宋福基 潘濡 등 예천임씨, 영순태씨, 야성송씨, 거제반씨 등 지역 유력가문의 인물들을 합향하고 있다. 반면 함양 栢淵서원(최치원·김종직·수령), 풍기 郁陽서원(이황·황준량·수령)은 제향인들이 지방관으로 재임하면서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던 지역이었다. 단, 황준량은 퇴계의 문인이자 풍기가 家鄉이었던 연유로 제향되었다.

이처럼 역대 수령을 향사한 것은 당시 해당지역에서 제향에 합당한 인물이 없었기에 사람의 宗師급인 인물들 중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이들을 선정하여 서원건립의 명분과 정통성을 확보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서원이 당시 사람들의 강학소 내지 향촌 내에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으면서 서원을 가지지 못한 고을의 경우 사람의

30) 이 시기 경상하도의 대표적인 노론계 가문은 안음의 居昌慎氏와 함양의 河東鄭氏(정여창 후손) 등이 있었다. 이들은 함양의 灤溪서원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이재철, 앞의 논문, 1986, pp.52-56).

활동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³¹⁾

경상하도에 원사의 건립이 집중된 것은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즉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는 크게 위축되었지만 반정을 일으킨 서인 세력이 남인과 연합정권을 형성하여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서인중심의 기호학과와 남인중심의 퇴계학파는 그 세가 크게 신장되었다. 결국 남명학파는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으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인홍을 학파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흔적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그리하여 조식과 이황의 양 문하를 출입하였고 당시의 서인과 남인으로부터 동시에 선망을 받고 있었던 정구를 조식의 적전으로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처럼 정구의 부각은 남명학파의 남인화를 촉진시켰으며, 이로 인해 학파의 주도권이 과거의 대북에서 남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반면 남인화하지 않은 대북의 잔존세력은 정국의 변화에 따라 서인과 남인간의 대립이 격화되자 서인세력에 흡수되어갔다. 이로 인해 기존의 남명학파 내부에서는 서·남인의 당파적 대립 양상이 조성되게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집권한 남인들은 近畿내지 在京남인들로서 기호남인으로 불린다. 이들은 이황-정구-허목으로 이어지는 학문적 연원을 기반으로 경상도 남인들과 관계를 이어갔다. 경상도 남인들은 상소를 통하여 기호남인들의 당론을 지지하였는데,³²⁾ 이러한 공문을 형성하고 상소를 작성하기 위한 집회소로서 서원이 이용되었다. 그 결과 기호남인들의 지원에 힘입어 특히 정구문인들이 집중된 성주진주권을 중심으로 서원의 건립과 사액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시창기에는 퇴계문인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안동권을 중심으로 원사의 건립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의 원사건립에

31) 이수환 앞의 책, 2001, pp.42-45.

32) 서·남인간 대립이 치열히 전개되던 효종대에는 서인들이 집권의 명분과 남인에 비해 열세인 도학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를 추진하였다. 이에 효종원년에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에 반대하는 柳櫻 이하 950여명의 경상도 유생이 연명상소를 올렸으며, 현종 7년에는 柳世哲 이하 1,000여 명이 송시열의 예설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 그러나 임란이후 향촌의 복구과정에서 사림의 강학장수처에서 향촌지배기구로 성격이 변화된 서원은 광해군 대부터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이용된다. 그 결과 인조반정이후 정국의 변화에 따라 서원은 해당 당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건립과 사액에서 당파적 편향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원사의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양민모집, 대민작폐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각종 원사통제책이 나오게 되었지만 잘 지켜지지 못했다. 이외에 인조대부터 가묘적 성격을 지닌 원사가 건립되고 있었다. 또한 서원이 향중사림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부각됨에 따라 마땅한 제향인이 없는 고을의 경우 각종 연고를 들어 특정인의 첩설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퇴계·남명의 문인 및 손제자, 개별문중의 조상으로 제향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지만, 제향인의 선정기준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 이는 전체 69개소의 사액원사 중 77%에 해당하는 53개소가 이 시기에 건립된 원사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액원사가 숙종이전에 건립된 원사에 집중된 것은 사액에 적합한 제향인물들을 모셨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사액원사 뿐만 아니라 미사액 원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숙종 대에는 당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원사의 건립과 사액에서의 편파성도 더욱 커져갔다. 그 결과 원사의 건립과 제향인 선정이 무분별해짐에 따라 서원과 사우의 구별이 없어지고 원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Ⅲ. 17~18세기 원사의 남설과 정비

인조반정이후 효종대까지의 정치는 견제와 균형, 공론에 토대한 봉당정치의 기본원리가 대체로 지켜지던 시기였다. 효종 1년(1659)의 예송논쟁은 서인의 주장이, 숙종 1년(1674)의 2차 논쟁에서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남인의 지위가 신장되었다. 그러나 경신환국(1680)에 의하여 서인정권

이 들어서면서 상대세력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일당전제화의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극단적인 남서인간의 대립은 3차례의 환국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당시의 원사건립은 이전시기와 비슷한 수치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갑술환국(1694) 이후 노론의 전제정치가 시작되면서 폭발적 증가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갑술환국이전의 원사정책은 집권의 명분과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건립과 사액이 추진되고 있었다.

남설기인 숙종대에 건립된 원사는 모두 134개소로써 전체 원사수의 18%에 해당한다. 이런 수치는 단일 왕대로서는 가장 많은 것이다. 134개소의 원사 중 숙종이후 사액된 것은 하양 琴湖서원(허조, 1790사액)과 상주 옥동서원(황희, 1789사액)의 2개소이며, 숙종 당대에 사액된 원사는 10개소다. 앞시기에 건립된 원사 중 숙종대에 사액된 원사는 17개소가 있다. 지역별로 건립된 원사수는 안동권(27), 상주권(22), 경주권(39), 성주권(15), 진주권(35)로 나타난다. 단순한 수치로 보면 상주와 성주권에서의 원사건립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 두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인조-현종대까지의 원사건립이 활발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숙종초의 남인집권기에 건립된 원사는 9개소로써 현풍 禮淵서원(곽재우)만이 이 시기에 사액되고 있다. 앞시기에 건립된 원사들 중 사액된 원사는 9개소로써³³⁾ 기호남인의 학적기반인 상주(장현광)·성주(정구)·안동(이황)권을 중심으로 첩설처 사액금령에도 불구하고 사액되고 있다.³⁴⁾ 일례로 상주도 남서원은 현종 11년(1670)에 1차 청액이 실패한 후 숙종 2년(1676) 11월 5일에 2차 청액을 시도하였지만, 이황의 첩설처가 많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그러나 영의정 허적의 주선으로 그해 12월 19일에 특별히 사액되었는데,³⁵⁾

33) 前시기에 건립된 원사 중 사액된 것은 개령 德林서원(김종직), 거창 浣溪서원(金澗), 안동 東洛서원(장현광), 영천 道峇서원(曹好益), 예천 鼎山서원(이황), 산청 西溪서원(오견), 사천 龜溪서원(이황·이정), 상주 道南서원(정몽주·김광팔·정여창·이언직·이황), 안동 虎溪서원(이황) 등이다.

34) 첩설처 사액금령에도 불구하고 퇴계서원이 사액을 받은 것은 이황·정구·허목으로 이어져오는 기호남인의 도학적 정통성을 수립하여 집권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였다(정만조, 앞의 책, 1997, pp.253-255).

35) 『서원등록』 권1, 병진(1676) 11월 5일, 12월 19일조.

이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³⁶⁾ 진주지역에서의 사액은 인조 반정 이후 남·서인으로 분립되어온 경상하도에서 남인세력을 부식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런 현상은 미사액 원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³⁷⁾ 결국 이 시기는 사액원사의 수가 미사액원사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사액을 통한 집권명분의 여론형성에 힘쓴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경신환국(1680)으로 집권한 서인은 이듬해(1681) 김만중의 서원폐 상소를 계기로 서원의 신설과 사액을 불허한다는 정책을 수립한다.³⁸⁾ 이 정책은 처음 5·6년간은 남서인을 불문하고 철저히 지켜졌으나, 이후 서인계서원의 신설과 사액은 공공연히 허가해 주었다. 당시의 원사억제책으로 인해 서인계 원사의 경우 추향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지만, 경상도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³⁹⁾

경신환국 이후의 서인집권기에 건립된 13개소의 원사 중 당대에 사액된 것은 없으며, 1568년 건립된 예안 역동서원(우탁)만이 사액되고 있다. 이는 우탁이 당색과는 무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송시열 문인인 이숙을 제향한 대구 尙德祠와 같은 서인계 사우와 상주 孝谷서원(송량)의 남인계 서원이 건립되고 있다. 영해 九峰서원(= 貞忠祠宇, 박의장, 박홍장), 신령 龜川서원(권응수), 榮川 壯巖서원(三學士)등은 임란시 의병이었거나, 호란시 척화

36) 이 시기 서원의 사액은 자파 스승의 현양을 통한 자당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집권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이러한 현양사업의 정점은 문묘종사였다. 인조대 이후 집권해온 서인들은 이아·성혼의 문묘종사를 통해 남인과 대등한 학문적 정통성을 이어가려 했다. 이 노력은 58년 만에 경신환국을 통해 성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사환국으로 집권한 남인들에 의해 출향되었다가 갑술환국으로 복향되었다.

37) 당시 건립된 미사액원사인 진주 宗川서원(하연), 봉화 盤泉서원(김중청), 순흥 龜灣서원(금인, 남몽오, 박선장), 함창 雅谷정사(박눌, 남영, 류종인), 순흥 耆英祠(금인, 남몽오, 박선장)등은 모두 퇴계의 문인내지 그 손제자였다. 이는 당시 원사가 철저히 남인중심으로 건립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38) 『서원등록』 권1, 신유(1681) 11월 9일 및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6월 계미.

39) 『조두록』에는 경신환국이후 추향된 인물로 숙종 12년(1686)에 김광수신원록(의성 藏待서원, 家鄉)만이 나타난다. 오히려 풍기 옥양서원의 황준량은 첩향인이란 이유로 숙종 12년 黜辱되었다가, 기사환국으로 재배향되고 있다. 즉 경신환국 후의 경상도 지역에서의 追享은 서인계서원에 비해 전무하였으며, 갑술환국이후 노론의 장기 집권하에서 금령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추향수가 증가하게 된다.

파로서 순절한 이들이다. 그 외 안동 泗濱서원(의성김씨(학봉), 봉화 文溪서원(봉화김씨), 예천 鳳山서원(예천권씨), 용궁 龍曲祠(진주강씨)등의 가묘적 성격을 지닌 원사가 건립되고, 거창 龍泉서원(류자방 외 4명), 안동 黠溪서원(김계행·옥고), 하양 금호서원(허조)과 같은 당색과 무관한 서원이 건립되었다.

이 당시 건립된 원사들의 특징은 경신년 이후 5·6년 정도 지나 원사의 통제책이 약화된 시점에 안동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었으며, 첩설불허의 정책을 피해 원사 제향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서원신설금령을 피해 서원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精舍祠宇의 건립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구 상덕사(1682), 榮川 장암서원(1683) 등의 서인계 원사는 금령과 상관없이 건립되고 있었다.

기사환국(1689)으로 재집권한 남인은 먼저 경신년 당시 문묘에 배향되었던 李珥와 成渾의 위판을 黜享하였다. 그리고 피화된 인물들의 伸冤과 출향된 인물들에 대하여 다시 배향을 하였다. 또한 서인계 원사의 건립과 사액, 합향 등을 시종 허락하지 않으면서 결국 서인의 영수적인 이이의 배향을 금지하기에 이른다.⁴⁰⁾ 이와는 반대로 서인에 의하여 사액이 거부되었던 남인계 서원에 대하여 첩설처 사액 불허령에 상관없이 사액하고 있었다.⁴¹⁾ 그 결과 경상도에서는 이황을 제향하는 鳳巖서원(진보), 文巖서원(봉화), 英山서원(영양)이 사액되었다. 안동 周溪서원(구봉령)과 성주 檜淵서원(정구) 같이 퇴계의 문인을 제향한 곳과 선산 月巖서원(김주·하위지·이맹진), 대구 洛濱서원(死六臣)처럼 충절인을⁴²⁾ 제향한 곳도 사액이 되었다. 울산지역에서는 본읍

40) 『서원등록』 권3, 갑술(1694) 1월 18일.

41) 『서원등록』 권3, 임신(1692) 11월 16일(주계서원), 계유(1693) 9월 20일(문암서원), 계유(1693) 11월 23일(낙빈서원, 월암서원)에 예조와 대신들의 건의로 特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책, 신미(1691) 7월 26일, 계유 12월 26일조에서 자인 觀瀾서원(이언적)과 풍기 郁陽서원(이황·황준량) 등은 첩설처 사액불허의 명을 들어 勿施한 것과 같이 성리학의 儒宗급 인사라 하여 모두 제향된 것은 아니었다.

42) 死六臣원사의 사액을 위해 숙종 17년(1691) 9월 13일, 10월 1일, 12월 5일에 걸쳐 대신들의 주청과 이현일의 장계 등이 이어졌다. 그래서 사육신의 復官과 致祭, 사액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서원등록』 권3, 신미(1691) 9월 3일, 10월 1일, 12월 5일). 이는 경신환국 당시에 피화된 인물들을 정몽주·사육신과 같은 사표가 될만한 충절인들의 연장선상에 두어서 신원에 필요한 명분의 확보와 피화인을 현양하려

출신으로 서원에 배향할만한 인물이 아직 없었지만 향교를 대신하여 향중 사림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자리 잡은 서원의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⁴³⁾ 그래서 정몽주가 謫居하였고 이언적이 遊歷한 곳이었다는 연고를 들어 성리학의 정통성에 문제가 없는 두 분을 鷗江서원에 제향하였다.⁴⁴⁾

그러나 이들 사액원사는 기사환국이전에 건립된 원사로서 환국이후 건립된 20개소의 원사들 중 사액된 원사는 없다. 대신 경주권과 진주권을 중심으로 학문·충절·향유임을 들어 문중원사가 건립되고 있었다. 그 외에 특별한 인물이 없는 지역은 청하 鶴山서원(이언적), 함창 臨湖서원(표연말·홍귀달)같이 인근 혹은 본향출신의 名儒이거나 高官을 역임한 인물들내지 영해 충렬사, 현풍 松潭祠와 같은 임란전공내지 순절인을 제향하고 있다.

갑술환국이후 남인은 정계에서 대부분 축출되고, 출사로가 완전히 막히게 되었다. 집권서인은 먼저 문묘에서 출향되었던 이이·성혼의 위패를 다시 봉안하였다. 이후 이이·송시열서원에 대한 특별사액을 추진하고, 기타 서인계 원사에 대하여 이들의 추향을 허락하였다.⁴⁵⁾ 숙종 7년(1681)의 금령이후에도 이러한 특청을 통한 사액 외에도 사사로이 건립되는 원사가 많았던 것 같다. 당시의 전국적인 건립실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경상도의 경우 금령이후 금령전에 비해 더 많은 원사가 건립되고 있었다.

이처럼 원사의 사사로운 건립은 숙종 20년(1694) 좌의정 朴世采에 의해 서원폐단이 지적되어,⁴⁶⁾ 이듬해에 사사로이 신설과 첩설을 금한다는 강화된 금령이 제정 되었다.⁴⁷⁾ 그러나 경상도를 제외한 거의 전국에서 조신들의 특

는 일련의 과정 이었다

43) 이수환, 앞의 책, 2001, p.44.

44) 『서원등록』 권3, 갑술(1694) 3월 15일.

45) 『서원등록』 권3, 갑술(1694) 8월 8일, 10월 11일을 보면 滄州象賢崇賢書院에 송시열이 함향되고, 해주 石潭서원(이)에 사액이 주어지고 있다. 이는 조광조·이이·송시열로 이어지는 서인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아울러 서인세력의 土氣부흥을 위해서였다.

46) 박세채는 서원폐단소에서 서원은 최초 사림의 장수처로서의 본의를 잃고 제사의 기능만 남음으로서, 제향이 목적인 사우와 구분이 없게 되었으며 良丁冒入避役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문묘종사인과 대명현을 제외하고 일체의 첩설을 불허하도록 청하였다(『서원등록』 권3, 갑술(1694) 10월 6일).

47) 이조판서 윤지선은 이전의 첩설금령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1인에 3·4처의 서원이

청으로 사액과 합향이 진행되어 나갔다.⁴⁸⁾ 이 같은 조정대신들의 특청은 결과적으로 금령의 집행을 어렵게 하여 조신들의 請額疏를 금하기에 이른다.⁴⁹⁾

이러한 금령 하에서도 경상도지역은 93개소의 원사가 건립되어 연평균 4.7개소로서 전시기에 걸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중 경주 龍山서원(최진립), 상주 興巖서원(송준길), 청송 屏巖서원(이이·김장생), 진주 新塘서원(조지서), 안의 黃巖祠(곽준·조종도), 함안 西山서원(生六臣), 양산 松潭서원(백수회) 등이 당대에 사액을 받았으며, 이전에 건립된 원사로는 창녕 冠山서원(정구)이 사액을 받았다. 이들 사액원사는 이이·김장생·송준길 등의 서인의 宗師들이거나 최진립·곽준·조종도 등의 임란의병장내지 조지서·생육신·백수회 등과 같은 절의인 등으로 당색과 무관한 인물들이 제향되었다.

노론은 경상도내 자파세력을 부식하기 위하여 인조반정 이후 오랫동안 공동화 현상에 있었던 하도지역을 중심으로 안음 星川서원 龜淵서원 거제 盤谷서원을 건립하고 함양 濼溪서원도 장악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경상도 전역에서 노론계 원사가 건립·사액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난다.

〈표 4〉 갑술환국이후 노론계 서원의 건립현황

지역	원사명	건립연대	사액연대	배향인물
경주	仁山書院	1719		宋時烈
상주	興巖書院	1702	1726	宋俊吉
〃	西山書院	1713		金尙容, 金尙憲
〃	鳴泉祠	1714		尹明運
안동	西礪祠	1785	1786	金尙憲
예안	雲溪祠	1817		李珥, 金尙容, 金尙憲

건립되자, 사사로이 원사를 新設하고 첩설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는 朝令을 청하고, 이후의 서원첩설과 신설에 대하여 해당 감사와 지방관을 논죄토록 하였다(『서원등록』 권3, 을해(1695) 6월 3일).

48) 조정대신과 어사의 특청을 통해 함경도, 평안도 등의 벽지에서부터 충청, 경기, 전라, 제주도 등 거의 전국적으로 서인계 서원에 합향과 사액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서인들이 전국적으로 당세를 부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서원등록』 권3, 을해(1695) 6월 19일, 7월20일, 8월 20일, 9월 21일).

49) 『서원등록』 권3, 을해(1695) 12월 16일.

지역	원사명	건립연대	사액연대	배향인물
성주	老江書院	1712		宋時烈 權尙夏 韓元震 尹鳳九 宋煥箕
“	粹德書院		1859	金昌集 閔鎮遠
지례	春川書院	1756		宋時烈
영일	德林祠	1848		宋時烈
장기	竹林書院	1707		宋時烈
청송	屏巖書院	1702	1702	李珥 金長生
영덕	新安書院	1628		朱子 宋時烈
영해	仁溪書院	1848		宋時烈
울산	蘭谷書院	1848		宋時烈 金昌集 金濟謙
단성	新安影堂			朱子 宋時烈
안의	星川書院	1703		宋俊吉 李翹 宋明欽
거제	盤谷書院	1704		宋時烈 金鎮圭 金昌集

노론세력은 상주·안동·성주·청송 등지와 같이 남인의 세력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액을 내려 노론계 사족들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영덕·장기·울산·거제·영해 등과 같이 남인의 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연안지역 및 안의·단성·지례 등의 경상하도를 중심으로 원사를 건립하였다. 이런 노론계 원사의 건립에는 중앙과 지방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서원의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⁵⁰⁾ 더불어 인조반정 이후 남·북인계 가문의 희유를 통한 노론화와 18세기 이후 나타난 新鄕들에 대한 지원은 남인들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 하였다.

갑술환국 이후 노·소로 분립(1701)된 서인들은 어느 한쪽도 우열함이 없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당시 소론은 노론의 득세 속에서 세자(景宗)를 보호하고 자파세력을 확대하는데 고심하고 있었다. 이때 노론과 대립하고 있던 남인과의 연결을 도모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상도 원사가 사액될 수 있던 한 배경이 되었다.⁵¹⁾

50) 이상필, 「18세기 江右지역 남명학파의 분포와 동향」, 『남명학연구』 11, 2001.

51) 인조반정 이후 경상상도에서는 이황의 학통이 건재하였기에 쉽게 노론화가 되지 않았지만, 하도 사림은 남명사상 계승의 부진과 정치적 진출내지 향권장악을 노린 일부 하도사림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쉽사리 노론화가 되었다(이재철, 앞의 논문, 1986.

갑술환국이후 건립된 미사액 원사는 서원이 54개소, 사우가 33개소였다. 17세기 중엽이후에 오면 서원과 사우가 혼칭되면서 그 구별이 모호해진다. 그 속에서도 서원이 사우에 비하여 우월하게 인식되고 있었는데,⁵²⁾ 사회 관념상 정사, 사묘, 영당 등과도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18세기 이래 중소원사의 경우 국가의 서원신설에 대한 금령(1695)을 피해 대개 처음에는 정사 또는 사묘, 영당으로 발의되어 건립 때까지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으나, 중간에 서원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많았다.⁵³⁾ 54개소의 미사액 서원을 모두 확인할 수 없지만, <표 5>에서와 같이 명칭의 변화만을 봤을 때 26개의 서원이 사우, 향현사, 영당에서 陞院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갑술환국이후 건립된 원사의 경우 실제로는 사우가 서원에 비하여 많이 건립된 것이다.

<표 5> 숙종 20년 - 숙종 39년까지 건립원사 중 개명한 것

지역	통칭	건립연대	초기명칭	제향인물	典據
대구	德洞書院	34(1708)	德洞祠	禹玄輔, 禹拜善	②③
대구	龍虎書院	34(1708)	龍虎祠	都聖俞, 都汝俞	읍지
현풍	尼陽書院	33(1707)	清白祠	郭安邦, 郭之雲	①②③ ④
경주	龜岡書院	22(1696)	鄉賢祠 / 龜岡祠	李齊賢	①/②③ ④
경주	東江書院	33(1707)	東江祠宇 / 東江鄉賢祠	孫仲暉	①/②③ ④
자인	龍溪書院	26(1700)	忠賢祠	崔文炳	②④
선산	茂洞書院	30(1704)	鄉賢祠	田佐命, 李瑀, 田胤武	①
성주	老江書院	38(1712)	老江影堂	宋時烈, 權尙夏, 韓元震 尹鳳九, 宋煥箕	①④
인동	賢巖書院	28(1702)	賢巖祠 / 賢巖鄉祠	張潛	②/③

pp.51-52). 이후에도 노론은 계속해서 경상도내에 자파세력을 부식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남인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때 소론은 남인들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노론에 대항하였다. 경종 2년(1722) 소론계 경주부윤 權世恒과 경주 남인들에 의한 인산영당(송시열)의 훼손은 그 좋은 예이다.

52) 정만조, 앞의 논문, 1978, pp.215-222.

53) 이수환, 「영해 인산서원의 건립과 훼손」, 『대구사학』 63, 2001, p.86.

지역	통칭	건립연대	초기명칭	제향인물	典據
문경	溇陽書院	38(1712)	溇陽鄉祠 / 溇陽祠	鄭彦信, 金樂春, 南嶸 沈大孚, 李樽	②/③
영덕	新安書院	28(1702)	新安影堂	朱子, 宋時烈	①②③ ④
의성	鶴山書院	24(1698)	鶴峯書院 / 鶴山忠烈祠	死六臣	③
김해	禮巖書院	34(1708)	鄉賢祠 / 禮巖祠 / 禮巖鄉祠	曹爾樞	④ / ② / ③
밀양	中峰書院	33(1707)	中峯祠 / 中峰忠孝祠	孫仁甲, 盧盖邦	②/③
진주	臨川書院	28(1702)	臨川鄉祠	李俊民, 姜應台, 成汝信 河愷, 韓夢參	③
진주	仁溪書院	36(1710)	鄉賢祠	崔濯	①
진주	鼎岡書院	20(1820)	鼎岡鄉賢祠 / 鼎山鄉祠	鄭溫, 姜叔卿, 河潤 俞伯溫, 李濟臣, 陳克敬 朴敏	①/③
함양	道谷書院	27(1701)	鄉賢祠	趙承肅, 鄭復周, 盧叔全 盧友明	①
함양	龜川書院	27(1701)	鄉賢祠 / 鄉祠	林孟智, 表沿沫, 梁灌 姜漢九, 梁喜, 河孟寶	①/③
거창	龍源書院	20(1694)	龍源祠	文緯	②음지
거창	屏巖書院	33(1707)	屏巖祠	卞季良, 卞璧	②
합천	明谷書院	26(1700)	鄉賢祠 / 鄉祠	裒一長	①/③
창녕	高岡書院	39(1713)	高岡里社	金廷哲, 張是行, 孫佺	①
창녕	燕巖書院	21(1695)	鄉賢祠	李承彦, 李長坤, 成安義	③
청도	南溪書院	30(1704)	南溪祠	金之岱	②
장기	竹林書院	33(1707)	蓬山影堂	宋時烈	③

※ 통칭은 『교남지』에 의거 하였다.

※ 전거의 참고문헌은 영조초 시대에 작성된 ① 『서원록』, ② 『서원가고』, ③ 『조두록』, ④ 『열읍원우사적』을 대상으로 했다. 통칭과 동일한 것은 표기를 하지 않았다. 단, 『음지』는 19세기에 작성되었지만 시기가 명시된 것은 표기하였다.

※ 초기명칭과 전거에서의 구분은 (/)로 하였다.

정비기에 해당하는 영조대는 탕평론을 펴면서 이를 원사의 문제에도 적용시켰다. 그 결과 왕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당과의 이해에 따른 서원대책은 배제되고, 조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범위에서의 서원건립 허용이나 사액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사액이 주어저도 합천 華巖서원(박소)과 거창 褒忠祠(李述原)와 같이 당색과 무관한 인물을 제향한 곳이었다. 그러나 영조 14년(1738) 안동 金尙憲서원의 건립과정에서 나타난 노론과 남인의 충돌은 서원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켰으며,⁵⁴⁾ 영조 17년(1741) 단행된 원사훼철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18세기에 들어오면 경상도 지방은 갑술환국과 무신란을 겪으면서 仕宦路가 완전히 막히게 된다. 또한 노론의 집권하에 원사에 대한 정책이 편파적으로 시행되던 시기였다. 노론측은 집권당의 잇점을 살려 남인의 당색을 버리고 전향하는 자에 대한 우대와 천거를 통하여 경상도의 분열을 획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상도내 노론의 부식과 확대를 꾀하였다.⁵⁵⁾ 이러한 노론의 적극적인 대남인 포섭책은 소론과의 경쟁을 통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숙종대의 갑오정식이후 영조대의 훼철 전까지 <표 6>에서와 같이 경상도내에 27개소의 원사가 건립되게 되었다.

이들 원사는 서원신설금령을 피하여 精舍鄕賢祠里社影堂 등으로 건립되었다가 후대에 승원하거나 그대로 남기도 하였다. 숙종대에 건립된 8개소의 원사는 모두 사우내지 영당으로 건립되었으며, 경종대는 5개소의 원사가 건립되었다. 영조대는 무신란(1728)을 기준으로 난전에 2개소의 원사가 건립되

54) 정만조, 앞의 책, 1997, pp.270-275.

55) 영조 13년(1737)의 경상감사 閔應洙는 예안 李守淵, 안동 金世烈, 진주 河德望, 의령 姜聖和, 안음 慎守彝, 금산 曹世鵬, 합천 姜趾股, 합천 鄭熙運, 거창 李暉, 비안 權翻 등을 조정에 천거하였다. 또한 합창 蔡之沔, 경주 韓汝愈에 대하여 추증을 청하고, 曹偉, 김평팔, 정여창에 대한 특별 증직을 요구하였다(『영조실록』 권43, 영조 13년 3월 신묘조).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수연(진성)은 퇴계의 6세손이었으며, 김세열(서흥)은 김평필의 후손이었다. 하덕망(진주)은 남명학을 가학으로 전수받았다. 신수이(거창)는 노론의 대표적 峻論인 李緯의 문인이자 하도의 대표적 노론계였다. 강성화(진주)는 남인계 姜大遂의 후손이며, 이휘(연안)는 선조말 정인홍의 문인들과 알력이 있던 李時益의 현손이었다. 조세봉(창녕)은 조위의 후손이었으며, 정희운(하동)은 정여창의 후손이었다. 권빈(안동)은 權斗寅의 아들로서 남인계였다. 채지면(인천)은 송시열의 문인이며, 한여유(곡산)는 경주의 대표적 노론계 가문이었다. 이처럼 당대 혹은 선대에 남인계에서 노론계로 전향한 가문인사들이 많았는데, 남인명문가의 자손들은 적손이 아닌 방계였다. 이들은 향촌내에서 세력이 약한 가문들로서, 노론의 권세에 힘입어 일향내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향한 것이다.

고 이후에 12개소의 원사가 건립되었다. 하지만 <표 7>에서의 영조 17년에 휘철된 원사 중 중복되는 5개소의 원사를 제외한 47개소의 원사와 합치면 실제 74개소의 원사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연평균 2개소의 원사가 건립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숙종 40년의 금령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원사가 남설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 6> 숙종 40년 - 영조 17년까지 건립된 원사

지역	원사명	건립연대	초기명	제향인물	비고
비안	白川書院	숙종46(1720)	白川精舍	張輔之 柳砲 卞勇 李薰	순천장씨, 진주류씨 초계면씨, 양성 이씨
"	屏湖祠	영조5 (1729)	.	金喜 朴嗣叔 朴忠仁 朴孝純	의성김씨, 밀양박씨, 비안박씨
함창	陶溪精舍	숙종45(1719)	清巖祠	柳砲 柳達遵 李謙	진주류씨(부자), 전주이씨(종친)
경주	仁山書院	숙종45(1719)	仁山影堂	宋時烈	谷山韓氏, 노론계
"	鶴南祠	경종2 (1722)	.	金洵 金光福	청풍김씨, 소론계
"	雲泉書院	영조14(1738)	雲泉鄉賢祠	李彦适 權德隣	여주이씨농재파, 안동권씨
안동	陔陽書院	영조17(1741)	.	孫洪亮 金自粹 柳仲淹	일직손씨, 경주김씨, 풍산류씨
"	洛濱書院	경종2(1722)	.	李惟樟	예안이씨
의성	玉川祠	경종3 (1723)	.	朴長春	반남박씨
성주	晴川書院	영조5 (1729)	.	金宇颺 金聃壽 朴而章	의성김씨, 순천박씨
"	新溪祠	숙종40(1714)	鄉賢祠	李承	전주이씨
"	雲岩書院	영조10(1734)	雲岩鄉賢祠	崔恒慶 崔莞 崔麟	永川최씨
"	道川書院	영조5(1729)	.	裴尙龍	성주배씨
봉화	鳳城鄉社	영조3 (1727)	文溪祠	琴儀 鄭云敬	봉화금씨, 봉화정씨
永川	滄洲書院	영조12(1736)	滄洲里社	曹尙治 曹漢輔 曹漢英	장녕조씨, 노론
순흥	文山書院	영조11(1735)	九峯精舍	洪宇定	남양홍씨
예천	仁山書院	영조3 (1727)	.	權孟孫 李文佐 權五紀 李光胤 金慶言	예천권씨, 경주이씨

지역	원사명	건립연대	초기명	제향인물	비고
"	道正書院	경종3 (1723)	·	鄭琢, 鄭允穆	청주정씨
상주	玉洞書院	숙종40(1714)	龐村影堂	黃喜	장수황씨 사액 사림
울산	石溪書院	영조13(1737)	鄉賢祠	李藝	학성이씨
거창	褒忠祠	영조13(1737)	·	李述原	연안이씨, 사액
"	景忠祠	영조15(1739)	·	愼溟翊	거창신씨
함안	松亭(江)書院	경종1 (1721)	鄉祠宇	趙任道	함안조씨
양산	七賢祠	숙종41(1715)	·	柳自湄, 柳光先, 柳汀 柳榮春, 柳伯春, 柳得春 柳泰英	문화류씨
안의	黃巖祠	숙종40(1714)	·	郭趨, 趙宗道	현풍곽씨, 함안조씨, 사액, 사림.
"	黃巖別祠	숙종41(1715)	·	鄭庸, 劉名盖	진주정씨, 거창유씨, 사림
고성	昆義書院	영조14(1738)	·	李云吉, 魚淵, 魚變甲 魚孝瞻, 李義亨	고성이씨, 함중어씨

< 표 6 > 의 원사들은 일향 내 유력가문들의 조상을 제향하거나 노론계 인사를 제향하고 있었다. 상주 옥동서원, 거창 포충사, 안의 황암사 등의 사액 원사는 향중사림의 공론으로 건립되었지만, 제향인은 일향내의 고관출신 내지 해당지역에서 순절한 인물들이었다. 즉 이 시기의 제향인물들을 보면 사액·미사액 원사를 구분치 않고 특정가문의 家廟적 성격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17세기 중엽이후 경상도 사림들의 출사로가 막히면서 일향내에서 사족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구로서 개별문중원사의 건립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문중원사의 영향력은 인근고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일향에서의 향권 장악이란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그래서 당쟁으로 국가의 원사통제력이 약화된 영조 9년(1733) 이후 집중적인 원사건립을 가져오게 되었다.⁵⁶⁾ 하지만 이 시기에 건립된 원사는 숙종대 이후 제향인의 질적

56) 이 시기 노론으로 전향한 남인계 인사들의 가문은 노론들에 의해 비록 말단이지만 참봉·고관직을 제수받기도 하였으며, 기존 서원의 운영내지 원사의 건립에도 노론계 지방관의 협조 아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결과 향권을 둘러싼 남인과 신출노론사이에 안동 김상헌서원의 건립시비와 같은 충돌이 있었다. 이후 경주 서악서원의 원입직을 둘러싼 향전은 신향과의 분쟁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노론계의 향권

저하가 심화되어 사액원사에도 제향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이 선정되었다.

영조 17년(1741) 원사의 휘철이 시행될 때 경상도에서는 52개소⁵⁷⁾의 원사가 휘철되었다.⁵⁸⁾ 이는 위에서 살펴본 원사에 비하여 더 많은 원사가 건립되었던 것을 나타낸다. <표 6> 과 <표 7> 을 비교하였을 때 5개소의 원사만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건립된 원사중 상당수가 휘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실제 각 읍별로 사사로이 건립된 원사를 모두 파악하기란 유생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하였을 것이며, 이들의 고의적인 기만도 있었을 것이다.⁵⁹⁾ 경상도에서 휘철된 원사를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영조 17년 경상도내 원사 휘철 현황

지역	원사명	건립연대	제향인	복설연대	비고
봉화	漢溪精舍	영조3(1727)	琴梧, 任石高		
"	鄉賢祠	영조3(1727)	琴儀, 鄭云敬	정조8(1784)	文溪書院
성주	世德祠	영조7(1731)	李長庚, 李兆年, 李仁復 李崇仁, 李稷	•	(延鳳書院)
"	道川書院	영조5(1729)	裴尙龍	•	道南書院
"	雲岩鄉賢祠	영조10(1734)	崔恒慶	정조6(1782)	鰲巖書院
"	竹溪影堂	영조15(1739)	閔鎮遠		
"	生祠堂	영조3(1727)	崔鎮漢		소론(우병사)
상주	甌淵忠烈祠	영조14(1738)	尹暹, 朴篋, 李慶流		
"	竹林鄉賢祠	영조13(1737)	成灑, 成獻徵, 成晚徵	•	竹林書院
"	伊溪孝社	영조13(1737)	廉行儉		효자
영덕	新安影堂	영조11(1735)	朱子畫像, 宋時烈	•	新安書院

분열 과정에서 오던 마찰이었다.

57) 『서원등록』 권8, 신유(1741) 8월 15일.

58) 갑오년(숙종 40)에 定式한 뒤에 조정에 아뢰지 않고 사사로이 건립한 사원(祠院)과 사사로이 추향하는 경우 대신이나 유현을 논하지 말고 모두 철거케하고, 건립당시의 수창유생과 지방관을 논죄케 하였다(『영조실록』 권53, 영조 17년 4월 임인조).

59) 영남지역은 가장 많은 영당과 향현사, 생사당이 건립되어 고을마다 있는 것을 다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서원등록』 권8, 신유(1741) 4월 21일)고 말하고 있듯이 해당 고을 사족들의 협조가 없이는 원사의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지역	원사명	건립연대	제향인	복설연대	비고
경주	雲泉鄉賢祠	영조8(1732)	李彦适 權德麟	•	雲泉書院
〃	丹丘社祠	영조6(1730)	李希龍 權復興, 李文軫		옥구이씨
〃	生祠堂	영조16(1740)	趙明謙		노론
양산	生祠堂	영조9(1733)	李滄		소론
군위	生祠堂	영조13(1737)	閔鎭綱		소론
밀양	生祠堂	영조3(1727)	趙彦臣		소론
의성	玉川精舍	경종3(1724)	朴長春 李世憲	•	玉川祠
칠곡	泗陽書院 別祠	숙종43(1717)	李遠慶		
청도	生祠堂	영조3(1727)	尹鳳九		노론
〃	生祠堂	영조15(1739)	沈鐸		
순흥	九峯精舍	영조11(1735)	洪宇定	정조10(1786)	文山書院
〃	崇報祀	영조11(1735)	黃躔		
선산	忠烈祠	영조11(1735)	許應祥		
합천	龍川書院	숙종40(1714)	文東道	•	龍淵書院
〃	生祠堂	영조10(1734)	李秉泰	순조32(1832)	노론, 淸川書院
〃	雲溪祠宇	영조14(1738)	鄭仁卿 鄭仁涵	철종13(1862)	雲溪書院
김해	忠烈祠	영조14(1738)	宋賓	•	松潭書院
함안	道林書院 別祠	경종2(1722)	李偁, 李漣		
〃	安道里社	영조12(1736)	裴汝慶		
〃	山足影堂	영조11(1735)	趙榮福		
비안	烏山精舍	영조11(1735)	金垠		
〃	白川精舍	숙종44(1718)	柳砲, 卞勇, 李薰, 張文瑞	정조5(1781)	白川書院
예천	庚川精舍	영조2(1726)	潘濡 太斗南, 宋福基	•	玉川祠
하양	生祠堂	영조6(1730)	李敬臣		
고성	崑義書院	영조15(1739)	魚淵 魚變甲, 魚孝瞻 李義亨	•	崑義書院
진주	生祠堂	영조15(1739)	尹基慶		남인
대구	愍忠祠	영조15(1739)	黃璿	•	愍忠祠
〃	遺愛祠	영조15(1739)	俞命岳		
〃	生祠堂	영조15(1739)	俞拓基		노론(감사)
〃	生祠堂	영조16(1740)	李垓		남인(봉사)

향인들이 모두 지방관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노소론계 인사의 생사당 건립은 부세경감의 혜택과 재물을 모을 수 있는 取利수단의 일종으로 이루어졌기에 정치적 성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⁶³⁾ 반면, 휘철이전의 조사에서 명단에 있던 원사 중 성주 晴川서원(金宇驎), 울산 鄉賢祠(李藝), 상주 松岩祠(廉行儉) 등의 3개소는 휘철시 빠진 원사였다.⁶⁴⁾

이중 엽행검 사우는 이후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휘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우옹 서원은 존치되고, 이예(학성) 사우는 이듬해 石溪서원으로 승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휘철원사의 제향인들 중 노론계 인사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없다는 점과 <표 6>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향유들이 빠진 점을 볼 때 향촌사족들의 저항을 의식한 의도적 누락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조 17년에 단행된 휘철이 일시적으로 원사의 남설과 첩설을 둔화시키고 양민모점, 祭需징수, 대민작폐와 같은 서원폐단을 감소시켰지만 전체 원사의 정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숙종대는 원사의 건립과 사액에 있어 당파적 편향성이 전대에 비하여 심화되던 시기였다. 갑술환국이전에는 원사의 건립보다는 사액에 더욱 적극적이었으며 노론의 집권시에는 원사의 건립에 적극성을 보였다. 갑술환국이후 노론전제가 시행되자 경상도내 원사는 연 4.3개소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때의 서원신설과 첩설에 대한 금령으로 사우의 수가 급증하고 제향인의 기준에 적합지 않은 인물들이 제향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결국 원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으며 이후 원사의 남설과 폐단은 국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숙종 40년의 신설과 첩설의 금령은 잘 지켜지지 않고 연 2개소 이상의 원사가 건립되었다. 결국 영조 17년에 이르러 대대적인 휘철이 있었지만, 지방유생들의 비협조와 수령의 방관으로

62) 李浹(미상) : 본관은 연안, 자는 悅卿, 부는 觀徵(이조판서), 許穆 洪宇遠 문인, 진사, 이현일의 留任疏를 올림.

63) 정만조, 앞의 책, 1997, p.298.

64) 『서원등록』 권8, 무오(1738) 7월 20일조를 보면, 영조 1년(1725)이후 당시까지 건립된 11개소의 원사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이중 성주 晴川서원(金宇驎), 울산 鄉賢祠(李藝), 상주 松岩祠(廉行儉) 등의 3개소는 휘철당시 명단에 빠져있다.

일부 원사만을 훼손한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러한 불완전함은 언제던지 원사가 남설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영조말년부터 나타난 이러한 조짐은 정조대 제재완화와 남인의 사환로가 열리면서 다시 원사건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IV. 19세기 원사의 복설과 훼손

복설기인 영조 17년의 훼손령 이후 철종대까지 건립된 원사가 영조대 21개소, 정조대 44개소, 순조대 50개소, 헌종대 23개소, 철종대 21개소로 나타나듯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일견 순조대 이후 원사의 건립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정조대 이후 연평균 1.5개소의 비율로 꾸준히 건립되고 있었다. 정조대는 노론의 전제하에 있었지만 탕평책의 계승이란 명분하에 소론과 남인, 서열에 이르기까지 고루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조대에 사액된 원사는 안동 西礪祠(= 서간서원 金尙憲), 안동 孤竹서원(金濟金澍), 하양 琴湖서원(1684, 許稠), 상주 玉洞서원(1714, 黃喜), 성주 玉川忠節祠(1656, 李士龍), 선산 洛峰서원(1642, 金叔滋), 단성 道川서원(1612, 文益漸) 등이다. 이들 원사들은 서간사와 고죽서원을 제외하고는 정조이전에 건립되었다. 서간사의 건립은 영조대부터 있어온 노론측의 남인분열책의 일환으로 남인의 본거지인 안동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타사액원사는 문풍이 쇠퇴한 경상도 지방의 사기를 증진키 위한 정조대의 향촌교화진흥책의 일환으로 건립된 것이다.⁶⁵⁾

65) 17세기 후반부터 기존 향교와 서원의 교육교화의 기능은 없어지고, 공자나 조상의 제향처내지 피역처로 전락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했다. 정조대에 權德訓의 '興學疏'와 洪良浩의 '牧民大方-禮典之屬'에서 訓導制의 복설과 이들에 의한 유생의 시험제의 실시를 말하고 있다(정만조, 앞의 책, 1997, pp.213-325). 하지만, 향교에 대한 鄕任들의 진출로 사족들이 이를 꺼려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실행되지 못하고, 기존서원에 대한 사액을 통한 士子の 교육과 향촌교화에 힘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사액원사에 신향내지 노론계 사족들이 진출하게 되자 기존 남

그러나 사액원사의 제향인들이 전부 일향내의 유력한 성씨의 조상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사액원사는 미사액원사의 제향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高官내지 名儒임에는 분명하지만 공통적으로 문중원사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사액서원의 제향인조차 도학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제향함으로써 당시 원사들의 질적 저하를 보여준다.

<표 1>에서 복설기 이전에는 서원이 사우에 비해 훨씬 많이 건립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서원과 사우의 건립수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우에 비하여 서원의 격이 더 높다고 인식되었기에 17세기 중엽이후 문중원사가 본격적으로 건립될 때는 서원이 사우에 비하여 많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서원이라 불리는 것들도 그 규모나 제향인의 자질로 보아 사우의 규모를 넘지 않았으며, <표 5>와 <표 6>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원에 비하여 사우의 수가 많았다. 또한 <표 7>은 사우가 서원으로 개칭한 것이 정조대 이후임을 알려준다.⁶⁶⁾ 이런 실정이 전체 원사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표 1>에서 제향인을 알 수 없는 112개소의 미사액 서원이 정조대이후 건립되거나 개칭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갑오정식이후 건립된 원사가 사우중심으로 건립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대의 사료에서는 정조대까지 건립된 서원이 사우에 비하여 많으며, 현종대에 와서야 사우가 서원보다 많이 나타난다.

19세기는 17-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한 농민층의 분화와 삼정의 문란, 각종 민란 등으로 인하여 양반지배체제가 붕괴되던 시기였다. 특히 무신란 이후 출사로가 끊긴 경상도에서는 조상의 권위를 빌어 양반의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상의 족보와 문집을 발간하고 贈職贈諡정여를 통한 조상의 현양사업에 경상도 사림이 매달린 결과 18, 19세기에 건립

인계 사족들이 문중원사로 관심을 전환하면서 사액서원을 통한 교화책도 별반 효과가 없었다.

66) 가묘에서 4대 봉사를 넘어가는 경우 선조에 대한 향사를 이어가기 위해 서원으로 건립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났다(윤희면, 앞의 책, 2004, p.127). 합천 운계서원과 永川 창주서원 등의 예와 같이 17-18세기에 건립된 가묘적 성격을 지닌 사우들 중 18-19세기에 서원으로 건립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된 원사의 제향자 중 증직, 창의순절, 효자 등이 많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동족이라도 현조나 명조가 없는 가계에서는 같은 씨족임을 내세워 기존 원사에 대한 추향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문중 내에서 위차시비와 같은 향전을 유발하여 다시 각 가계별로 세분화되었다.⁶⁷⁾ 문중의 분화는 곧 원사건립에 따른 재정의 부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서원을 건립할 때는 막대한 재력이 소모가 되기에 각 고을의 향교, 서원 내지 제향인의 후손, 문인 혹은 향인들의 공동부조에 의해 건립되었다. 하지만 가묘적 성격의 문중원사가 건립되면서 각 읍의 문중내지 후손들만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18세기 이후 단일 가계로서 서원건립에 따른 재력을 감당할 만한 가계는 많지 않았다.⁶⁸⁾ 그래서 이보다 격은 낮지만 사족으로서 최소한의 지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사우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는 19세기 이래 사우가 서원에 비해 증가해 가는 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원사의 무분별한 남설로 인한 원사의 질적저하와 군현민들의 외면은 19세기 중엽이후 양반의 신분유지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종대에 원사의 전면 훼손이 단행되었다.

고종대의 훼손은 고종 5년(1868)의 미사액원사 훼손과 고종 8년(1871)의 사액원사 훼손로 볼 수 있다. 「道內各邑書院毀撤查括成冊草」를⁶⁹⁾ 통해 경상도내 미사액원사의 훼손이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중사족들의 반발과 훼손의 책임을 맡은 지방관들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기

67) 윤희면, 앞의 책, 2004, pp.339-342.

68) 예천군의 경우 18세기이후 서민지주층의 증가와 향리들이 토지를 광점하면서 일부 사족을 제외하고는 중소가문의 사족들은 겨우 품위를 유지할 정도였으며, 이보다 못한 사족들도 많았다(이영훈, 「양반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경상도 예천군 경자양반의 사례분석-」, 『경제사학회』 8, 1984). 이처럼 18세기 이후부터 몰락양반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대명문가를 제외한 여타 사족들은 향리와 서민들로부터 점차 권위를 잃어가고 있었다.

69) 「도내각읍서원훼손사괄성책초」에는 대원군 집권시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당시 경상도 지역의 훼손 원사의 명단이 남아 있어 도움이 된다(이하 서술에서 「성책초」로 약칭한다). 대원군 당시 경상도 지역의 훼손과정은 이수환, 「대원군의 원사훼손과 영남유소」(『교남사학』 6, 1994)에서 상세히 분석되었다.

때문인데, 특히 사족들과 지방관의 유착관계가 크게 작용하였다.⁷⁰⁾

이 책에서 확인되는 505개소의 원사 중 「성책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모두 150개소이다. 건립 연대를 알 수 없는 299개의 원사 중 150개소가 「성책초」에서만 나타나고, 이전의 읍지와 기타 사료에도 없는 것으로 보아 영조 17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로 보인다.⁷¹⁾ 이런 가정 하에 순조대이후의 원사 건립율을 보면 평균 3.7개소로 숙종대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영조대 이후 원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성책초」가 고종 5년의 미사액 원사 휘철조치의 결과를 모두 반영치 못하고 있다⁷²⁾는 점에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휘철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대원군은 고종 5년의 미사액원사 휘철을 마무리하고, 고종 8년에는 문묘종사인과 충절대의인을 배향한 47개 사액원사를 제외한 모든 원사의 휘철을 단행하였다.

V. 맺음말

영남지역은 원사의 건립주체인 사림이 가장 왕성히 활동하였던 곳이었다 만큼 원사관련 자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이 남아있다. 그런 까닭에 개별원사에 대한 사례연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경상도 전체 원사

70) 이수환, 앞의 논문, 1994, p.114.

71) 대원군 휘철이전에 만들어진 사료들 중 비교적 앞 시기에 작성된 것은 『경상도읍지』(1833년경), 『서원가고』, 『조두록』(정조말경 추정) 정도이다. 150개소의 원사가 이들 사료이전에 건립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 영조 17년의 휘철원사명단에 경상도내 사우의 수가 모두 기재된 것은 아니지만, 휘철 원사 중 『성책초』에만 기재된 원사가 1개소도 없다는 점에서 미사액원사의 상한선은 최대 영조대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영조대 이후 건립된 원사의 수는 확인된 것 이상으로 많았을 것이다. 또한 단편적으로나마 기존에 조사된 17-19세기의 원사의 통문에서도 이들 원사의 명단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150개소의 원사규모가 영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2) 이수환, 앞의 논문, 1994, p.124. 필자가 조사한 원사에서는 「성책초」에 누락된 미사액원사가 170개소로 나타난다.

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미흡했던 것 같다. 이런 점들로 인해 본고를 시도하게 되었다. 다시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경상도 원사의 건립추이를 살펴본 결과 임란을 기준으로 이전시기에는 연평균 1개소 미만의 건립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시기 서원건립과정에서 榮川의 경우 거주지를 중심으로 제향인의 후손과 문인들 및 이들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중사림이 모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문이 참여했음을 확인하였고, 여기에 지방관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있었다.

임란이후에는 서원건립과 사액에 있어 정치적 이해가 맞물려 정국의 변동에 따라서 시대별로 건립추이가 달리 나타났다. 임란이후 향촌의 복구과정에서 재지사족들은 양반지배체제를 확고히 했다. 그때 향론을 모으고 집행하는 기구로서 서원이 이용되었다. 이후 서원의 건립추세는 연평균 1.3개소 내외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사액원사의 수는 점차 줄어 효종대는 사액된 원사가 없었다. 당색에 의하여 사액이 주어지던 당시의 상황에서 인조반정이후 정치권에서 몰락한 경상도의 원사가 사액을 받기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 경상도 사림은 퇴계·정구·허목으로 이어지는 기호남인세력과의 학문적 교류를 이어가면서 유소를 통하여 기호남인의 당론을 지지하였다.

이 결과 정구의 학적기반인 성주진주권과 상주권 일부에서 정구의 문인들과 북인에서 남인화한 인물들에 의해 원사의 건립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이때부터 가묘적 성격을 지닌 원사가 건립되고 있었으며, 북인내의 서인 내지 노론화한 인물들에 의해서 원사가 건립되고, 기존 원사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들은 숙종대의 갑술환국이전까지 계속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국이 수시로 변화하기에 원사의 건립에 있어 급격한 증가는 없었다. 경상도 남인세력들도 사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갑술환국이후 몇 년이 지나도 정국의 변화는 없고, 노론의 장기집권체제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자 환국이후 7-8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평균 4.6개소의 건립율을 보이며 원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전 당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원사가 사환로가 막힌 이후 향촌내 사람들의 양반의 기득권 유지라는 생존권차원에서 건립되어갔다.

이 시기 건립된 원사는 광해이전의 인물내지 왜란과 호란 당시 의병활동을 한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들의 첩설과 서원 신설에 대한 금령으로 인해 제향인들의 범위가 수령, 행의있는 선비로까지 확대되면서 원사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 되는 반면, 원사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은 영조 17년의 휘철령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당시까지 건립된 원사수를 보면 서원이 사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재는 후대에 개명된 것으로서 건립당시에는 대부분 사우였었다. 결국 숙종대부터 사우가 서원에 비하여 많이 건립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현상은 대원군의 휘철시까지 계속 이어진다.

영조대의 휘철령으로 원사의 증가추세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전체 원사의 휘철이 아닌 부분휘철로 인해서 원사의 증가 요인을 안고 있었다. 정조대에 오면 휘철된 원사의 복설과 기존 사우의 승원, 새로운 원사의 신설이 이뤄졌으며, 건립율로 보았을 때는 연평균 1.8개소로서 숙종대이후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후 고종때의 휘철전까지 평균 1.5개소의 원사가 건립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원사 남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제향할 만한 인물도 없었으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농민층의 계층분화가 일어나고 몰락양반들이 속출하였다. 또한 원사가 더 이상 양반의 신분유지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이 결과 대원군의 휘철령으로 인해 전면적인 휘철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사족들의 반발로 인해 고종 5년의 5차례에 걸친 미사액원사의 휘철에서 고종 8년의 사액원사에 대한 휘철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전국적으로 47개소의 원사만이 남게 되었으며, 경상도에서는 13개의 원사만 남게 되었다. 이처럼 경상도내 원사는 최초 퇴계와 그의 문인들의 서원보급 운동에 의해 건립이 진척되다가 임란이후 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갑술환국 이후 양반들의 신분유지기구로 그 기능이 변화되어 18-19세기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사료

『俎豆錄』, 『書院可攷』, 『列邑院宇事蹟』, 『增補文獻備考』, 『東儒書院叢錄(乾坤)』 (『書院誌叢書』 1, 民族文化社 1987), 『書院謄錄』, 『朝鮮王朝實錄』, 『典故大方』, 『嶠南誌』, 『嶺南邑誌』, 『書院錄』, 『道內各邑書院毀撤查括成册草』 (『栖碧外史海外蒐佚本』 15, 李佑成 編 亞細亞文化社 1990)

2. 단행본

정순목,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이수진,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出版部 1979.
 이수진,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朝閣 1995.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우인수,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朝閣 1999.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朝閣 2001.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3. 일반논문

姜祥澤, 「朝鮮 中後期 書院 發達에 관한 研究」, 『國史館論叢』 59, 국사편찬위원회, 1994.
 高錫珪, 「朝鮮時代 書院祠宇에 對한 研究의 推移와 性格」, 『外大史學』 1,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연구소, 1987.
 朴 珠, 「朝鮮 肅宗朝의 祠宇濫設에 對한 考察」, 『韓國史論』 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
 薛錫圭, 「肅宗朝 院宇動向과 朋黨의 사회적 기반」, 『國史館論叢』 34, 국사편찬위원회, 1992.
 宋準湜, 「南冥學派의 書院建立 運動」, 『南冥學研究』 15, 경남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李泰鎭, 「士林과 書院」,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8.
 李秉休, 「書院과 朋黨」, 『韓國史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1.
 _____, 「朝鮮前期 支配勢力의 葛藤과 士林政治의 成立」, 『民族文化論叢』 1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李樹煥, 「영남서원의 자료현황과 특징」, 『大邱史學』, 대구사학회, 2001.

- _____, 「朝鮮時代 書院의 内部組織」, 『嶠南史學』 2,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86.
- _____, 「18~19세기 嶺南地方 鄉論의 分열과 鄉戰」, 『人文科學』 14집,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 _____, 「大院君의 院祠毀撤과 嶺南儒疏」, 『嶠南史學』 6,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94.
- _____, 「2000년 이후 한국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 李海濬, 「朝鮮後期 書院研究와 鄉村社會史」, 『韓國史論』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 李相弼, 『南冥學派의 形成과 展開』,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柳洪烈, 「朝鮮 祠廟發生에 對한 考察」, 『震檀學報』 5, 진단학회, 1936.
- 鄭萬祚, 「最近의 書院研究 動向에 關한 檢討」, 『韓國學論叢』 1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 _____, 「韓國書院의 研究現況과 展望」, 『韓國의 書院과 學派研究』, 국학자료원, 2002.
- _____, 「朝鮮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 _____, 「17~18世紀의 書院祠宇에 對한 試論」, 『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5.
- _____, 「朝鮮後期の 對書院施策」, 『第3回韓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_____, 「英祖 17年の 院祠毀撤」, 『韓國學論叢』 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 _____, 「退溪 李滉의 書院論 -그의 教化論과 關한하여-」, 『韓洵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 _____, 「朝鮮書院의 政治 社會的 役割」, 『韓國史學』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全用宇, 「朝鮮朝 書院祠宇에 對한 一考察」, 『湖西史學』 13, 호서사학회, 1985.
- 崔完基, 「朝鮮朝 書院成立의 諸問題」, 『韓國史論』 8, 국사편찬위원회, 1981.
- 黃渭周, 「醴泉地域의 退溪學派」, 『韓國의 哲學』 제28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1.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rivate academies in Yeungnam Province in Chosun Dynasty

Lee Byoung Hoon

This study is aimed to concretize generally well-known facts about the transition of Seowon-Shrine(院祠) and figures enshrined there through the case study of individual Seowon-Shrines in Kyungsang province. Also this study is of a certain significance in a point that the largest amount of Seowon-related materials exists scattered in Kyungsang province, but no concrete study on it has been carried out so up until this point.

The Stage of Creation and the Stage of Development take Imjinoyeran(壬辰倭亂) as their dividing line, which caused the changes of Seowon-Shrines' character. In other words, the character of Seowon as educational institutes during the Stage of Creation underwent some changes into local governing organization for building up the governing system by Sajok(士族) in the Stage of Development. The Stage of Development is the time when political powers were active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Seowon-Shrines and Sa-aek(賜額), Which made Seowon represent the interests of each political power group. The Stage of Over-Establishment is when the number of Seowon-Shrine increased on a dramatic scale as Party-Strife got more intensified after Injo-banjung(仁祖反正) up to the throne after depriving Kwanghaegoon(光海君) of the throne. During the Stage of Restructure, strict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Seowon-Shrines and Sa-aek were enforced on the purpose of solving the side effects of reckless establishment carried out in the earlier period. However, such

regulations failed to see the expected results because the regulations were applied at the mercy of each political power group's advantages. It is in the Stage of Restructure that the establishment of Seowon-Shrines increased again after undergoing the Decree of Abolition(毀撤令). From that time, the number of Seowon-Shrine was starting to surpass the number of Seowon.

During the reign of Gojong(高宗: the 26th king of Joseon), when the overall abolition of Seowon-Shrines was underway, imposed were 5 times of abolition projects on non-government-funded Seowon (非賜額書院) in the 5th year of Gojong's reign. Later, the abolitions stretched out to all of the Seowon-Shrines but 47 government-funded Seowon-Shrines(賜額書院) where Confucian figures enshrined in Moonmyo(文廟) were enshrined. However, The abolitions were processed not in a dramatical pace, but in a gradual pace due to the strong opposition and non-cooperation of local confucian-students(儒生), and once abolished Seowon-Shrines were in the process of re-establishment after the Decree of Abolition(毀撤令). By examining such a trans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Seowon-Shrines and the change in the character of figures enshrined in Seowon-Shrines resulting from the transition, it gets possible to see through the character of Seowon-Shrines in Kyungsan province in more concrete ways.

Keywords : Seowon-Shrine(院祠), Party-Strife(黨爭), Sa-aek(賜額), Yeoungnam(嶺南), the Decree of Abolition(毀撤令)

이 논문은 2018년 6월 5일 투고 완료.

2018년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완료.

2018년 6월 25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서 게재 결정.

지역	구분	중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미상	합계
신령	서원	1						1				1						3
	사우							3				1					3	7
연일	서원		(1)															(1)
	사우									1			1					2
장기	서원							1			1	1						3
	사우										1							1
홍해	서원		1															1
	사우															2		2
청하	서원							1										1
	사우																	.
진보	서원		(1)															(1)
	사우															1		1
영양	서원					(1)		1				1					1	3(1)
	사우																	
청송	서원							1(1)			1							2(1)
	사우															3		3
봉화	서원			(1)				2										2(1)
	사우									1						2		3
榮川	서원		1(1)	4		2	2	2			2						1	14(1)
	사우																4	4
풍기	서원						1	1			1							3
	사우															1		1
순흥	서원	(1)		1				1			1	1					4	8(1)
	사우			1				1									4	6
군위	서원					1				1							3	5
	사우																3	3
의흥	서원										1	1					5	7
	사우																3	3
문경	서원							1										1
	사우							3								1		4
예천	서원			(1)				1	1	1		1	1				2	7(1)
	사우					1	1										5	7
용궁	서원					1	1	1									1	4
	사우			1		1	1		2							1		6
의성	서원		(1)				1	1									2	4(1)
	사우	1						1	1								9	12
비안	서원							1									1	2
	사우									1							2	3
영덕	서원			1		1					1							3
	사우															1		1

지역	구분	중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미상	합계
철원	서원														1	1	1	3
	사우								2		1	1			1		3	8
고성	서원					1			2		1						2	8
	사우				(1)								2		1		1	4(1)
청도	서원			1(1)	1				1					1				4(1)
	사우												2	2	1		10	15
가제	서원																	.
	사우																1	1
창원	서원					1								1	1		2	5
	사우								2			1					3	6
진해	서원												1					1
	사우																	.
의령	서원						(1)					1	3	1	1		1	7(1)
	사우					1											3	4
창녕	서원				(1)				3			1	1		1		1	7(1)
	사우								1			1			2			4
영산	서원			1					1								3	5
	사우																2	2
웅천	서원																	.
	사우																	.
곤양	서원																	.
	사우																	.
가장	서원																	.
	사우																	.
합계	서원	(2)	2	8	9	11	8	14	81	2	25	27	26	10	9	3	112	347
	사우	2	3	2	2	10	3	3	41	3	9	16	23	13	12	3	186	331
총합		5	11	33	19	25	16	21	134	5	35	45	50	23	21	6	298	747

안동 임천서원(臨川書院)의 치폐와 사액 청원*

이재현**

-
- I. 머리말
 - II. 임천서원의 치폐와 복설
 - III. 1차 사액 청원과 병호시비
 - IV. 2차 사액 청원과 서원철폐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임천서원의 청액운동과 치폐과정을 통해 19세기 안동지역 사림의 동향과 중앙정부의 서원 정책을 검토하였다. 임천서원의 뿌리는 임천서당이다. 임천서당은 1607년(선조 40)에 김성일을 모신 사당을 세워 임천향사가 되었고, 1618년(광해군 10)에는 사액을 받아 임천서원이 되었다. 1620년(광해군 12)에 안동의 여강서원에 이황과 함께 유성룡과 김성일이 배향되면서, 임천서원과 병산서원에 있던 유성룡과 김성일의 위패는 여강서원으로 옮겨졌고, 사당이 사라진 임천서원은 황폐화되었다.

19세기에 임천서원은 재건되었다. 1806년(순조 6)에 임천서당이 재건되었고, 1847년(헌종 13)에 김성일이 강의하던 석문정사의 서편에 임천서원이 재건되었다. 임천서원이 다시 세워진 이유는 당시 안동지역에서 확산되어 가던 병호시비와 관련이 깊다. 임천서원의 건립은 호유들이 주도하였고, 그들은 임천서원을 병유의 병산서원과 대등한 위상을 가진 서원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재건된 임천서원에서는 두 차례의 사액 청원이 있었다. 첫 번째 사액 청원의 원인은 병산서원의 단독 사액이었다. 병호시비의 과정에서 병유는 병산서원의 사액에 성공하였고, 이 때문에 호유도 임천서원의 사액을 추진하였으나 대원군의 거부로 실패하였다. 두 번째 사액 청원의 원인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었다. 서원철폐령으로 미사액서원인 임천서원이 훼손되자 호유는 임천서원의 사액을 받아서 대응하려고 하였다. 이 또한 대원군의 거부로 실패하였고, 오히려 1871년(고종 8)의 2차 서원철폐령으로 안동지역에서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이 철폐되었다.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CDM-1240004)

**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자료센터

임천서원의 치폐과정과 사액 청원은 안동지역 내의 향론 및 중앙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사액 청원의 실패하고 최종적으로 서원이 훼손된 것은 병호시비의 보합이 실패하고 대원군이 영남지역에서 우호세력 확보에 실패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키워드 : 임천서원 퇴계학파 청액운동 병호시비 서원훼손

I. 머리말

安東의 臨川書院은 金誠一(鶴峰, 1538~1593)을 배향한 서원이다. 임천서원은 1607년에 김성일을 제향하는 鄉社의 형태로 처음 세워졌다가, 1618년에 사액을 받아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廬江書院(虎溪書院)으로 김성일의 위판이 옮겨가면서 황폐화 되었다. 서원은 19세기가 되어서 복원되었고, 다시 사액을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大院君의 서원훼손령에 의해 훼손되었다.

임천서원은 조선시대에 김성일을 단독 배향한 유일한 서원이었다. 김성일의 학맥은 柳成龍(西厓, 1542~1607)의 학맥과 함께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 북부지역의 퇴계학파를 양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세기에 이르면 이들은 각각 虎派(鶴峰系)와 屏派(西厓系)가 되어 대립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때 안동지역에서 병파의 중심처가 된 곳은 류성룡을 배향한 豐山의 屏山書院이었다. 屏虎是非가 격화되면서 호파 측에서도 안동 내에 김성일을 배향한 서원을 필요로 하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임천서원이 복설되었다. 19세기에 임천서원이 복설되고, 사액 청원을 하고, 훼손되는 과정은 병호시비 및 대원군의 對서원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屏虎是非에 대해서는 몇 차례의 연구가 진행되어 그 전말이 소개되어 있다.¹⁾ 병호시비는 류성룡과 김성일간의 位次문제로 촉발되었으나, 그 핵심은

1) 申奭鎬 「屏虎是非に就いて(上)(下)」, 『靑丘學叢』1-3, 1930-1931;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金炯秀, 「조선후기 영남지역 여론 형성과 정치참여: 통문과 상소」,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1)』, 한국국학진흥원, 2007; 「19세기 안

안동의 首書院인 호계서원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안동, 나아가서는 嶺南 鄉論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嶺南南人 내부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초기에 갈등을 일으킨 주요 사안은 李象靖(大山, 1711~1781)의 호계서원 追享문제였고, 19세기 중반에는 『廬江志』와 『大山實記』 간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다.

대원군의 서원철폐과정의 대강은 우선 金世澗과 成大慶에 의해 연구되었다.²⁾ 이들 연구는 서원철폐를 대원군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 이후 이수환과 정진영은 서원철폐에 대응하는 영남유소의 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³⁾ 이 상소운동은 尙州의 道南書院이 중심이 되었다. 이에 임천서원을 통해서는 상주와는 다른 안동지역 유림들의 동향을 일정부분 파악할 수 있다.

또 윤희면은 서원철폐에 이르는 과정을 萬東廟 철폐(1865, 고종 2), 미사액 서원철폐(1868, 고종 5), 사액서원철폐(1871, 고종 8)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 과정 속에서 서원의 재산 처리와 存置서원의 설정, 유림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⁴⁾

본고에서는 임천서원을 통해 병호시비가 안동지역 내에서 전개되는 과정

동과 휘주의 향전과 종족 갈등」, 『안동학연구』6, 한국국학진흥원, 2007; 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和 屏虎是非(I)」,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退溪學派의 分化和 屏虎是非(II)-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退溪學과 韓國文化』45,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9; 김성운,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 동향 - 철종대 김수근서원 건립과 고종대 병호보합을 중심으로-」, 『영남학』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IV장 2절; 한상우, 「조선후기 鄉戰을 통해 본 양반층의 親族 婚姻 -안동의 屏虎是非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8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이재현, 「순조 연간(1800~1834) 안동지역 유림의 정치적 동향」, 『퇴계학과 유교문화』59,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6.

2) 金世澗, 「大院君의 書院毀撤에 관한 一考察」,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0; 成大慶, 「大院君의 書院毀撤」,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1985.

3) 李樹煥, 「대원군의 서원철폐과정과 영남유소」, 『교남사학』6,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1994;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潮閣, 2001, 9장; 정진영,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정치적 동향 - 萬人疏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4, 부경역사연구소, 1997.

4) 尹熙勉, 1999, 「고종대의 書院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10,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을 살펴보고 대원군 서원훼철 정책에 대한 지역유림의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임천서원의 치폐와 복원과정을 개관하고 두 차례 있었던 사액 청원의 과정을 살펴보아 병호시비와 서원훼철 후 유림의 구체적인 대응 양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천서원의 사액 청원과 관련된 주요한 자료는 안동 兪州柳氏 水谷派의 柳基鏞(石隱, 1823~1886)가 쓴 『臨川請額日記』와 『客日隨錄』이다.⁵⁾ 또한 19세기 초 임천서당의 재건 관련 기록은 『임천서당 중건 일기』에 자세하다.⁶⁾ 아울러 당시 안동지역 유림의 일기자료도 활용하였다.

II. 임천서원의 치폐와 복설

임천서원의 뿌리는 臨川書堂이었다. 임천서당은 金璣(靑溪, 1500~1580)의 3남인 金明一(雲巖, 1534~1570, 김성일의 형)이 주축이 되어 1568년(선조 1)에 안동 臨河 강가의 緣巖寺 터에 건립되었다. 원래는 義城金氏 문중 자제의 교육을 위한 서당이었으나, 1607년에 김성일의 위패를 봉안하면서 臨川鄕社로 만들었다.⁷⁾ 이후 1618년(광해군 10)에 사액을 받아 서원으로 격상되었으나, 1620년(광해군 12)에 봉안된 김성일의 위패가 여강서원으로 옮겨가면서 임천서원의 사당은 비워졌다.

여강서원은 당시 안동에서 李滉(退溪, 1501~1570)을 배향한 유일한 서원이었다. 1619년(광해군 11)에 당시 병산서원 원장이던 金奉祖(鶴湖, 1572~1630)는 여강서원에 류성룡과 김성일의 배향을 추진하였다. 그의 명분은 평소에 류성룡이 서원난립에 대해 우려하였다는 점과 안동에 여강·임천·병산의 3개소에 서원이 난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사실 서애

5)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6)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편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7) 설석규, 「조선시대 『서원 일기』 해제」,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23쪽.

계와 학봉계가 여강서원을 배타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였고, 이 과정에서 南致利(賁趾, 1543~1580)를 배향하려던 김언기(惟一齋, 1520~1588)계가 배제되었다. 애초에 1614년(광해군 6)에 병산서원이 건립되고 1618년에 임천서원이 사액되는 것은 禮安 陶山書院에 趙穆月川, 1624~1606)이 從享된 것에 따른 안동유림의 대응이었다.⁸⁾

1620년에 류성룡·김성일의 배향이 성사되자 병산서원과 임천서원은 모두 사당이 비워졌다. 이 때문에 병산서원에서는 여강서원 배향논의가 있을 무렵부터 류성룡의 위패를 옮겨가는 문제로 반발이 있었다.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을 야기하였으나, 1629년(인조 7) 병산서원의 사당에 여강서원과는 별도로 류성룡의 위패를 모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반면 임천서원에서는 김성일의 배향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별다른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안동지역에서 서애계와 학봉계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서애계가 안동지역 공론을 주도한 반면 학봉계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해있었다.⁹⁾ 결과적으로 임천서원의 사당만 비워지면서 안동지역에서 김성일을 단독 배향한 서원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임천서원은 점차 퇴락하다가 泗濱書院이 창설되면서 모든 재산이 사빈서원으로 이전된다. 사빈서원은 1675년(숙종 1)에 안동 임하의 경출산에 김진의 遺像을 봉안하면서 沙濱影堂으로 창설되었다. 이후 1685년(숙종 11)에 김진을 主享으로 하고 그의 다섯 아들인 金克一(藥峰, 1522~1585), 金守一(薊峰, 1528~1583), 김명일, 김성일, 金復一(南嶽, 1541~1591)을 배향하면서 景德祠로 승격되었다. 1709년(숙종 35)에는 의성김씨 집성촌인 川前의 마을 밖 泗水가로 옮기고 사빈서원이 되었다. 그런데 1717년(숙종 43)에 御史 李明彦이 안동지역을 순시하다가 6父子가 함께 제향된 것을 보고 조정에 휘철을 건의하여 승인을 얻어내었다. 이 사건은 안동사림의 상소운동으로 인

8) 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和 屏虎是非(Ⅱ)-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退溪學과 韓國文化』45,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9, 326~330쪽.

9) 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和 屏虎是非(Ⅱ)-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退溪學과 韓國文化』45,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9, 330~334쪽.

해 무마되었으나, 사빈서원이 지역 내에서는 사빈서원이나 공식적으로는 사빈서당으로 격하되어 존속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⁰⁾

김성일의 위패가 여강서원으로 移安된 이후 임천서원은 임천서당으로 존속하였다. 그것은 『沙濱志』의 「사빈서원 창건시 일기」에 임천서당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빈서원과 임천서당은 처음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1676년(숙종 2)에 김진의 아들 5형제의 봉안을 발의한 곳이 임천서당이었다. 봉안이 다시 적극 추진되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1685년(숙종 11)이었다. 2년 후에는 사빈서원과 임천서당의 병합이 결정되어 서적과 토지, 노비가 사빈서원으로 귀속되었다. 이때 명분으로 본래 한 곳에 제향하려 했으나 따로 설립한 것이니 병합하여 先輩들의 뜻을 따르고, 차후의 관리에도 편리하다는 점을 들었다. 「임천서당 중건 일기」에 따르면 노비 및 토지뿐만 아니라 재목과 기와도 사빈서원 건설에 투입되었다. 실제로는 사빈서원의 건립 당시부터 임천서원과의 병합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임천서당이 중건이 논의 되는 것은 100여 년 후인 1803년(순조 3) 3월이었다. 모임은 안동 臨北의 龜溪書院¹¹⁾에서 있었고 발의한 인물은 默洞의 李重祖(藏窩, 1737~1806)와 水谷의 柳廷燦(明瑞, 1737~1814)이었다. 이 모임에서 50여 인이 동의하여 천전의 의성김씨 본가로 문의하고, 다음 달에 사빈서원 문회에서 임천서당의 중건을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805년(순조 5)부터이다. 처음에는 안동 내에서 扶助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는 자금부족으로 중간에 난항을 겪었으나 이듬해 연말에는 건물이 거의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08년(순조 8)이 되어서야 堂長으로 柳範休(壺谷, 1744~1823)를, 堂有司로 李宗周(北亭, 1753~1818)

10) 설석규, 「조선시대 『서원 일기』 해제」,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19~22쪽. 이에 따르면 사빈서원은 설립초기부터 서인 측의 견제를 받았는데, 1666년(현종 7)에 건립이 이미 발의되었으나, 실제 건립은 남인집권기인 1675년인 것에서 볼 수 있다. 1717년의 사건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11) 명종 때 우탁을 배향하여 창립한 서원으로 안동 월곡면에 있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당시 훼철되었다. 1966년에 복설하였으나,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자 1975년에 경산의 영남대학교로 이전하였다.

와 金養運(霽陰 1764~1823)을 선발하여 서당으로 기능을 하게 되었다.¹²⁾ 그 후 1812년(순조 12)에는 수백 명이 모인 白日場을 개최할 정도로 서당운영이 본 궤도에 올랐다.¹³⁾

19세기의 병호시비는 1806년 영남유림이 추진한 4賢(김성일, 류성룡, 鄭述(寒岡, 1543~1620), 張顯光(旅軒, 1554~1637)) 승무소의 위차문제를 두고 시작되었다.¹⁴⁾ 임천서원의 건립을 시도할 당시는 병호시비의 시작 전이지만 그 내부적 알력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00여 년 전 사빈서원 건립 당시는 병산서원을 비롯한 안동 전 지역의 도움을 받았으나, 임천서당의 증건은 發論부터 虎儒 측 위주로 구성되었다. 특히 임천서당의 堂任인 류범휴, 이종주, 김양운은 각각 전주류씨, 고성이씨, 의성김씨로 후의 虎派의 중추를 이루는 가문출신이었다고, 세 사람 모두 이상정의 문인이었다. 1812년의 백일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백일장이 개최된 지 2달 뒤인 10월부터 호계서원에 이상정을 추향하려는 虎派의 주장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임천서당에서의 백일장 추진은 호파 측의 세 집결 의도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임천서당은 증건시작 단계에서는 아니었지만, 완공 후에는 虎派가 집결하는 장소로 기능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의 사건 전개는 병호시비와 나누어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임천서원은 1847년(헌종 13)에 복설되었다. 하지만 서원 복설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없다. 서원은 복원되면서 원래 서당이 있던 위치가 아니라 예전에 김성일이 강의하던 石門精舍의 서편으로 옮겨서 재건되었다.¹⁵⁾ 원래의 위치는 호파가 주로 거주하는 안동 동부지역이었으나, 새로 건립된 곳은 안동 읍치 지역에서 병파가 주로 거주하는 안동 서부 지역으로 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1847

12) 『임천서당 증건 일기』, 1808년 윤5월 8월 18일.

13) 『임천서당 증건 일기』, 1812년 8월 9일.

14) 병호시비의 상세한 과정은 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와 屏虎是非(Ⅱ)-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退溪學과 韓國文化』45,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9, 326~338쪽 참조.

15) 현재의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이다. 현재 다시 복설된 임천서원의 위치는 원 위치에서 동북쪽으로 1.5km 가량 떨어진 안동시 송현동이다.

년에는 호파 측이 이미 호계서원의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안동 지역 내 서원의 상당수가 호파 측을 지원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호파 측이 또 임천서원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정의 호계서원 追享문제로 격화된 병호시비는 1825년(순조 25)의 乙酉道會 이후 일정 부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을유도회에서 보합시도는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그 전에 蔡濟恭의 『樊巖集』 간행 사업 등을 함께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일정 부분 잠복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상정의 언행을 제자들이 기록한 『大山實記』가 1845년(헌종 11)에 간행되면서 다시 논쟁이 촉발되었다. 1848년(헌종 14)에 병파 측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¹⁶⁾ 호파의 거두인 柳致明(定齋, 1777~1861)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절하면서, 시비가 격화되었다.

임천서원이 1847년에 증건된 것으로 보아 서원 복설의 發論은 『대산실기』의 간행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¹⁷⁾ 호파 측은 이미 호계서원을 장악하였지만, 이상정의 추향에는 실패한 상황이었다. 이때 호파는 實記의 간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집결시키고 향론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호계서원이 안동의 首書院이라는 점도 임천서원의 복설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호파 측에서는 호계서원을 장악하였지만 호계서원과 병산서원이 일대일 구도를 형성할 경우 병산서원의 위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때 김성일을 단독 배향한 임천서원을 내세움으로써 병산서원과 대등한 위상으로 만들면, 그 상위에 있는 호계서원을 운영함으로써 안동 혹은 영남남인 향론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임천서원의 위치가 기존은 천전 일대가 아닌 안동부 서쪽에 건립한 것도 이러한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

16) 병유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이상정을 '퇴계 이후의 一人'으로 표기한 것이며, 이외에 호계서원의 묘위 천동이 무고하다는 주장과 문인록의 懸註에 선생을 잘못 표기한 것을 들었다.(김명자, 2009,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21쪽.)

17) 『대산실기』의 초고본 편집은 그 이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

인다.

호유 측에서는 원래 병산서원에 대응할 사빈서원이 있었다. 하지만 1717년의 사건으로 훼손되면서 사빈서원은 향내에서는 서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사빈영당으로 바뀌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¹⁸⁾ 또 이곳은 김성일 보다는 그의 아버지인 김진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다. 호유는 퇴계학파의 적통으로 김성일을 추송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안동의 首書院인 호계서원 외에 학봉계를 상징하는 서원을 필요로 하였다. 이것이 임천서원이 건립된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19세기에 건립되는 서원은 문중서원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임천서원은 김성일이 단독 배향된 서원이었음에 불구하고 앞선 이유로 인해 호파 측 향론의 집결지로 기능하였다. 이 시기 안동지역의 일기자료를 보면 호유측은 임천서원을 병산서원과 대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Ⅲ. 1차 사액 청원과 병호시비

서원이 복설되는 1847년에서 사액 청원을 하는 1864년(고종 1) 사이에 안동지역에서는 병호시비가 격화되고 이를 보합하기 위한 향내 노력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 중인 1855년(철종 6)에는 임천서원에서 이황의 종손인 李彙寧(古溪 1788~1861)이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휘녕은 임천서원에서 김성일을 복향하는 의례에 首任으로 천망되어 참석하였다. 그런데 院任薦望에 불만을 품은 예천의 4權氏(權久相權人夏權相觀權昞模)가 이휘녕을 비난하였고, 그 과정에서 말이 陶山(이황)에게 미치자 모욕을 당한 이휘녕이 바로 돌아왔다. 분노한 이휘녕이 감영에 정소하였으나 감사가 미지근하게 처리하자, 설욕할 길이 없던 이휘녕은 복을 올리고 權

18) 설석규, 「조선시대 『서원 일기』 해제」,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20쪽.

氏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휘녕이 비난당한 이유는 당시 안동지역에 건립되고 있던 서원인 西湖書院(金洙根(溪山樵老 1798~1854) 배향)에 奉安文을 써주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호서원의 건립 주체 측에서는 안동지역의 관례대로 이황의 종손인 이휘녕의 글을 받아서 명분을 강화하려 하였다. 문제는 서호서원이 안동에 건설되는 노론 세도가의 서원이라는 점이였다. 權氏들이 나서기는 하였지만 이휘녕을 비난한 배후로 지목된 것은 金溪의 김성일 本孫이었다. 이에 당시 많은 문중에서 금계의 김성일 본가와 절연을 선언하였다. 반면 같은 이황 후손인 下溪파는 도리어 금계편을 들었다.¹⁹⁾ 가계단위로 향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호서원의 건립과 임천서원의 변고는 1850년대 안동 향내 갈등의 모습과 중앙 세도가와와의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무렵의 안동 내 주요한 사건으로 1852년(철종 3)의 李玄邈(葛庵 1627-1704)의 신원과 추탈, 1855년(철종 6)의 莊獻世子 추송을 위한 嶺南萬人疏 등이 있다. 두 사건을 모두 주도한 인물은 류치명이었다. 이현일의 신원은 18세기 초에는 영남 一道 전체의 문제였으나, 이 무렵에는 호파의 숙원사업이 되어 있었다. 이현일은 이황에서 김성일-장흥효-이현일-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호파 학맥의 핵심인사이다. 따라서 屏虎가 分岐된 시점에서는 이현일의 신원은 호파만의 문제가 되어있었고, 병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호파의 신원 노력으로 1852년에 이현일의 신원이 허락되었으나,²⁰⁾ 이는 노론계의 강력한 반발로 3년 만에 취소되었다.²¹⁾

19) 이상의 사건 과정은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 동향 -철종대 김수근서원 건립과 고종대 병호보합을 중심으로-」, 『영남학』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61~64쪽, 참조

20) 『철종실록』 권4, 철종 3년 9월 6일 계축.

21) 『철종실록』 권4, 철종 3년 9월 16일 계해. 『철종실록』 권7, 철종 6년 8월 2일 임진. 『철종실록』 권7, 철종 6년 8월 8일 무술. 이현일은 갑술환국 당시 인현왕후를 무함한 名義罪人으로 유배되었다. 이현일의 복권은 영남남인 이 무렵은 호파계 남인의 정치적 복권과 궤를 같이하는 사안이었고, 노론 측에서는 이를 강력히 저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장헌세자 추송 만인소는 1855년 5월에 장헌세자가 죽은 지 120주년을 기념하여 장헌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壬午義理를 분명하게 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로, 이황의 후손인 李彙炳을 疏首로 하여 10,432명이 연명하여 올린 것이다.²²⁾ 이보다 먼저 류치명이 이 사안에 대해 조정에서 미리 상소를 하였고²³⁾ 이후에 만인소가 있었다. 이 상소의 목적은 1792년(정조 16)의 영남만인소처럼 임오의리의 재천명을 통해 영남남인의 정치적 복권을 기도하는 것이었다. 철종은 일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듯하였으나, 노론계는 강력히 반발하였다. 결국 소두인 이휘병 및 조정에 있던 權載大(晶山, 1778-1858)와 류치명이 주모자로 지목되었고, 이어 권재대와 류치명은 정배되었다.

만인소는 영남 도내 전체 유생의 지지를 받은 것이었지만, 앞서 이현일 신원과 마찬가지로 호파 측이 기획한 일이었다. 병파 측은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임천서원 복설 『대산실기』 간행, 이현일 신원 영남만인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업은 호파 측 향론의 집결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勢道家인 김수근의 서원(西湖書院) 건립 사건을 통해 이러한 과정의 내막을 일부 추측할 수 있다. 이 서원의 건립시도가 영남남인의 본산인 안동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안동의 유력 가문들이 이를 협조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병파 측인 풍산 河回의 豊山柳氏와 五味의 豊山金氏 문중이었다.²⁴⁾ 그런데 풍산김씨의 金重休(鶴巖, 1797-1863)가 풍산류씨 柳祈穆의 행적을 비판하면서 한 언급 중에 "시일을 앞당겨 임원의 분정을 반드시 大坪의 柳台에게 부탁한 것은 누가 시킨 것인가?"라는 구절이 있다.²⁵⁾ 여기서 大坪(한들)의 류태는 류치명을 말한다. 김중휴의 말이 사실이라

22) 『철종실록』 권7, 철종 6년 5월 15일 병자.

23) 『철종실록』 권7, 철종 6년 4월 2일 갑오.

24) 서호서원 건립에 대한 상세한 정황은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 정치의 동향 -철종대 김수근서원 건립과 고종대 병호보합을 중심으로-」, 『영남학』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참조.

25) 『乙卯淸議辨』 「淸正錄跋」 "...先期爬任之必託大坪柳台, 亦誰之使然也..."

면 당시 호파의 대표인 류치명이 김수근의 서원 건립을 묵인하며 방해하지 않았다. 1738년(영조 14)에 안동에서 노론계 서원인 鶴東書院이 건립하려고 시도하자 안동의 남인들은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건물을 파괴하였다.²⁶⁾ 이 경우와 비교하면 서호서원에 대해서 안동지역 유림들이 상대적으로 방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류치명이 노론계 서원 건립을 묵인해 준 단서는 이휘녕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이휘녕은 자신이 서호서원의 봉안문을 지은 이유가 이현일의 신원이 서울의 金炳國(穎漁, 1825-1905)이 주선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집안의 일에 무심히 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더구나 1855년에는 이현일의 신원을 둘러싸고 영남유생의 상소가 수차례나 이어지고 이에 반대하는 태학유생들이 3차례나 捲堂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도가와의 협력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²⁷⁾

당시 영남남인의 출사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영남 내의 유력가문에서는 늘 출사자가 있었다. 당시 세도정권이 공고화된 상황에서 당색이 다른 영남 남인들은 세도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반대로 세도가들도 가문의 顯彰과 세도정권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友軍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 또한 黨色の 차원을 넘어서도 가능한 일이었다. 이현일의 신원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다만 노론계 유림들의 광범위한 반발은 세도가 차원에서 저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현일의 추탈과 임천사변에서 나타난 서호서원에 대한 호유의 냉정한 태도로 보아 1855년에는 세도정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호서원의 운영은 호파 측이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면서 파행을 거듭하였다. 병호

26) 학동서원에 관한 사항은 鄭萬祚 「英祖14年の 安東 金尙憲書院 建立是非」, 『韓國學研究』1, 同德女子大學附設 韓國學研究所, 1982; 金炯秀 「1738년(영조 14년) 安東 鶴東서원의 置廢와 지방관의 역할 -『法城日記』를 중심으로」, 『嶺南學』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참조.

27)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 의 동향 -철종대 김수근서원 건립과 고종대 병호보합을 중심으로-」, 『영남학』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63-64쪽.

시비가 다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향내에서 병호보합이 재시도 되었다. 여기서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오히려 임천서원에서 수모를 당했던 이휘녕이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양측의 반목이 심화되는 가운데, 병파는 독자적인 활동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로 1863년(철종 14)에 병산서원 사액이 이루어졌다. 이미 1832년(순조 32)에 병산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대규모 영남유소가 있었고,²⁸⁾ 1853년(철종 4)에도 병산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李同淳(樊南, 1779~1860)의 상소가 있었다.²⁹⁾ 병호시비가 격화되자 병파는 병산서원의 사액을 통해 병산서원의 위상을 호계서원과 대등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863년 11월에 당시 校理였던 李啓魯(1828-?)의 상소에 의해 병산서원의 사액이 결정되었다.³⁰⁾

이렇게 되자 호파에서도 당장 임천서원의 사액을 청원하자는 논의가 격발되었다.³¹⁾ 하지만 때마침 1863년 12월에 哲宗이 승하하고 高宗이 즉위하면서 논의는 철종의 因山 이후로 미루어졌다. 첫 모임은 1864년(고종 1) 4월 15일에 임천서원에서 있었다. 이후 5월 3일에 靑城書院에서 鄕會를 하고 5월 15일에 安東鄕校에서 道會가 열렸다. 임천서원이 현실적으로는 호파의 서원이었지만, 이들은 도내 유림의 公論을 모아 道論으로 사액 청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내의 공의를 모으는 일이니 병산서원의 유림도 당연히 향회에 참석하였다. 이때 병유의 대표격인 柳孝睦(1811-?)은 병산서원의 사액이 5월 8일로 결정되었으나 보류되었고, 조정의 처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기에 관히 사

28) 『승정원일기』 순조 32년 9월 19일 입술.

29) 『승정원일기』 철종 4년 1월 2일 정미.

30) 『승정원일기』 철종 14년 11월 14일 정사.

31) 『臨川請額日記』 1864년 4월 15일. "...第以臨川之與屏山, 卽是一體之地, 則士林之尊奉國家之報施, 宜無後先異同之別. 而今乃未得并列於恩畫之頒, 亦豈非缺圓欠全之事..."라는 구절에서 임천서원과 병산서원이 같은 격인데, 병산서원만 사액된 것에 대한 호파 측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이하 임천서원의 청액 과정에 대한 설명은 특별한 각주가 없으면 류기호의 『임천청액일기』를 참고한 것이다.

액 청원을 하다가 병산서원의 사액마저 철회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고종이 즉위한 이후 모든 정치는 大院君이 執政하였다. 『임천청액일기』에서도 대원군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난다. 대원군은 이미 집권 초기부터 원사철폐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다. 1864년 4월에 각 읍 소재의 書院·鄉賢祠·生祠堂에 소속된 結總·원액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조치가 있었고,³²⁾ 7월에는 원사 휘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³³⁾ 8월에도 원사폐단에 대한 시정책이 제시되어 私說·疊設을 금지하고, 사액서원도 3결만 면세하며, 院生·保率도 액수를 바로잡아 나머지는 모두 充軍하고, 특히 鄉賢祠는 사액이 아니니 모조리 充軍하라고 지시하였다.³⁴⁾

이미 안동 鄉內에서는 5월의 道會 당시 4월의 전교를 확인한 상황이었다. 병유는 병산서원의 사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임천서원의 사액 청원에 동참하였다가 병산서원마저 사액이 철회되는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반면 호유는 현재의 朝旣이 엄격한데다가 미사액서원이 모두 휘철된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임천서원의 사액이 늦춰지면 임천서원만 휘철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결국 병유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호유가 이를 비난하면서 청액소는 호파 단독으로 추진되었다.

疏首는 수곡의 전주류씨 문중의 인사로 결정되었으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은 5월 27일에 順興의 紹修書院에서 다시 도회를 열고 소임들을 모아서 서울로 출발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날은 6월 7일인데 소유들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상소를 직접 임금에게 올리려면 성균관의 謹悉을 얻어야 하는데, 근실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대원군을 직접 통하지 않고 상소를 올렸을 때 일어날 후환이었다. 이들은 성균관에 通文을 돌리는 일조차 대원군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 결단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결국 임천서원 청액소의 疏廳이 내린 결론은 사람을 통해 대원군

32) 『승정원일기』 고종 1년 4월 22일 임진.

33) 『승정원일기』 고종 1년 7월 27일 임진.

34) 『승정원일기』 고종 1년 8월 17일 을유.

의 허락을 받아내어 사액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이들이 서울에 도착한 날에 承旨 李晚運(雙翠, 1815~1886) 등 영남인으로 조정에 출사한 인물 및 기타 上京해 있던 인사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이들 모두 청액상소하는 것이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미 고종 초기부터 서원에 대한 강경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들의 행동은 부적절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편 대원군을 통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 류기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개 근세의 습속은 선현 선조를 현창하는 일을 막론하고 무릇 일을 경영할 때 반드시 먼저 주선하여 간곡히 구하여 이루어질 만한 길을 보게 된 이후에 비로소 유림의 의론을 빌려 그것을 꾸미니, 이미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되었다. 이번 우리의 거사는 본래 기회를 타서 가능하다고 여길 때 하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中略)… 믿는 점은 公議일 뿐이다."³⁵⁾라고 하였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먼저 주선하는 상황은 앞서 안동 鄉内の 사례에서도 확인하였다. 류기호의 해당 발언에서 이 사안이 대원군과 미리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들은 6월 초부터 10월까지 체류하는 동안 상소를 직접 올리지 못하고 여러 사람을 통하여 대원군에게 상황을 알리는 행위 밖에 할 수 없었다. 이들이 대원군과 통하기 위해 접선하는 대상에는 김수근의 아들인 金炳學(穎樵, 1821-1879)도 있었다. 疏儒들이 대원군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끝내 대원군을 설득하는 것은 실패하였다. 류기호는 병파의 방해가 있어서 사액이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나,³⁶⁾ 사실상 사액 청원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원군이 더 이상 사액서원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疏儒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4개월간 서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疏

35) 『臨川請額日記』 1864년 6월7일. "…蓋近世習俗, 勿論爲賢爲先, 凡營事, 必先周旋懇求, 見可成之路而後, 始借儒論, 以文之者, 已成難醫之痼矣. 今番之舉, 本不出於乘機見可之計, 而只山野迂見, 以爲新政之初崇儒右文之治, 若是其可觀, 則儒林抑鬱之願, 或可以見伸於呼籲之日, 故敢此相率而來者, 所持者公議也. …"

36) 『臨川請額日記』 1864년 6월7일. "…且屏山儒生, 無搢紳章甫, 四遊宣言, 沮戲百端, 京中知舊之可有公論者, 并被阻撞, 無意開口. …"

儒들은 이와 함께 병산서원의 사액여부를 주시하였다. 대원군은 병산서원의 사액도 쉽게 해주지 않으면서, 임천서원 疏儒의 정황도 파악하고 있었다. 병유 측에서도 柳疇(溪堂 1813-1872)이 직접 대원군을 만나 병산서원의 사액을 물었으나, 대원군은 기다리라고만 답하였다.³⁷⁾ 한편 몇몇 사람이 임천서원 유생의 동향을 전했는데, 대원군은 근심스럽다는 의견만 나타내었다.

임천서원의 일이 대원군에게서 직접 언급되는 것은 9월 하순의 일이었다. 疏儒인 生員 權弼夏는 대원군을 찾아가 임천서원의 일을 알렸는데, 이에 대원군은 '鶴峯書院의 사액이 없는 것에 무슨 흠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이때 柳壽春(江阜, 1762-1834)의 아들로 佐郎인 柳教祚(1812-?)가 나타나자 대원군이 그에게 임천서원의 疏儒에 대한 일을 전달하게 하였다. 대원군은 의사는 屏虎와 湖洛이 논쟁하고 있는 때에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루지 못할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빨리 下鄉하라는 것이었다.³⁸⁾

그럼에도 疏儒들이 계속 서울에 머무르며 백방으로 일을 도모하자 10월에 다시 대원군의 의사가 전달되었다. 이때 상황을 전달한 사람은 경주 良洞 출신의 大司成 李能燮(老石, 1812-1871)이었다. 이능섭은 임천서원을 사액하는 일을 대원군에게 직접 말했는데, 대원군은 아직도 下鄉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대원군은 자신이 영남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능섭이 직접 하향을 종용할 것을 요구하였다.³⁹⁾ 이후의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결국 대원군의 의사대로 사액 청원은 실패하고 疏儒들은 下鄉한 것으로 보인다.

대원군이 영남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대원군이 영남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屏虎와 湖洛이 논쟁하고 있는 때'라는 발언을 볼 때 병호시비의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고, 호계서원 및 병산서원과 임천서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이어지는 상황을 볼 때 병산서원의 사액은 그가 특히 병파인 柳厚祚(洛

37) 『臨川請額日記』 1864년 9월 10일, 10월 9일에도 대원군은 병산서원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38) 『臨川請額日記』 1864년 9월 22일.

39) 『臨川請額日記』 1864년 10월 9일.

波 1799-1876) 父子와 가까웠다는 이유와 함께 병파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병호보합이라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임천서원의 疏儒들의 활동이 끝난 뒤 불과 5개월 후에 萬東廟가 전격적으로 훼손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병산서원의 사액은 대원군이 서원훼손을 명령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병산서원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천서원의 사액은 대원군의 서원 정책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이었다.

IV. 2차 사액 청원과 서원훼손

대원군은 對서원정책과는 별개로 안동 유림의 보합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1866년(고종 3)에 대원군은 류후조의 진언을 받아 병호보합에 나서며, 당시 안동부사 沈東臣에게 보합을 주선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⁰⁾ 하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대원군이 류후조가 진언하도록 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심동신은 대원군의 지시를 받고 병호보합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심동신은 이상정의 후손인 李敦禹(肯庵 1801-1884)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돈우는 자신의 집안도 연관되어 있고, 주변 사람과의 친분도 걸려 있어 힘들다고 거절하였다.⁴¹⁾ 대원군은 조정정책을 거부하는 자는 적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때마침 병인양요가 발생하여 유아무야 되었다. 이때의 보합시도가 의도와 달리 지지부진하자 1870년에 대원군은 직접 나서게 된다.

한편 1차 서원철폐령이 1868년(고종 5)에 8월에 내려졌다. 이때에는 국가의 공인된 사액서원을 제외한 전국의 미사액서원·향현사에 대한 전면적인 철폐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조정의 공식적인 명령이 아니라 대원군

40) 『屏虎保合顛末』

41) 『肯庵集』 권2 「輿地主沈候(東臣)」

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되었다.⁴²⁾ 원사훼철을 시행하는 것은 대원군의 정책에 대한 守丞들의 이해부족과 지역사족의 저항이 겹치면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어떤 곳은 5차례나 명령이 내려진 끝에 훼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⁴³⁾

안동지역에서는 1단계에 14개소, 2단계에 11개소, 3단계에 2개소가 훼철되었다. 그런데 3단계에 훼철된 2개소가 바로 임천서원과 사빈서원이었다. 『沙濱志』에는 10월 7일에 도착한 禮曹의 관문에 병산서원과, 임천서원 사빈영당은 제외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있다.⁴⁴⁾ 李晩燾(響山, 1842-1910)의 『響山日記』에도 비슷한 정황이 나타난다. 9월 20일에는 훼철하라는 관문에 풍기의 郁陽書院(이황, 黃俊良 배향)과 병산서원, 임천서원이 모두 들어있다고 하였다.⁴⁵⁾ 10월 7일에 울진의 孤山書院 신령의 白鶴書院 옥양서원, 병산서원, 임천서원은 還安되었지만,⁴⁶⁾ 10월 28일에는 거의 모든 서원이 훼철되었다고 하였다.⁴⁷⁾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원 철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림의 저항에 따라 훼철과 환안이 반복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를 넘기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대원군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미사액서원이 모두 철거되었다.

안동에서는 10월말 경에 임천서원과 사빈영당이 훼철되면서 1차 서원훼철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되자 호파에서는 서원훼철을 철회하는 것이 당

42) 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潮閣, 2001, 349쪽.

43) 자세한 과정은 尹熙勉 「고종대의 書院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10,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9, 158~164쪽; 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潮閣, 2001, 348~356쪽, 참조.

44) 李樹煥 2001,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潮閣, 355쪽. 이수환은 처음 관문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를 이들 서원이 안동을 넘어 영남남인을 대표하는 성씨의 것이며, 병호 시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 병산서원은 사액서원이라 원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액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였다.

45) 『響山日記』 1868년 9월 20일. 陽. 加撤關文來, 郁陽亦在其中, 屏山臨川亦不免, 他何足言.

46) 『響山日記』 1868년 10월 7일. 陽. 加撤關文還收, 孤山白鶴, 郁陽, 屏山, 臨川, 皆還安云.

47) 『響山日記』 1868년 10월 28일. 陽. 口盡院又爲撤去云

면 과제가 되었다. 이미 8월부터 서원훼철을 반대하고 대원군에게 上書하는 문제로 聞慶에서 도회가 개최되었고, 충청도에서는 三南 聯合都會의 개최가 모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대원군의 강경책에 의해 모두 좌절되었다.⁴⁸⁾ 임천서원에서도 훼철 이후인 11월에 향회가 개최되었고,⁴⁹⁾ 12월에는 50세 이하 20세 이상의 연소배들이 노림서원에서 大同道會의 개최를 도모하다가 향내에서 저지당하기도 하였다.⁵⁰⁾

이렇게 통일된 의사조차 마련되기 힘들었던 까닭은 대원군의 강경책과 함께 훼철되지 않은 사액서원들의 비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파는 사액서원인 호계서원이 훼철되지 않았으나, 김성일을 단독배향한 임천서원도 지키려고 하였다. 특히 승무소를 시도한 嶺南四賢의 서원중에서 임천서원만 훼철된 상황이었다. 擧道적인 서원훼철령의 철폐 시도가 실패하자 호유는 전략을 바꾸어 이미 사라진 임천서원의 사액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사액서원만 되면 훼철을 면할 수 있다는 의도였다. 이에 따라 1870년(고종 7) 윤10월에 2차 임천서원 사액 청원이 추진되었다.

한편 이 무렵 대원군은 병호시비에 직접 개입하였다. 대원군은 7월 7일에 元子の 탄생을 계기로 안동부사와 류후조에게 병호보합을 지시하였다. 이에 8월27일 호계서원에서 호유 600명과 병유 400명이 모인 대규모 鄉會가 열렸다. 그러나 이 보합 역시 실패하자 대원군은 대노하였으며, 그 이유를 병유들이 겉으로는 본인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호유를 이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9월이 되자 직접 병호시비의 해결을 위해 지시를 내렸다. 대원군이 보합을 위해 내린 결론은 양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산실기』와 『廬江志』를 破板하라는 것이었다.⁵¹⁾

48) 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潮閣, 2001, 365쪽.

49) 『響山日記』 1868년 11월 6일. 陽, 伯氏生辰, 臨川堂會在來日, 將議疏擧云, 大家□□來.

50) 『響山日記』 1868년 12월 8일 陽, 陰川疏事, 姑爲停止, 大同疏論, 自魯林發文, 五十以下, 二十以上人爲之云云者, 蓋撞來之禍, 不敢歸于父兄故也, 言則是也而分別年齒未得當, 又聞自虎溪出牌, 還其通文云, 莫是得於臨川事而然也, 有何礙也.

51) 정진영,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정치적 동향 - 萬人疏를 중심으로 -」, 『지역과 역사

『대산실기』는 앞서 살펴본 대로 호파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책이었다. 이에 병파 측에서도 자신들을 변론하기 위해 병호시비에 대한 병파의 입장을 서술한 『여강지』를 작성하였다. 이미 십여 년 전에 이휘녕은 『대산실기』는 私에 편중된 기술로 인해 영남을 半分하는 폐단을 초래하였으므로 소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 무렵에 병파 측에서 『屏山志(여강지)』를 작성하자 이것에 대해서도 개탄하였다. 병호시비는 류성룡, 김성일의 위차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호계서원에 이상정을 추향하는 것이었다. 이후 벌어진 位牌擅動 문제와 『대산실기』 및 『여강지』 간행은 그에 파생되어 불거진 것이었다. 따라서 대원군의 破板 요구는 병호시비의 본질을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향내에서 병호보합에 관한 대원군의 지시가 내려오는 와중에 임천서원에서는 8월에 道會가 열려 청약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다.⁵²⁾ 윤10월 15일에 임천서원에서 鄉會를 가져서 물자를 배정하고 소임을 정한 뒤에 11월 3일에 서울로 출발하였다.⁵³⁾ 이때 疏儒는 疏首를 포함하여 모두 14명이었고, 疏首는 蘇湖 한산이씨 문중의 李某로 결정되었다. 이들은 上京길에 우연히 下鄉하던 이돈우를 만났는데, 이돈우는 疏儒들과 헤어졌다가 바로 상경하여 재회하였다. 疏儒들은 11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는데, 류기호는 도착한 당일에 임천서원의 소유들이 상경한다는 소식이 鐘街에 이미 퍼졌다는 말을 듣는다. 이미 대원군은 서원훼철에 반대하는 지방유림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疏儒가 서울에 도착하면 우선 疏廳을 차려서 서울의 公論을 모은 뒤에 상소를 올리고 伏閣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대원군의 방해로 애초에 소청을 차리지도 못하였다. 사실 대원군은 2년 전 서원훼철령 당시에도 상경하는 유생들이 한강을 넘지 못하게 하였고, 설령 도성에 들어

』4, 부경역사연구소, 1997, 188~191쪽.

52) 『響山日記』 1870년 8월 18일. 陰, 臨川道會, 相欲爲請額疏, 而其於觀象玩占之道, 無或徑情耶. 『客日隨錄』의 서론부에는 8월 17일의 일로 기록하였다.

53) 이후 청역소행 과정에 대한 기술은 『客日隨錄』에 의거하였다.

왔더라도 강력한 경고로 활동을 제약하였다.⁵⁴⁾ 임천서원 청액 소유들도 대원군에 의해 불과 10일만 도성에 머무르다 급히 하향하고 말았다.⁵⁵⁾

그 기간 동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난번의 경우처럼 사람을 통해 대원군과 주선하는 것뿐이었다. 이상정의 본손인 이돈우는 『대산실기』 문제도 함께 달려 있어 대원군을 두어 차례 직접 만났다. 하지만 대원군은 앞서의 경우처럼 이돈우에게 소유들을 빨리 도성에서 내려가도록 하기를 중용하였다. 대원군은 본인이 휘절하는 일을 하였는데, 사액 문제를 임금에게 상소하는 것을父子사이를 가르려는 행위라며 분노하였다.⁵⁶⁾ 다만 『대산실기』의 경우 이돈우에게 안동부사와 의논하여 자신에게 말하면 잘 처리해주겠다고 이돈우를 다독였다. 그러나 대원군은 이돈우에게 한 말과는 다르게 이를 뒤에 『대산실기』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린다.⁵⁷⁾

이돈우에게 말을 전했음에도 疏儒들이 돌아갈 기색이 없자 대원군은 직접 下鄕을 지시한다. 11월 20일에 태학과 비변사 수복이 와서 疏儒 14인의 명단을 받아간 뒤, 다음날 관문을 내어 14인을 도성에서 쫓아내었다. 疏儒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알고 이틀간 행장을 정리 한 뒤 下鄕하였다. 류기호는 이미 도성에서 쫓겨날 때 定配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실제로 귀향한 뒤인 12월 10일에 감영의 관문이 도착하였다. 이때 疏首는 전라도 興德縣으로, 류기호는 강원도 金化로 유배되었고, 다른 소유들도 모두 유배되었다. 이에 임천서원을 사액 받으려는 호유의 시도는 또 다시 실패하였다.

대원군은 임천서원 소유들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병호보합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였다. 12월 14일에 대구 감영에서 『대산실기』와 『여강지』를 불태웠

54) 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潮閣, 2001, 364쪽.

55) 이들의 급작스러운 귀향은 안동 내에서도 놀라운 일이었다. (『響山日記』 1870년 12월 6일 . 暘, 歸臨川, 疏事自雲宮有未安之教, 禍將不測, 疏儒皆徑歸, 三江疏亦以此却沮云, 新曆來.)

56) 『客日隨錄』 1870년 11월 18일. 卽曰. 嶺南之漢, 不知倫紀者也. 吾爲毀撤之事, 而訴寃於上監, 則是問我父子也. 當析鶴膝云云.

57) 『客日隨錄』 1870년 12월 12일. 류기호는 대원군이 이돈우를 피기 위해 그러한 말을 했다고 개탄하였다. "...禮闈, 日子乃令監辭退雲宮之第二日也. 乃知當日酬酢指導, 不過爲誘送湖令之意也...."

다. 이뿐만 아니라 대원군은 이 시기 영남남인 문중 간의 대표적 대립이었던 文純是非와 孫李是非도 강제로 보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⁵⁸⁾ 대원군의 의도는 영남남인 내부의 분열을 해소하여 하나의 단합된 정치세력으로 편성한 다음 자신의 정치권력을 지원하는 友軍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작업은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서원훼철령으로 대원군은 유림세력 전체로부터 지지를 잃었는데, 특히 서원을 기반을 鄉權을 장악하던 영남남인들의 실망은 매우 큰 것이었다. 또 병호시비의 예에서 보듯이 대원군의 보합은 갈등의 원인을 해소할 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갈등 요소만을 없애고 강제로 화합을 주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진정한 화합을 이루기 어려웠고, 당연히 병호시비도 지속되었다.

병호시비의 지속으로 인한 대원군의 분노는 향후 호파 측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호파가 시도한 임천서원의 사액 청원은 실패하였지만, 호파는 안동 및 영남지역의 상당 수 서원들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안동의 首書院인 호계서원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천서원 疏儒들이 유배를 당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국의 47개 서원과 사우를 제외한 모든 서원을 훼철하라는 2차 서원훼철령이 내려졌다. 이에 조선시대 당시 안동 내에서는 병산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이 훼철대상이 되었다. 즉, 이제는 임천서원이 문제가 아니라 호파의 본산인 호계서원이 훼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대원군은 존속되는 서원과 사우의 기준을 道學과 忠節人으로 제시하고 忠賢 1인에 1院이 넘게 疊設된 경우는 모조리 훼철하였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았다. 따라서 당대인들도 이미 당시 높은 벼슬에 있던 후손들에 대한 배려와 청탁에 의한 결과라고 믿었

58) 『客日隨錄』 1870년 12월 12일, "陰 姜鐔三從兄弟來問, 烏川是非事, 保合關文來到, 以再明鄉會依行云."; 12월 10일, "陽 烏川是非, 家壯及卞破錄, 付盍攸, 疏本洗之, 表裏消融, 眞所謂保合也, 臨川疏儒十四人, 皆流遠地, 海平兒侍, 定所高城, 大山實記, 輸入本府, 將破板云."; 21일, "陽 聞孫查丈玉堂除授, 有志竟成, 夫哉夫哉, 孫李是非, 亦保合云."

다.⁵⁹⁾ 서원을 존속시키거나 훼손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대원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병호보합을 위한 대원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호시비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원군은 병호시비가 일어나는 근본원인인 호계서원을 직접 제거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⁶⁰⁾ 한편 영남 내의 주요 서원인 상주의 道南書院도 훼손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대원군은 영남의 주요서원을 훼손하여 영남남인의 道論이 형성되는 곳 자체를 봉쇄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호계서원은 주요한 훼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호파는 안동 내에서 본거지가 상실되는 위기에 처하였다. 따라서 도남서원에서 발론한 서원훼손 반대 만인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하지만 이 상소 역시 서원훼손령을 피해간 서원의 유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대원군이 강경대응을 하면서 실패하였다.⁶¹⁾ 하지만 대원군은 영남남인을 계속 우군으로 존치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상소의 봉입은 강경히 대응하였지만, 이 만인소의 유생들은 따로 처벌하지는 않은 것에서 추측할 수 있다.⁶²⁾ 앞서 임천서원 疏儒의 경우 향후 서원훼손령이 포고되는 단계에서 일어날 반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모두 유배를 당하였다. 하지만 이미 서원들이 훼손한 단계에서는 굳이 이들을 처벌하여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천서원을 주도한 가문은 호파의 주YG가문과 일치하였다. 이들은 1단계 서원훼손령 때 호계서원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임천서원이 향내에서 가지

59) 尹熙勉 「고종대의 書院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10,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9, 169~171쪽. 윤희면의 논문에서 인용하였듯이 이만도도 영남에서 남은 서원은 5현의 본원과 소수서원 약간의 총렬사에 불과한데, 병산서원은 재상이 자손이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았으니, 김상헌 서원의 예와 같다고 하였다. 『響山日記』 1871년 4월 4일. "陰 嶺南留院 不過五賢本院及紹修 其他忠烈若干祠而已 屏山以有相孫 不在撤中, 用淸陰院例云."

60) 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和 屏虎是非(Ⅱ)-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退溪學과 韓國文化』45,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9, 363~365쪽.

61) 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潮閣, 2001, 367~384쪽.

62) 정진영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정치적 동향 - 萬人疏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4, 부경역사연구소, 1997, 200~202쪽.

는 위상을 고려하여 휘철령 반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임천서원의 사액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국적으로는 서원의 폐단을 정리하고 안동 향내에서는 병호시비를 보합하려는 대원군의 의도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2차 서원훼철령 단계에서는 임천서원 복설은 고사하고 本山인 호계서원마저 훼철되고 말았다. 반면 병파의 本山인 병산서원은 안동에서 유일하게 남은 서원이 되었다.

호계서원 훼철 이후 일시적으로 그동안 영남남인의 주축세력이었던 호파의 鄉論 주도권은 약화되었다. 대원군 실각이후 벌어진 1875년의 대원군 奉還疏는 병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19세기 말 벌어진 국난 속에서 안동지역 남인들은 斥邪와 義兵活動을 통해 서원이 없는 시대에 다른 차원의 정치적 활동을 모색하게 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안동 임천서원의 설립과 폐지, 복설과 청액운동, 훼철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특히 19세기의 치폐과정은 향내 정치세력의 동향 및 중앙정부의 정책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임천서원은 김성일을 배향한 향사로 존재하다가 1618년에 사액을 받아서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1620년에 여강서원(호계서원)으로 김성일의 위패가 옮겨 가면서 불과 2년 만에 사당이 비게 되었다. 이때 이후는 임천서당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1681년에 김진 6부자를 배향한 사빈서원이 설립되면서 모든 재산이 사빈서원으로 합속되었다. 터만 남아있던 임천서원은 100여 년이 지난 19세기 초에 복설이 도모되었다.

1805년부터 임천서당의 복설이 시도되었는데, 서당이 완공되는 시점은 병호시비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다. 임천서원이 원래 호파 학맥의 종조인 김성

일을 배향한 곳이었고, 임천서당의 건립을 호파가 주도하면서, 임천서당의 활동은 곧 호파의 활동이 되었다. 임천서당이 1847년에 임천서원으로 승격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호파 측은 안동의 수서원인 호계서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임천서원을 병파의 거점인 병산서원과 대응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런데 1863년에 병산서원이 사액을 받자 이에 자극받아 임천서원도 사액을 받기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고종이 즉위하여 대원군이 집권하자 임천서원 사액은 어려워졌다.

대원군은 전국적으로 강력한 서원정책을 시행하면서 안동 향내에는 병호시비의 보합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대원군이 집권초기부터 서원훼철을 기획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훼철을 시작하면서, 2차에 걸친 임천서원의 청액운동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임천서원의 청액을 위해 상경한 소유들은 상소를 올려보지도 못하고 대원군의 호통만 듣고 귀향하게 된다. 특히 2차의 청액운동과정에서는 소유 14인이 모두 정배를 당하였다.

대원군이 병호시비에 직접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호파의 본거지인 임천서원은 존립이 어려워졌다. 대등한 관계였던 병산서원은 사액을 받으면서 훼철령을 피해갔지만, 임천서원은 1차 훼철령 단계에서 이미 훼철되었다. 그럼에도 호유들은 없어진 서원의 청액을 시도하였지만, 2차 훼철령 단계에서는 본산인 호계서원마저 훼철되어 버렸다.

호계서원 훼철 이후 호파는 기존의 정치활동에 더하여 서원훼철 반대 운동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호계서원과 임천서원이 훼철되면서 안동 및 영남 지역 내에서 호파의 鄉論 주도권은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의 국난 속에서 그들은 斥邪와 義兵活動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정치적 활동이 모색하였다. 이에 대한 실체적 분석은 향후에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客日隨錄』(柳基鎬), 『乙卯清議辨』(金重休), 『屏虎保合顛末』, 『臨川請額日記』(柳基鎬), 『響山日記』(李晚燾)
-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 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潮閣, 2001.
-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편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 金世潤 「大院君의 書院毀撤에 관한 一考察」,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0.
-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성운,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 of 동향 -철종대 김수근서원 건립과 고종대 병호보합을 중심으로-」, 『영남학』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 金炯秀, 「조선후기 영남지역 여론 형성과 정치참여: 통문과 상소」,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 한국국학진흥원, 2007.
- 「19세기 안동과 휘주의 향전과 종족 갈등」, 『안동학연구』6, 한국국학진흥원, 2007.
- 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와 屏虎是非(Ⅰ)」,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 「退溪學派의 分化와 屏虎是非(Ⅱ)-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退溪學과 韓國文化』45,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9.
- 成大慶 「大院君의 書院毀撤」,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1985.
- 尹熙勉 「고종대의 書院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10,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9.
- 이재현, 「순조 연간(1800~1834) 안동지역 유림의 정치적 동향」, 『퇴계학과 유교문화』59,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6
- 정진영,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정치적 동향 - 萬人疏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4, 부경역사연구소, 1997.
- 한상우, 「조선후기 鄉戰을 통해 본 양반층의 親族 婚姻 -안동의 屏虎是非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8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The Petition for Loyal Charter and Establishment and Abolition Processes of Im-Cheon Seowon in An-dong

Lee Jae Hyeon

This essay focus on the political trends of Confucian scholars who had inhabited in An-dong(安東) region and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for the Seowon in the 19th century by the petition for loyal charter and establishment and abolition processes of Im-Cheon Seowon(臨川書院) in An-dong. Im-cheon Seowon originated from Im-cheon Seodang(臨川書堂). Im-cheon Seodang became a Im-cheon Hyangsa(臨川鄉社) in order to a shrine to honor Kim Sung-il(金誠一) in 1607, and became Im-Cheon Seowon received a loyal charter in 1618. In 1620, as the ancestral tablets of Kim Sung-il were moved to Yeo-gang Seowon(廬江書院) in An-dong, Im-Cheon Seowon was removed.

Im-cheon Seowon was rebuilt in the 19th century. Im-cheon Seodang was rebuilt in 1806 and Im-cheon Seowon was rebuilt to the west of the Soek-mun Joengsa(石門精舍) in 1847, where Kim Sung-il was teaching. The reason that Im-cheon Seowon was rebuilt is deeply related to the Byung-ho Dispute(屏虎是非) that had been spreading in An-dong. The reconstruction of Im-Cheon Seowon was led by Ho-yu(虎儒), who wanted to make it a Seowon of equal status as Byeong-san Seowon(屏山書院) built by Byeong-yu(屏儒).

In the reconstructed Im-cheon Seowon, there were two petition for loyal charter. It is the reason for the first petition that Byeong-san Seowon was

receiving loyal charter alone. Then Ho-yu also petitioned for loyal charter of Im-cheon Seowon, but failed due to the refusal of Daewongun(大院君). The second reason is Daewongun's order to shut down private academies. As the Im-cheon Seowon was shut down by the order of Daewongun, Ho-yu tried to petitioned for loyal charter of Im-cheon Seowon again. This challenge was also a failure due to the refusal of Daewongun, and all Seowon except Do-san Seowon(陶山書院) and Byeong-san Seowon were closed in the An-dong at the order of Daewongun.

The petition for loyal charter and its establishment and abolition processes of Im-Cheon Seowon was closely related to local discussions and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he failure of the petitions for loyal charter and the eventual shut down of Im-cheon Seowon indicates the failure of the mediation of the Byung-ho Dispute and the failure of Daewongun to assure friendly power in the Yeong-nam region(嶺南地域).

Keywords : Im-Cheon Seowon(臨川書院) Toegye School(退溪學派)
Petition for Loyal Charter(請額運動) Byungho Dispute(屏
虎是非) Shut down Private Academies(書院毀撤)

이 논문은 2018년 6월 5일 투고 완료.

2018년 6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완료.

2018년 6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서 게재 결정.

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임근실**

-
- I. 서론
 - II. 16세기 서원의 學規錄
 - III. 16세기 서원 學規의 특징
 - IV. 결론
-

〈국문요약〉

본고는 16세기 서원의 學規를 분석하였다. 16세기는 조선에서 서원이 성립하는 시기이다. 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도 이 시기부터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6세기 서원의 학규를 살펴보면 해당 시기 서원의 享祀儀禮講學活動日常生活을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서원의 학규와 관련한 기록류는 9종으로 파악된다. ①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의 『竹溪志』 「雜錄後院規」, ② 迎鳳書院[川谷書院]의 『迎鳳志』 「學規錄」, ③ 伊山書院의 「伊山院規」, ④ 臨臯書院의 『臨臯書院凡規」, ⑤ 文憲書院의 「文憲書院學規」, ⑥ 隱屏精舍의 「隱屏精舍學規」, ⑦ 隱屏精舍의 「隱屏精舍約束」, ⑧ 吳山書院의 『吳山志』 「享祀學規」 ⑨ 臨臯書院의 『書院規範』이다. 먼저, 본고는 16세기 서원 學規錄의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16세기 서원 학규의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16世紀, 書院學規, 學規錄, 享祀儀禮, 講學活動.

I. 서론

조선시대 서원이 건립되기 시작한 시기는 16세기였다. 새로운 기관인 서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선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원의 등장은 조선의 정치·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서원은 '明道術'에서 파생된 講明道學과 尊崇道學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講學과 尊賢의 두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었다.²⁾ 이로 인하여 서원에서는 院生의 교육과 배향인물에 대한 享祀를 중시하였고, 이를 실제로 준행하기 위한 규칙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16세기부터 각 서원마다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원의 규정은 각 서원마다 學規로 정리되어 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조선시대 서원의 學規에 관한 연구는 교육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李滉(1501~1570)과 李珥(1536~1584)의 학규분석을 통해 그들의 서원교육관을 연구한 丁淳睦을 필두로 하여,³⁾ 渡部學,⁴⁾ 박종배⁵⁾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몇 편의 석사학위논문,⁶⁾ 서원 연구의 일환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학규를 분석하여 조선시대 교육의 과정과 기능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나 박종배의 연구는 다양한 서원의 학규를 수집·소개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저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16세기 서원의 학규는 해당 서원의 享祀儀禮, 인적구성, 교육과정과 교재, 경제생활, 원내생활 등 다방면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

2)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3)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4) 渡部學, 도광순 譯, 「道東書院規目の構成과 內容」, 『寒暄堂의 生涯와 思想』, 寒暄堂先生 紀念 事業會, 1980; 渡部學, 「栗谷先生の 教育思想」, 『韓國思想論叢』 2, 울곡사상연구원, 1980.

5) 박종배, 「조선시대 학령(學令) 및 학규(學規)」, 『한국교육사학』 28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6; 박종배,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8집 2호, 교육사학회, 2008;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집 2호, 교육사학회, 2009; 박종배, 「조선시대 유학 교육과정의 변천과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33권 3호, 한국교육사학회, 2011.

6) 김해용, 「학규(學規)를 통해 본 조선시대 서원 교육과정의 변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정진옥, 「學規分析을 통한 朝鮮時代 書院의 教育機能 研究」,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7) 宋楊燮, 「朝鮮時代의 書院教育-江原道와 관련하여-」, 『江原文化研究』 13,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4.

기에 기존의 연구는 학규에서 나타나는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몇 종의 학규를 가지고 조선시대 전체의 교육과정으로 일반화하는 부분도 유의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시기를 16세기로 한정하고, 그 시기에 작성된 서원의 학규를 분석하여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6세기로 시기를 한정된 이유는 해당시기 조선에서 서원이 건립되기 시작하였기에 서원 학규의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16세기 서원의 학규 중 현존하는 9종의 學規錄을 분석하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16세기 서원학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나타나는 서원 운영의 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16세기 서원의 學規錄

16세기 조선의 서원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정치·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鄉校와 달리 사학이었던 서원은 운영 자체가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서원의 기능인 享祀儀禮와 講學活動을 실제로 준행하기 위한 규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구나 각각의 서원마다 그 운영의 주체와 배향인물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각기 다른 규정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이유들로 서원의 학규 자체의 생성과 발전 과정은 서원의 발달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서원 학규의 검토를 통하여 16세기 서원을 건립하고 운영했던 사람의 사상적 지평과 현실 운영의 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16세기 서원의 운영 규정을 정리한 學規는 모두 9종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서원'은 16세기 건립되어 祠廟를 설치하여 享祀를 시행하고 士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던 기관이다. 따라서 精舍에서 서원으로 발전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서

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규정(學規)을 지칭하는 단어는 講規 院規 齋規 學規 學습 등이지만 논의의 통일성을 위해 '學規'를 대표로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원의 학규를 기록한 사료를 선정할 때는 廣義적 개념의 學規를 사용하였다. 즉, 서원의 교육을 강화활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享祀儀禮를 통하여 先賢의 발자취를 본받으려 한 尊賢의 기능 등도 포괄하여서 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 모두를 서원의 학규라 설정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현존하는 16세기 서원의 학규는 모두 9종으로 ①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의 『竹溪志』 「雜錄後(院規)」, ② 迎鳳書院川谷書院의 『迎鳳志』 「學規錄」, ③ 伊山書院의 「伊山院規」, ④ 臨臯書院의 『臨臯書院凡規』, ⑤ 文獻書院의 「文憲書院學規」, ⑥ 隱屏精舍紹賢書院의 「隱屏精舍學規」, ⑦ 은병정사의 「隱屏精舍約束」, ⑧ 吳山書院의 『吳山志』 「享祀」 「學規」 ⑨ 臨臯書院의 『書院規範』이다. 학규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는 16세기 서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음의 표를 통해 정리하였다.

표 1 16세기 서원의 학규 일람표

순번	학규명	서원명 [賜額]	위치	건립	사액	건립 인물	제향인물 (추향인물)	서원지	학규 제정/ 제정인
1	竹溪志 雜錄後 (院規)	白雲洞 [紹修]	경북 순흥	1543 중종38	1550 명종5	周世鵬 (건립) 李滉 (사액)	安珣 (安軸, 安輔, 周世鵬)	『竹溪志』 周世鵬	1545 ~1548 周世鵬
2	迎鳳志 學規錄	迎鳳 [川谷]	경북 성주	1559 명종14	1573 선조6	盧慶麟 (건립) 李滉 (자문)	李兆年, 李仁復, 金宏弼 [程子, 朱子, 金宏弼 (鄭述, 張顯光)]	『迎鳳志』 盧慶麟	1559 盧慶麟
3	伊山 院規	伊山	경북 영주	1559 명종14	1574 선조7	李滉	李滉	李滉	1559 李滉

순번	학규명	서원명 [賜額]	위치	건립	사액	건립 인물	제향인물 (추향인물)	서원지	학규 제정/ 제정인
4	臨臯 書院 凡規	臨臯	경북 영천	1553 명종8	1554 명종9	金應生 鄭允良 盧遂	鄭夢周 (張顯光 皇甫仁)		1562 金廉
5	文憲 書院 學規	文憲	황해 해주	1549 명종4	1550 명종5	周世鵬	崔冲 崔惟善		1576 ~ 1584 李珥
6	隱屏 精舍 學規	隱屏 [紹賢]	황해 해주	1578 선조11	1610 광해2	李珥	朱子 (趙光祖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 宋時烈)		1578 李珥
7	隱屏 精舍 約束	隱屏 [紹賢]	황해 해주	1578 선조11	1610 광해2	李珥	朱子 (趙光祖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 宋時烈)		1578 ~ 1584 李珥
8	吳山志 享祀 學規	吳山	경북 인동	1588 선조21	1609 광해1	柳雲龍	吉再 (張顯光)	『吳山志』 柳雲龍	1588 柳雲龍
9	書院 規範	臨臯	경북 영천	1553 명종8	1554 명종9	金應生 鄭允良 盧遂	鄭夢周 (張顯光 皇甫仁)		1588 ~ 1631

① 『竹溪志』 「雜錄後(院規)」는 白雲洞書院 紹修書院의 서원지인 『죽계지』에 수록된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학규로 1545~1548년에 제정되었다. 1543년(중종 38) 周世鵬(1495~1554)은 安珣(1243~1306)을 제향하기 위하여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 이후 白雲洞書院은 李滉(1501~1570)의 노력에 기인하여 '紹修'라는 額號로 사액되었다. 1548년(명종 3)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은 이듬해 12월 嶺南監司였던 沈通源(1499~?)에게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사액을 요청하여 일을 성사시켰다.¹⁾ 이황은 사액을 받은 이후에도 백운동서

1) 『退溪集』 卷9 「上沈方伯」.

원(소수서원)의 有司 선정이나 운영방식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였고 詩를 지어 朱熹(1130~1200)의 白鹿洞書院에 비견하였다.²⁾

『죽계지』는 주세붕이 1545~1548년 사이에 편찬하였고³⁾ 「雜錄後(院規)」도 초간본부터 확인된다. 『죽계지』는 「行錄」, 「尊賢錄」, 「學田錄」, 「藏書錄」, 「雜錄」, 「別錄」의 6권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권5가 「雜錄」이며 그 뒤에 별다른 표제어 없이 5개조의 學規와 細目이 수록되어 있다. 『죽계지』에는 제목이 없기에 '院規'라는 명칭은 『晦軒先生實紀』의 제목을 따랐다.⁴⁾ 이와 더불어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향사의례와 관련한 규정은 권1 「安氏行錄」 後의 安文成公春秋大享圖, 依圖祭用雜物式, 祭式 등으로 기록되어있다.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학규는 『죽계지』의 전체 중에서 매우 적은 분량을 차지한다. 5개조를 살펴보면 제사를 경건히 봉행할 것[謹祀], 어진 이를 예우할 것[禮賢], 사당을 잘 보수할 것[修宇], 물자를 비축할 것[備廩], 서책을 점검할 것[點書]이며, 그 세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술체로 기록되어 있다.

② 『迎鳳志』 「學規錄」는 迎鳳書院 川谷書院의 서원지인 『영봉지』에 수록된 영봉서원의 학규로 1559년(명종 14)에 제정되었다. 영봉서원 천곡서원은 1558년(명종 13) 경상도 星州에서 牧使 盧慶麟(1516~1568)이 퇴계학과 등과 상의하여 건립하였지만⁵⁾ 제향인물의 位次문제 때문에 이후 천곡서원으로 개칭되었다. 이황은 영봉서원(천곡서원)에 대한 記文과 詩文을 작성하였고, 『영봉지』의 편찬에도 영향력을 미쳤다.⁶⁾ 하지만 영봉서원은 제향인물인 李兆年(1269~1343)과 金宏弼(1454~1504)의 位次문제로 건립 당시부터 많은 분

2) 『退溪集』 卷4 「書院十詠」. "竹溪書院【豐基】. 竹溪風月煥宮牆. 肇被恩光作國庠. 絃誦可能追白鹿. 明誠誰似導南康."

3) 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31, 2005, p.302.

4) 權鼈(1589~1671)의 『海東雜錄』에서는 「白雲洞紹修書院立規」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다.

5) 『退溪集』 卷12 「答盧仁甫」; 『退溪集』 卷20 「答黃仲舉」.

6) 『退溪集』 卷4 「書院十詠」; 『退溪集』 卷42 「迎鳳書院記」.

란이 있었다.) 결국 위차논란으로 제향인물이 교체되고 1566년(명종 21)에 鄭述(1543~1620)에 의해 명칭까지 '川谷'으로 변경된 것이다.⁸⁾

『영봉지』는 1559년에 노경린(李敬麟)이 편찬한 영봉서원의 서원지이다.⁹⁾ 『영봉지』는 권으로 구별되지 않고, (1) 「迎鳳書院記」, (2) 「書院錄」, (3) 「李氏行錄」, (4) 「學規錄」, (5) 「藏書錄」, (6) 「學田錄」, (7) 「書院學田錄」, (8) 「廟院定議錄」, (9) 「春秋大享圖」, (10) 「祭式」의 10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봉서원의 학규는 『영봉지』에서 「學規錄」의 명칭으로 다른 내용들과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다.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학규가 『죽계지』 「잡록후」에 제목도 없이 수록되었던 점을 가만할 때, 영봉서원의 학규는 체계에서 한 단계 발전한 상태로 파악된다. 그러나 학규의 분량과 서술방식은 『죽계지』 「잡록후(원규)」와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영봉지』 「학규록」은 謹祀 禮賢 勸課 修宇 考廩 點書 擇院長의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학규에 비해 勸課와 擇院長의 조목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원지 편찬 당시 두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리고 『영봉지』에서는 각 조항 아래 부차적인 설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죽계지』보다 구체적인 학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¹⁰⁾ 또 영봉서원의 향사와 관련된 내용은 『영봉지』 마지막 부분에 春秋大享圖와 祭式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었다.

③ 「伊山院規」는 이황이 생전에 건립하여 강학하던 伊山書院의 학규로 1559년에 제정되었다. 이산서원은 1559년(명종14) 5월에 경상도 영주에서 이황이 건립하여 강학활동을 하다가, 이황의 사후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이산서원에 대한 이황의 記文도 남아있다.¹¹⁾ 그리고 이황은 이

7) 鄭萬祚 「退溪 李滉의 書院論」,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pp.69~75.

8) 『寒岡集』 卷3 「上退溪李先生」.

9) 『迎鳳志』 「廟院定議錄」; 『退溪集』 卷12 「答盧仁甫」; 『退溪集』 卷20 「答黃仲舉」.

10)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연구」, 『歷史教育論集』 54, 역사교육학회, 2015, p.204.

11) 『退溪集』 卷42 「伊山書院記」.

산서원을 건립하면서 서원의 원규를 작성하였기에, 작성연도는 1559년로 추정할 수 있다.¹²⁾ 현재 「이산원규」는 『退溪集』에 수록되어 전해진다.¹³⁾ 「이산원규」는 크게 조항을 나누지 않고 12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기할 점은 享祀와 관련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산서원이 강학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출발하였기에 제향인물을 모시는 祠廟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이황이 건립과 운영을 주도하였던 陶山書院과 易東書院에서도 같은 원규를 사용하였다.¹⁴⁾

④ 『臨臯書院凡規』은 臨臯書院의 학규를 모아놓은 자료로, 1562년(명종17)에 영천군수였던 金廉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 자료이다. 임고서원은 1553년(명종8)에 경상도 영천에서 이황의 교유하던 영천사람인 盧遂 金應生(1496~1555), 鄭允良(1515~1580) 등의 주도로 鄭夢周(1337~1392)를 제향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¹⁵⁾ 이황은 임고서원을 각별히 생각하여 詩를 짓고, 서책을 증정하기도 하였다.¹⁶⁾ 이러한 임고서원에 대한 이황의 애착이 수령과 방백에게 이어져 1554년에 사액될 수 있었다.¹⁷⁾

『臨臯書院凡規』은 임고서원의 원규를 5개조로 제시하고, 그 세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술체로 기록되어 있다. 5개조의 학규는 謹祀 禮賢 修宇 備廩 點書로 『죽계지』 「잡록후(원규)」와 같고, 내용 역시 『죽계지』 「잡록후(원규)」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죽계지』 「잡록후(원규)」와의 차이는 春秋 大享圖와 依圖祭用雜物式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임고서원범규』는 『죽계지』에서 서원 운영상 필수적인 강학과 향사에 관련한 부분만

12) 『退溪年譜』.

13) 『退溪集』 卷41 「伊山院規」.

14) 임근실,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15) 이종문, 「초창기初創期 임고서원臨臯書院 연구」, 『한국학논집』 6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6, pp.196~200.

16) 『退溪集』 卷43 「內賜性理羣書 付盧上舍【遂】俾藏圃隱書院識」.

17) 김학수, 「조선 후기 영천지역 사람과 임고서원」, 『圃隱學研究』 6, 포은학회, 2010, pp.123~127.

을 선택적으로 차용하여 임고서원의 규정집이 구성된 것이다.

⑤ 「文憲書院學規」는 李珣(1536~1584)가 작성한 文憲書院의 학규로 1576~1584년 사이에 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헌서원은 1550년(명종 5) 황해도 해주(현재 황해도 벽성)에서 주세붕이 崔沖(984~1068)과 그의 아들 崔惟善(?~1075)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한 서원이다. 최충과 최유선은 해주 향교에 배향되어 있었으나, 격식에 맞지 않다 이유로 祠宇를 만들어 봉안하였다. 이후 주세붕이 1550년(명종 5)에 서원의 형식으로 정비하고, 사액을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首陽山 기슭에 있어 首陽書院이라 불렀는데,¹⁸⁾ 편액과 서책을 받으면서 文憲書院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원의 배향 인물인 최충의 시호가 '文憲'이기에, 여기서 문헌서원이란 명칭이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 1565년(명종 20)에 이황이 지은 詩에서도 문헌서원이란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문헌서원은 1571년(선조4)에 朴承任(1517~1586)과 韓性源이 鶴巖川 상류로 이진하였다.²⁰⁾

이이가 문헌서원의 학규를 제정한 시기는 서원의 이진 이후 그가 해주에 은거한 1576년(선조9)부터 그가 사망한 1584년까지로 추정한다. 이이는 1557년(명종 12)에 영봉서원의 건립을 준비하던 노경린의 딸과 혼인하여 성주에 있으면서 영봉서원의 건립과정을 지켜보았다. 그 사이 이이는 예안으로 가서 이황을 만났고, 이후 교류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는 1570년(선조3) 10월에 병으로 사직하고 海州로 돌아갔고, 계속 부임지와 해주를 오갔다. 또한 이이는 1576년에 해주 석담에서 은거하면서 隱屏精舍를 건립하였고, 1578년에 「隱屏精舍學規」를 작성하였다.²¹⁾ 따라서 「문헌서원학규」도 이이가 해주

18) 『明宗實錄』 卷18, 明宗 10년 2월 25일(庚寅).

19) 『退溪集』 卷4 「書院十詠」.

20) 『列邑院宇事蹟』 「黃海道文憲書院創立事蹟」. "文憲公文和公父子, 初祔于文廟, 弘治中牧使鄭誠謹重修鄉校, 倣國學之制, 以文憲公非祀典所載, 立祀宇于鄉校之西, 移安二公焉, 至嘉靖己酉, 我朝明宗大王五年, 周世鵬以監司, 仍舊制設九齋, 請額, 翌年庚戌 賜額, 其後二十二年辛未, 監司朴承任, 牧使韓性源, 移建書院于州西二十里鶴巖川上, 載在海州地誌"

에 은거했던 1576년에서 그가 사망한 1584년 사이에 작성하였을 것이다. 「문헌서원학규」는 『栗谷全書』에 수록되어 있고 이황의 「이산원규」와 마찬가지로 조항을 나누지 않고 16개 세목의 서술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⑥ 「隱屏精舍學規」은 1576년 이이가 해주 석담에서 은거하면서 건립한 隱屏精舍의 학규로 1578(戊寅)년에 작성되었다.²²⁾ 은병정사는 이이가 1578년(선조11)에 황해도 석담(현재 황해도 벽성)에 지은 精舍로 주희의 「武夷九曲」 가운데 大隱屏의 제목에서 연원한 명칭을 가졌다. 창건 후 학도들을 모아 강학활동을 할 때 당시 감사가 船稅로 거둬들인 魚鹽을 지급했다는 기록에서 볼 때 지방관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 그리고 「은병정사학규」에서 배향인물의 祠廟에 享祀와 謁廟하는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즉, 이이는 精舍라고 명명하였지만 주자를 배향한 祠廟를 두고, 서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리라 추정한다. 1584년(선조 17)에 이이가 사망한 후 그의 졸기를 보면 은병정사를 세워 주희를 主享으로 하고 趙光祖(1482~1519)와 이황을 배향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이유로 은병정사의 學規와 約束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은병정사는 1610년(광해2)에 紹賢으로 사액받았고, 이후 이이·成渾(1535~1598)·金長生(1548~1631)·송시열(1607~1689)을 배향하였다. 「隱屏精舍學規」는 『栗谷全書』에 수록되어 있고 이황의 「이산원규」와 마찬가지로 조항을 나누지 않고 16개 세목의 서술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⑦ 「隱屏精舍約束」은 이이가 1576년에 해주 석담에서 은거하여 건립한 隱屏精舍의 약속이다. 1578년 작성된 「隱屏精舍學規」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작성된 시기는 1578년(선조11)에서

21) 『栗谷全書』 「年譜」.

22) 『栗谷全書』 卷15 「隱屏精舍學規【戊寅】」.

23) 『宣祖修正實錄』 卷17, 宣祖 16년 9월 1일(己卯).

24) 『宣祖實錄』 卷18, 宣祖 17년 1월 1일(己卯).

이이가 사망한 1584년(선조 17)의 사이로 추정한다. 「隱屏精舍約束」은 『율곡전서』에 수록되어 있고, 대략 9가지의 당부를 서술하고 있다.

⑧ 『吳山志』 「學規」는 柳雲龍이 경상도 仁同에서 吉再(1353~1419)를 제향하기 위해 건립한 吳山書院의 학규로 1588년(선조21)에 제정되었다. 오산서원은 유운룡이 퇴계학파의 道統論이 투영하여 길재의 墓 바로 옆에 건립한 서원이었다.²⁵⁾ 『오산지』는 4卷 1冊으로 「行錄」, 「享祀」, 「學規」, 「考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卷2 「享祀」와 卷3 「學規」가 오산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오산지』 권3 「學規」에 有司, 院士, 居業, 勸課, 防檢, 交際, 相正, 養賢, 修宇, 點書, 典僕의 11개 조목과 그 아래 세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학규는 유운룡이 陶山, 易東, 金烏, 川谷, 屏山書院의 院規와 『國朝五禮儀』, 『竹溪志』를 참작하여 정리하였다. 유운룡은 오산서원 규정을 정리하면서 여러 서원의 원규들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각각의 전거를 기록하였다. 유운룡은 스승 이황의 「이산원규」를 중시하여 더 앞선 시기 제정된 『죽계지』의 원규보다 먼저 인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운룡은 각각의 규정 사이에 의견이 상충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생각(揆)도 추가하여 기술하였다.²⁶⁾ 이 때문에 오산서원의 학규는 그 이전의 학규들과 비교하여 분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학규에 有司, 院士, 居業, 防檢, 交際, 相正, 養賢, 典僕 등의 조목이 새로 등장하여 규정의 세분화를 알 수 있다. 특히 퇴계학파의 학자들이 건립과 운영에 참여한 서원들의 원규를 대거 준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전 서원의 학규에서 謹祀로 표현되는 향사와 관련한 조항들이 하나의 권으로 분리하였다는 점이다. 『오산지』에서는 권3 「학규」 앞에, 권2 「享祀」로 제향의식과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서술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25) 임근실,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道統意識」, 『退溪學報』 137, 퇴계학연구원, 2015.

26) 임근실,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⑨ 『書院規範』은 앞서 살펴본 『臨臯書院凡規』과 함께 임고서원의 운영 지침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며, 제정시기는 1588년(선조21)에서 1631(인조9)년 사이로 추정된다. 『書院規範』은 목판으로 인쇄된 판식을 갖춘 형태에 내용을 필사하였다. 그 내용은 향사관련 규정과 祭物式이 앞에 보이며, 그 뒤로 有司, 院士, 勸課, 交際, 養賢, 防檢, 相正, 修字, 點書, 典僕의 10개 조목과 그 아래 세목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신증된 학규조목과 完議가 있다. 그 내용은 『오산지』 「향사」·「학규」와 거의 같고, 체제와 인용된 서원원규 역시 흡사하다. 그리고 신증된 조목 뒤에 수록된 완의의 시기가 '崇禎 四年(1631년)'이다. 따라서 『書院規範』의 작성 하한은 1631년이다. 하지만 신증되기 이전의 임고서원의 규정은 오산서원 학규와 체제와 내용면에서 매우 흡사하기에 『오산지』의 작성시기인 1588년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16세기 학규에 포함하였다. 『서원규범』과 『오산지』 「학규」의 선후문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이상에서 소개한 16세기 서원 學規錄의 체제와 형식을 분석하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 서원의 규정을 표현하는 용어의 다양성이다. 서원의 규정은 規約範例으로 범주화할 수 있고²⁷⁾ 더 세분화할 수도 있다. 서원의 교육활동을 규정한 학규에는 강학에 대한 규칙인 講規, 서원의 전체적인 활동을 규정한 規範, 서원의 운영을 중심으로 규정한 院規, 居齋 유생을 위한 齋規, 교육에 대한 규정인 學規와 學습, 서원 교육에 대해 자문해주는 諭示文 등이 있고 그 명칭은 이외에도 다양하다.²⁸⁾

본고에서 검토한 9종의 학규를 살펴보면 '學規(영봉서원, 문헌서원, 은병정사, 오산서원)'는 4종, '院規(이산서원)', '凡規(임고서원)', '約束(은병정사)', '規範(임고서원)'이 각각 1종씩, 백운동서원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아예 명칭

27) 정순목은 『韓國儒學教育資料集解』를 간행하면서 4편으로 「規約範例」를 간행하여 학규를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간행하지 못하였다.

28) 김혜용, 「학규(學規)를 통해 본 조선시대 서원 교육과정의 변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2.

이 없다가 이후 '院規'와 '入規'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다. 이 9종의 기록은 비록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내용은 모두 16세기 서원 운영의 준거를 담고 있다. 그리고 '學規'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16세기 서원의 규정을 아울러 '學規'라고 사용하겠다.

두 번째, 후기에 제정된 학규일수록 조항이 더 세분화됨을 알 수 있다. 처음 제정된 1550년대 학규인 백운동서원의 경우는 5개조(謹祀 禮賢 修宇 備廩 點書)이고, 1560년대 학규인 영봉서원의 경우는 7개조(謹祀 禮賢 勸課 修宇 考廩 點書 擇院長)로 勸課조와 擇院長조가 새로 생겼다. 하지만 1590년대 학규인 오산서원의 경우는 학규만 11개조(有司 院士 居業 勸課 防檢 交際 相正 養賢 修宇 點書 典僕)이고, 享祀와 관련한 조항은 아예 독립하여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오산서원이 건립된 1590년대의 서원은 이전 시기의 서원보다 더 많은 규정들을 필요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오산지』의 학규는 서원운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될수록 많은 규정이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세 번째, 경상도 서원의 학규는 이전에 건립된 서원의 학규를 계속 준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죽계지』 「잡록후(원규)」의 조목과 내용을 『영봉지』 「학규록」과 『임고서원범규』에서 준용 혹은 부분 변화되어 나타난 점에서 알 수 있다. 이황의 「이산원규」도 『죽계지』와 함께 경상도 서원학규의 전범 중 하나였다. 『오산지』 「학규」는 陶山, 易東, 伊山, 金烏, 川谷, 屏山書院의 院規와 『國朝五禮儀』, 『竹溪志』를 참작하여 11개 조목의 학규를 정리하였다.²⁹⁾ 여기서 언급한 도산서원, 역동서원, 이산서원은 같은 「이산원규」를 사용하였다.³⁰⁾ 더불어 천곡서원은 영봉서원의 후신으로 정구가 서원의 개칭과 제

29) 『吳山志』 卷2 「享祀」. “書院告成 享祀有日 不可無祭儀及院規 謹取陶山 易東 伊山 白雲 金烏 川谷 屏山等書院定規及五禮儀 略加參述如左 類皆出於前賢酌定已試之效 一無起於賤末朶見臆探之說 後之覽者 其毋以曾經鄙人之手而忽之哉 時萬曆十六年四月日.”

30) 임근실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향인물 선정에 관여하였다. 병산서원은 풍산류씨 가문의 서당인 豐岳書堂에서 발전한 곳으로 류성룡이 현재 장소로 옮겨 강학활동 위주로 운영되었다.³¹⁾ 『오산지』 「학규」에서 인용한 서원원규는 이황과 퇴계학파가 건립과 운영에 관여한 서원의 원규이다. 또 임고서원의 『서원규범』도 『오산지』 「학규」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제정되었다. 즉, 16세기 경상도에서 건립된 서원은 앞서 건립된 서원의 원규를 준용하여 제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서원규범』과 『오산지』 「학규」의 선후문제를 살펴보면, 몇가지 이유에서 『오산지』가 『서원규범』의 전범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나는 두 학규의 체제가 유사하다는 점이다. 『서원규범』은 '祭物式-祭官-展謁-有司-院士-勸課-交際-養賢-防檢-相正-修宇-點書-典僕'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오산지』의 순서와 비교하여 밑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오산지』 「향사」는 '享祀-祭儀(春秋大享圖, 祭器, 祭物式, 齋戒, 序立, 陳器, 行禮, 行奠幣禮, 行初獻禮, 行亞獻禮, 行終獻禮, 行飲福禮, 行望塵禮, 大享祝文, 墓祭祝文, 祭官)-展謁'의 순서이다. 『오산지』 「학규」는 '有司, 院士, 居業, 勸課, 防檢, 交際, 相正, 養賢, 修宇, 點書, 典僕'의 순서이다. 이때 『오산지』 「학규」는 '원사-거업'으로 조항이 나누어지나, 『서원규범』에서는 모두 '원사'에 포함되어 있다. 『오산지』 「학규」가 원사 조항과 거업으로 나뉘는 기점에 『서원규범』은 약 반장에 걸친 공백이 있다. 이 부분은 『서원규범』을 필사할 때 생긴 오차라고 생각된다. 또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春秋大享圖, 祭式, 祭文은 『임고서원범규』에 수록되었기 때문에 『서원규범』에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서원 학규의 체제와 내용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오산서원의 『오산지』에서 인용한 학규의 원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유운룡은 『오산지』 편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서원이 낙성되어 향사일(享祀日)이 있으니 제의(祭儀)와 원규(院規)가 있어

pp.113~117.

31) 『西厓先生年譜』 卷2 「年譜」 “四十二年甲寅.”

야 한다. 삼가 도산(陶山)·역동(易東)·이산(伊山)·백운(白雲)·금오(金烏)·천곡(川谷)·병산(屏山) 등 서원의 정규(定規)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을 취하여 대략적으로 참고하여 서술하기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대부분은 선현(先賢)들이 창작하고 정하여 이미 시험한 효과가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고, 한 가지도 내 자의로 만들거나 추측한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뒤에서 살피는 사람은 하잘 것 없는 내가 지었다고 해서 홀대하지 말기를 바란다. 만력16년(1588년, 선조 21) 4월 일.”³²⁾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유운룡은 오산서원의 제향 절차와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산지』를 편찬하였다. 또한 도산서원, 역동서원, 이산서원, 백운동서원, 소수서원, 금오서원, 천곡서원, 병산서원의 학규와 『國朝五禮儀』 등 유운룡 자신이 인용한 자료를 모두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목록에는 임고서원이 없기 때문에 『오산지』가 『서원규범』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산지』 「향사」 展謁와 『서원규범』의 展謁은 똑같이 기술되어 있다. 展謁의 마지막에 다른 서원의 학규를 인용하지 않는 省墓 규정이 나오는데, 이는 임고서원에서 불가능한 규정이다.

“매 초하루와 보름[朔望]에 서원에 있는 유생들은 청금(靑衿)을 갖추고 알묘(謁廟)하며 분향하고 재배[二拜]한다 【천곡원규】. … 성묘(省墓)하기를 묘(廟)에 배알하는 것처럼 하고 의례에서 다만 분향하는 한 절목이 없다.”³³⁾

32) 『吳山志』 卷2 「享祀」. “書院告成 享祀有日, 不可無祭儀及院規 謹取陶山·易東·伊山·白雲·金烏·川谷·屏山等書院定規及五禮儀 略加參述如左 類皆出於前賢酌定已試之效 一無起於賤末窺見臆探之說 後之覽者 其毋以曾經鄙人之手而忽之哉 時萬曆十六年四月日.”

33) 『吳山志』 卷2 「享祀」; 『書院規範』.

“展謁

每於朔望 在院儒生盛服靑衿謁廟焚香二拜 【川谷院規】.

遠近人士來尋者 以明日早朝謁廟 或不能留宿者 以當日就夾室改服 【頭巾紅團領】

謁廟如朔望之儀 【川谷院規】.

道主邑主到本院 升正堂就夾室改復 【品服】 謁廟焚香二拜 還正堂改服 如欲宿齋而

謁廟則當於明日早行禮如式 【川谷院規】.

省墓如謁廟儀 但無焚香一節.”

경상도 인동에 위치한 오산서원의 경우 길재의 墓 바로 옆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매 朔望 謁廟할 때 함께 省墓할 수 있다. 하지만 경상도 영천의 임고서원의 경우 祠廟에서 정몽주의 위패를 배향하고 있지만, 정몽주의 墓는 경기도 용인에 있다. 따라서 규정처럼 음력 초하루와 보름을 뜻하는 朔望에 매번 省墓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길재의 묘 옆에 오산서원을 건립한 유운룡이 성묘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오산지』에 수록하였고, 이를 『서원규범』에서 그대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들로 인쇄·간행된 『오산지』를 저본으로 삼아 『서원규범』이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와 더불어 그 내용의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원규범』의 상한을 『오산지』의 간행시기인 1588년 이후로 필사된 16세기 학규로 추정하고 있다.

네 번째, 16세기 서원의 체재의 다양성이다. 먼저 살펴본 경상도 서원 학규의 체제를 살펴보자. 1유형은 『죽계지』, 『영봉지』, 『임고서원범규』로 조를 나누고 뒤에 세목을 서술하는 형식이다. 2유형은 『이산원규』, 「문헌서원학규」, 「은병정사학규」, 「은병정사약속」으로 조항을 나누지 않고 세목을 서술하는 형식이다. 3유형은 『오산지』, 『서원규범』으로 조를 나누고 그 아래 세목을 서술하면서 인용한 서원의 학규를 밝히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경상도 서원 학규의 체제와 황해도 서원 학규의 체제를 비교할 수 있다. 황해도에 건립된 문헌서원과 은병정사의 경우는 동일인물인 이이가 작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학규는 서로 관련성이 높고, 경상도에 건립된 서원의 학규와 내용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황해도지역 서원의 학규인 「文憲書院學規」와 「隱屏精舍學規」는 조항을 나누지 않고 세목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이산원규』와 같은 형식이다. 「隱屏精舍約束」은 「隱屏精舍學規」를 보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규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3조항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형식상으로는 『이산원규』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볼 때 16세기 서원 학규는 다양한 체제를 가지고 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文憲書院學

規)와 「隱屏精舍學規」은 享祀와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고 『이산원규』에는 없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이다. 오히려 享祀와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이산원규」가 여타 다른 학규들과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현재 전하지 않는 서원의 원규를 살펴볼 수 있다. 현존하는 16세기 서원의 학규는 7곳 서원의 9종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오산지』 「학규」와 『서원규범』에서 인용된 원규를 살펴보면 천곡서원, 금오서원, 병산서원 등의 학규도 16세기에는 존재하였다. 이외에 16세기 서원 학규의 검토와 그 내용적 특징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Ⅲ. 16세기 서원 學規의 특징

16세기 서원 학규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해당 시기 서원의 특징과 역사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16세기 서원 학규의 내용을 분석하면 당시 서원의 운영 양상과 士林의 사상문화적 이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9종의 서원 학규는 7곳 서원의 규칙을 정한 것으로 해당 서원들의 실제적 운영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16세기 서원 학규에서 보이는 내용과 그 특징을 검토하고, 해당시기 서원운영의 단면을 그려보겠다.

먼저, 16세기 서원의 享祀儀禮를 규정한 학규를 조항을 살펴보자. 16세기 서원의 운영자들은 배향인물에 대한 향사의례를 중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7곳의 서원 중 4곳(백운동서원, 영봉서원, 임고서원, 오산서원)의 서원 학규는 謹祀 또는 享祀조를 가장 앞에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오산서원을 건립하여 운영한 유운룡은 『오산지』를 편찬하여 享祀와 관련한 규정들을 독립시켜 별도의 卷으로 만들어 學規에 앞서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享祀가 서원의 여러 기능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앞부분에 관련 규정을 수록했거나 별도의 卷으로 작성하여 서술하려 한 것이다. 16세기 서원

의 규정을 살펴보면 배향인물에 대한 享祀 展謁 省墓 등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享祀日, 향사 복장, 祭官 齋戒日, 祭物 祭器 祭式 展謁日, 展謁 복장, 省墓日, 省墓 복장, 春秋大享圖 등 다양한 규정을 볼 수 있다. 이 중 享祀儀禮와 관련한 규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16세기 서원 享祀관련 규정표

순번	학규명	享祀日	享祀服	祭官	齋戒
1	竹溪志 雜錄後 (院規)	季月 上丁		三獻官 六執事	7일전: 本官·教官·斯文에 고함. 3일전: 재계
2	迎鳳志 學規	仲月 中丁		獻官 四執事	
3	伊山院規				
4	臨臯書院 凡規	季月 上丁		三獻官 六執事	7일전: 斯文에 고함
5	文憲書院 學規	春秋			
6	隱屏精舍 學規				
7	隱屏精舍 約束				
8	吳山志 享祀	仲月 中丁	齋戒 洪團領 行禮 黑團領	三獻官 祝 贊者 謁者 贊引 司尊 奉香 奉爐 掌饌 洗位	
9	書院規範				

享祀日是 季月 上丁日(백운동서원, 임고서원)과 仲月 中丁日(영봉서원, 오산서원)으로 나누어지고, 봄과 가을(문헌서원)이라고만 언급된 경우가 있다. 성균관 文廟의 釋菜가 仲月 上丁에 있었기에, 서원의 춘추대향일을 정하는

일은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다.³⁴⁾ 먼저 백운동서원은 달을 달리하여 季月(음력 3월 9월) 上丁으로 정하였고,³⁵⁾ 임고서원은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영봉서원은 仲月(음력 2월 8월) 中丁으로 규정하고,³⁶⁾ 『오산지』에 인용된 「천곡원규」에서도 上丁에 석채를 지내고 中丁에 서원의 향사를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⁷⁾ 오산서원은 이를 수용하여 춘추대향을 仲月 中丁에 행하도록 규정하였다.³⁸⁾ 祭官조항에서 獻官 3人是 공통되지만 執事는 각각 그 수가 다르다. 특히 후기로 갈수록 祝 贊者, 謁者, 贊引, 司尊, 奉香, 奉爐, 掌饌, 洗位 등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서원의 향사는 향사일 7일전에 알리고 齋戒는 3일전부터 하였다. 향사를 지낼 때의 복장은 齋戒에서 紅團領을 착용하고, 行禮때는 黑團領을 착용하였다.³⁹⁾

표 3 16세기 서원 展謁·墓祭관련 규정표

순번	학규명	展謁日	展謁服	墓祭	墓祭日	평상복	春秋大享圖
1	竹溪志 雜錄後 (院規)						○
2	迎鳳志 學規						○
3	伊山院規						
4	臨臯書院						○

34)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時日.”

35) 『竹溪志』, 卷5, 「雜錄後」, “春秋大享, 例卜季月上丁, 上丁有故, 改卜中丁. ○凡舍菜先聖, 必於春秋仲月, 而此則卜季月者, 公既配享仲月, 而上巳之清明重陽之佳節, 即公平生所浴禊遊賞於此者.”

36) 『迎鳳志』 「學規錄」, “春秋大享例卜仲月中丁, 擇獻官備四執事, 有大故改卜亥日.”

37) 『吳山志』 卷2, 「享祀」, “土, 或未免知有院, 而不知有校, 輕重之失序甚矣. 自今每歲上丁, 入院之士, 齋會先行釋菜, 中丁行院祀.”

38) 『吳山志』 卷2 「享祀」, “春秋大享, 例卜仲月中丁, 有故, 改卜下丁. ○有故者, 如國忌之類.”

39) 『吳山志』 卷2 「享祀」.

순번	학규명	展謁日	展謁服	墓祭	墓祭日	평상복	春秋 大亨圖
	凡規						
5	文憲書院 學規	朔望	諸生: 頭巾·團領			直領	
6	隱屏精舍 學規	朔望	有官: 紗帽·團領·品帶 儒生: 頭巾·團領·條帶			笠子 直領 冠巾 直領	
7	隱屏精舍 約束						
8	吳山志 享祀	朔望	儒生: 靑衿 遠近人士: 頭巾·洪團領	○	清明		○
9	書院規範	朔望	道主 邑主: 品服	○			

展謁日是 매월 초하루와 보름(문헌서원 은병정사, 오산서원, 임고서원)이다. 이때 착용하는 복장은 황해도 지역 서원과 경상도 지역 서원이 조금 다르다. 먼저, 황해도 문헌서원에서 서원의 여러 원생은 頭巾, 團領을 착용하였다.⁴⁰⁾ 은병정사에서 벼슬이 있는 사람은 紗帽, 團領, 品帶를 착용하고, 유생은 頭巾, 團領을 착용하였다.⁴¹⁾ 경상도 오산서원과 임고서원에서 벼슬이 있는 감새(道主), 현감 혹은 군수(邑主)는 品服을 착용하고, 방문하는 인사들은 頭巾, 洪團領을 착용하며, 유생은 靑衿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16세기 서원의 展謁에는 벼슬이 있는 사람이 品服을 착용하는 점은 공통점이다. 하지만 서원의 院生은 황해도지역에선 頭巾과 洪團領을 착용하고, 경상도 지역에선 靑衿을 착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경상도 지역에선 방문하

40) 『粟谷全書』卷15 「文憲書院學規」. "一. 每月朔望 諸生具巾【頭巾】袍【團領】詣廟. 開中門, 焚香【年最長者焚香】, 再拜. 雖非朔望 諸生若自他處初到, 或自院歸家時, 必於廟庭再拜【不開中門, 不焚香】."

41) 『粟谷全書』卷15 「隱屏精舍學規」. "一. 每月朔望 師弟子皆以官服. 【有官則紗帽團領品帶 儒生頭巾團領條帶】詣廟開中門, 出廟貌 再拜, 焚香. 【師若不在 則齋中年長者焚香】 又再拜【敘立位次 則師居前行, 弟子爲後行西上.】"

42) 『吳山志』卷2 「享祀」. "展謁, 每於朔望在院儒生盛服靑衿謁廟焚香二拜【川谷院規】. 遠近人士來尋者, 以明日早朝謁廟, 或不能留宿者, 以當日就夾室改服【頭巾紅團領】, 廟如朔望之儀【川谷院規】. 道主邑主到本院升正堂就夾室改復【品服】, 謁廟 焚香 二拜 還正堂改服 如欲宿齋而謁廟, 則當於明日早行禮如式【川谷院規】."

는 인사들의 복장도 규정하였다.

墓祭日은 오산서원에서만 규정이 보이며 清明節이다.⁴³⁾ 오산서원은 길재의 墓 바로 옆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유운룡은 展謁의 마지막 부분에도 省墓와 관련된 조항을 제정하였다.⁴⁴⁾ 하지만 『서원규범』에서도 같은 조항이 보이는데,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산지』의 조항을 그대로 필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로 보인다.

이상의 서원 제향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제향의식을 행할 때는 주로 團領을 착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대비하여 평상시 복장은 直領이었다. 문헌서원은 평시 복장으로 直領을 착용하도록 하였고⁴⁵⁾ 은병정사는 평시 복장으로 笠子 또는 冠巾에 直領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⁶⁾

또한 春秋大享圖를 보면 16세기 경상도 지역 서원에서 사용된 祭物을 파악할 수 있다. 春秋大享圖를 확인할 수 있는 서원은 백운동서원, 영봉서원, 임고서원, 오산서원 등 4곳이다. 이들 서원의 祭物과 지방 鄉校의 제물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鄉校와 書院의 祭需 비교표

	祭需	鄉校	白雲洞	迎鳳	臨臯	吳山
籩豆	형염刑鹽	○				
	어숙魚鱸	○		○	○	○ ⁴⁷⁾
	건조乾棗	○	○	○	○	○
	옻황栗黃	○	○	○	○	○
	진자榛子	○		○		
	능인菱仁	○				

43) 『吳山志』 卷2 「享祀」. "每年清明, 精備祭物, 眞掃墳塋. 祭品, 三色實果, 米麵食, 脯醢魚肉, 炙肝雞脰, 連獻三爵, 行禮, 如家廟參拜儀, 有祝文."

44) 『吳山志』 卷2 「享祀」. "展謁, 省墓如謁廟儀, 但無焚香一節."

45) 『栗谷全書』 卷15 「文憲書院學規」. "一, 常時, 恒整衣服冠帶, 拱手危坐, 如對尊長, 毋得以褻服自便【必著直領】 且不得著華美近奢之服, 凡几案書冊筆硯之具, 皆整置其所, 毋或亂置不整, 作字必楷正, 毋得書于窓戶壁上"

46) 『栗谷全書』 卷15 「隱屏精舍學規」. "一, 平明時, 皆以常服【笠子直領或冠巾直領之類, 但不用襦挾直領】."

	祭需	鄉校	白雲洞	迎鳳	臨臯	吳山
	검인芡仁	○				
	목포鹿脯	○	○	○	○	○
	구저韭菹	○	○	○	○	○
	탐해醢醢	○				
	정저菁菹	○	○	○	○	○
	녹해鹿醢	○			○	○
	근저芹菹	○				
	토해兕醢	○		○		
	순저筍菹	○		○		
	어해魚醢	○	○	○	○	○
	밀과蜜果		○			
	백자栝子		○	○		
	건치乾雉			○		
	計	左八籩 右八豆	左四籩 右四豆	左六籩 右六豆	左四籩 右四豆	左四籩 右四豆
		鄉校	白雲洞	迎鳳	臨臯	吳山
腥	양성羊腥	○				
	시성豕腥	○				
	계성雞腥		○	○	○	○
簠簋	도稻	○	○	○	○	○
	양粱	○	○	○	○	
	서黍	○	○	○	○	○
	직稷	○	○	○	○	
酒	명수明水	○				
	예제醴齊	○				
	명수明水	○				
	양제盎齊	○				
	현주玄酒	○				
	청주淸酒	○	○	○	○	○
	計	二腥 二簠 二簋	一腥 二簠 二簋	一腥 二簠 二簋	一腥 二簠 二簋	一腥 一簠 一簋

47) 『오산지』에서는 '漁鱸' 대신 '魚脯' 라고 표기되어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각각의 서원의 祭需가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향교와 서원의 진설하는 籩豆 簠簋 犧牲을 비교해보면 향교보다 서원 제수의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羊腥과 豕腥을 올리는 향교와 달리 서원들은 雞腥을 올렸다. 오산서원에서 雞腥을 제물로 올리는 일에 대해 백운동서원과 도산서원의 의식에서 정당성을 찾았다.⁴⁸⁾ 이처럼 희생을 雞腥으로 하는 양상은 경상도 서원 享祀의 특징 중 하나이며, 현재도 동일한 雞腥을 준비하는 서원이 존재한다.⁴⁹⁾ 또한 앞서 살펴본 享祀儀禮 규정에서 서원의 향사일은 향교의 釋奠禮를 의식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이 향교의 釋奠과 서원의 享祀의 차등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다. 또 백운동서원의 향사에서 진설되는 제수 중 蜜果가 이후 서원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황은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 중 하나로 일상적인 음식인 밀과를 향사에 올림을 비판하고 이를 개정했다.⁵⁰⁾ 이황이 개정하여 제시한 서원 향사례를 경상도지역 서원에서 준용했던 사실을 춘추대향도에 나타나는 밀과의 有無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16세기 서원의 강학활동과 관련한 규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자. 이 시기 서원의 학규는 강학활동에 관하여 서원의 인적구성, 교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서원의 구성인원은 학규에 나타나는 다양한 명칭과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성원의 역할을 기준으로 서원의 인원을 살펴보면 원임인 院長-師 有司, 학생인 院生, 典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서원의 長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을 정리한 표이다.

48) 『吳山志』卷2 「享祀」. “雞腥幣籩用, 白雲陶山儀.”

49) 윤숙경, 「鄉校와 書院의 祭禮에 따른 祭需에 관한 연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3, 1998, pp.256~258.

50) 이황이 백운동서원 향사례를 수정하여 서원 향사례의 표준을 제시한 점에 대한 연구는 한재훈의 논문(「退溪의 書院 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 『退溪學과 儒敎文化』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을 참고할 수 있다.

표 5 16세기 서원 院長의 명칭표

순번	학규명	院長	副院長	上有司	師長	師
1	竹溪志 雜錄後(院規)	○	○			
2	迎鳳志 學規	○				
3	伊山院規			○		
4	臨臯書院凡規	○	○			
5	文憲書院學規					
6	隱屏精舍學規				○	
7	隱屏精舍約束					○
8	吳山志 學規	○		○		
9	書院規範	○		○		

표 5를 보면 서원의 院長-師는 院長 上有司, 副院長 師長, 師의 명칭이 확인된다. 여기서 특징이 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의 차이이다. 먼저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경상도지역 서원에서 院長과 上有司, 副院長 등을 사용하고 있고 황해도 지역 서원에서는 師長, 師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경상도지역 내로 살펴보면 院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소수, 영봉, 임고, 오산)과 上有司(이산, 오산, 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으로 나눌 수 있다. 上有司의 사용은 이황이 제정한 이산서원의 원규를 준용한 서원에서 나타는 현상이다.⁵¹⁾ 서원의 院長은 서원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서원의 대표자로, 春享 釋奠 때 薦望單子를 올려서 圈點하여 가장 많은 자를 뽑았다. 그리고 서원에서 『院長錄』을 비치하여 원장을 임기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다.⁵²⁾

51) 『吳山志』卷3「學規」, "有司, 院有司以近居兼幹品官二人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 衆所推服者, 一人爲上有司, 皆二年相適【陶山院規】. ○按右院規 乃於伊山退陶先生手定, 其後因用於易東陶山兩院院長變稱上有司, 皆先生徵意, 今雖依此稱號有何所損"

52) 『吳山志』卷3「學規」, "有司, 置院長錄, 錄前後院長, 竝書遞任年月, 令後之觀者, 有所披閱而欽戒, 亦庶幾不爲無助也, 有司亦書之【川谷金烏院規】."

표 6 16세기 서원 有司의 명칭표

순번	학규명	有司	下有司	院監
1	竹溪志 雜錄後(院規)	○		
2	迎鳳志 學規	○		
3	伊山院規	○		
4	臨臯書院凡規	○		
5	文憲書院學規	○		○
6	隱屏精舍學規	○		
7	隱屏精舍約束			
8	吳山志 學規	○	○	
9	書院規範	○	○	

표 6을 보면 서원의 有司는 有司, 下有司 등으로 표현되고 있고 서원을 감찰하는 院監이 보인다. 이 역시 먼저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경상도지역 서원에서 有司, 下有司 등을 사용하고 있고 황해도 지역 서원에서는 有司, 院監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상도지역 서원의 有司, 下有司는 미포의 출납과 공궤, 염산, 타작, 書冊 등의 일을 주관하였다.⁵³⁾ 황해도 지역 서원의 有司는 사환과 집기의 유무를 주관하고 齋直을 단속하며, 書冊을 주관하였다.⁵⁴⁾ 院監은 서원의 공궤와 출납의 일을 감찰하였다.⁵⁵⁾ 서원의 有司도 院長과 마찬가지로 천망단자를 올려 圈點을 받아 선출하였다. 유사 업무인 계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 차정된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서책과 물품 등을 計數하여 관에 보고하여야만 하였고 문서로만 서로 이임할 수 없었다. 만일 물품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수를 보충한 다음에야 교체를 허락하였다. 그 중 만약 태만함이 아주 심하여 직무를 살피지 않아 전곡을 많이 모자라게 하고도 그 즉시 숫자를 보충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관에 고하여 죄를

53) 『吳山志』 卷3 「學規」, "有司, 下有司主米布出納供饋斂散打作等事, 凡事必稟於院長而行之【屏山院規】."

54) 『栗谷全書』 卷15 「隱屏精舍學規」; 「文憲書院學規」.

55) 『栗谷全書』 卷15 「隱屏精舍學規」; 「文憲書院學規」.

다스리고 計數하였다.⁵⁶⁾

표 7 16세기 서원 院生의 명칭표

순번	학규명	院生	院士	學徒	堂長	掌議	直月	寓生	童蒙
1	竹溪志 雜錄後 (院規)		入院之士						
2	迎鳳志 學規		入院之士	院學徒					
3	伊山院規	諸生						○	○
4	臨臯書院凡規		入院之士						
5	文憲書院學規	諸生				○			
6	隱屏精舍學規	諸生			○	○	○		
7	隱屏精舍約束	入齋諸生			○	○	○		
8	吳山志 學規	入院儒生 諸生						○	○
9	書院規範	入院儒生 諸生						○	○

표 7을 보면 서원의 학생은 院生, 院士, 學徒, 堂長, 掌議, 直月, 寓生, 童蒙 등이다. 이들은 서원에서 거주하면서 배우는 정식 입학생, 다른 원생을 감독하는 원생, 임시 학생, 어린 학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식 입학생은 入院之士, 院學徒, 諸生, 入齋諸生, 入院儒生 등의 명칭이었다. 정식 입학생의 입학 기준은 과거에 入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었다. 먼저 과거 입격을 입학 기준으로 삼은 서원은 백운동서원, 영봉서원, 임고서원, 문헌서원이고, 그렇지 않은 서원은 이산서원과 오산서원이었다. 이러한 부분도 이황이 課業과 道學 중에서 도학을 우선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원생은 기본적으로 20세 이상으로 천거를 통해 入院하였고, 원생의 이름과 추천자를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였다.

56) 『吳山志』卷3「學規」. “有司. 下有司傳掌時, 必與新差之員, 眼同計數告官, 不許只以文書相傳授. 萬一有欠縮之數, 則責令充補其數, 然後方許遞代. 其中如有惰慢充甚, 不察其事, 使錢穀多缺, 而不卽充數者, 有司告於官, 治罪計數徵上【屏山院規】.”

원생들을 대표하거나 감독하는 원생은 堂長 掌議 直月이다. 이들은 황해도 지역 서원의 학규에서 보이는 명칭인데 원생 중 나이가 많고 지식이 있는 1명이 堂長 같은 또래 중 학식이 우수한 사람이 掌議가 되어 원생의 대표를 맡았다. 直月은 원생들의 선악을 기록하는 장부를 맡아서 기록하였다.⁵⁷⁾ 이외 임시 학생으로 寓生이 있었는데, 일정 이상의 학업을 성취해야만 정식원생이 될 수 있었다.⁵⁸⁾ 또 입학 연령은 2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세 이하의 어린 학생은 童蒙으로 별도의 齋(養蒙齋, 養正齋 등)를 두어 입학하도록 하였다.⁵⁹⁾ 하지만 서원 내에 이러한 입원생과 동몽의 구분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고, 동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⁶⁰⁾

표 8 16세기 서원 典僕의 명칭표

순번	학규명	守直	齋直	院屬	典僕	下人
1	竹溪志 雜錄後 (院規)	○				
2	迎鳳志 學規	○				
3	伊山院規			○		
4	臨臯書院凡規	○				
5	文憲書院學規					
6	隱屏精舍學規		○			
7	隱屏精舍約束					
8	吳山志 學規				典婢 典僕	院屬下人 院中下人
9	書院規範				典婢 典僕	院屬下人 院中下人

57) 『栗谷全書』卷15 「隱屏精舍學規」; 「文憲書院學規」.

58) 『退溪集』卷41 「伊山院規」. "寓生 不拘冠未冠 無定額 成才乃升院"

59) 『吳山志』卷3 「學規」. "院士 童蒙凡在二十歲以下者 皆聽養蒙齋入學 雖二十歲以後 未及入院之選 而欲入養蒙齋者聽【川谷院規】."

60)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연구」, 『歷史教育論集』 54, 역사교육학회, 2015, pp.211 ~ 212.

표 8을 보면 典僕은 守直 齋直 典僕 院屬 下人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서원의 일을 하던 사람으로 서원을 지키고, 건물을 수리하고, 일상적인 청소, 음식을 만드는 등의 일을 하였다. 서원의 하인이 죄를 지으면 원장과 유사에게 고하여 죄를 다스렸다.⁶¹⁾ 서원의 여종(典婢)은 식사 준비 외에는 잠시도 사당과 재 안을 출입하면 안 되었다.⁶²⁾

다음으로 16세기 서원에서 사용한 강학교재와 장서관리를 살펴보자. 학규에 나타는 서적은 크게 원생들의 교재로써 공부해야 하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으로 나뉘었다. 먼저, 이황은 「이산원규」에서 四書五經 『小學』, 『家禮』, 여러 史書와 子書, 「四勿箴」, 「白鹿洞規」, 「夙興夜寐箴」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 오산서원에서는 莊子, 列子, 老子, 佛教의 서적은 서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⁶³⁾ 은병정사에서도 史學을 제외하고 聖賢의 글이나 性理書가 아니면 齋 안에서 읽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⁶⁴⁾ 즉, 16세기 서원의 강학교재는 經書와 性理書가 중심이었고 일부 史書를 활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16세기 경상도 지역 서원의 장서에 대한 규정은 백운동서원의 조항을 임고서원과 영봉서원에서 답습 또는 일부 확장하여 적용하다가, 「이산원규」에서 새로운 조항이 나타나고 『오산지』와 『서원범규』에 모두 수록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 황해도지역을 포함한 각 서원의 장서관련 조항들은 공통적으로 서원 장서의 주기적인 점검과 포쇄 등을 당부하고, 서원 밖으로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장서의 포쇄는 獻官은 齋戒日, 사마소의 有司는 매 절기[每節], 서원의 有司는 每月의 주기로 시행하였다.⁶⁵⁾ 여기서 특징적인 사항은 모든 서원에서 서적의 유출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서적이 귀중했다는 점을 나타냄과 함께, 역설적으로 서원의 장서가 서원 밖으로 유출

61) 『吳山志』 卷3 「學規」. "凡院中下人有罪 必告院長及有司而治之【屏山院規】."

62) 『吳山志』 卷3 「學規」. "典婢令炊飯 不得輒出入堂齋中【川谷院規】."

63) 『吳山志』 卷3 「學規」. "莊列老釋之書 某局博奕之戲 皆不得入院【川谷院規】."

64) 『栗谷全書』 卷15 「隱屏精舍學規」.

65)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研究」, 『韓國書院學報』 4, 한국서원학회, 2017, pp.79~82.

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16세기 서원의 강학방법을 살펴보면, 고을의 수령(本官)이 시험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영봉서원의 경우 매월 초순과 중순에는 講論을 하고 중순에는 일과 중에 읽은 부분과 製述한 것을 기록하여 本官에게 알리고, 매 절기마다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⁶⁶⁾ 은병정사에서는 매월 초하루에 통독모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⁷⁾ 문헌서원에서는 유사(유사)의 낭독에 다른 학생들이 따라 읽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오산서원은 동몽의 경우 매 10일마다 通講하고, 10일 동안 읽은 책을 通略粗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⁶⁸⁾

마지막으로 16세기 서원의 일상생활과 경제기반에 관련한 규정을 검토해 보자. 은병정사 원생들의 생활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원생들은 매일 五更에 일어나 침구를 정리하고 어린 사람은 빗자루로 방안을 쓸었고 齋直을 시켜서 마당을 쓸게 하였다. 이후 세수와 빗질을 하고 의관을 바르게 한 후 廟에 拜謁하고, 강당의 스승께 拜禮를 하고, 동서 뜰에 나누어 서서 차례로 相揖禮를 행하였다. 밥을 먹을 때는 長幼의 차례로 앉고 음식을 가려 먹지 말고 飽食을 마음에 두어서도 안 되었다.⁶⁹⁾ 또 도산서원의 원생과 유사(유사)는 서로 예의 공경·신의로써 대하였다.⁷⁰⁾ 이처럼 서원 원생의 일상적인 행동들도 학규로 규정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이들의 식사량도 정해져 있었다. 서원의 유생은 5명을 기준으로 供饋하였는데, 2월~8월까지의 아침저녁 각 1升, 9월~1월까지의 7습이었다. 1년 동안 사용한 곡식이 적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⁷¹⁾ 반찬의 비용으로 1년에 잡곡 30石을 넘을 수 없었고 공

66) 『迎鳳志』 「學規錄」. 「勸課」.

67) 『栗谷全書』 卷15 「隱屏精舍學規」.

68) 『吳山志』 卷3 「學規」. 「勸課. 童蒙每句通講, 十日內所讀書, 通略粗分等, 上下其食」.

69) 『栗谷全書』 卷15 「文憲書院學規」. 「一, 每日五更起寢, 整疊寢具, 少者持帚掃室中, 使齋直掃庭, 皆盥櫛正衣冠讀書. 一, 平明時, 皆以常服【笠子直領或冠巾直領之類, 但不用襦挾直領】, 詣廟庭, 不開中門, 只再拜【師若在齋, 則亦以常服謁廟】. 師在講堂, 則就師前行拜禮【師不起立, 只於座上俯答其禮】. 分立東西相向, 行揖禮【師不在, 則拜廟後出廟門, 分立庭東西, 相向而揖】」.

70) 『退溪集』 卷41 「伊山院規」. 「諸生與有司, 務以禮貌相接, 敬信相待」.

71) 『吳山志』 卷3 「學規」. 「養賢, 入院儒生常供五人通計支供之數, 遂月春鑿別藏一櫃, 如其月儒生不會其春, 米毋得他用. 又春次月之米添藏而供之, 一年之內儒生, 所會之月,

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⁷²⁾ 또 童蒙도 항상 5명을 기준으로 아 침저녁으로 각 5수를 주어 1년에 12石을 공계로 사용하였다.⁷³⁾

그리고 서원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구성원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었다. 원장이 작은 잘못을 하면 箴規로써 고치게 하고, 큰 잘못을 하였는데 개선되지 않으면 논의를 거쳐 관에 보고 후 교체하였다. 유사 중에 작은 잘못을 하면 원장이 타이르고, 크면 서원사람들이 꾸짖고, 끝내 스스로 잘못을 깨닫지 못한 자는 원장과 서원의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여 관에 보고하고 내쫓는다. 행실을 닦지 않아서 행동거지가 벗어나거나 위배되는 것이 있는 원생은 가벼우면 원장이 꾸짖고 무거우면 서원의 사람들이 꾸짖는데, 끝내 고치지 않는 자는 원장과 서원의 사람들이 논의하여 내쫓는다. 또한 추천한 사람도 무리에 손해를 끼친 벌을 줘서 신진을 이끌고 올 때에 신중하게 하고 가벼이 하지 않도록 하였다.⁷⁴⁾ 이와 더불어 뜻과 기운이 쇠하거나 게으른 사람, 鄉任을 역임하여 학문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出院하였다. 그리고 원생 중 春秋享祀에 이유 없이 불참하는 자는 黜座하였고, 출좌당한 후에도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黜院하였다.⁷⁵⁾ 또한 祭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소를 죽일 수 없고, 서원 안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고, 바둑과 장기 등의 놀이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16세기 서원은 구성원들의 생활과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

稀罕而春米多積 亦不得移用於他處 數年後 米數即多而儒生於常數外多聚 則臨時酌定 雖五員之外量數加餉無妨【屏山院規】. ○按此供饋之規 甚善二月至八月, 五員供饋朝夕各一升, 九月至正月, 朝夕各七合, 供饋合米二十一石. 當月儒生多會, 供米不足, 則以前月餘米補用, 如無餘米, 則諸生姑令散去, 毋得引用次月之米.”

72) 『吳山志』卷3「學規」. “養賢, 饌價一年通用雜穀毋過三十石, 每月二石五斗, 遂月上下, 亦藏于別處 儒生多會之月, 則依供米例推移足用【屏山院規】.”

73) 『吳山志』卷3「學規」. “養賢, … ○按童蒙亦常供五員, 朝夕米, 各五合, 通計一年, 所用米十二石.”

74) 『吳山志』卷3「學規」. “相正, 院長或過誤行輩間察相箴規 庶幾改行如或所失者 大而不知讞悔 則院中共議告官適之【川谷院規】. 下有司中如有用心巽悖, 不肯盡心力於院事, 惑濫冒無耻多惹外說者, 小則院長飾之, 大則院中責之終不自悛者, 院長與院中同議告官黜之川谷院規】. 入院之士, 如有行實不修, 舉趾踰違者, 輕則院長糾之, 重則院中責之, 用心滅裂 終不肯改者, 院長與院中, 齋議黜之, 所引之人, 亦行損徒之罰 庶幾引進之際 有所慎重而不敢輕舉, …【川谷院規】.”

75) 『吳山志』卷3「學規」. “防檢.”

고 있었고 이는 당시 서원 문화사를 복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서원의 경제활동은 주로 學田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나온 이윤을 사용하여 서원이 운영되었다. 사액서원의 경우 나라에서 서원에 학전을 하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서원을 건립한 인물이나 배향된 인물의 가문에서 학전을 희사는 경우가 있었다. 7곳의 서원 중 학전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곳은 백운동서원, 영봉서원, 임고서원, 오산서원이다.

“○ 사문(斯文)은 총괄 점검하고 유사(有司)는 실무를 관장한다.

학전(學田)에서 생산된 것은 매년 11월 원장(院長)이 세 권의 장부를 만들어 한 권은 관아(官衙)에 보고하고, 한 권은 사문(斯文)에 보고하고, 한 권은 서원(書院)에 둔다. 매년 수입인 보미(賣米)는 정월마다 세 권의 장부에 기록하여 전과 같이 보고한다. 반드시 원금을 보존하고 나오는 이식(利息)으로 사용하여야만 한다. 만약 원금을 비축하지 않고서, 먼저 그 이식을 사용하면, 백성에게 체납된 원금은 원금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고 실상은 없게 되므로, 반드시 먼저 들어온 것으로 원금에 충당한 후에 그 이식을 사용해야 한다. 오늘날 고을마다 사마소(司馬所)에서 많은 토지와 보미(賣米)를 소유하였으나, 손님의 접대나 혼례·상례 등의 비용을 그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래 존속한 곳이 적다. 서원은 반드시 선비의 양성만을 주로 하며 다른 곳에 소모하지 않아야 어느 정도 길게 유지하면서 큰 흠결이 없을 것이다.” 76)

위의 인용문은 백운동서원의 학전관련 규정이다. 영봉서원, 오산서원, 임고서원은 백운동서원의 『죽계지』에 수록된 학전 관련 규정을 준용하였다. 이를 보면 서원의 원장은 매년 11월 학전에서 생산된 작물들을 장부에 기록

76) 安祉 譯 『國譯 竹溪志』, 紹修博物館, 2009, pp.251~252. 『竹溪志』 「雜錄後(院規)」. “斯文統檢, 有司監掌, 學田所出, 每年十一月, 院長成冊三件, 一件申于官, 一件報于斯文, 一件留置院中. 賣米所納, 每年正月, 成冊三件, 其申報如前, 必存本取息而用之. 若不待存本而先用其息, 則在民腹中而未納者, 有本之名, 無存之實, 須以先納者充存其本, 然後, 用其所息, 可也. 今夫列邑司馬所, 亦多置田立賣, 然而送迎婚喪之需, 或資於此, 故其久保也, 鮮矣. 若書院則必以養賢爲主, 無他耗費, 然後, 庶可支久, 無大闕欠.”

하였다. 동일한 장부를 여러 권(『영봉지』 3권 『오산지』 2권 『서원범규』 2권)의 만들어 분산보관하는데, 그 중 1권은 官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였다. 糶米도 정월마다 장부를 만들어 학전의 장부와 같이 官에 보고하였다. 이때 반드시 본전은 보존하여 남겨두고 그 이자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전은 鄕校田과 마찬가지로 學田으로 설립됨으로써 면세규정이 없었던 초기에도 일반적으로 사액서원에 한해서 서원전 소재 지방관의 승으로 면세되는 것이 상례였다.⁷⁷⁾

또한 서원의 齋戒日에 米穀과 기타 물품을 회계하며, 享祀日에 여러 사문과 함께 이를 다시 감찰하였다. 이렇게 감찰하는 행위에서 경상도지역 서원은 사마소의 유사와 서원 유사가 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황해도지역 서원에서는 齋直이 재 안의 물건 출납을 주관하고 유사가 사환과 집기의 유무를 주관하며 모든 물건을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학전과 함께 서원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부분은 典僕을 꼽을 수 있다. 백운동서원의 典僕 중 守直은 4家였고, 세금과 부역이 면제되었으며 官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⁷⁸⁾ 또한 이산서원의 경우 院屬을 잘 돌봐주며 院과 齋의 공적인 일만 하도록 했다.⁷⁹⁾ 또 典婢는 말은 일 이외엔 출입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오산서원은 길재의 묘 옆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묘를 수호하는 典僕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⁸⁰⁾

이상에서 검토한 16세기 서원의 學規는 서원의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서원의 享祀儀禮 講學活動, 인적 구성, 교재, 경제생활, 원내생활 등 다방면의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조선에 서원이 건립되기 시작한 16세기의 서원 학규는 서원 초기 모습과 그 운영 양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 시기 서원의 학규는 운영주체

77)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연구」, 『歷史教育論集』 54, 역사교육학회, 2015, p.217.

78) 『竹溪志』 卷5, 「雜錄後(院規)」. "復守直四家, 人不得役, 官不得奪."

79) 『退溪集』 卷41, 「伊山院規」. "院屬下人, 有司與諸生, 常須愛護, 院事齋事外, 毋得人人私使喚, 毋得私怒罰."

80) 『吳山志』 卷3, 「學規」. "典僕 ○書院之作爲先生墓也, 墓下居人寔繁有徒不閑禮義待之, 一失所係非輕, 亦須兼盡恩威務得其心, 常存永護之計."

인 사람의 이상향적인 서원상을 반영하는 사상사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V. 결론

16세기 서원 학규를 검토하여 해당 시기 학규의 변천 양상과 서원 운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서원의 학규는 제향, 교육, 경제, 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원의 교육이 현재와 같이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학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원 학규는 사상사, 역사사, 교육사, 경제사, 향촌사회사, 문화사 등 여러 방면의 연구가 가능한 사료이다.

16세기 서원의 학규는 다양성과 함께 지역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6세기 서원이 가지는 역사적 성격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16세기 조선은 서원이라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서원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확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 학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여 조선식으로 정착시켰고, 이에 따라 지역적·계통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서원 학규를 제정하였다. 중국의 제도였던 서원을 점차적으로 시대와 환경에 맞게 조선식으로 정립해나가려 한 士林의 노력이 서원의 학규에서 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대가 지날수록 실제적으로 서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학규 조항이 증가하였다. 16세기 말엽에 편찬된 『오산지』는 典範이 되는 여러 서원의 학규를 준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16세기 서원 학규가 가지는 계통적 累屬性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원의 두 가지 기능인 尊賢과 講學 중 어떤 부분을 더 중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랜 시간 논란거리였다. 이에 대하여 이황이 강학기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초기 서원은 강학기능을 강조하였다는 기존

의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16세기 서원의 학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시기 서원에서도 尊賢으로 대표되는 서원의 제향기능이 강조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후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간의 인용 양상을 보이는 서원 학규의 탐구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먼저, 오산서원과 임고서원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오·천곡·병산서원의 규정을 분류하여 각 서원의 원규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백운동서원과 이산서원의 원규를 저본으로 작성된 서악서원의 규정, 서악서원 원규를 저본으로 작성된 옥산서원의 원규, 천곡서원의 원규를 저본으로 작성된 도동서원의 원규도 작성 시기와 인용 규정들을 분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 서원의 규정을 분류하고 확정한다면 상호간의 인용과 변화 양상을 확인하여 16세기 서원 학규를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17세기 서원의 학규를 연구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16세기는 사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 시기 서원의 전체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학규와 함께 실제 운영상의 기록인 고문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야만 이상과 현실이란 양방면의 서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분고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과제로 연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원문자료

- 『國朝五禮儀序例』
 『列邑院宇事蹟』
 『竹溪志』
 『迎鳳志』
 『吳山志』
 『臨臯書院凡規』
 『書院規範』
 『退溪集』
 『栗谷全書』
 『謙庵集』
 『寒岡集』
 『西厓先生年譜』

단행본

-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79.
 安柱 譯 『國譯 竹溪志』, 紹修博物館, 2009.

논문

- 김학수, 「조선후기 영천지역 사림과 임고서원」, 『圃隱學研究』 6, 포은학회, 2010.
 김해용, 「학규(學規)를 통해 본 조선시대 서원 교육과정의 변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渡部學, 도광순 譯 「道東書院規目の 構成과 內容」, 『寒暄堂의 生涯와 思想』, 寒暄堂先生 紀念 事業會, 1980.
 渡部學, 「栗谷先生の 教育思想」, 『韓國思想論叢』 2, 을곡사상연구원, 1980.
 박종배, 「조선시대 학령(學令) 및 학규(學規)」, 『한국교육사학』 28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6.
 박종배,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8집 2호, 교육사학회, 2008.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집 2호, 교육사학회, 2009.

- 박종배, 「조선시대 유학 교육과정의 변천과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33권 3호, 한국교육사학회, 2011.
- 宋楊燮, 「朝鮮時代の 書院教育-江原道와 관련하여-」, 『江原文化研究』 13,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4.
- 윤숙경, 「鄉校와 書院의 祭禮에 따른 祭需에 관한 연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3, 1998.
- 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31, 2005.
- 이종문, 「초창기 初創期 임고서원 臨臯書院 연구」, 『한국학논집』 6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6.
-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연구」, 『歷史教育論集』 54, 역사교육학회, 2015.
-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研究」, 『韓國書院學報』 4, 한국서원학회, 2017.
- 임근실,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道統意識」, 『退溪學報』 137집, 퇴계학연구원, 2015.
- 임근실,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韓國書院學報』 2, 한국서원학회, 2013.
- 정진욱, 「學規分析을 통한 朝鮮時代 書院의 教育機能 研究」,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한재훈, 「退溪의 書院 享祀禮定礎에 대한 考察」, 『退溪學과 儒敎文化』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A review of the educational regulations of seowon and its special features in the 16th century

Lim, Geun-Sil*

This article analyzed the educational regulations of seowon in the 16th century. In the 16th century the seowon was established in Korea. Therefore various regulations related to the seowon also started to be established from this time. Looking at the seowon regulations of the 16th century seowon, we can confirm the daily life · sacrificial rite · educational activity at that time. There are nine kinds of records related to the seowon regulations of the 16th century seowon. ① Jukgyegi Jobrokhu-wongyu(竹溪志 雜錄後院規) of Baekundongsoewon(白雲洞書院)[Sosusoewon(紹修書院)], ② Yeongbong-gi Hakgyurok(迎鳳志 學規錄) of Yeongbongseowon(迎鳳書院)[Cheongokseowon(川谷書院)] ③ Isanwongyu(伊山院規) of Isanseowon(伊山書院), ④ Yimgoseowonbumgyu(臨臯書院凡規) of Yimgoseowon(臨臯書院), ⑤ Moonhunseowonhakgyu(文憲書院學規) of Moonhunseowon(文憲書院), ⑥ Eunbyungjeongsahakgyu(隱屏精舍學規) of Eunbyungjeongsa(隱屏精舍), ⑦ Eunbyungjeongsayaksok(隱屏精舍約束) of Eunbyungjeongsa(隱屏精舍), ⑧ Osanji Hyangshakgyu(吳山志 享祀·學規) of Osanseowon(吳山書院) ⑨ Soewongyubum(書院規範) of Yimgoseowon(臨臯書院). First,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 16th century seowon records. Next, we analyzed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16th century seowon records.

* Lim, Geun-Sil: Doctor's Courses, Department of History, Dankook University.(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Jap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Key words : 16th century, seowon regulations, the records related to the seowon regulations, Sacrificial Rite, educational activity.

이 논문은 2018년 6월 1일 투고 완료.

2018년 6월 1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완료.

2018년 6월 25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서 게재 결정.

왕선겸의 서원교육이념과 실천

공항운(龚抗云)*

-
- I. 序言
 - II. 趋时应变的人才选拔标准
 - III. “本末贲”的人才培养模式
 - IV. 实事求是和兼容并蓄的治学态度
 - V. 余论
-

[국문요약]

왕선겸은 청말민초 시기 수많은 심각한 사회변혁을 직접적으로 겪고 보았고, 그의 사상 및 평생 행적이 상당히 복잡하며 “千古의 變局” 속에 중국 사인들의 존재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매우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교육적 면에 관한 인식과 공적이 가장 절실하고 특색적이다. 서원강학 실천을 바탕으로 형성된 그의 교육이념 및 교육실천은 중국근대교육의 변혁과 발전의 우여곡절과 어려운 과정을 집중적으로 나타내 있다. 근대의 극렬한 사회변동 속에 그는 “與時俱變, 本末兼贲, 事實求是, 兼容并蓄”의 교육이념을 제시하였고 이를 끝까지 지키면서 서원교육에 실천시켰다. 이처럼 교육의 본질과 규칙을 잘 드러내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그의 교육활동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물론 그는 오직 공자의 가르침이 萬世에 행해도 폐병이 없다고 전통유가사상을 견지하면서도 “中體西用” 사상을 수용하였으며 사상적 보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대 사대부 중 진보성과 보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지식인 집단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보수적이면서도 그 속에서 변화를 구하는 그의 교육이념은 오늘 중국교육개혁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핵심어: 왕선겸, 왕선겸 서원교육, 왕선겸 교육이념, 중국교육개혁, 서원

* 湖南大学校 岳麓书院 教授 gongkangyun@163.com

王先谦目睹和经历了晚清民初的诸多重大社会变革，其言论、作为与思想颇为复杂，不啻于“千古变局”下中国士人的一种缩影，值得作为一位典型人物进行研究。他在教育方面的见解和建树最为切实，也最有特色。他的教育理念和实践，可以说主要是他在书院讲学中形成和实施的，集中地体现出了中国近代教育变革、发展的曲折艰难的过程。在近代剧烈的社会变革面前，王先谦提出和坚守着他的与时俱变、本末兼赅、实事求是、兼容并蓄等教育理念，并执着地实践于书院教育中，可以说他把握了教育的本质和规律，所以他在当时的教育活动是成功的。当然，他提出的唯我孔子之教行万世而无弊，认同中体西用，这无疑体现出了他保守的一面。他是近代士大夫中既开明又保守这一群体中的典型一员，或许王先谦这种保守而求变的教育理念，能对当前中国的教育改革提供更多的启迪和有益的思考。

I. 序言

王先谦(1842-1918)字益吾，湖南长沙人。1857年(咸丰七年)，十六岁的王先谦即取得生员资格，但接着两入乡闈而不获。因家贫亲老，20岁时“橐笔从戎”，前后三次从军，蹉跎四载，未立功名。至1864年(同治三年)，他考中举人，翌年联捷成进士，朝考点翰林院庶吉士。同治七年散馆，授编修之职，历任功臣馆纂修、国史馆总纂、实录馆总校、詹事府左中允、右春坊右庶子、翰林院侍讲、国子监祭酒等，期间曾于1870年(同治九年)简放云南乡试副考官，1874年为会试同考官，1875年(光绪元年)为江西乡试正考官，1876年充浙江乡试副考官，1880年为会试同考官。1885年外放江苏学政。1888年(光绪十四年)，他在江苏学政任满后辞职归里，潜心于讲学、著述，先后主讲思贤讲舍(1890—1891年)、城南书院(1891—1893年)和岳麓书院(1894—1903年)，清末新政时期兼任湖南师范馆馆长、省学务公所议长、湖南铁路局名誉总理、省谘议局会办等职，成为湖南绅界领袖，又时时与闻省内各项大政，因此成为晚清湖南近代化过程中一位值得注意的人物。

辛亥革命后，因对时事不满，乃闭门著述以终老。因其寓所名葵园，后学尊称“葵园先生”。1912年后，以清朝遗老自居，自署名曰遁，斋名虚受堂。

王先谦目睹和经历了晚清民初的诸多重大社会变革，其言论、作为与思想颇为复杂，不啻于“千古变局”下中国士人的一种缩影，值得作为一位典型人物进行研究。尤其是他数任乡试、会试主考官，又任过一任江苏学政，中年以后即辞官归里，长期主讲于各个书院，所以他在教育方面的见解和建树最为切实，也最有特色。他的教育理念和实践，可以说主要是他在书院讲学中形成和实施的，集中地体现出了中国近代教育变革、发展的曲折艰难的过程。

II. 趋时应变的人才选拔标准

八股取士至晚清已经完全衰落，其流弊进一步加深，不能适应培养和选拔新式人才的社会需要，促使一部分有识之士开始思考如何对科举进行改革的问题。王先谦通过科举走上仕途，在任乡、会试主考官和江苏学政时，以研习制艺而得一第以激励士子，这一方面是他职责所在，另一方面是他内心对八股取士的充分肯定。他认为，“制艺取士，前古莫尚之良法”，“圣贤之微言奥理，备于四子书。学者正心修身，推而至于平天下，舍是无由”，“以制艺取士，《四书》命题，然后斯世尊奉一致，口复心研，不能自己。其智者随所之而入道，鲁者缘习生悟，亦能驯致辞义理之途。达则穷事变，充器识，为国家纯臣；穷抱遗经，亦不失为乡里好修之士。而科目出身，仕途所重，士虽儿齿宣发，皆思得一第为荣。束天下豪杰于追章琢句之中，以柔其犷悍横逸不驯之气，其为功岂可一二数哉！”¹⁾

对八股取士的肯定，还缘于他认为国家的典制不可轻易变革，以后纷乱。清朝立国以来，对八股取士制度有过几次争论与政策的调整，对此王先谦曾有议论和评价：

1) 王先谦，江西乡试录前序，葵园四种，长沙：岳麓书社，1986，20。

“康熙中改用论策，后弊益甚，仍复其初。乾隆时舒赫德、杨述曾等有更定文体之请，卒从廷议而罢”。“法屡更，则国是纷；教不一，则民志惑。我朝圣圣相承，凡有创垂，极之细微，无不再三精审。矧制科大典，苟有可易，岂待后来？故今日之要，务在求才，不在变法。”²⁾

所以，光绪元年(1875)，当李鸿章上书请废制艺，王先谦当时典试江西，对李的上书坚决反对，他认为：

“虽然，国朝功令以时文取士，二百数十年，名臣硕儒，骈出其中。至今日以无人无学为时文罪，则亦有未尽然者。”“且寇乱以来，勋臣半出科目，朝廷收制艺之效，而未受其弊。此其不必轻议，断可识矣！”³⁾

直至甲午战争后，民族危机趋于空前严重，进一步刺激和警醒了国人，尤其是惊破了大部分湖南士绅虚骄自大之梦，他们开始积极寻求救世济国的良策。如谭嗣同所言：“湘军与日本战，大溃于牛庄。湖南人始转侧豁悟，其虚骄不可向迩之气，亦顿馁矣。”⁴⁾大挫之后，湖南顿时卷起了一股新的风气。湖南官绅开始以教育为突破口，以教育改革为手段，实行变法。当时的湖南学政江标甫一上任，就以变革八股取士为目标。在生员的岁试中，改变命题方式，试题范围包括经学、史学、掌故、舆地、算学、词章六类，凡文体不为八股格式者大多数被录取。

在轰轰烈烈的教育改革浪潮中，八股取士首当其冲成为矛头指向，“群议变科举法”⁵⁾，抨击八股取士，不仅无法起到“正人心、正学术、正道德”的作用，反而具有“锢智慧、坏心术、滋游手”的消极作用。⁶⁾如左宗棠指出：“试看今时人才，有一从八股出身否？八股愈做得入格，人才愈见庸下。”⁷⁾戊戌时期，康有为在《请废八股试帖楷法试士改用策论析》中尖锐地指出：用八股取士，致使出现“巍科进士，翰苑清才，而竟不知司马迁、范仲淹为何代人，汉祖，唐宗为何朝

2) 王先谦, 江西乡试录前序, 葵园四种, 长沙: 岳麓书社, 1986, 20.

3) 王先谦, 江西乡试录前序, 葵园四种, 长沙: 岳麓书社, 1986, 20.

4) 谭嗣同, 浏阳兴算记, 谭嗣同全集(增订本), 中华书局, 1981, 174.

5) 王先谦, 科举论上, 葵园四种, 长沙: 岳麓书社, 1986, 5.

6) 刘海峰, 李兵, 中国科举史, 东方出版中心, 2004年, 352.

7) 左宗棠, 左文襄公家书, 上册, 12.

帝者，若问以亚非之輿地、欧美之政学，张口瞠目，不知何语矣”。⁸⁾

当此之时，王先谦也开始积极主张因时变革。他认为，随着列强的步步紧逼，时移世易，制艺取士必须要改弦更张，“道咸之际，知有海国矣，情事未灼也。同光以来，知列国所以驾吾上者，端绪可究矣，而势弗棘也”，尤其“自日本之役，国威不张，列邦劫持，财力殫竭，岌岌如不终日。”⁹⁾

他强调，在这种列国竞争的大势下，必须让读书人更多地来关注天下大势和学习列国之长：

“一统之天下之士，以制艺造之；列国之天下之士，不可以制艺造之。今之世论海内则一统，合环球为列国。然而设科校艺，壤仍前政，用时文取士，而罔识变通，殆未抉其弊也。”¹⁰⁾

客观的说，终其一生，王先谦都没有否定过科举取士这种制度，他强调的是要与时变通，改革科目的内容，引导士子研习实用之学，他认为，制艺之学，此时已经不合大势，并且积弊极深，已然沦为一种有害之学，“章句所困，而庸庸者因之束书不观，人才消耗，半由于此”¹¹⁾。所以他主张废制艺改策论。晚清时曾几度停止过制艺取士而改试策论，然策论试行不久又恢复旧制。甚至于戊戌变法失败之后，清廷恢复八股取士，王先谦对此也敢持异议，“今以乱党倡言之故，而复其旧，则亦非吾辈所敢议矣”。¹²⁾

与不赞成废科举一样，王先谦对书院改制也并不赞成。1901年，清廷颁布《改书院为学堂上谕》，按照诏令，各书院都要改为高等学堂。当时规模最大、办学条件最好的岳麓书院的改制是湖南书院改制的重点。在改制诏令颁布之初，当时的湖南巡抚俞廉三不太愿意对书院进行改制。时任岳麓书院山长的王先谦也看到“今堂既勤动，室又群居，语言纷纭，人气淆杂，不能静安，遑问其虑。近日章程愈变，小学堂不读经。诸学堂读经年限，非廿馀岁能毕。”他认为这样的法，

8) 刘海峰，李兵，中国科举史，东方出版中心，2004年，412。

9) 王先谦，科举论上，葵园四种，长沙：岳麓书社，1986，5。

10) 王先谦，科举论上，葵园四种，长沙：岳麓书社，1986，5。

11) 王先谦，科举论上，葵园四种，长沙：岳麓书社，1986，7。

12) 王先谦，科举论上，葵园四种，长沙：岳麓书社，1986，6。

“群经义理之钥不开，灵明之府皆锢，而欲中学不绝，其道末由”。¹³⁾由此可以看出，王先谦对学堂的教学并不满意，对书院改制学堂并不赞成。

1903年，热衷于教育改革的赵尔巽上任湖南巡抚以后，发布《谕岳、城、求三书院告示》，明确提出“改习科学，以储学堂之选”。随后，他不顾山长王先谦的强烈反对，强行将岳麓书院改为高等学堂，在岳麓书院改为高等学堂后，王先谦指出：“自去年改设岳麓书院为高等学堂，规制甚宏，学科完备，洵为前时所及，惟历代先贤之遗迹就此沦淹，士林惜之”，¹⁴⁾可见他对岳麓书院改学堂一事并不满意。

Ⅲ. “本末赅贯”的人才培养模式

“本”是什么？王先谦强调，在人才培养方面，品德的培养是本，知识、技艺的学习是末。王先谦尽管是生活在一个深受欧风美雨激烈冲击的近代社会，目睹和经历了晚清民初的诸多重大社会变革，但他的治学还是以传统学术为主导，甚至可以说他是传统学术的捍卫者、守护者。他对西学的认识仅止于中体西用而已。面对儒学的整体衰落、传统经学的价值逐渐受到怀疑的社会现实，他仍把经学作为解决社会问题的灵丹妙药，认为只要经学复兴，就能化成天下，回归太平，只有经学所蕴含的圣贤之道才能提升人的道德品质，唯我孔子之教行万世而无弊，他说：

敬天之理，古今所同。福善祸淫之训，上帝有赫之歌，《诗》、《书》略陈之以垂世戒。虽以子贡之智，不闻孔子言天道；夫子言敬鬼神矣，而答季路云：“未能事人，焉能事鬼？”《易》之为书，广大悉备，夫子作赞，惟返而求之于人事，岂不以垂教之事当如事耶？《舜典》敬敷五教，为中国言教之权舆。于思子作《中

13) 王先谦《学堂论上》，葵园四种，长沙：岳麓书社，1986，13。

14) 回前署湖南巡抚陆奏湘绅建立岳麓景贤堂片，北京师范大学图书馆藏，东方杂志，第二年(四)，转引李赫亚，《湖南“二王”与近代湖南书院改制》，北京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6(4)。

庸》，其言性推极于天命矣，仍不外率性为道，修道为教，而申之日可离非道，凡所以约人身心而惧其驰情于幽渺之域也。求其行万世而无弊者，唯我孔子之教也夫！¹⁵⁾

在王先谦看来，西法之精髓，仅在于所谓利用厚生之学，而这绝非兴邦之要道；兴邦之本，要在振兴儒家之经学，以伦理纲常挽回世道人心。他在为日本人青山所著《青山文钞》作序时，借机对当时的中国社会试图亦步亦趋师法西方，而弃经学于不顾的社会现象作了激烈的抨击：

井井君之言曰：“吾国利用厚生之学术，骎骎日进，而忠孝廉让之教，殆乎扫地。至议院政体与外朝询众殊其旨趣，君子愠于群小，小人则附和雷同。借公以营私，既为宪法，欲易之而无由。”夫日本之师法西国，可谓有其利矣。而井井君忧之如此，况吾国之无其利而但有其害者乎？

青山君之言曰：“伦理纲常之所原，言语文字之所资，不可一日废。吾国古帝以《论语》、《孝经》巩国本，定丕基，君严臣恭，尊卑秩然不可紊乱。晚近去忠孝而淫异教，舍身心而驰空想。操觚牍者，甚至昧名分、遗大义，识者慨焉。夫数理之学，工艺之术，世自有其人。维持将绝之学，扶植殆倾之文，愿与诸子勉之。”其言与井井君若合符节。虽吾国古圣贤之言治曷以尚之？知后有万年，普天率土无二理也。夸吾国之人吐弃经书，仇视君国。出东洋游学，不数年归，辄以其愿志诋词，傅舍新得，腾播口说，反易无明。祸中土而诬邻邦，抑何至于此极乎！安得如二君者其人为天下一挽兹厄运也？¹⁶⁾

他呼吁“勿因杂学而弃《诗》、《书》，勿竞时趋而蔑礼法”。¹⁷⁾对经学的社会作用的过分拔高，应该说充分体现出了王先谦在学术思想文化方面的保守主义倾向。

王先谦认为，养才用才皆应以德行为先，“用才之道，以实心任事为第一义。人才无论如何，尽一分心，即是一分才，若不肯尽心，虽才如渊海，不过供粉饰周旋之用”。¹⁸⁾治心、崇礼即是养德。“心治，则施于百体，措之万事 圣贤帝

15) 王先谦《重刊景教纪事碑文考正后序》，《葵园四种》，岳麓书社，1986，页112。

16) 王先谦：《青山文钞序》，《葵园四种》，岳麓书社，1986，页120。

17) 王先谦《王氏宣统三修谱序》，《葵园四种》，岳麓书社，1986，页96。

王之学一以贯之。”¹⁹⁾

“由困知勉行以及于知、仁、勇，由慎独以进于至诚无息，惟崇礼而已。”、“夫理学吕而节义兴，儒术明则浮华之士屏，斯真立国育才之要也。”“礼坏而先王之道穷矣”。“为学之方，穷经为首。”²⁰⁾

他强调，“读书亦先立品，欲为端人正士，必自言笑不苟始。与人晋接，随处检点，省却多少悔尤。清夜默数一日酬应，尚无失言失色处，便可安心稳睡，此寡过省身之要道也。”²¹⁾

当然，有本就有末。本可以历万世而不变，但末必须与时变化。只有本末兼备，才是一个健全的人才。随着时势的剧变，王先谦在他的教育实践中，非常重视让书院生员关注时务物理，洞悉列国情形，知晓新学原理等。如维新运动前，他就在倡言“自群经、国文外，历史、舆地、算学、图画，中西共者也。各国语言文字，亟宜通者也。”²²⁾他率先在岳麓书院进行改革，将岳麓书院课程分经、史、掌故、算、译五门，经、史、掌故由山长亲自督课，算学别立斋长，译学另延教习。据时人皮锡瑞在1897年9月的日记中描述：“岳麓师课已改，不用时文，课经史兼算学。此风既动，当有闻之而兴起者。”²³⁾11月的日记中又言：“岳麓书院改章后，别造房屋两间，仿西学式教算学、方言。”²⁴⁾

为了使学生关注时务，王先谦以“士子读书，期于致用。近日文人，往往拘牵贴括，罕能留意时务”为由，开谕生徒曰：“查近今上海刻有《时务报》，议论精审，体裁雅饬，并随时恭录谕旨，暨奏疏西报，尤切要者。洵足开广见闻，后发志意，为目前不可不看之书。”²⁵⁾为了让书院学生都能看到《时务报》，他订了六份《时务报》，每二斋一份，并制定要求“由管书斋长随时派人分送。每斋自第

18) 王先谦 王先谦自定年谱 葵园四种 长沙：岳麓书社 1986, 703.

19) 王祖陶 葵园述略 征文考献楼主编撰 1948, 13.

20) 王先谦 王先谦自定年谱 葵园四种 长沙：岳麓书社 1986, 732.

21) 王祖陶 葵园述略 征文考献楼主编撰 1948, 13.

22) 王先谦 学堂论下 葵园四种 长沙：岳麓书社 1986, 14.

23) 皮锡瑞 师伏堂未刊日记 湖南历史资料 1958, (4) : 68

24) 皮锡瑞 师伏堂未刊日记 湖南历史资料 1958, (5)74.

25) 陈谷嘉 邓洪波 中国书院史资料(下册) 杭州：浙江教育出版社 1998, 1993.

一号起，尽一日之力，或翻阅抄誊，或略观大意”。²⁶⁾

为使学生洞悉列国情形，在清末新政时期，他甚至还编纂了外国史地著作，如《五洲地理志略》、《日本源流考》等。

王先谦还主张设立工艺学堂，学习近代西方先进的制造业，“欲振兴工艺，莫急于先设工艺学堂”²⁷⁾。

IV. 实事求是和兼容并蓄的治学态度

王先谦在治学和书院的教学中，提倡实事求是，反对空谈。他推崇汉学，认为“乾隆以后，学者务于经藉传注，考订发挥，其实事求是，使古籍暗而复明，微言绝而复续，有裨学术甚巨，如江河之不废也。”²⁸⁾

王先谦治经一以乾嘉汉学为宗，重考据而轻义理，擅长文字、训诂、辑佚、校勘、集释、考据等各种方法。当前学术界对王先谦的治学风格评价颇高，认为王先谦的汉学已不同于传统的乾嘉汉学，具有调和汉宋的倾向。这一观点极为可疑。事实上，晚清的学术界，乾嘉汉学已走向衰落，而宋学倒似乎有回光返照之势，再加上以专求所谓“微言大义”为宗旨的今文经学大行其道，更加速了以考据为核心的汉学的没落。当此之时，王先谦试图重新树起汉学的大旗，为考据学辩护：

今之士习日非矣，然所谓奔走津要、荡无廉耻者，岂考据之学导之耶？彼身居津要，能通考据之学者谁邪？又孰肯持一卷汉学书以奔走达官贵人之门也？果有之，仆与足下当心识其人，今茫乎未有闻也。谓考据家以名相高，似矣；谓其以利相诱，则何利之有！谓今天下皆游手浮宕之民，彼为考据者，终日钻研，目眇发秃，以求没世可称之名，岂游手浮宕所能为功？此不待辨也。²⁹⁾

26) 陈谷嘉、邓洪波，《中国书院史资料(下册)》，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8，199 4。

27) 王先谦，《与俞中丞》，《葵园四种》，长沙：岳麓书社，1986，894。

28) 王先谦，《复陶季蓉书》，《葵园四种》，长沙：岳麓书社，1986，295。

29) 王先谦：《复陶季蓉书》，《葵园四种》，岳麓书社，1986，296。

他强调汉学与宋学一样，各有自身存在的价值，应该去除汉、宋之名，不作无谓的纷争，学者各随其材质好尚，宗宋宗汉，都能有所成就：

去汉学之名而实之曰考据学，则足下无所容其恶矣。去宋学之名，而实之曰义理之学，则訾诋理学者无所吝其毁矣。³⁰⁾

道成以降，两家渐平，界域渐泯，为学者各随其材质好尚，定趋向以蕲于成而已，本无所用其辨争。³¹⁾

他强调，学问之道在于求实，无论宋学、汉学，甚或西学，能务其实，皆为有用之学。他反对务虚名，蹈空疏，他说：“中国学人大病，在一空字。理学兴，则舍程、朱而趋陆、王，以程、朱务实也。汉学兴，则贬汉而尊宋，以汉学苦人也。新学兴，又斥西而守中，以西学尤繁重也。至如究心新学，能入所难，宜无病矣。”“日本维新，从制造入；中国求新，从议论入。所务在名，所图在利，言满天下，而无实以继之，则亦仍然一空，终古罔济而已。”³²⁾如此“标榜之习锢于中，虚骄之气张于外”，则“学问经济将无一而可。”³³⁾针对此种弊风，他主张书院教学应持一种严谨的态度，反对空谈。

诸如此类的说法，这是他作为一个汉学家在汉学式微的大势下被迫自卫。时移世易，他已经不可能如乾嘉时期学者那样于宋学深闭而固拒之了，至少在言语方面是不合时宜的了。但在治学方面，他宗汉学是毫不动摇的，如他刊刻《续皇清经解》，一律不取宋学著述，并以文派不同为托辞：

仆在江南，续刊《经解》，有谓不当如阮文选不收李文贞、方望溪辈著述以为排斥宋学者，仆晓之日：子误矣，经学之分义理、考据，犹文之有骈、散体也。文以明道，何异乎骈、散？然自两体既分，各有其独胜之处。若选文而必合为一，未可谓知文派也。³⁴⁾

而《尚书孔传参正》、《诗三家义集疏》于偏重宋学的著述一概不取，甚至对于

30) 王先谦：《复阎季蓉书》，《葵园四种》，岳麓书社 1986，296。

31) 王先谦《复阎季蓉书》，《葵园四种》，岳麓书社 1986，297。

32) 王先谦 复毕永年 葵园四种 长沙：岳麓书社 1986，862—863。

33) 王先谦 复某君 葵园四种 长沙：岳麓书社 1986，849。

34) 王先谦：《复阎季蓉书》，《葵园四种》，岳麓书社 1986，296。

那些偏重义理阐发的今文经学著述也弃而不取。惟取清代汉学有关《诗》、《书》的考据、辑佚成果，典型地体现了王先谦治学门径一以考据为宗。虽然，《诗三家义集疏》在《序例》中曾借魏源之口攻毛而申三家，但王先谦并非全面认同魏源的《诗》说，如对魏源否认《诗》有“美刺”之说就不以为然，而这恰是魏源今文《诗》说的义理精髓。故《诗三家义集疏》正文中所征引的文献，乃不见龚自珍、魏源等今文义理之学的丝毫痕迹。客观地说，只有综述汉、宋，兼顾考据和义理，才是真正全面地对清代《尚书》、《诗经》学的总结，尽管清代经学的主流是汉学，但宋学中也有颇具学术价值之作，弃而不取，不免有遗珠之憾。当然，这也与他所倡导的实事求是的治学风格有一定的出入。

王先谦的治经，有偏向今文的倾向，尤其是成书于晚年的《诗三家义集疏》，过分地抑毛而申三家，已经难免于门户之见。但大体还能不徒逞意气，实事求是。他的《尚书孔传参正》以今文为主，但兼疏今、古文，认同今文义说为多，但于古文义说也能择善而从；他辨《尚书孔传》之伪，但于伪书传并不是一概否定，于其谬误驳正之，于其义说之得当者则肯定之。古今兼包，真伪并存，这是《参正》一书的一个重要特点。而《诗三家义集疏》不仅汇辑今文三家《诗》的研究成果，也能善于借鉴和吸收清代古文家的《诗》学成果，他在《序例》中也明言“近世治《传》、《笺》之学者，亦加择取，期于破除墨守，畅通经旨”³⁵⁾。这确实体现出了他实事求是的治学方法。

从这个意义上说，王先谦绝不是一个旗帜鲜明的今文或古文学家，所以意气风发的今文或古文学家们都多少会对他产生一种难以认同感，钱基博等学者会有王益吾先生自名“无独到”、不能开风气以家的评价。这种观点当然失之偏颇。那么如何来看待王先谦经学的特点呢？周予同先生曾有一段话颇能予人启迪：

当时对今文学的复兴，还有一支有力的援军，那便是辑佚之风很盛。关于西汉今文博士的遗说，考辑颇备，如冯登府的《三家诗异文疏证》、连鹤寿的《齐诗翼氏学》、陈寿祺的《三家诗遗说考》和其子陈乔枏的《今文尚书经说考》、《尚书

35) 王先谦：《诗三家义集疏序例》，中华书局，1987，页1。

欧阳夏侯遗说考》、《诗经四家异文考》、《齐诗翼氏学疏证》等书，都给予今文学者以有力的援助。不过这些学者仅仅考证今古文学的不同，并非力主今文而排古文，所以我们不能称他们是今文学者。³⁶⁾或许王先谦正是承继了这一脉学者的共同特点，不固执于门户之见，正是他实事求是、兼容并蓄的治学风格的体现。

V. 余论

中国的书院改制已过去了一百余年了，但今天的中国又再次正在进行着大的教育改革。研究和整理王先谦的书院教育理念和实践活动，应该说不会仅仅只具有纯粹的学术上的意义，还应该有更深远的现实意义。教育的改革，无论如何不能丢失了教育的本质，脱离教育的规律，否则是不会成功的。在近代剧烈的社会变革面前，王先谦提出和坚守着他的与时俱进、本末兼赅、实事求是、兼容并蓄等教育理念，并执着地实践于书院教育中，可以说他把握了教育的本质和规律，所以他在当时的教育活动是成功的。当然，他提出的唯我孔子之教行万世而无弊，认同中体西用，这无疑体现出了他保守的一面。他是近代士大夫中既开明又保守这一群体中的典型一员，在面临社会变革时，既不会有激进之举，但也不会顽固不化。而当前的教育改革，既不能激进而为之，也决不能一成不变，或许王先谦这种保守而求变的教育理念，能提供我们更多的启迪和有益的思考。

36) 朱维铮编：《周子同经学史论著选集》，上海古籍出版社，1983，页20 -21.

The academies education theory of WangXianQian and his practice

Gong, Kangyun

WangXianQian who witnessed and experienced many major social changes in Late Qing Dynasty and early Republic eras.

As a epitomizes person of historic change ears in China his thought behaviour and observation is complicated, meanwhile as a typical figure it worth to research. His insights and contributions in the field of education is the most effectives and with characteristics.

His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and it was form his lectured at the academia and implemented it embodies Chinese modern education difficult process of reform and development. During dramatic social changes Wang proposed his education theory about time-varying; balance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seek truth from facts; inclusiveness etc. He persists in practicing in education, it can be said that he grasped the nature and laws of education and it was means he successful in educational activities at that time. That without a doubt his Confucianism spreads forever and recognize the theory Making Western Things Serve for China is a conservative behavior. He is a typical member of the group of liberal and conservative scholars that both enlightened and conservative. Perhaps Wang's education theory can provide more inspiration and useful thinking for the current education reform in China.

Keywords : WangXianQian, WangXianQian academies education,
WangXianQian education concept, Chinese education reform

이 논문은 2018년 6월 3일 투고 완료.

2018년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완료.

2018년 6월 25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서 게재 결정.

고대서원교육의 화합철학 가치차원에 관한 토론

진역상(陈力祥)*

-
- I. 序言
 - II. 书院学规的设立与隱形的和合价值
 - III. 书院乐教与和合价值的彰显
 - IV. 书院章程的德性宗旨彰显其和谐价值
 - V. 结语
-

[국문요약]

학계에 전통서원연구가 여러 측면, 다각도로 진행해 왔지만 서원교육에 숨겨져 있는 화합(和合)철학 가치에 대한 탐구는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서원 학규를 설정하는 것은 윤리의 규범화로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인간의 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서원 악교(樂教)제도의 확립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도덕을 함양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그리고 서원장정(章程)의 설립은 위에서 서원 산장부터 아래로 서원 생도까지 모두 수신을 본으로 삼는다는 취지를 나타내 있다. 이처럼 고대서원의 장정(章程)이나 학규, 악교(樂教)제도 등 교육제도의 설립은 모두 수신을 기본 취지로 삼아 덕을 두터이 닦고 예를 숭상하며 그 근저에 숨어져 있는 화합의 철학가치를 드러낸다.

핵심어 : 서원교육, 화합, 학규, 樂教, 서원장정

* 湖南大学岳麓书院教授, 哲学博士(后), 主要从事中国古代哲学与传统文化研究.
[联系方式]湖南省长沙市麓山南路湖南大学岳麓书院 邮编: 410082
电话: 13212632886 email: 13212632886@163.com

学术界虽然对传统书院进行了多层次、多角度的研究，但却忽略了书院教育隐形的和谐哲学价值的探讨。书院学规之设立，以规范伦理的方式规约人之行为，目标在于增进人之德性；书院乐教制度的形成，对净化之入之心灵、养人之德，功不可没；书院章程的设立，更是上自书院山长以至书院诸生，皆以修身为本。古代书院教育制度，从章程、学规以及乐教制的形成，皆以修身为本，厚德隆礼，彰显的是其背后隐形的和合哲学价值。

I. 序言

肇始于唐代的书院，系中国教育转型之产物，亦是中国教育史上一大里程碑。学术界对古代书院的研究可谓多矣、盛矣。综观当代书院研究之现状，有整体上研究书院的，有研究书院学规的，有研究书院个案的，有研究书院政策的，有研究书院教育的，有研究书院学规的，有研究书院教学的，有研究书院与科举关系的，不一而足。学术界关于书院研究已矣涉到方方面面，但关于书院教育深层次的和合哲学价值的研究阙如。书院对诸生教育的隐形价值研究的阙如，为深入研究书院提供了契机。首先是书院学规的设立，有利于实现人与人、人与社会之间关系的和谐；其次，书院乐教的执行，也有利于入之心灵的和谐与宁静，有利于更好地提升入之德性，和合价值得以彰显。书院章程的设立，使书院教育上自山长，下至书院诸生，皆以修身为先。学规、乐教以及书院章程的设立，皆以提升入之德性为能事，彰显的是其背后隐形的和合哲学价值。

II. 书院学规的设立与隐形的和合价值

书院以教育学生、以培养诸生德性为能事。书院为培养学生、教育学生制定了学规。书院学规的制定与推行，有利于规约人与人之间、人与社会之间

的关系。

书院学规，彰显出书院培养、教育学生的任务与目标。书院学规彰显出为学之旨，为学之要。书院学规往往语言精炼，言简意赅。岳麓书院邓洪波教授对学规的概括与总结，经典地总结了学规的基本特点。他说：“古人所为规者，皆圣贤教人为学之大端，语简而赅，盖以正本清源。”¹⁾邓先生对书院学规基本特色之总结，彰显出学规应言简意赅，应以教人育人为核心主旨与目标。书院学规的规定，为人之增进德性、提升人之敬仰之情、礼仪之方提供了前提与基础。当然，书院学规如何落实与践行，与我们日常人伦生活息息相关。“每月朔望礼拜先圣，依班就位，各敬尔仪，退适讲堂，恭听先生训诲”²⁾，定期举行仪式，以神道设教之模式，凸显出学规的权威性，增进书院学生对学规的敬畏与信仰，此乃书院学规得以践行的本质性要素。

进入书院学习，接受书院学规之熏陶，让书院诸生修身善道，明礼知耻：“学者修身善道，首在明义利之分，审是非之界，立志不欺，行己有耻。”³⁾书院学规的制定，目标在于使诸生安身立命、安命达德。尤其是当义利发生矛盾与冲突的时候，通过学规，唤醒诸生心中之道德律，从而能有效地遏制人与人、人与社会之间的矛盾与冲突。马克思说：“人们奋斗所争取的一切，都同他们的利益有关”。⁴⁾利益是人类痛苦的根源，亦是人类冲动之根底。学规的制定，有利于诸生正确审视利益与欲望之间的关系，使人见利思义，继而实现人与人之间关系的和谐、人与社会之间关系的和谐。书院学规的设立，对书院学生有所要求。即“入院诸生，先行后文，务须检点身心，激发志气，砥砺品节，率循礼法”⁵⁾。书院学生，一旦进入书院学习，即有一套完整的学规规范着他们的行为，并影响着诸生之精气神、影响着诸生之志气、品格，使诸生心存道德、心怀敬意，进而遵德守礼。如此，由学规之规约，使学生由草莽而细腻，由粗俗而温文，由低

1) 邓洪波：《中国书院学规》，湖南大学出版社，2000，第149页。

2) 邓洪波：《中国书院学规》，湖南大学出版社，2000，第126页。

3) 邓洪波：《中国书院学规》，湖南大学出版社，2000，第80页。

4) 《马克思恩格斯全集》第一卷，人民出版社，1956，第82页。

5) 邓洪波：《中国书院学规》，湖南大学出版社，2000，第198页。

俗而高雅，由“半人时代”而逐渐实现向完人、全人的蜕变。

书院学规之隐形的和合哲学价值内在的逻辑理路为：学规→敬→礼→和。书院学生何以因学规而致敬，又如何由致敬而达礼，由礼而达和何以成为可能？因为因学规规约而有“敬”，因“敬”而有礼，因礼而有和。按图索骥，依上文之逻辑理路，可以清晰地发掘出书院学规教育隐形的和合哲学价值。首先在于学规对人之德性修养的影响。如前，书院学规的制定与执行，就是以提升人之德性为基本前提，以提升人之德性为能事。由德性而使人内在地敬。

在学规的熏染之下，使书院学生实现内敬外礼。内敬，则能外行礼；有礼，进而实现人世间的和谐。书院教学，能有效实现由学规而敬、而礼；如此，则能较好地实现人之内心世界的和谐，诸生与外在世界的和谐：因为有“敬”，故而书院学生内心世界和谐；因为有礼，则能较好地实现人与人之间关系的和谐。可见，“敬”乃人之内心世界和谐，人与人之间关系和谐的催化剂。人世间的“和”因学规而立，由学规而始，由学规而有敬，因敬而有礼，有礼而有和。

“敬”乃人之内心世界中有定力的道德情感与道德情操，她来自于内心世界对外界事物之定力与操持，彰显出道德主体之道德信仰之定力。在中国哲学史上，历代大儒均关注持“敬”的问题，并对其多有阐释。程子曰：“虑，则自然生敬，敬只是主一也。主一，则既不之东，又不之西，如是则只谓中。……敬以直内，涵养此意，直内是本。”⁶⁾在理学家看来，“‘敬’是自我体验、自我操持的涵养方法”⁷⁾。程子之敬，关注敬之专一与定力性的一面。朱熹全面承继与发展了二程关于敬乃修身的基本方法的观点。蒙培元先生认为，“经过朱熹的阐释，敬变成了全面的修养方法”，“敬之所以如此重要，在于它是提高道德实践的自主性、自觉性，进行自我改造的基本方法。”⁸⁾船山对“敬”注重的是原初意义，认为“敬”即为“敬重”之意。船山曰：“‘敬’，信而重之也。”⁹⁾“敬”乃敬而重之之意，且这种“敬重”是建立在对礼的信仰的基础之上的一种稳定情感。

6) 程颢、程颐：《二程集》，中华书局，2004，第149页。

7) 蒙培元：《理学范畴系统》，人民出版社，1989，第405页。

8) 蒙培元：《理学范畴系统》，人民出版社，1989，第406—407页。

9) 王夫之：《船山全书》(第四册)，岳麓书社，1988，第872页。

书院学规对学生行为的规约,实质上将学生引之于信而重之的一种道德执着,本质上是培养学生敬的道德情感。“因为敬者, 圣学所以成始而成终也。……盖敬为一身之主, 宰万事之根本也。故为学以居敬为基, 犹作室以辟地为基业也。”¹⁰⁾书院学规,以“敬”为始,因“敬”而有人之内心世界的和谐,因“敬”而有礼,因礼而有人与人、人与社会之间关系的和谐。因此,书院设立学规,内在地要求学生整齐严肃,内心存敬,因敬而礼,因礼而和。因为“敬者,亦止是整齐严肃,收其放心,使起居语默以及酬酢应事不失此主。”¹¹⁾由此逻辑,顿悟出因学规而敬,因敬而礼的内在的逻辑线索与逻辑方法。因为敬者礼之所以立也。¹²⁾因为持敬,故此有礼,因为由礼,故而有和。发掘书院学规与社会和谐的内在逻辑机理,如何实现由敬而礼的渡越,这是由书院学规向社会和谐渡越的前提与基础。在宋明理学家看来,礼与敬不可分离。“敬”乃礼之前提与基础:由敬生礼,在内为敬,在外则表现为礼;故此,礼与敬实际上可以表述为人为之德性的两面,内心世界表现为敬,外部世界则表现为一种行为规则——礼。“敬”与“礼”可以说是一体两面:“一体”指人为之德性,“两面”内心世界之“敬”与外在世界之“礼”。¹³⁾敬与礼之间,因“敬”生礼,由礼显敬,内敬则外必礼。明末清初的大思想家王船山说:“敬者礼之所以立也,和者乐之所由生也。”¹⁴⁾船山此言导出了礼之本。“夫敬者礼之本”¹⁵⁾“敬”乃礼所产生的直接原因,“敬”乃礼之本。如若将人比做一颗大树:那么“敬”为树根,为本;礼为树干、树枝及树叶。“敬”为礼之本,敬如树干、树枝、树叶得以茁壮成长为根。树干、树叶、树枝等如“礼”在外部世界的具体表现。本不存,末将何在?敬不存,则礼焉将何在?敬乃礼之本,非敬将无以成礼。“且使从本体而言之,则礼固以敬为本,而非以

10) 邓洪波:《中国书院学规》,湖南大学出版社,2000,第122页。

11) 邓洪波:《中国书院学规》,湖南大学出版社,2000,第135页。

12) 陈力祥:《王船山礼宜乐和的和谐社会理想——以礼之调适为中心》,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4,第67页。

13) 陈力祥:《王船山礼宜乐和的和谐社会理想——以礼之调适为中心》,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4,第132页。

14) (明)王夫之:《船山全书》(第七册),岳麓书社,1990,第267页。

15) (明)王夫之:《船山全书》(第七册),岳麓书社,1990,第686页。

和。”¹⁶⁾先有敬，然后有礼，进而有和，敬是礼之本，礼乃和之前提，和乃敬之最终结果，由敬达和。显然，书院学规的存在，实现了学规→敬→礼→和之目标，由学规可以致敬，由敬亦可致礼，由礼可致和。

书院教育学生，以学规规约学生行为。表面看来，这种学规而使学生能安身立命、安命达德，这是学规的内化作用使然也；学规规约的外在化表现形式为：因学规而使学生之行为合乎正道，使人之行为合乎规范，也即使人之行为合乎礼。因学规而使人之行为合乎礼，而由礼则能致和，进而实现和合之道。由学规而致礼，由礼致和的内在逻辑关系如何呢？由学规而制礼，由制礼而利和。礼以“敬”为本则心安而身泰，由敬达礼、礼行敬之道以利和。换言之，内敬则外必和。以礼立身则动有矩度以立和：动有矩度者即为礼，礼能使人束躬而不失其度以立和，无动非礼则和谐之道尽。因学规而有礼，有礼则能更好地实现人之行为在礼之规约之下，“非礼勿视，非礼勿听，非礼勿言，非礼勿动”（《论语·颜渊》）做到“四勿”，则能实现“以礼约之，则莫之禁而自禁矣”¹⁷⁾，进而实现人与人之间关系的和谐。如此则能更好地调整好人与人、人与社会之间的矛盾与冲突，和谐可致。可见，书院学规的价值旨归在于和。不仅仅由学规而实现人之内心世界之和，同时也是人与人之间关系之和、人与社会之间关系之和。故此，就书院学规而言，更为深层次的、隐形的价值在和。清代书院山长李文炤说：“至若礼之节文，身心之所由闲也。乐之声容，气质之所由化也……夙兴夜寐为民之章，则扫洒必以齐恒。中规中矩，非僻无自入，则进退必以其节……洒扫应对进退亦应几之当务”¹⁸⁾。由学规可清晰地推导出书院学规隐形的和合哲学价值。

16) 王夫之：《船山全书》（第六册），岳麓书社，1991，第593页。

17) 王夫之：《船山全书》（第四册），岳麓书社，1991，第878页。

18) (清)李文炤：《李文炤集》，岳麓书社，2012，第68页。

Ⅲ. 书院乐教与和合价值的彰显

书院学规具有隐形的和合哲学价值。不仅如此，书院乐教的存在同样彰显出隐形的和合哲学价值。传统书院有音乐欣赏与音乐教化之课程，也即我们素称的乐教。书院乐教期间意蕴着隐形的和合价值。书院乐教的产生，有其特定的历史背景。乐教的本质性存在在于其成德之功，而成德可致和。故此，书院乐教隐形的价值亦在于和合。传统书院教学，以教育诸生如何成德为其核心宗旨。乐教是教育学生如何成德不可或缺的一个层面，成德又为传统书院隐形的和合价值基础提供了前提与基础。

传统书院教育，以明德为基本宗旨，与《大学》宗旨基本类同。习德之余，书院诸生往往齐聚一堂，以古琴为典型的伴奏乐器，琴棋书画，喝酒助兴，以欣赏音乐，怡其性情为能事，此乃书院乐教之开始。如下则是描绘了乐教之境况：“流泉泻曲蹬，抱膝横鸣琴。琮琤寒玉响，山水生妙音。闲花落磐石，时偕同调客，纵步相兴吟。清虚日以来，悠然太古心。”¹⁹⁾古代书院，往往建设在风景秀美，淙淙山泉之地。此情此地，学习之余，音乐伴之，也不免是一大乐事。因为“水清时，频游水国；如到蓬壶深处，合号壶公。则有儒雅之林，风流之侣；蜡屐江皋，携琴岛屿。望野草兮无边，隔红尘兮几许”²⁰⁾。此情以音乐追忆，也不免是一大幸事、乐事。在书院学习之余，因乐而怡情山水，忘却功利，忘却纷扰，又何尝不是一大幸事、乐事。“顾谓二三子，取瑟为我谐。我弹尔为歌，尔舞我与我偕。吾道有至乐，富贵真浮埃。”²¹⁾书院乐教，是学子们习德之后的音乐教化，使诸生在学习之余身心都得到了放松，获得了身心愉悦，依此情境，则能实现人之身心和谐。

19) (明)吴道行, (清)赵宁等修纂; 邓洪波, 杨代春等校点, 《岳麓书院志》, 岳麓书社 2012, 第322页。

20) (明)吴道行, (清)赵宁等修纂; 邓洪波, 杨代春等校点, 《岳麓书院志》, 岳麓书社 2012, 第613页。

21) (明)吴道行, (清)赵宁等修纂; 邓洪波, 杨代春等校点, 《岳麓书院志》, 岳麓书社 2012, 第303页。

怡情音乐, 给人以伦理道德的开后, 彰显的是人之德, 因为闻乐知德是也, 正如“子贡又有闻乐知德之说”²²⁾。书院之乐教, 也即音乐教化, 与人之道德情感、道德情操息息相关, 因为音乐可以怡情。《礼记·乐记》曰: “礼乐之说, 管乎人情矣。”²³⁾可见, 书院乐教, 表面看来是欣赏音乐、实质上是以乐怡情、以乐抑情。既然这样, 那么书院乐教何以怡情以成人之德呢? 其内在原因在于乐可养人之情。“乐有五声十二律, 更唱迭和, 以为歌舞八音之节。可以养人之性情, 而荡涤其邪秽, 消融其渣滓”²⁴⁾。即是说, 乐以怡情、移情、抑情, 使人能以合适的方式提升其道德修养, 择善固执。张轼说: “乐节礼乐, 则足以养中和之德, 乐道人之善, 则足以扩公恕之心。”²⁵⁾乐教的背后, 实质上彰显的是人之道德品质, 由乐可知人之德。在人之道德理性方面, 乐与人之情、人之德均存在着内在的关联, 此乃乐之作用使然也。故此, 我们更多关注的是乐与情之间的关系, 关注乐与人之德的关系。而在人之德与人之情的关系层面, 因乐以显德, 乐以成德。“所幸者丙美之渊微, 被诸管絃而罔, 不舉其人相肖, 则凡古人之行道而有得也, 可於声音中仿佛遇之矣……概舉古人之德, 又於闻乐知之矣。蓋既不能親炙其德, 则德必有藉而知也, 此智足知圣之。”²⁶⁾可见, 古代书院的音乐教化, 闻其乐则知其德, 此乃乐之理使然也。由乐抑昭德, 由德以致和。“智如子贡闻之, 不即知之哉, 且王者作乐以昭德, 一时播诸歌谣傳之, 絃管者皆古人精神所寄焉……乐以彰德, 闻之即知之焉。夫乐不易作, 惟德當之; 德不易窥, 惟乐顯之。”²⁷⁾因乐以显德, 因德以彰和, 此乃书院和合哲学价值彰显的内在逻辑。“所以至于义精仁熟, 而自和顺于道德者, 必于此而得之, 学之成也”²⁸⁾。

综上, 传统书院之乐教, 其目的在于彰显人之德。朱熹曰: “乐有五声十二

22) (清)周玉麒《岳麓书院课艺》[M], 长沙: 岳麓书院清同治十一年。

23) 汉语大辞典编委会: 《汉语大词典简编》, 汉语大词典出版社, 1998, 第2751页。

24) (宋)朱熹: 《四书章句集注》[M], 北京: 中华书局, 1982, 第104页。

25) (宋)张轼: 《张轼全集·论语解》, 长春: 长春出版社, 1999, 第210页。

26) (清)周玉麒《岳麓书院课艺》, 长沙: 岳麓书院清同治十一年。

27) (清)周玉麒《岳麓书院课艺》, 长沙: 岳麓书院清同治十一年。

28) (宋)朱熹: 《四书章句集注》, 中华书局, 1982, 第104页。

律, 更唱迭和, 以为歌舞八音之节。可以养人之性情, 而荡涤其邪秽, 消融其渣滓。所以至于义精仁熟, 而自和顺于道德者, 必于此而得之, 学之成也。”²⁹⁾ 书院之乐教, 与书院之学规一样, 均以提升人之德性为能事, 这正好合乎中国古代大学教育之目的, 以明明德为逻辑起点, 以平治天下之目标。因乐以治情, 怡情、抑情以致和。中国古代书院教育以儒家经典乐学为主要教学内容, 以致力于发展儒家之经典。孔子曰: “兴于诗、立于礼、成于乐”, 人之道德理想、道德境界的实现, 因乐而彰显。立于礼是成于乐的逻辑前提, 立于礼, 此乃成德之后的象征, 此乃书院隐形的价值——和合。因为礼能有效地实现差异和谐, 也即礼以别异同。“礼所以治身心, 肃容止, 别嫌疑, 辨严威, 自邦国朝庙, 以至家庭乡党交游之间。”³⁰⁾ 易言之, 由乐教, 则考辨其德性; 由德性则能知礼, 由礼则能实现身心和谐, 使人之言、行、动、止等有其度, 进而实现的是人与人、人与社会之间关系的和谐。

故此, 书院乐教, 核心主旨是“和”。由乐则能实心人之内心世界之和, 人与人之间的关系之和, 以及最终的政通人和, 进而实现礼宜乐和的和谐社会。可以说, 传统书院教育, 无论是学规、抑或是乐教, 均已增长德性为能事, 但其本质价值在于“和”。而且这种乐教的模式在传统社会是不断得以推扩, 进而实现乐教之和合价值。“夫然后以通乐饰之, 乡有《南》, 朝有《雅》, 郊庙有《颂》, 至于《乐记》, 则声容德政, 发挥无遗。而乐之为教, 可得而推矣”因此, 以乐教为中心, 以成德为能事, 最终实现的是人之道德理想, 继而发挥其隐形的和合价值。

29) (宋)朱熹:《四书章句集注》, 中华书局, 1982, 第104页。

30) 邓洪波:《中国书院学规》, 长沙:湖南大学出版社, 2000, 第151页。

朱汉民:《千年讲坛:岳麓书院历代大师讲学录》, 湖南大学出版社, 2003, 第232页。

IV. 书院章程的德性宗旨彰显其和谐价值

传统书院订立学规，以乐教为中心，彰显的是书院人才培养的基本价值，背后隐藏的却是和合哲学价值。唐以降，传统书院一直延续着古代社会教育的基本模式——以道德教育为核心，凸显出传统书院之教育模式与教育理念。书院这种以伦理道德为核心的教育模式，以增进人之德性为基本前提，而人之德性的增长与人类社会的和谐息息相关。故此，研究中国古代社会的书院思想，德性的增长与人类社会之和谐有着内在的、必然的、稳定的联系。故此，传统书院无论是从学规层面，抑或是从乐教层面，皆以增长德性为能事，以增进人之德性为基本的价值向度，以实现和合为价值旨归。

唐以降，传统书院一直承担着学校的基本职责，即以传道、授业、解惑为基本价值倾向。人之明德与止于至善，修齐治平的最终实现，书院教育功不可没。“立人达人，全在讲学；移风易俗，全在讲学；拨乱反正，全在讲学；旋乾转坤，全在讲学。”³¹⁾传统书院教育，更多的是一种伦常道德教育，以挽救自唐以来的道德危机。“宋学的兴起，是由于安史之乱与五代的大乱，伦常败坏。宋学的目的是整顿伦常道德。”³²⁾唐以降，纲常伦理败坏，社会矛盾与冲突处处存在，书院以道德培育为基本教学之目标，其背后的隐形价值在于社会的和谐，也即彰显了社会的稳定与和谐。书院办学，一开始就确立了其办学的宗旨与目标。邓洪波先生说：“一是确立办学、讲会之宗旨，宣示书院教育的方针，为诸生树立鹤的，为同仁确立目标，意期立志高远，养成正确的人生理想。二是规定进德立品、修身养性的程序和方法，既多理性之分析与规劝，更重日用伦常规范的建立。三是指示读书、治学的口径和方法，多为山长半生攀登书山、畅游学海经验的总结。”³³⁾可见，书院的基本价值倾向在于增进人之德性为能事，书院的价值功用一直孕育着和合之因子。

31) 李颙：《二曲集》卷十二，《匡时要务》，转引自侯外庐《中国思想通史》第五卷，人民出版社，1956，第300页。

32) 范文澜：《经学演讲录》，《新华月报》文摘版1979年第6期。

33) 朱汉民，邓洪波：《岳麓书院史》，长沙：湖南教育出版社，2013，第394页。

社会的稳定与和谐,书院承担着隐形的社会责任,即以增进人之德性为能事,进而实现社会的和谐。书院教育,也是以增长德性为基本前提。传统书院对道德教育的重视非同一般:上至书院山长,下至书院诸生,均以增进德性为学习宗旨与目标。书院山长,作为诸生学业负责人的山长之德性,在书院之章程就有所规定:如清溪象山书院章程规定:“院长有表率诸生之责,必慎求品端学裕之人。”³⁴⁾作为书院山长,必然是道德学问之象征、道德人格之表率。自山长以至于学生,皆以修身养德为本。在书院山长的影响之下,书院诸生也必然以增进德性为能事:“诸生读圣贤书,当知进德修业,取法古人。如有性情乖戾,习尚浮华,甚至好理外务,干预词讼者,由院长随事戒飭。若犹有不改,则是无可造就,即予立时罢出,毋许逗留。”³⁵⁾可见,在书院,自山长以至于诸生,皆以修身为本。而且书院的修身教育,自幼就开始接受教育,讲求进德之先后秩序。岳麓书院朱张会讲之大师朱熹就主张进德秩序,他说:“今使幼学之士,必先有以自尽乎洒扫应对进退之间,礼乐射御书数之习,俟其既长,而后进乎明德、新民,以止于至善”³⁶⁾。作为岳麓书院的另一山长,也主张为学有方,求德有序,惟其如此,才能不断地增进德性,提升人之道德修养与道德境界。张栻说:“而为之则有其序,教之则有其方。故必先使之从事于小学,习乎六艺之节,讲乎为弟为子之职,而躬乎洒扫应对进退之事,周旋乎俎豆羽龠之间,优游乎弦歌诵读之际。”³⁷⁾张栻认为:兴办教育须遵循章法,如此方能实现教育的基本模式。朱熹、张栻作为书院之山长,他们主张书院教育以增进人之德性为基本价值向度。书院教育,无论是从其学规,还是从乐教之模式,均体现了书院以德性教育的基本教育模式。当然,书院的章程也同样体现了此种模式。如岳麓书院的章程中,就体现了传统书院的教学模式与教育方式。书院山长历来均是以提升德性为能事,并以《训廉吟》、《训诚吟》告诫自己。岳麓书院之《训廉吟》:“清白由来世所欲,莫将阿堵坏良心。古人见利能思义,留得芳名直到

34) 邓洪波:《中国书院章程》,长沙:湖南大学出版社,2000,第141页。

35) 邓洪波:《中国书院章程》,长沙:湖南大学出版社,2000,第143页。

36) 朱汉民、江堤:《千年讲坛——岳麓书院历代大师讲学录》,湖南大学出版社,2003,第18页。

37) (南宋)张栻撰《张栻集》,长沙:岳麓书社,2010,第562页。

今”³⁸⁾岳麓书院之《训诫吟》：“爱国忠君仗至诚，休将一念坏平生。勿欺请绎宣尼训，留取丹心答圣明”³⁹⁾山长掌管书院之时，书院都设定了自己的章程，以章程规约自己的行为，以外在规范为其基本形式，以增进人之德性、增长人之道德素养为基本价值倾向，以切实实现人之道德素养与道德目标，进而实现人与人、人与社会之间的和谐与稳定。可见，古代书院，上自山长，下至诸生，均以提升人之德性为要事。因此，书院教学，即是德性教学，以德性教育为能事。范仲淹说：“夫善国者，莫先育才；育才之方，莫先劝学。”⁴⁰⁾书院教学，其核心宗旨也在育才，育有德之才。只有有德之人，才能更好地实现社会的和谐。

书院教育，对人之道德培育非常重要。此外，儒家文化讲求修齐治平，内圣外王、推己及人、治国平天下。因此，书院之教学，实质上仍然是以平治天下为基本目标。“书院师生都非常强调学习儒家的修齐治平之道，如果与科举对立，那么学问再大，在当时也只能独善其身而无法兼济天下，至多达到齐家这一步，基本上无法达到治国、平天下之境界。要使学有所用，兼济天下，唯有应举入仕。”⁴¹⁾可见，书院以实现人之道德理想与道德境界为基本前提，最终价值旨归为平治天下，也即最终彰显出和合的基本价值。书院教育，自山长以至于诸生，皆以接受德性教育为本，并以实现德性教育为能事。唐以降，随着书院数量的逐渐增加，如是，接受书院教育之人越来越多。接受书院教育之诸生，因教化而实现其美德，因教化而择善固执，因教化而化民成俗。书院“凡以教化不立而万民不正也。夫万民之从利也，如水之走下，不以教化堤防之，不能止也。古之王者明于此，故南面而治天下，莫不以教化为大务。立太学以教于国，设庠序以化于邑，渐民以仁，摩民以谊，节民以礼，故其刑罚甚轻而禁不犯者，教化行而习俗美也”⁴²⁾。随着书院影响的不断扩大，其修齐治平之作用日渐凸显，书院隐形的和合价值得以彰显。从本质上说，传统书院的设立，为古代帝王之治开

38) (明)张元忭撰；钱明编校《张元忭集》，上海古籍出版社2015，第368页。

39) (明)张元忭撰；钱明编校《张元忭集》，上海古籍出版社2015，第369页。

40) (宋)范仲淹，《范文正公集》卷第八，四部丛刊景明翻元刊本，第82页。

41) 刘海峰：《中国科举文化》辽宁教育出版社，2010，第256页。

42) (汉)班固，《汉书》卷五十六，清乾隆武英殿刻本，第849页。

辟了一种崭新的治国模式。古代书院德育教学模式，能为帝王分忧，为社会正俗，为国家平治天下，其功不可没。

V. 结语

传统书院教育，其核心在于培养人之德性，由人之德性而隆德厚礼。书院学规的设立，乐教的推行，无不以增进人之德性为能事；学校章程的设立，从制度层面保障了上自书院山长，下至书院诸生，均以增进人之德性为能事。增进人之德性，有利于厚德隆礼，厚德隆礼，由隆礼而增进人与人、人与社会，乃至整个国家的和谐。书院之设立，其初衷在于培养诸生明明德，使其德性止于至善，进而达到我们所说的修身、齐家、治国平天下之目的。书院教育的隐形的价值向度为和合：即书院教育实现的是人己和合、人与社之和，最终实现整个国家的和合，从而实现书院教育隐形的和合哲学价值。

Discuss the value dimensions of academies education & harmonious Philosophy

Chen, Lixiang

The academia has discussed traditional academy by ways of multi-level, multi-angle, But it ignores the discussion on the philosophy of the harmonious value for the invisible college education. The establishment of Academy's Rules as a normative ethics to regulate Behavior of Human and it's aimed at o promote man's virtue; The Formation of academia music education system, to purify people's minds and it is contributed for human moral education also the regulations of academia is good for master and students. The formulation of academia's education systems based on cultivate moral characters and integrity ritual, Which is revealing invisible philosophy values.

Keywords : academies education, harmonious, Academy's Rules, joyful education, regulations

이 논문은 2018년 6월 3일 투고 완료.

2018년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완료.

2018년 6월 25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서 게재 결정.

후보

1. 주요 연혁

2017. 1. 20. : 제13회 월례발표회(한중연) 및 《총회》 개최
2017. 4. 7. : 제14회 월례발표회(한중연), “한국의 인문(人文)공간: 서원(書院)”
2017. 7. 21. : 제15회 월례발표회(옥산서원), “옥산서원 스토리텔링”
2017. 10. 27-30 : 한중서원학회 교류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한·중 서원연구의 현재와 미래” (호텔 아젤리아)
2018. 4. 27 : 제 16회 월례발표회, 중국 청도대학교

2. 활동

■ 제16회 월례발표회(2018. 4. 27, 중국 청도대학교)

발표 ①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채광수, 경일대)

발표 ② 조선전기 교육정책과 16세기 안동지역 서당 건립 활동 (이병훈, 영남대)

발표 ③ 상주 옥동서원의 사액과정 (김순한, 영남대)

한국서원학회 회칙

2011년 11월 1일 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 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 정보교환 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
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
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
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
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
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 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 외 기타 출판물을 기획 편집한다.
7. 자문위원(무정수): 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
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절 총회

제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제19조 삭제 <2017.01.20.>

제20조 삭제 <2017.01.20.>

제3절 이사회

제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22조(기능)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제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 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 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 기록 자료 관리
2. 연구이사: 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 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 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 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절 편집위원회

제25조(구성과 소집)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 위원으로 편집 위원회를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 개정 2017.01.20. >

제26조(기능)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여기에 게재할 논문과 저작물을 심사한다.

제27조(저작물 심사)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제28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29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30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제31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제32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제33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제34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35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7.01.20.>

제36조(기금의 조성하고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부 칙(2006.11.0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1.2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규정

2011년 11월 1일 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

제 1 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 3 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 4 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 5 조(투고논문 심사) 투고된 논문은 전문가 3인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제 6 조(편집위원회) 학보의 편집과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재임명 한다.< 신설 2017.01.20>
- ②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업적이 인정되는 자를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 개정 2017.01.20.>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 개정 2017.01.20.>
-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총괄하며, 출판이사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는 보조한다.< 개정 2017.01.20.>

- ⑤ 편집위원회는 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1.20.>
- ⑥ 편집위원회는 분기당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이나 회장의 요청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 ⑦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7 조(편집위원회 의결사항)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 ②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 ③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제 8 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學報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둔다.

- ① 편집자문위원은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회장이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7.01.20.>
- ② 편집자문위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 ③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④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 ⑤ 이미 간행된 학보의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제 9 조(논문 심사)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②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후게재(B),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 게재
 (A,B,B) (B,B,B): 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 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 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 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논문에는 저자의 영문이름과 소속 및 지위 등을 명시한다.
- ④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

제12조(게재료 청구) 학회는 투고 논문이 학보에 게재가 결정되면 투고자에 대해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한다.

제13조(지적재산권) 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15조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1.20.)

제1조(시행일)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규정

2017년 12월 2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
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
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
한다.

제4조(원고의 조건) 논문은 기준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국문으로 논
문 제목, 필자명 및 소속,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참고문헌 순으로 정리되어
야 한다.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
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 한글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期限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의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단, 기획논문의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 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7조(게재료) 논문집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비와 게재비를 면제한다. 단 기준을 초과한 원고(초과 게재료 : 원고지 5매당 10,000원)와 사사표기 논문(20만)일 경우에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게재료는 논문 심사가 완료되고 게재가 확정되면 한국서원학회 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문서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97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9조(제출 원고) 제출하는 논문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미완성 논문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부 칙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작성 규정

2017년 12월 29일 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각주를 달고 각주에 내용을 작성한다. 투고자의 소속을 병기한다. 게재 확정 후 편집과정에서 일괄 *로 변경한다.

<예> 이수환*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파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증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

백(0), 들어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 (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

대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예 > 曹植 『南冥集』 卷2, 〈遊頭流錄〉, "新雨水肥 激石潰碎……."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 예 >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심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 예 >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1)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2)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 소문자로 구분한다.

< 예 > 김학수, 앞의 논문(2007), pp.41-42.

정만조, 앞의 책(2012), p.22.

이수환, 앞의 논문(2015), p.17.

정순우, 앞의 논문(2013a), p.213.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 예 >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17.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pp.150-153.

제15조(초록 작성)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한다. 주제어(키워드)는 5개 이하로 한다. 中文으로 초록을 작성할 경우 제목과 저자,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제16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부 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1일 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 윤리를 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 3 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연구윤리위원은 편집이사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개정 2017.01.20.>

③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4 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제 5 조(심의 및 판정) 표절 및 중복게재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6 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

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 7 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제 8 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 9 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11조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1.20.)

제1조(시행일)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서원학회 5기 임원명단

고 문 : 정만조(국민대), 이해준(공주대), 정순우(한중연)
회 장 : 이수환(영남대)
부 회 장 : 김학수(한중연)
감 사 : 곽진(상지대), 권오영(한중연)
총무이사 : 이병훈(영남대)
재무이사 : 김자운(공주대)
연구이사 : 이왕기(목원대), 김종석(국학진), 옥영정(한중연),
김경옥(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숙경(동아대),
김대식(경인교대), 장동표(부산대), 최석기(경상대)
기획이사 : 최광만(충남대), 조준호(실학박물관)
출판이사 : 이우진(영남대), 이근호(한국체육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규대(강릉대), 전라제주 김봉곤(전남대)
경상 정진영(안동대)
간 사 : 이신예(한중원), 김순한(영남대)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김학수(정치사회사, 한중연)
편 집 위 원 : 등홍파(중국서원, 악록서원), 유재춘(문화사, 강원대),
장동표(사회경제사, 부산대), 조인철(건축·풍수,
원광디지털대), 정수환(사회경제사, 한중연),
최광만(교육사, 충남대)
편 집 간 사 : 김순한(영남대)

인쇄일 2018년 6월 27일
발행일 2018년 6월 30일
발행처 한국서원학회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80 영남대학교 인문관 353호
전화 053-810-3706
팩스 053-810-4696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발행인 이수환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대구은행 508-12-677669-6, 이수환(한국서원학회)

인쇄소 삼성정밀인쇄사(053-255-3255)

The Journal of Korean Seowon Studies

NO. 6

June, 2018

Contents

Articles

- Study on the Aspect of Late Joseon Byungsan Seowon(屏山書院) Wonjang(院長)
Composition per Period ····· Kim Myungja 5
- The Marital and Familial Forms of Dosan Seowon Slaves in the 18th Century
····· Kim Young Na 43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rivate academies in Yeungnam Province in Chosun Dynasty
····· Lee Byoung Hoon 83
- The Petition for Loyal Charter and Establishment and Abolition Processes of Im-Cheon
Seowon in An-dong ····· Lee Jae Hyeon 129
- A review of the educational regulations of seowon and its special features in the 16th century
····· Lim Geun Sil 157
- The academies education theory of WangXianQian and his practice
····· Gong, Kangyun 195
- Discuss the value dimensions of academies education & harmonious Philosophy
····· Chen, Lixiang 209
- Bulletin ····· 223

Association Notes

KOREAN SEOWON STUDIES ASSOCIATION

<http://www.ksw2007.or.kr> e-mail : ksw2007@ksw2007.or.kr

